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2019
규제개혁백서

REGULATORY
REFORM
BOOK

「국민에게 힘이 되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저성장·저고용으로 상징되는 뉴노멀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의 주어진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여 경제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2019년에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전례 없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양적으로 줄이는 차원을 넘어 규제체계와 함께 규제개선의 방식과 주체를 혁신하려 했습니다.

첫째, 신산업 분야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지난 1년간 목표치 100건을 상회하는 195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 수소충전소 등 그간 규제에 묶여있던 58건의 신제품·신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에 착수하였습니다.

둘째,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모든 규제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규제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규칙을 일제히 정비하고, 국민과 기업이 그간 건의한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2,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적극행정’을 범정부 차원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을 적극행정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포함하여 22개의 법령과 지침을 제·개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최초로 제도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승차진료 등 혁신적 검사방식 도입’ ‘마스크 수급 해결을 위한 5부제 시행’ 등 창의적이고 과감한 조치들은 모두 적극행정을 통한 결과입니다. 이 외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들을 공유·확산하여 공직사회 내 붐업을 유도하였으며, 소극행정은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적발사례를 엄중히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부처가 제안한 총 974건의 규제를 엄격하게 심사하였으며,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 22건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직접 대면심사를 하여 총 14건을 철회 또는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새롭게 구축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더욱 신속하고 전례 없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께는 '감동'을, 기업에는 '활력'을, 공직자께는 '보람'을 드리겠습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방역지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기존의 규정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잘 소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사안은 법령을 정비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하여 비대면 산업과 같은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비상경제 시국 극복과 함께 코로나19 사태 이후도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규제개혁에 힘써주신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규제개혁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지형

김지형







정세균 총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오찬간담회

소통하는 규제혁신, 지속 발전하는 인천경제

인천지역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2019. 11. 19 00 / 인천시청 공감회의실



제2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 일시 | 2019. 11. 11.(월)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 1_ 인천지역 규제혁신간담회
- 2_ 제2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3



4



5



6

3_ 태국부총리 방한

4_ 규제혁신 포럼

5_ 적극행정 성과공유대회

6_ 한국 규제개혁경험 공유를 위한 ASEAN 국가 방문

제 1 장

규제개혁 추진체계

1. 개요	2
2. 규제개혁위원회	3
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8
4.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6
5.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7

제 2 장

규제개혁 추진 주요성과

제1절 2019 규제혁신 추진방향	20
제2절 규제체계 혁신(what) :	
先허용-後규제 체계로 전환	23
1.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23
2. 입법방식 유연화	45
3.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51
제3절 추진방식 혁신(how) : 정부 입증책임제	55
1. 개요	55
2. 추진현황	55
3. 향후계획	56
제4절 공직사회 혁신(who) :	
적극행정 확산, 소극행정 혁파	57
1. 개요	57
2.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57

3.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붐업 추진	60
4. 민관협력 강화 : 중소기업중앙회-국무조정실 업무협약 체결(12.2)	66
5. 직접규제기관(금융위·공정위·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 발표(12.19)	67
5. 적극행정 종합평가	69
제5절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70
1.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70
2.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72
3.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파	83
제6절 민생불편·부담규제 혁신	87
1.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87
2. 지역 민생규제 혁신	92
제7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 개선	98
1. 규제개혁신문고 개요	98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3단계 검토과정)	98
3. 문재인 정부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강화	99
4. 2019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101
5. 주요 규제 개선 사례	102
6. 향후 운영 계획	119
제8절 일몰규제 정비	120
1. 규제일몰제 개요	120
2. 2019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제 심사결과	121
3. 주요 정비 사례	122
4. 향후 계획	128

제 3 장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130
1. 입법 연혁	130
2. 2019년 개정사항	132
제2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133
1. 개요	133
2. 태국부총리 방한	134
3. 한국 규제개혁 경험 공유를 위한 ASEAN 국가 방문	134
4. 제21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참석	135
제3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136
1. 개요	136
2.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및 주요 사례	139
제4절 규제정보포털 운영	145
1. 규제정보포털 개요	145
2.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145
제5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150
1. 개요	150
2. 등록 대상 및 단위	150

제 4 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154
1.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154
2. 2019년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155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57
1. 기획재정부	157
2. 금융위원회	163
3. 금융감독원	191
4. 공정거래위원회	194
5. 국세청	198
6. 관세청	199
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203
1. 산업통상자원부	203
2. 중소벤처기업부	222
3. 특허청	228
제4절 국토·해양 분야	229
1. 국토교통부	229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10
3. 해양수산부	312
제5절 농림·산림 분야	333
1. 농림축산식품부	333
2. 산림청	350
3. 농촌진흥청	356
제6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358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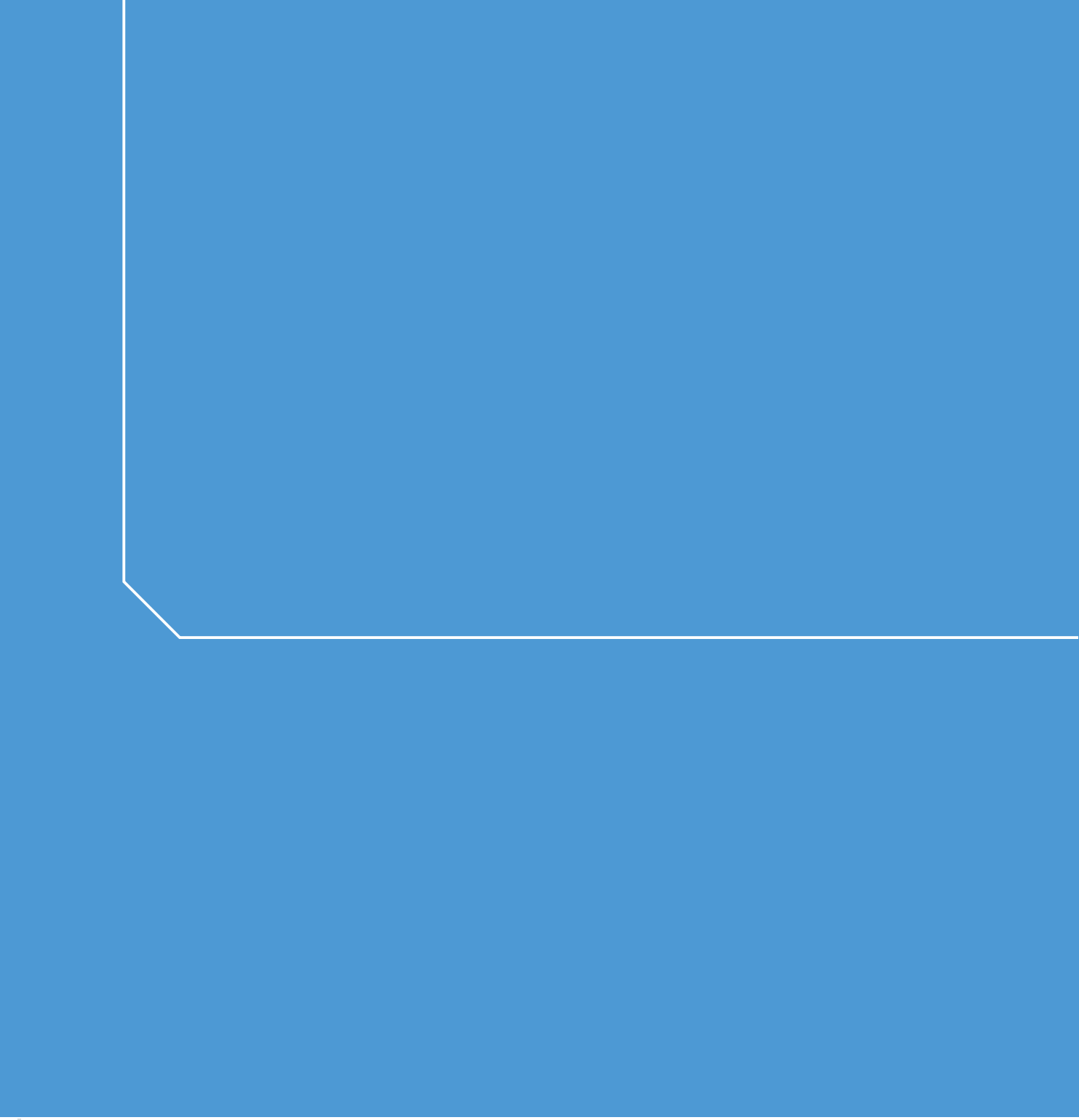
2. 방송통신위원회	368
3. 원자력안전위원회	376
제7절 노동·환경 분야	383
1. 고용노동부	383
2. 환경부	401
제8절 교육·문화 분야	441
1. 교육부	441
2. 문화체육관광부	454
3. 문화재청	463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468
1. 보건복지부	468
2. 식품의약품안전처	490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531
1. 외교부	531
2. 통일부	533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535
1. 국무조정실	535
2. 행정안전부	536
3. 법무부	544
4. 인사혁신처	549
5. 경찰청	550
6. 소방청	556
7. 국민권익위원회	564
제12절 규제영향분석	565
1. 제도 개요	565
2. 작성항목 및 요소	566
3. 작성대상 및 절차	566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569
5.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도입	576

제 5 장 규제혁신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9년 규제혁신 평가	580
1. 규제혁신 평가 개요	580
2. 2019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581
3. 부처별 평가결과	582
4. 분야별 평가 결과	583
제2절 2020 규제혁신 추진방향	585
1. 개요	585
2. 세부 추진방향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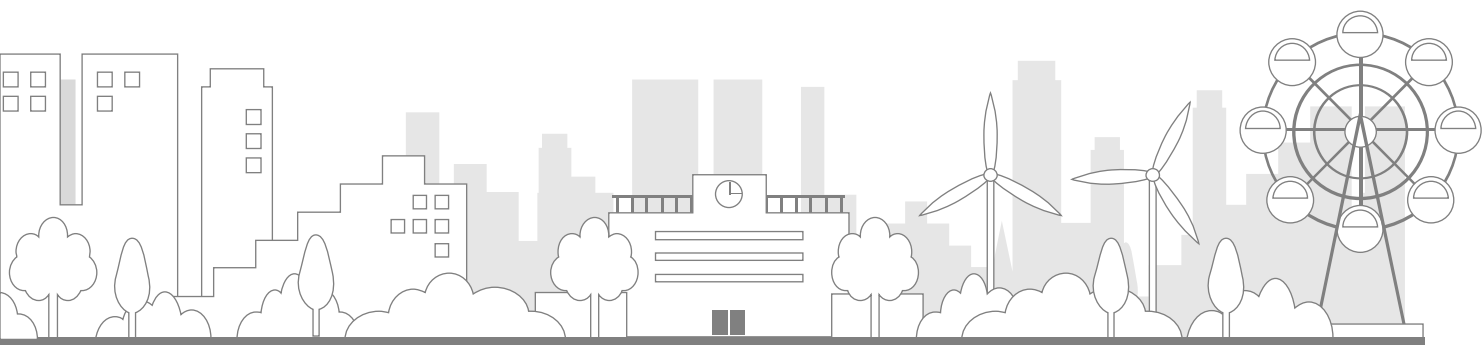
부록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588
2. 규제개혁 관련 법령	592



제1장

규제개혁 추진체계



제1장

규제개혁 추진체계

1. 개요



박유리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416, parkyuri@korea.kr

문재인 정부는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비용분석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두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인 국무총리는 국가 중요 정책의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설치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활용하여 규제혁신 주요 안건을 논의·발표하고 있으며,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혁파하기 위해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 비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조정실) - 자문기구 구성·운영 (신산업규제혁신위, 기술규제위, 비용분석위원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덩어리 규제 개혁 및 규제정책 관련 대통령 보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파 현장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덩어리규제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현장 규제에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톱 밑 가시 등 기업 규제에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및 기업 현장 규제에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신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민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신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민원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신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민원 처리

2. 규제개혁위원회

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박유리 사무관
Tel. 044-200-2416, parkyuri@korea.kr

(1) 구성 및 기능

(가)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기능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록

(다) 구성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당연직) 및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되며, 2019년 12월 현재 위원장 2인, 민간위원 15인, 정부위원 7인 등 총 2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명단 (2019년 12월 기준)

구분	성명	현직
위원장 (2)	이낙연 김지형	국무총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정부위원 (7)	홍남기 진영 성윤모 박영선 노형욱 조성욱 김형연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
민간위원 (15)	국경복 김찬오 문소영 박소라 양옥경 원구환 원숙연 윤소라 이덕승 이세영 이정희 이철수 임재진 전재경 최희윤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석좌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서울신문 논설실장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유아이 대표 녹색소비자연대 이사장 법무법인 새롬 대표변호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2) 회의 운영

(가)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매월 1회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중앙행정기관 입법상황 등을 감안하여 현재 매월 2회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실장 또는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19년 본회의 운영실적

2019년에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는 총 18회(426회~443회) 개최되었으며, 13개 부처의 총 38개 안건을 논의(의결 21건, 보고 17건)하였다. 21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총 21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8건, 개선권고 13건이었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부록) 참조

나.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현정 사무관
Tel. 044-200-2398, hjlee2838@opm.go.kr
신용현 사무관
Tel. 044-200-2443, trustyonghyun@opm.go.kr

(1) 구성 및 기능

(가)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은 분야별로 5개 이내의 분과위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9.12월 현재 경제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7~8인, 정부위원 4~5인 등 1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2019년 12월 기준)

구 분	분 과 위 원	소 관 부 처
경 제	민간위원 이 정 회(위원장) 국 경 복 문 소 영 원 구 환 윤 소 라 임 재 진 최 희 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위원회 • 국세청 • 통계청 • 특허청 • 행복도시건설청 • 산림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공정거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관세청 • 조달청 • 농촌진흥청 • 새만금개발청 • 해양경찰청

구 분	분 과 위 원		소 관 부 처	
	정부위원	기획재정부장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행정사회	민간위원	원 속 연(위원장) 김 찬 오 박 소 라 양 옥 경 이 덕 승 이 세 영 이 철 수 전 재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 통일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여성가족부 • 인사혁신처 • 법제처 • 국가보훈처 • 검찰청 • 방위사업청 • 문화재청 • 소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 법무부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국무조정실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권익위원회 • 병무청 • 경찰청 • 기상청
	정부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2) 회의 운영

(가) 회의 소집

분과위원회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나)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회의 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국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직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3) '19년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 실적

경제분과위는 총 3회(523회, 524회, 525회) 개최되었으며, 14개 부처의 총 15개 안건을 처리(의결 15건)하였다. 15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15건(일몰규제 14건 포함)의 규제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14건, 부대권고 1건이었다. 한편, 행정사회분과위의 경우 총 1회(554회) 개최되었으며, 15개 부처의 총 15개 안건을 처리(의결 14건, 본회의 재심사 1건)하였다. 15건의 의결안건을 통해 일몰규제 15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13건, 부대권고 1건, 본회의 이관 1건이었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일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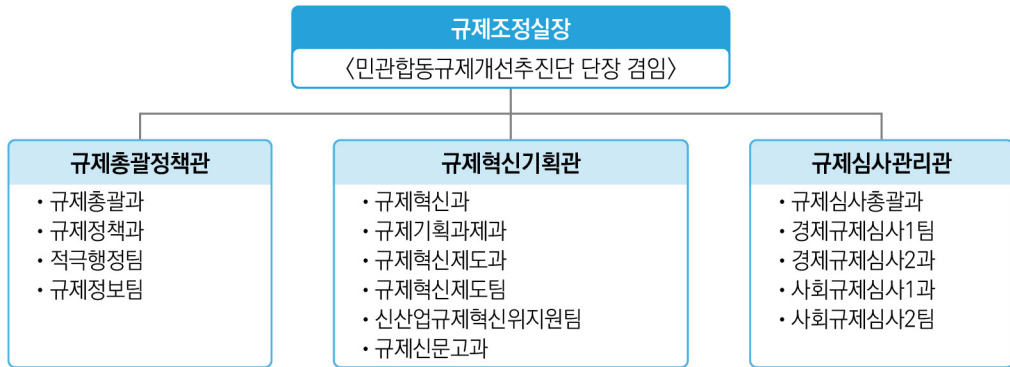
3.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박유리 사무관
Tel. 044-200-2416, parkyuri@korea.kr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제도 관리,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등 주요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조율 및 각 부처의 규제개혁정책 추진 지원 등을 총괄한다. 규제조정실은 2019년 12월말 현재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심사관리관실의 3국 15과로 운영되고 있다.



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집필자

육성훈 사무관

Tel. 044-200-2666, ryuk456@korea.kr

(1) 설치배경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였다. 2016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¹⁾에서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규제 검토 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운영되었고, 국무조정실로 위원회를 이관('16년 3월)하여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규제 심사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후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자문기구로 체계화하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로 확대·재편('17년 6월)하였다.

(2) 구성 및 운영

(가)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

신산업 규제는 기존 규제개혁 추진방식에서 탈피하여 △ '官'이 아닌 '民' 주도 규제 시스템 확립 △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규제 심사 방식 도입 △ 국제수준에서 규제 최소성 달성이라는 「규제개혁 패러다임 3대 원칙」하에 원점에서 재검토하였다.

1) 2016년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민간 주도, 원칙 개선·예외 소명 검토방식 처음 도입

첫 번째, 민간주도의 규제 시스템 확립을 위해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 관료의 관점이 아닌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120명 전원 민간전문가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²⁾를 구성하였다. 특히 신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기술과 업종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파생되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업종에 국한하지 않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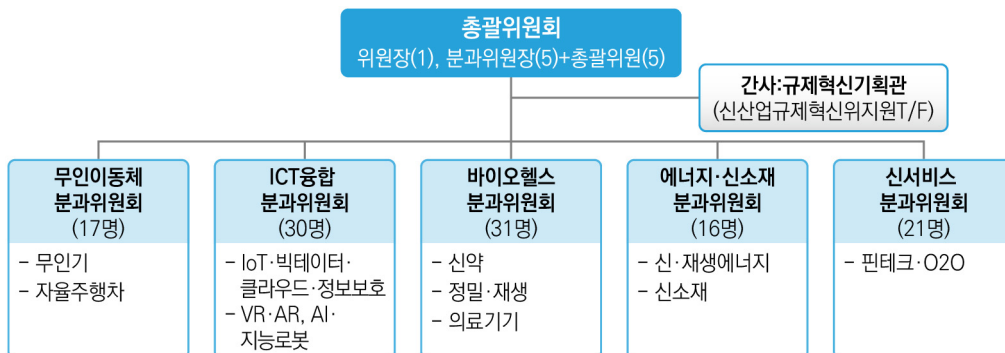
두 번째, 원칙 개선·예외 소명의 규제 심사 방식을 도입하였다. 원칙 개선·예외 소명 심사 방식은 생명·안전·환경 분야를 제외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개선한다는 규제 심사 원칙으로, 이러한 심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신산업 관련 규제를 적시에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선진국과 비교하여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였다. 국내 규제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진출이 저해되지 않도록 모든 규제는 국제수준의 규제 최소화 원칙하에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신산업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였다.

(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무인이동체,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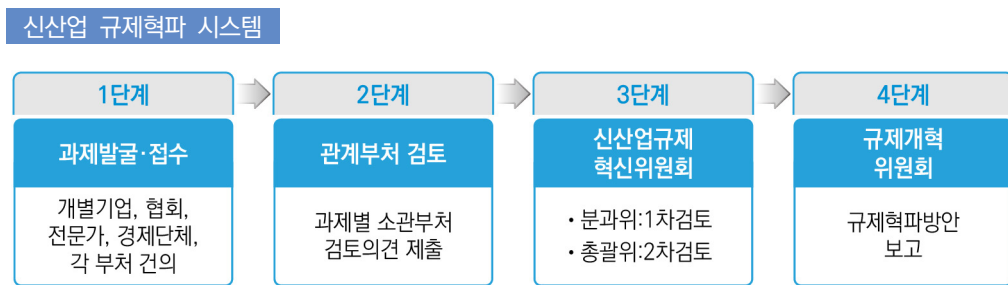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구성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에 근거하여 설치

신산업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5개 분과위원회 내에 세부 분야별 소위원회를 두었으며, △무인이동체 분과위원회는 무인기, 자율주행차, △ICT 융합 분과위원회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클라우드, 정보보호,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지능로봇, △바이오헬스 분과위원회는 신약개발, 정밀·재생의료, 첨단의료기기,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신서비스 분과위원회는 O2O(Online to Offline), 핀테크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관련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효과 과제에 대한 검토방식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분과위원회의 검토로 이루어진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민간 주도의 원칙하에 민간전문가, 업계,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여 규제효과 건의과제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위원회가 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된다. 2단계는 총괄위원회의 검토 단계이다. 총괄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규제효과 검토의견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조정한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효과 처리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되며,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및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공개된다.

(다) 2019년 위원회 개최실적

VR·AR, 수소자동차 등 핵심 분야별로 총 17회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신산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어로 과제 74건을 발굴한 후, 총 19회³⁾의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 및 다수의 실무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69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과제 발굴은 현장성과 시의적절성을 특징으로 한다. 신산업 관련 업계·협회 등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을 통해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산업융합추진 옴부즈만 등과 협업을 통해 각 산업별 현장 규제애로 건의도 수집하였다. 특히

3) 2019년 분과위(29회) : '18.12.20~'19.8.29, 총괄위(2회) : '19.5.8 / 10.4

신산업 현장의 개선 목소리가 높은 VR·AR, 수소충전소 분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2019년에는 친환경차(8)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소재 분과(9건), VR, 로봇, 스마트팜, 3D프린팅 등 ICT 융합(22건), 제약바이오, 스마트헬스 등 바이오헬스 분과(35 건), O2O 등 신서비스 분과(8건)에서 총 74건의 검토과제가 발굴되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안건 토론의 상호성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건의를 검토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권고하였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신산업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전문적·합리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원풀을 보강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74건의 검토안건에 대하여 관계 부처, 업계 건의자, 민간위원이 함께 안건의 심층 토론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해결의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당초 소관부처가 불수용 또는 기초치 의견을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도 수용 또는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검토과제 74건 중 28건은 건의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소관부처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35건은 대안을 마련하는 등 69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 그러나 ①VR콘텐츠 등급분류 신청 시 제출자료 면제 또는 간소화 ②건강기능식품 기능성과 일반식품 유용성 표시 제도 통합 등 5건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국민 생명, 환경, 안전을 고려하여 규제존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2019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검토 결과

분과(횟수)	개선 건의	규제애로 해소			규제 존치*
		수용	대안마련	기초치	
ICT 융합(6회)	22건	7건	13건	1건	-
바이오헬스(8회)	35건	14건	12건	5건	1건
에너지·신소재(3회)	9건	5건	4건	0건	4건
신서비스(2회)	8건	2건	6건	-	-
합 계(19회)	74건	25건	35건	4건	5건

* 국민생명·안전 위해 우려 등으로 규제존치 인정(건강기능식품 기능성과 일반식품 유용성 표시 제도 통합 등)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19.5월과 10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였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총리 주재)를 통해 발표하였다.

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이미경 사무관
Tel. 02-6050-3292, lmgjae@korea.kr

(1) 추진단 설치배경

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기 위해 민(民)과 관(官)이 합동으로 설립한 규제개선 전담조직이다.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애로사항 발굴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규제개선을 위해 귀를 더 크게 열고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창구가 필요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개선이 아니라 민생 중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3년 9월 12일 국무조정실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단을 설립하였다. 추진단은 이전 정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2013년 2월 새 정부 출범으로 폐지되었으나 업계의 여망에 따라 기능과 조직을 더욱 보강하여 출범하였다.

추진단 설치 근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615호, 2013.8.16.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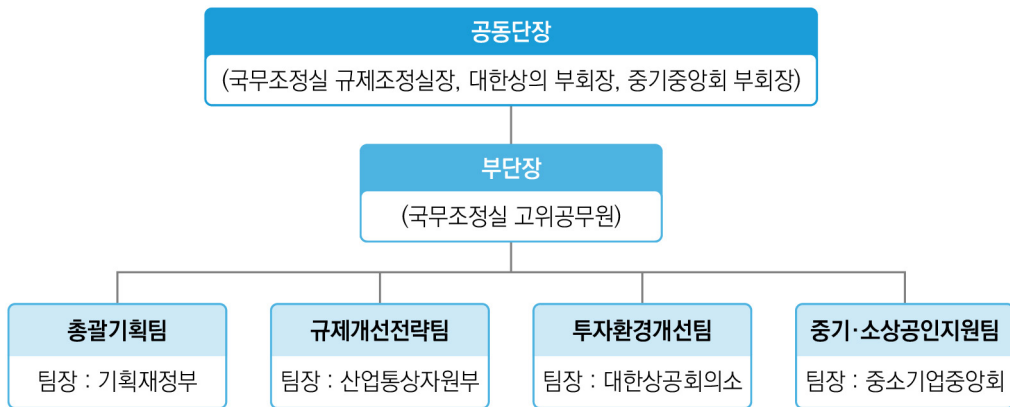
(2) 추진단 운영

추진단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되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1급),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3인의 공동단장체제로 운영된다. 추진단 실무를 총괄하는 부단장은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맡고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팀 조직은 총괄기획팀, 규제개선전략팀, 투자환경개선팀 및 중기·소상공인지원팀의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민간단체에서 파견되어 온 직원 24명(정부 12명, 민간 12명, 단장·부단장 제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 전문가는 기업 현장의 규제애로 발굴에 역점을 두고, 공무원은 정부나 관계기관과의 제도개선 협의·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함으로써 민관합동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한편, 추진단 사무실은 기업들이 찾아오기 편하도록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 자리 잡았다.

추진단 조직도



(3) 추진단 역할

추진단은 기업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한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방문, 찾아가는 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정책 수요자인 기업·국민과 정책 공급자인 정부 상호간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효과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부처의 규제개혁 담당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있다.

(4) 주요 업무처리 절차

추진단 업무는 크게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관계부처 협의·조정 → 규제개선 및 보고·발표 → 이행점검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제별로 책임담당관을 지정함으로써 건의자에게 과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여 소통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한, 규제개선 추진 중인 과제는 이행계획에 따라 과제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규제개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규제개선 과제 처리 절차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단은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해 사무실을 상시 개방하여 소통의 장소로 마련하는 한편, 기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고전화(02-6050-3366)를 통해서도 규제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다.

관계 부처 협의·조정

건의된 과제는 추진단의 자체 검토를 거쳐 소관부처에 전달되며, 소관부처는 건의 과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추진단은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조정을 진행하며, 이때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선을 추진한다.

규제 개선 및 보고·발표

개선된 과제는 그 결과를 건의자에게 통지하는 한편 주요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보고하며, 언론사를 통해서도 발표한다.

이행 점검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사후관리하고, 이를 통해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는 물론 정부의 신뢰 제고도 도모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집필자

이다은 사무관

Tel. 044-200-2429, leeda@opm.go.kr

권희근 사무관

Tel. 044-200-2452, beatitud0@korea.kr

가.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각 중앙행정기관은 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정책 수립, 행정규제의 신설·강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자체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각 부처는 부처별 자율규정에 따라 자체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규제개선위원회 등 자유롭게 위원회의 명칭을 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처별 자율규정에 따라 7인~4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기관의 소관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과장급이며, 주요 업무는 주요 규제개혁 과제발굴 및 기획, 과제 이행 및 점검, 규제심사 업무, 자체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입증위원회 운영 등으로 규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모든 중앙행정기관에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행정법무감사담당관실 등 일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 이처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소관 규제의 규모에 따라 다른 업무와 함께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가.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업무 지원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지방규제혁신과를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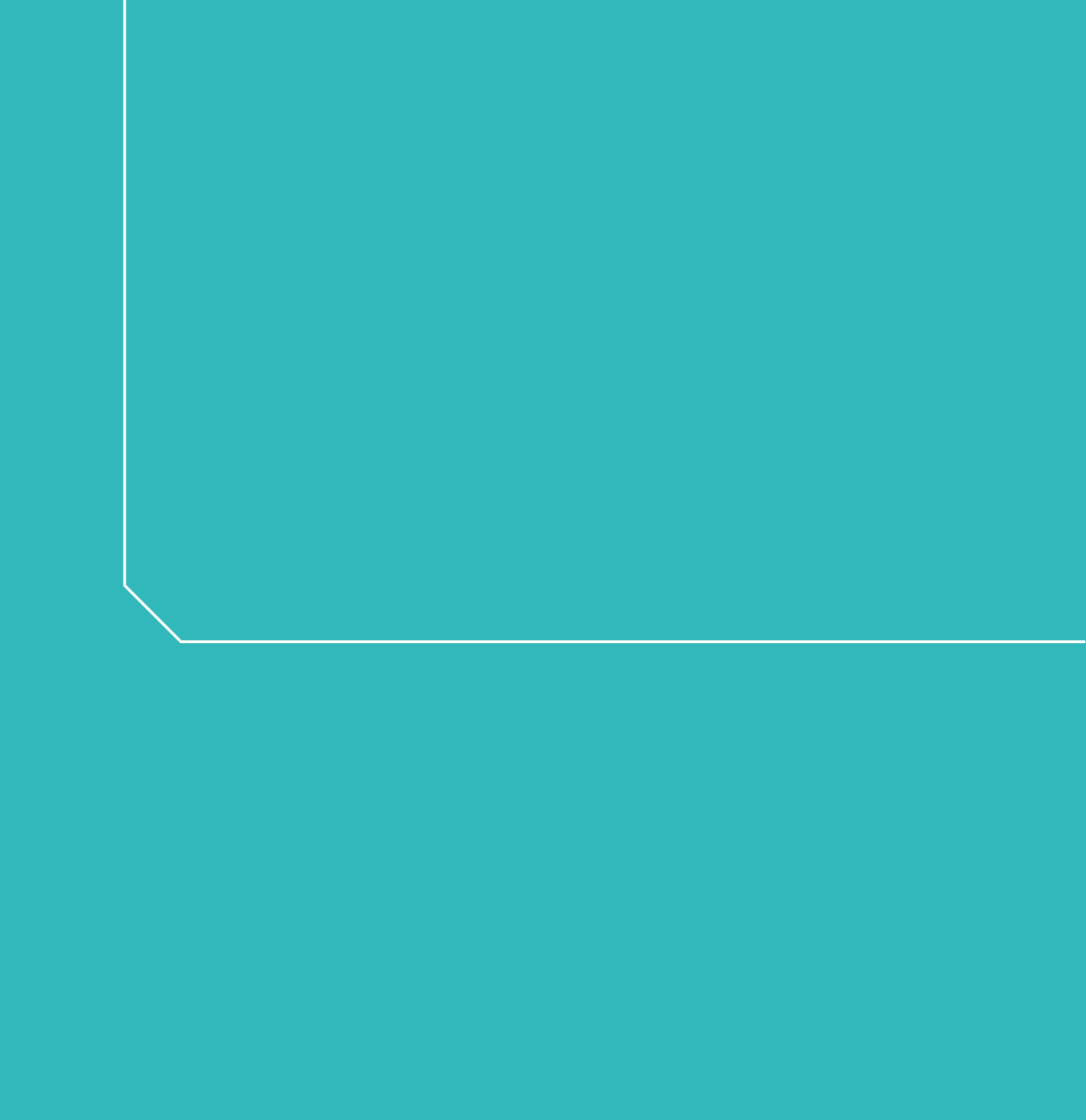
* 지방규제혁신과 주요 업무 : △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개선·정비 및 소극행태 개선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적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시·도별, 시·군·구별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방규제개혁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심사, 인·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한 자문,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총괄부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규제혁신추진단 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총괄부서에서는 지자체내 규제개혁 업무에 관한 종합 기획·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원, 규제애로사항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제2장

규제개혁 추진 주요성과

제1절 2019 규제혁신 추진방향

제2절 규제체계 혁신(what) : 先허용-後규제 체계로 전환

제3절 추진방식 혁신(how) : 정부 입증책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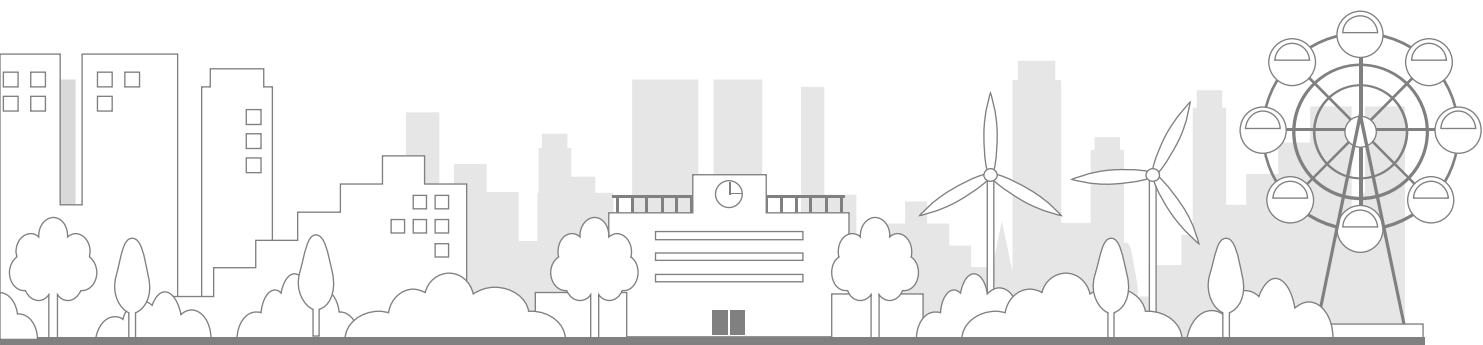
제4절 공직사회 혁신(who) : 적극행정 확산, 소극행정 혁파

제5절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제6절 민생불편·부담규제 혁신

제7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 개선

제8절 일몰규제 정비



제2장

규제개혁 추진 주요성과

제1절

2019 규제혁신 추진방향



집필자

석선영 사무관

Tel. 044-200-2397, ssy1214@korea.kr

문재인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2017년 9월에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부담 해소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산업 △기존산업 △민생 분야에 집중하여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였다.

첫째, 규제체계(what)를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하였다. '先허용-後규제' 체계란 신제품·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입법방식을 유연화하여 우선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경직되고 한정적인 법령 때문에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가로막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4차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을 발표하고 총 37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그리고 2019년 규제혁신 4+1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조건으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다. 실물분야를 포함한 4대 분야(ICT,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특구)에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3중 세트를 도입하였을 뿐 아니라 신속한 심사처리를 통해 195건을 승인하는

등 당초 연간 목표인 100건을 약 2배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래유망 신산업 분야의 발전단계를 예측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미리 규제를 발굴·정비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8년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최초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마련한 이후 2019년 드론 분야로 확산하였다. 신산업 현장과 소통하며 신산업·신기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애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하고 있다.

둘째, 추진방식(how)을 국민·기업이 왜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는 공직자가 국민·기업의 입장에서 규제를 바라보도록 '甲'과 '乙'을 바꾼 새로운 추진방식 틀이다.

국무조정실은 2019년 2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각 부처에서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셋째, 공직자(who)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소극행정을 격파하는 노력을 강화하였다. 진정한 규제혁신은 제도개선과 함께 제도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2019년 3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한 이후 최초의 종합규정인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등 총 22개의 법령·지침을 제·개정하였다.

또한,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사전 컨설팅·면책제도를 확대하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공직사회 불업을 위해 차관회의 릴레이 발표, 적극행정 성과 공유대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중기중앙회에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하고 국무조정실-중기중앙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제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있는 규제기관(금융위·공정위·국세청)에 대한 적극행정 강화방안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소통(communication)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회 이상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를 500여건 해소하였고 16개 시·도 현장간담회를 추진하여 주민과 기업의 건의사항을 해소하였다. 또한, 국민 누구나 규제개선을 건의할 수 있는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여 민생불편 사항을 500여건 이상 개선하였다.

이러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산업 혁신, 기존산업 규제개선, 민생불편 해소 등의 분야에서 총 3,7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가치·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의 어려움, 규제혁신 발표시점과 실제 집행시점간 시차 발생, 국민과의 소통 미흡, 일부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경제활력 회복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변화가 절실하다. 앞으로 정부는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에 총력을 다 하여야 한다.

제2절

규제체계 혁신(what) : 先허용-後규제 체계로 전환

1.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한레지나 서기관
Tel. 044-200-2415, nebula27@op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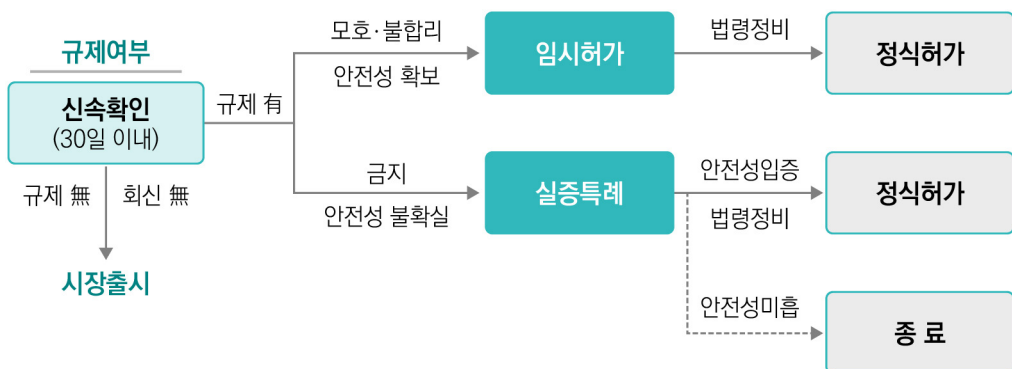
(1) 규제 샌드박스 개요

(가) 개관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2019년 1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란 기존 규제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下(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시장출시 또는 실증을 허용해주는 ‘혁신의 실험장’을 말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특례로써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도입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운영 체계



규제 신속확인 은 신산업 시장출시 등을 위해 규제의 존재·내용 등을 문의하여, 30일 이내 회신하여 불확신성을 해소하는 제도로 규제 소관 부처에서 30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속한 제도 운영을 보장한다. 임시허가란 관련 법령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조기 시장 출시를 임시로 허용(유효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하고 관련 법규정 개정후에 정식 허가로 전환한다. 실증특례란 신산업에 대한 실증(검증)이 필요하나 관련 법령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 한 경우 또는 불가능(금지)한 경우 제한된 조건 하의 테스트를 허용(유효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하는 제도이다. 실증특례 결과 안전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을 정비하여 정식허가로 전환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 보호 장치도 운영한다. 우선 첫 번째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 승인을 제한한다. 두 번째로 규제특례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규제 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특례 승인기업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전 책임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된다. 사고 발생시 고의·과실 입증은 사업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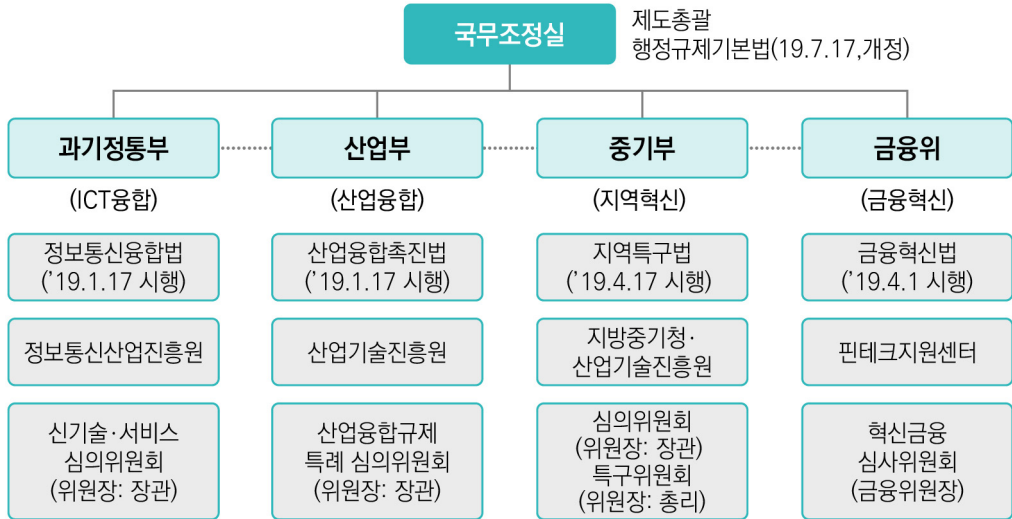
(나) 법적근거 및 추진체계

2019년 7월 17일 ‘선허용·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본법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되었고, 2019년 1월 17일 ICT 융합·산업융합, 2019년 4월 혁신금융·지역혁신의 4대 분야 법령을 제·개정하였다.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9.1.17 시행)
- 산업융합 촉진법(19.1.17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 시행)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1 시행)

규제 샌드박스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특례심의를 위하여 4개 분야로 나뉘서 운영된다. 다만 제도운영의 통일성 보안을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5개 부처가 체계적으로 협업한다. 국무조정실은 제도 전반을 총괄하며 관계부처 TF등을 통해 제도의 일관성 유지 및 조정·보완한다.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의 4대 주관부처는 실제 제도를 운영하며 규제 소관부처들과 공동으로 사후관리·평가 등을 추진한다.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4대 주관부처에는 전담기관들이 업무를 지원한다.

규제샌드박스 추진 체계



(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특징

규제 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에서 금융 분야에 처음 도입되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 (Sandbox) 안에서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수 있는 것처럼 혁신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이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이를 보다 발전시켜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3가지 제도가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여 운영한다.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유사과제는 신속처리(Fast Track)을 통해 심사절차 간소화 하였다.

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

한국	외국
신속확인	해당 없음
임시허가	해당 없음
실증특례	실증특례

한국과 주요국 도입 범위 비교

국가	도입 범위
	• 실물경제 포함하는 4대 분야
	• 금융 중심, 최근 ICT·에너지 확대
	• 금융 중심(아리조나, 와이오밍 주)
	• 헬스케어·모빌리티로 확대('18년~, 13건)

(2) 제도보완 조치

그간 시행 초기임에도 제도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왔다. 2019년 4월 23일 시행 100일과 2019년 7월 17일 제도 시행 6개월을 계기로 각종 다양한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가) 시행 100일 계기 제도 보완 :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

① 전담기관 인력 조직 보강

4대 주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와 전담기관*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였다. 신청기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1:1 상담 등을 통해 신청 단계부터 전문적 지원을 받으며 충실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 산업기술진흥원(산업융합, 지역특구), 핀테크지원센터(금융)

인력 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처)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출범(20명) 등 4개 부처별 샌드박스 전담부서 신설, 총 31명 증원 • (전담기관) 4대 전담기관별 전담팀 신설, 전담인력 총 23명 증원
상담·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신청 전부터 법률자문(특례 필요성, 관련 규제 현황 등) 및 컨설팅 등 맞춤 지원 • (대표사례) 정보통신산업진흥원(ICT)의 경우, 총 1,087건(▲일반상담 767건 ▲법률상담 208건 ▲신청서 작성 지원 112건) 지원(월평균 156건)

② 패스트트랙 심사 도입

샌드박스로 이미 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한 신청 사례는 심사 절차의 일부 부처 협의, 분과위 검토 등을 생략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4개 주관부처가 「패스트트랙 매뉴얼」을 공유하고, 타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사례가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로 이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보완하였다.

③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신설

규제특례 심의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부가조건이 부여되지 않도록 부가조건 부여 필요성과 해의 사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규제부처에 부여하고 타당성이 부족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였다. 실증특례의 경우 최소기간 경과 기간(6개월) 이후 사업자가 부가조건 변경을 요청할 경우, 규제특례심의위가 부가조건의 적절성을 재검토해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4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실증특례의 경우 최소 실증기간(6개월)이 경과한 후 실증테스트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실증특례 종료와 함께 관련 법령 정비를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주관부처는 실증사업 결과를 규제부처와 함께 점검하고 안전성과 혁신성에 문제가 없고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규제부처는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나) 시행 6개월 계기 제도 보완 : 승인기업의 사업화 지원 중점

1 승인기업 성장프로그램 보강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경우 실증특례 이후 실제 사업 추진 중 투자유치·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사업화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수 조달물품 신청 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멘토링 강화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통과 기업 대상 성장 프로그램 방안

공공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의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 ‘혁신성 평가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기술제품 구매 활성화 방안(19.7.2 발표) • 조달청 혁신조달플랫폼내 열린장터(20.1월 운영예정)에 특례 제품 등재 추진, 상품홍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주관 관련규정 제정 시 반영 추진(20년)
자금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전용펀드 조성 추진(20)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샌드박스 승인 기업 명시 ※ 사업화 및 실증특례 자금 지원(기업당 최대 1.2억원, 총 64억원), 승인기업에 책임 보험료 지원(최대 1,500만원, 총 6억원)은 이미 시행 중
멘토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진출을 위한 바이어 발굴 및 전시회 참가 지원(산업부·KOTRA 연계) • 벤처투자자 등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IR) 개최 지원(중기벤처부)

2 특히 관련 종합 지원체계 마련

제 샌드박스 관련 특허출원은 우선 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일반심사보다 단축(13개월 → 2개월)하여 조기 권리화를 지원한다. 또한 특례심의 과정 중 특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심의 장기화 우려가 있어 특례 심의 단계에서는 특허청의 전문의견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분쟁 발생시 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조기 분쟁해결을 지원한다.

특허분쟁 신속처리 지원 방안

구분	지원 내용
신속심판	• 일반심판 약 12개월(신속심판결정일 기준) → 평균 100일 (약 9개월 단축)
산재권 분쟁조정위	• 분쟁조정절차 기준 3개월 → 평균 2개월 (약 1개월 단축) * 조정에 의해 작성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매뉴얼 지원 : 특허지원 제도(신속심판·우선심사 등) 상세 정리·보급

3 기술 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인증기준 개발과 특례 제품의 성능·안전성 개선을 지원한다. 규제 특례기간이 만료(2+2년)될 때까지도 신기술에 대한 기술·인증기준 부재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개정된 기준에 특례 제품이 부적합한 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구분	주요 내용
기술·인증 기준 개발	•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기술 및 인증기준안을 사전에 마련 → 소관 부처에서는 동 기준안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특례기간 만료전)
제품개선 지원	• 승인과제가 기술 및 인증기준에 적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지속 - 컨설팅, 시제품 제작, 시험·검사, 실물 테스트 등 제품 성능·안전성 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지원

4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 도입

승인과제 전체에 국장급, 과장급, 실무자를 명기하고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애로사항 및 보완 사항등을 수시로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다. 월 1회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특례사업의 정상적 진행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지연시 대처방안 등을 마련한다.

사후관리 체계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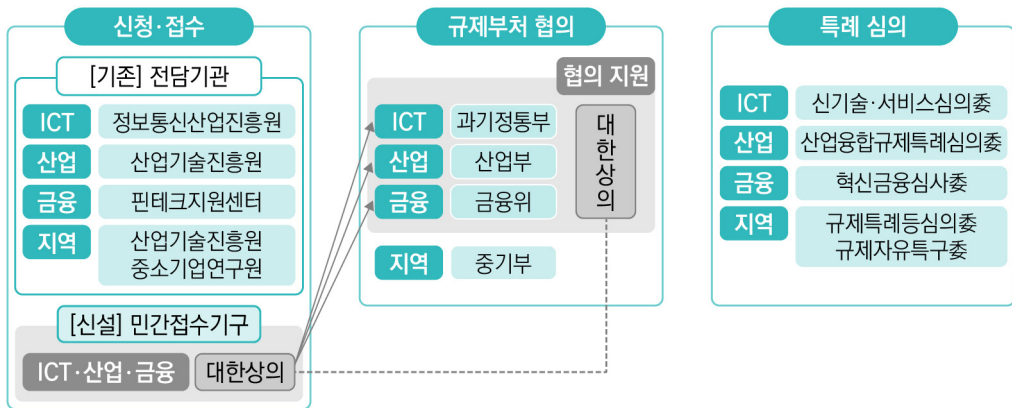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과제담당자 실명제	• 승인과제 전체, 과제담당자 실명을 포함한 관리카드 작성 의무화 - 과제관리카드에는 국장급, 과장급, 실무담당자를 명기하고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애로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수시로 기록, 관리
정기 점검체계	• 매월 1회 점검을 원칙으로 운영 / 필요시 현장 점검 병행 (19.7월~) - 사업계획 대비 집행 상황, 부가조건 이행 등 사업의 정상적 진행 상황을 중점 점검 하고 지연 시 사유 파악 및 대처방안 마련

(다) 시행 1개월 계기 제도 보완 :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제도 내실화

① 추진단계별 실행력 강화

㉓ 신청접수단계

- (민간접수기구) 현재 4대 규제 샌드박스 전담기관 외에 별도의 민간접수기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 운영하여 신청기업의 편의성 증진한다.



- (대상 확대) ‘DNA(Data·Network·AI) +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유망 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시켜 나간다.

㉔ 심사단계

- (신속처리 보강) 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승인 절차	자료보완 법률자문	사업내용 검토·정리	관계부처 협의·조정	심의·의결 [분과위/특례위]
일반 (3개월)	15일	30일	20~30일	15일/7일
신속 처리 유사(2개월) 동일(1개월)	8일	15일	15일 이내	7일/7일
	8일	15일	7일 이내	생략/서면(즉시)

- **(부가조건 완화)** 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겠다.

㉠ 실증단계

- **(전담부서 지정)** 초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규제부처에서도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게 하여 소관과제의 사후관리 책임성을 확보한다.
- **(기술인증기준)** 승인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한다. 매년 10~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신규기준 개발과 제품성능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 법령정비단계

- **(임시허가)** 신청사업이 임시허가로 승인받으면 '법률은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은 3개월 내 개정'이라는 원칙 하에 조속한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령 개정시까지 특례를 연장하여 사업중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나간다.
- **(실증특례)** 실증특례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 정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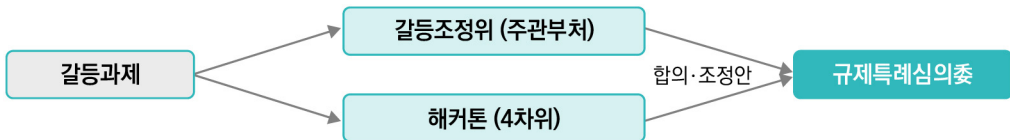
② 시장진출 촉진

- **(공공조달)** 공공기관의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제품을 선정할 때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공공조달이 특례 제품의 초기수요를 견인하도록 지원해나간다.
- **(자금·세제·사업재편 지원)** 특례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과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전용펀드, 우대보증 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활력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품과 관련된 사업으로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과 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예산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참여와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을 촉진해나간다.

③ 실효적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 **(갈등조정체계 구축)** 참여한 이해관계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웠던 갈등과제는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를 운영해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을 마련한다.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공론의 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적극행정 원칙 적용)** ‘先적극행정 後규제샌드박스’ 원칙을 적용해 즉시 개선되어야 할 규제를 규제 샌드박스로 우회·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를 방지한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즉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도록 해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고 완전한 시장진출이 가능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각 부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감사 등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임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 신속확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거쳐 적극적 법령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확인 제도의 역할을 확대하고, 특례 심의 과정에서도 선허용 후규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4개 주관부처뿐 아니라 실제 소관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규제부처의 노력 여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특례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개선한 사례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재설계한다.

나. 규제 샌드박스 시행성과



김나래 사무관
Tel. 044-200-2503, knr619@opm.go.kr

(1) 승인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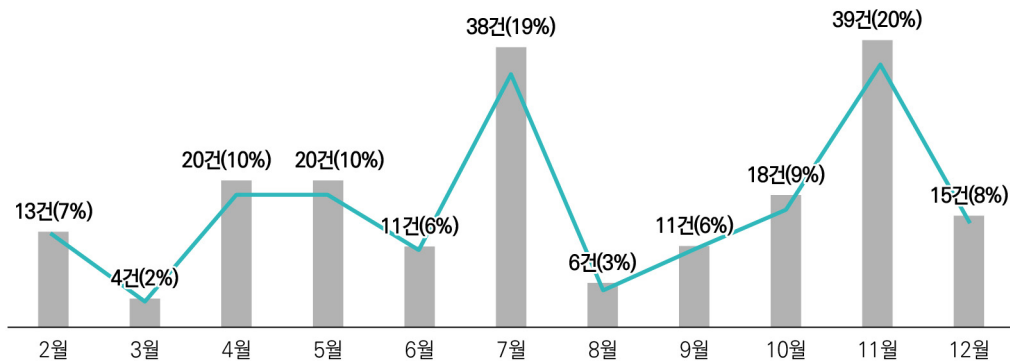
(가) 총괄

20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여, 1년만에 당초 목표였던 100건의 2배에 가까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구 분	승인합계	(비율)	임시허가	실증특례	적극행정
계	195	(100%)	21(11%)	158(81%)	16(8%)
ICT융합	40	(21%)	16	20	4
산업융합	39	(20%)	5	22	12
금융혁신	77	(39%)	0	77	0
지역혁신	39	(20%)	0	39	0

월별로는 매월 10~20건 규모로 신규과제를 승인하였으며, 7월과 11월에는 지역특구 과제 승인으로 승인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월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현황



규제 신속확인

□ 규제 신속확인*으로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하였다.

*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담당부처는 30일 이내 회신,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 신속확인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과제 승인건수로 세지 않음

※ 규제 신속확인 사례

- (K-Beauty 포탈 서비스)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국내 병원의 미용 광고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의료법상 규제 없음을 확인('19.8.29)

(나) 분야별 승인현황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현황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현황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195건(100%)	40건 (21%)	39건 (20%)	77건 (39%)	39건 (20%)

분야별로 고르게 승인이 이뤄지고 있으며, 금융혁신(39%), ICT융합(21%), 산업융합·지역혁신(20%) 순으로 승인 건수가 많았다. 지역혁신을 제외한 분야들은 1~2 개월마다 규제특례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였다.

①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차에 걸쳐 40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1차(2.14일)	2차(3.6일)	3차(5.9일)	4차(7.11일)	5차(8.21일)	6차(9.26일)	7차(11.27일)
40건	4건	4건	3건	4건	6건	11건	8건

②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는 6차에 걸쳐 3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1차(2.11일)	2차(2.27일)	3차(4.29일)	4차(7.10일)	5차(10.1일)	6차(12.18일)
39건	4건	5건	11건	6건	7건	6건

③ 금융혁신

금융위원회는 10차에 걸쳐 77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1차(4.17일)	2차(5.2일)	3차(5.15일)	4차(6.12일)	5차(6.26일)
	9건	9건	8건	6건	5건
77건	6차(7.24일)	7차(10.2일)	8차(11.6일)	9차(11.20일)	10차(12.18일)
	5건	11건	7건	8건	9건

④ 지역혁신

중소기업벤처부는 2차에 걸쳐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39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1차(7.23일)	2차(11.12일)
39건	7개 시도, 23건	7개 시도, 16건

(다) 유형별 승인현황

유형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현황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158건 (81%)	21건 (11%)	16건 (8%)

유형별로는 실증특례(81%), 임시허가(11%), 적극행정(8%) 순으로 과제가 많이 승인되었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도 16건이나 되는 등 규제 샌드박스 신청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적극행정 주요사례

<p>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 (적극행정, 2.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약사법 해석에 따라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 금지 → (개선) 식약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 허용 • (성과) '19년 임상시험 모집 수행 건수 총 100건, 국내 5개 대형병원 임상시험 중개
<p>모바일 안구 굴절검사 서비스 (적극행정, 1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 (개선) 자신 또는 자녀의 검사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서비스 허용 • (기대효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기초적 안구굴절 이상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의 안(眼)질환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p>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적극행정, 1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영수증 발급형태를 '종이영수증' 발급 없이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불명확 → (개선)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기대효과) '18년 기준 신용(체크)카드 종이영수증 발급건수는 128.9억건(발급비용 1,031억원)으로 종이 매출전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라) 기업규모별 승인현황

기업규모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현황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대형금융기관		
50건 (26%)	22건 (11%)	137건 (70%)	8건 (4%)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규제 샌드박스가 매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마) 기술별 승인현황

기술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현황

App 기반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VR	AI
115건 (59%)	23건 (12%)	19건 (10%)	14건 (7%)	10건 (5%)	5건 (3%)

승인과제의 약 60%가 App 기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였다. IoT·빅데이터·블록체인·AI 등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화 시도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신기술 활용 주요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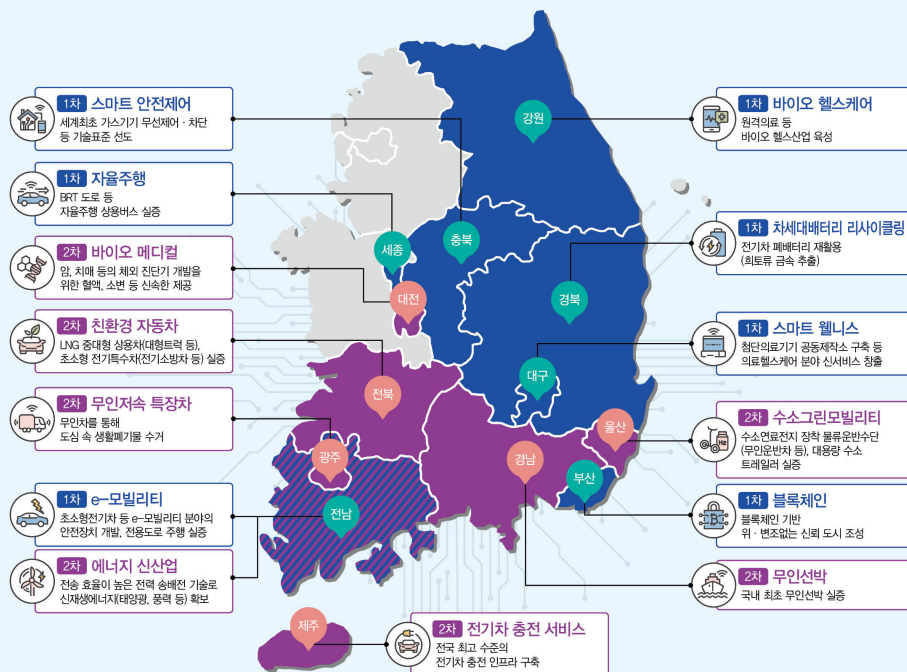
<p>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2.11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되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 불가 → (개선) 일반 220V 전기콘센트에 IoT기반 스마트 충전 콘센트를 설치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제품 허용 • (기대효과) 전기차 충전 편의성 증진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료 절감 기대(10년간 이용시 63.5만원 절감)
<p>이동형 VR트럭 (실증특례, 3.6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VR트럭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성 기준 등 부재 → (개선) 기존 트럭의 구조를 변경하여 VR 모션 시뮬레이터 등을 설치해 VR 수요지역(지자체·학교·축제 등)에 찾아가 체험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허용 • (성과) 지자체·학교·축제 등에서 활발히 서비스 제공 중
<p>블록체인 기반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실증특례, 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자본시장법상 증권대차의 중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사업 영위 가능 → (개선) 금융투자업 인가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개인간 주식대차 플랫폼 서비스 허용 • (성과) '19.8.5일부터 서비스 제공 중
<p>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임시허가, 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외에 원격 감시·제어 기능이 추가된 차단기의 기준 부재 → (개선)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 차단기에 IoT 기술을 결합하여,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복구하는 기술 허용 • (성과)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유지보수 비용 감소
<p>AI 로봇텔러에 의한 보험판매 (실증특례, 5.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등으로 한정 → (개선) AI를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포함하여 AI를 통한 보험모집 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 • (기대효과)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p>통신료 납부정보 활용 신용평가서비스 (실증특례, 5.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통신등급을 생성, 제공하는 것은 신용조회 회사만이 영위가능 → (개선) 신용조회업자가 아니더라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통신등급을 산출·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효과)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
<p>빅데이터 활용 부동산 시세평가 (실증특례, 6.12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업무시 아파트 시세는 시행세칙에서 정한 4가지 방법만 적용받도록 규정 → (개선)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의 시세정보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파트 시세 산정 허용 • (기대효과)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으로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 제고
<p>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실증특례, 1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에서 드론 관련 비행·촬영 규제 존재 → (개선)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AR·AI 기술이 접목된 드론을 활용하여 굴착 공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효과) 도시가스 순회점검 역량 제고를 통해 사고위험 예방 등 안전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차량 중심 순회점검의 사각지대 해소
<p>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 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로에서의 통행 제한 → (개선) 주행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자율주행 실증 허용 • (기대효과)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 확보 및 규제 개선을 통해 물류 로봇 시장 성장에 기여
<p>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실증특례, 12.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한정면허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율주행차의 승객 운송 서비스 제공 불가 → (개선) 100% 전기로 구동하는 4단계(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셔틀 버스를 이용하여 대구 알파시티(수성구) 내에서 서비스 제공 허용 • (기대효과) 안전성 확보, 규제 개선 등을 통한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융합 서비스 모델 창출

(바) 지역혁신 관련 승인현황

2차례에 걸쳐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였다. 1차에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이 이전을 완료('20.1월)하는 등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성과

- (개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및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한 구역
 - 개별기업이 신청하는 타분야(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 (현황)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 선정
 - 2차례에 걸쳐 14개 지역특구, 39건의 특례사업 승인
 - (성과)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 팬텀시(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한국지사 설립 및 세종시-중국 청도시간 투자 MOU 체결 추진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혁신 견인
- * (기대효과) 22년까지 총매출 2조 6천억원, 고용 5,700명, 기업유치 540개사 추정



(2) 시장출시 성과

(가) 총괄

전체 195건의 과제 중 57개 과제가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하였다. ('19.12월 기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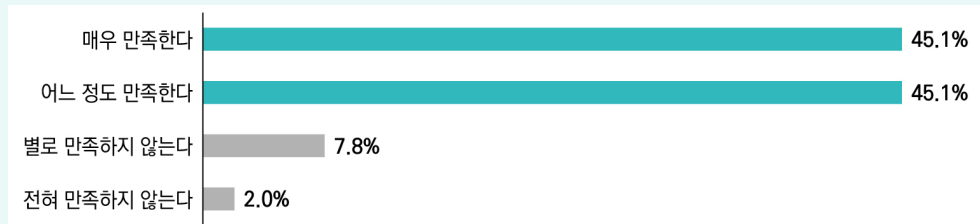
주관부처별 시장출시 과제

합 계	금융위(혁신금융)	과기부(ICT융합)	산업부(산업융합)	중기부(지역특구)
57 (100%)	27건 (47%)	16건 (28%)	14건 (2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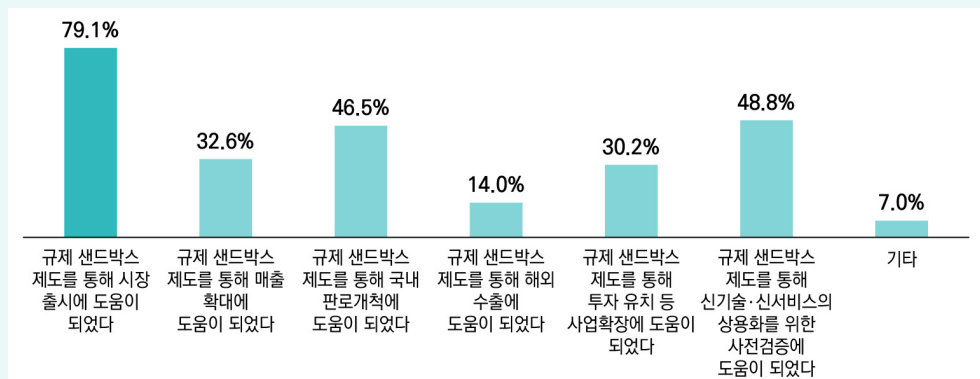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심층인터뷰('19.11월)에서는 승인기업의 90.2%가 제도에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출시를 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19.11.14.~21)

①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② 승인기업이 도움을 받은 부분



③ 승인기업 심층인터뷰

- 식품위생법상 커피에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 규제개선을 요구했으나 불발.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결과, 4개월 만에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고, 해외수출도 늘어나고 있음 (**라떼아트 3D 프린터**)
-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 상품만 취급 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혀, 지난 3년간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완료하고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었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출시가 가능해짐 (**원스톱 대출 마켓플레이스**)

(나) 매출 증가

시장에 출시된 과제들은 출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및 매출 증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과제는 예산절감과 업무효율 향상의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매출증가 주요사례

<p>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2.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용도지역 제한 등으로 인해 도심내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에 한계 → (개선) 용도지역 제한에 대한 특례를 적용, 수소 충전 인프라를 도심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 계동, 탄천, 양재에 수소 충전소 구축·운영 허용 • (성과) 국회 충전소 개소(9.10) 이후, 월평균 이용자 수 34%, 매출 41% 증가 ('19.12월 2,154대 이용)
<p>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2.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동식 휠체어에 부착하는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 구분되어 허가가 필요하나, 관련 기준규격 부재 → (개선) 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성과) 장애인고용공단에 310대 납품완료(매출 약 10억 발생),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 수출 관련 협의 중
<p>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2.14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해석상 연계정보(CI)의 일괄변환을 금지 → (개선) 행정·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 메시지, 알림톡 등)로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 • (성과) 15개 기관 39종 고지서가 모바일로 전환(약 2천만건, 79억원 절감)

(다) 투자 유치

특례 승인 이후 21개 기업이 약2,500억원 신규투자를 유치하였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상승과 승인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투자유치 주요사례

- 경북 규제자유특구 차세대 배터리(1천억원), 공유주방(160억원), 금융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100억원),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83억원),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14억원), 전기차 충전콘센트(10억원) 등

(라) 해외 진출

20여개 기업은 국내 시장 테스트를 거쳐 해외시장까지 진출하였으며, 다수 기업이 해외 진출을 논의중에 있어 해외 진출 기업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진출 주요사례

<p>VR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은 일반 가정용 게임기구에 대한 기준으로 VR모션 시뮬레이터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 (개선)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해 제한된 범위 하에서 전자파 적합성 평가 기준적용을 유예 • (성과) 중국 베이징(11대)·청도(3대), 필리핀(20대)에 수출
<p>디지털 배달용 오토바이 광고 (실증특례, 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교통수단에 전기사용, 발광방식의 조명을 이용하는 광고물 금지 → (개선) 배달용 오토바이의 배달상자 외부에 디지털 패널을 설치하여 배달업체와 배달상품(음식 등) 등을 광고하는 서비스 허용 • (성과) 55개국 특허출원, '20년 CES 전시회 참가

(3) 규제 샌드박스 역할

(가) 갈등과제의 돌파구 마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 부재 또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들에 대한 실험의 장을 제공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돌파구로 작용하였다.

갈등해결 주요사례

<p>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2.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의료법상 의료인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어,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한 측정 금지로 제품개발후 4년간 시장출시 불가 → (개선)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 데이터를 손목 시계형 기기로 수시 측정하여 병원 서버에 저장하였다가 대면 진찰시 활용 및 이상 징후 발견시 내원 안내 등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허용 • (기대효과) 적된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 보다 정확한 맞춤형 진단 가능, 83억원 투자 유치
<p>DTC 유전체 분석 (실증특례, 2.11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은 웰니스 12가지로 서비스 제한 → (개선)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허용 • (기대효과) 질병예측·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질병 발병을 줄임으로써 국민건강 증진 및 치료비 감소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나) 신산업의 실험장 제공

① (공유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및 업역간 갈등 등으로 막혀있던 신산업들의 실험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시장수요는 높으나 규제 등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과제가 9건 승인되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유경제 주요사례

<p>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청년창업매장 (실증특례, 4.29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식품위생법상 동일 장소에서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불가 → (개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 시간에 유휴공간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야간 창업 매장을 운영 • (성과) 1차 지정 2개소(서울, 안성) 기준 월평균 매출 약 1,500만원 달성, 총 14명 일자리 창출
<p>공유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7.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 → (개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통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허용 • (성과) '19.11~12월 기준 이용자수 1.1만명, 이용건수 1.7만건
<p>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7.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식품위생법상 동일 장소에서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및 B2B 판매불가 → (개선)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제품의 B2B 유통·판매 허용 • (성과) 공유주방 영업신고 35건, 창업비용 9.9억원 이상 절감
<p>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7.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택시의 합승 금지 → (개선)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허용 • (성과) 서비스 개시 4개월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 성장
<p>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11.2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 → (개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정한 범위의 공유숙박 서비스 허용 • (기대효과) 숙박 공유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하철역 근거 관광·외식업의 동반 활성화 기대

② (핀테크)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견인하였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출시되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주요사례

<p>카드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서비스 (실증특례, 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카드사는 신용조회업 허가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신용조회업 영위 불가능 → (개선) 카드사가 가맹점 정보를 활용하여 영세·소규모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 컨설팅 제공 가능 • (성과) '19.10.1일 서비스 출시
<p>On-Off 해외 여행자 보험 (실증특례, 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험가입시마다 보험상품 설명 및 확인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함 → (개선) 최초 보험가입시에만 설명을 듣고 이후 해외여행시 On/Off 방식으로 보험가입·해지하는 서비스 허용 • (성과) 4개월간 2만건 보험 신규 체결, 실적 전년대비 2배 증가
<p>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실증특례, 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불가 → (개선) 가맹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금 없이도 카드로 경조사비 등 송금 가능 • (성과) 출시 6주만에 이용건수 1.6만건, 누적 송금액 10억 달성
<p>대출비교 플랫폼 (실증특례, 5.2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개선) 1사 전속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앱을 통해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비교하고, 원하는 상품 신청하는 서비스 허용 • (성과) 출시 이후 대출신청 사용자 3천명 이상, 총 대출실행금액 10억원 이상, 평균 이자비용 11만 원 절감

(다)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 시장을 신규 창출하였다. 금융·통신 융합,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생활편의 증진 주요사례

<p>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 4.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은행법상 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 불가 → (개선) 은행주도로 금융·이동통신 결합형 알뜰폰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허용 • (성과) 서비스 출시 1개월만에 가입자 1.1만명 달성
<p>Drive-Thru 환전 인출 (실증특례, 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입금·지급·외국환)는 제3자에게 위탁 불가 → (개선) Drive-Thru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환전 및 현금인출 허용 • (기대효과) 환전시 소비자 편의성 제고
<p>라떼아트 3D프린터 (임시허가, 7.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식용색소는 커피에 활용할 수 없어 커피에 컬러 이미지를 출력하는 라떼아트 3D 프린터의 시장출시 불가 → (개선) 식용색소를 사용하여 커피 위에 컬러 라떼아트 프린팅 허용 • (성과) 국내 30대 판매완료, 대만, 칠레 등에 수출
<p>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9.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 규정 부재 → (개선)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 (기대효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17년 운전면허증(카드) 분실 건수 : 100만건)
<p>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임시허가, 1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 승인 필요 → (개선) 'LG홈부루'를 활용하여 판촉·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허용 • (기대효과) 수제맥주 이용자의 선택권 제고 및 수입맥주 일부 대체 효과 기대, 맥주 산업 전반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규제개선 성과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부 규제는 개선 완료되었으며, 상당수 규제들은 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20년에는 규제 개선의 효과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 규제개선 완료과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개선을 완료하여, 승인기업 외의 모든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규제개선 완료과제(3개) 현황

과 제 명	규제 개선 내용	개정시점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도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9.3.18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	•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 사용전선으로 사용 가능토록 'LED 조명 시스템 KC 안전기준' 제정 * 업체에서 인증 신청, '20.1월 정식허가 예정	'19.7.30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실증특례)	•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VR시뮬레이터를 포함 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개정	'19.12.31

(나) 일부 규제개선 완료과제

14개 과제는 일부 법령 등을 개정하고 추가적 규제개선을 진행중에 있다. 특히, 9건의 과제가 법률개정을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준비중으로 곧 규제개선이 완료될 예정이다.

일부 규제개선 완료과제(14개) 현황

과 제 명	규제 개선 내용	개정시점
VR 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1건)	•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신청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권해석 *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전파법 개정 준비중	'19.5.27
On-Off 해외여행자보험 (실증특례, 2건)	• 최초 계약시 중요사항 설명한 경우 재계약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 계약시 청약의사 확인 생략하는 '보험업법' 개정 준비중	'19.10.2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 (실증특례, 1건)	• P2P업 등록사항, 투자한도 설정, 투자자 보호 등의 '온라인투자 연계금융법,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19.10.31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2건)	• 휠체어동력 보조장치 품목 신설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 보조장치 시험 검사기준 마련중	'19.11.20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실증특례, 7건)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도입, 신용조회회사 검업금지 폐지 등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20.1.9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실증특례, 1건)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마련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20.1.9

(다) 규제개선 추진과제

58개 과제는 연구용역 등 법령개정을 위한 준비작업 추진중에 있다.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과제가 6건, 입법예고 절차중인 과제가 2건 등으로 조만간 규제개선이 완료될 과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규제개선 추진과제(58개) 현황

구분	과제명(과제수)	규제개선내용
법률안 국회계류 (6)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3건)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발급 근거마련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실증특례, 1건)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휴식권 등 근거마련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국회 계류 중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실증특례, 2건)	•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근거 마련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법령·기준 정부안 마련중 (47)	라떼아트 3D 프린터 (임시허가, 1건)	• 식용색소 4종의 커피류 사용 허용 *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고시) 행정예고
	홈브루 (임시허가, 1건)	• 시설기준 요건 면제 대상에 시음행사 추가 *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기 스마트 AED (임시허가, 1건)	• 지식산업센터 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 확대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
	GPS 기반 애플미터기 (임시허가, 5건)	• 애플미터기 관련 기준 마련 * 자동차 검사시행요령 규정 개정 검토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3건)	• 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련 규제 완화 * 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통신사 무인기지사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 2건)	• 원격 감시, 제어 기능 관련 기준 마련 *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개정 검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 2건)	• 전기차 충전콘센트 관련 기준 마련 * 전력량계 기술기준 고시 개정 검토
	대출비교 플랫폼 (실증특례, 13건)	•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제 완화 * 대출모집인 모범기준 개정 검토
	VR 체험트럭/버스 (실증특례, 7건)	• VR트럭 관련 규정 마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
	SMS 출금 동의 (실증특례, 5건)	•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 * 전자금융법 시행령 개정 검토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 (실증특례, 2건)	• 예약제도 관련 규제 완화 * 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원격제어 누전차단기 (실증특례, 1건)	• 원격기능안전성 검증 시험항목 마련 * KS인증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검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실증특례, 2건)	•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관련 규제 완화 *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변경 검토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 1건)	• 주파수 관련 규제 개선 *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 검토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베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적극행정, 1건)	• 고효율 기자재 대상품목 확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규정 개정 검토	
연구용역진행중 (5)	공유주방 (실증특례, 4건)	• 공유주방 실태조사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실증특례, 1건)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안전성 연구용역

(5) 서비스 중단 과제

2개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다. 이처럼, 승인된 모든 과제가 성공할 수는 없으며, 규제 샌드박스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신기술·신산업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제도이므로 실증과정에서 사업성이 낮거나 안전 등의 문제로 자연스럽게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비스 중단 사례

전자저울 활용 스마트 이력 서비스 (적극행정, 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내용) 상품 계량 후 관련정보를 블루투스를 통해 전송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상품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는 시장출시를 제약하는 규제가 없음을 확인해 줌 • (중단사유) 기업 재무상황 악화로 폐업(5월)
스마트 면세품 인도서비스 (적극행정, 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내용) 면세품을 IoT를 이용한 스마트 카드를 통해 인도하는 서비스로 해당 서비스는 시장출시를 제약하는 규제가 없음을 확인해 줌 • (중단사유) 사업의 실효성·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추진 중단(11월)

2. 입법방식 유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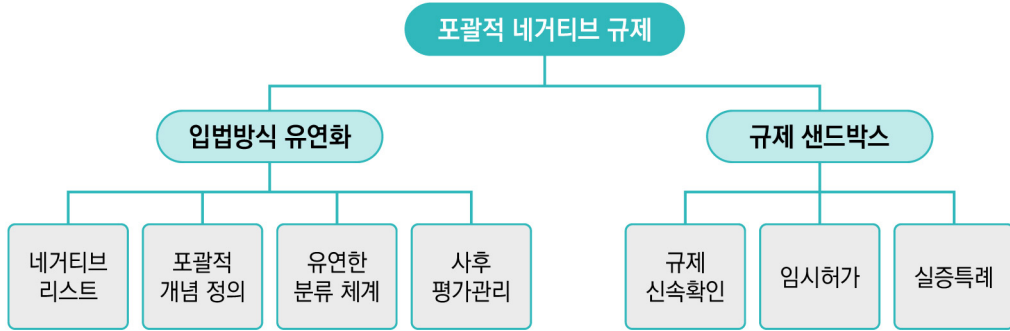


이회갑 서기관
Tel. 044-200-2912, ihk1207@opm.go.kr

가. 추진개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적인 규제 접근방법으로 그 핵심은 신산업 분야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의 전환이다. 국무조정실은 2017년 9월 7일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앞서 서술된 규제 샌드박스 외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개념도



국무조정실은 2018년 1·2차에 걸쳐 103건의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2019년에는 4월 18일 3차로 132건의 과제를 발표하였고, 9월 19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4차로 142건의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각각의 과제의 의의 및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나. 제3차 포괄적 네거티브(입법방식 유연화) 규제전환(19.4.18)

제3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이 공포(4.16)됨에 따라 범시행(7.17)에 앞서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산시키고 제도화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었다. 기존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쏠 부처가 법령조사 방식으로 최대한 발굴·검토했으며 이는 네거티브 전환을 각 분야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입법단계에서 법령심사기준과 규제심사기준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반영하여 법령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3차 전환방안이 1·2차 개선과 구별되는 특징은 보다 광범위하고 신속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추진한 데 있다. 1·2차 전환방안은 ①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② 현장건의(Bottom-Up) 방식 및 ③ 개별입법 방식을 적용했으며, 3차 전환방안은 ① 신산업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② Top - Down 방식의 법령조사를 실시하였으며, ③ 일괄입법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게 하도록 하였다.

(1) 시장 진입장벽 해소 : 55건

(가) 제품 (12건)

- ① 그간 유선 방식만 허용되었던 소방경보시설 설치가 무선방식의 화재알림설비로도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는 화재 발생 즉시 건물주의 휴대전화, 119 상황실 등에 직접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전국 모든 대학이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시장이 확대되도록 개선하였다.

(나) 사업자 (33건)

- ① 양봉·양잠 외 다양한 곤충 사육자가 농·축협 조합원으로 인정되어 농자재 구입 및 농·축산물 출하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미래 유망산업인 곤충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다양한 품목조합과 생산자 단체도 가축시장을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가축시장에 대한 접근성·선택권을 확대하였다.

(다) 산업·업종 (10건)

- ① 소재·부품의 범위가 신소재·신기술 개발에 따라 유연화되어 탄소섬유, 3D 프린터, 드론 등 신소재·부품 혁신이 촉진되도록 개선하였다.
- ② 새로운 형태의 파워카약·보트 등이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인정되어 수상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기업 영업부담 완화 : 31건

(가) 시설·장비 (13건)

- ① 먹는물 제조자가 자체 검사를 위해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였다.
- ② 농산물검정기관이 의무 구비하는 장비 중 오래된 불필요한 장비를 없애고 새로운 장비로 탄력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입지요건·제조방법 (11건)

- ①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서비스업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도입하여 제조·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② 맥주·과실주 등 제조시 오크칩 활용이 허용되어 새로운 주류 제조방법 개발이 촉진될 수 있게 하였다.

(다) 행정절차 (7건)

- ①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판매시 최대허용량 기준으로 허가하도록 허가기준을 개선하여 업체가 최대허용량보다 낮은 기기를 생산·판매할 경우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하였다.
- ② 자동차 매매·정비·폐차 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사항을 변경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등록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부담을 완화하였다.

(3) 정부지원 확대 및 인프라 확충 : 46건

(가) 정부지원 (19건)

- ① 청소년 유해업소, 미풍양속에 반하는 사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확대하였다.
- ② 새로운 유형의 목재제품 기술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인프라 (27건)

- ① 농림수산물펀드의 투자 대상 업종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펀드 투자가 활성화되고 유망 벤처기업 발굴·육성을 촉진하였다.
- ②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대폭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과 영화·음반 등 콘텐츠사업에 클라우드 펀딩·프로젝트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다각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 제4차 포괄적 네거티브(입법방식 유연화) 규제전환(19.9.19)

제4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입법방식 유연화 규제전환의 본격적인 확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산업 진흥,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지원·육성 등 자치법규의 특성을 반영한 과제가 도출되었다.

제4차 전환방안의 특징은 그동안의 중앙부처 대상 법령 전환과 비교하여 ① 신산업으로 한정되었던 대상 분야를 민생 분야까지 확대하고, ② 중앙부처 주도로 사례 발굴했던 방식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③ 하나의 사례가 하나의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대표 사례를 모델로 하여 他 지자체로 확산한다는 점이다.

또한 4차 전환은 지자체 차원에서 '유연한 입법방식'을 적용하여 규제 개선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①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기업·전문가, 지방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개선사례를 발굴했고 향후 지속적인 전환 작업을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 ② 상위 법령 네거티브 전환 후 연계 조치가 없었던 조례·규칙을 이번 작업에서 전환하여 실질적인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

(1) 지역 산업 기반 강화 : 46건

(가) 신산업 (15건)

- ① (부산) 금융관련 서비스업 개념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기반 금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신기술에 기반한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② (삼척)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개념을 확대하고 조례명도 개정하여 수소전기차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나) 기존 산업 (31건)

- ① (담양) 기존에 구조·자재 등을 중심으로 요건과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한옥의 개념을 기본적인 요소만 규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개량 한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② (제주) '한라봉 티', '알로에 즙'과 같이 가공식품도 로컬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로컬푸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하여 제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수산물 가공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서민 경제 활동 촉진 : 47건

(가) 농·어민 (19건)

- (김포) 농기계를 빌릴 수 있는 임차인 자격 중 주민등록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김포시에서 농경지를 경작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임대료를 허용토록 하였다.

(나) 중소기업·소상공인 (28건)

- (진천) 유망 중소기업 선정대상을 제조업과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사행산업 등 금지업종을 열거하고 그 외 모든 업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3) 주민 생활 편의 증진 : 49건

(가) 복지 서비스 (30건)

- (포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택시 등과 같은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위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도록 개선하였다.

(나) 공공 인프라 (19건)

- (의정부) 공원시설을 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점 위탁 관리하여 왔으나, 시설관리공단 독점규정을 삭제하고 수탁자 자격 기준을 제시하여 이에 부합할 경우 능력있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기관을 확대하였다.

라. 향후 추진계획

신산업은 선점 효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속도”가 핵심 요소이다. 입법방식 유연화는 추가적인 법령 개선 없이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한다. 국무조정실은 발표된 과제가 신속한 입법절차 이행을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 법령, 지자체 자치법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간 입법방식 유연화 방식이 적용되지 못했던 공공기관 규정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3.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김정훈 사무관
Tel. 044-200-2437, hardboiled@opm.go.kr

가. 개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17.9)」에서 최초로 제시되었다.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그간의 방식은 당면한 문제해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의 전개 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향후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2018년 11월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 선정하여 발표한 데 이어, 2019년 10월에는 두 번째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나.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1) 추진배경

드론은 시장성이 높고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분야이다. 특히 최근 실증 사업을 통해 재난현장 활용, 인공강우, 격오지 물품 배송 등 여러 신사업 모델이 창출되고 있어 향후 지능화·전동화·초연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이 접목된다면 더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

그 동안 정부는 드론의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왔다.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기준’이 항공법에 반영(99.2)된 이래로 지난 정부까지 드론 활용의 초석이 되는 기본 제도가 마련된 바 있다. 한편 2019년 4월에는 산재된 드론 법령을 종합하는 의미에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드론 정의 명문화, 특별 자유화 구역 마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범부처 합동으로 드론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하여 드론 개발·테스트, 사업화, 긴급 비행과 관련된 약 20건의 규제를 발굴·개선하였다. 이제는 이같이 당면 문제를 그때마다 해결하는 방식 대신 드론의 기술발전 전개양상을 예측하고 사전에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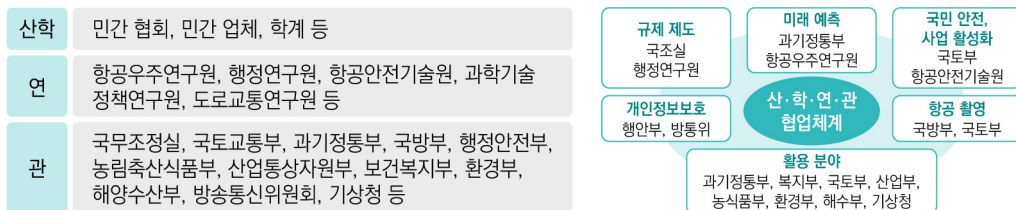
(2) 이번 로드맵의 특징

첫째로 드론 테러,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국민안전’ 이슈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활성화’ 양 쪽 모두를 고려하여 드론과 관련된 제도·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ICT·5G통신, 인공지능 등 신기술이 접목된 드론 신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개별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정비하고자 하였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드론 기술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쳐졌으나, 종합적인 규제효과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우리가 최초로 이를 통해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3) 로드맵 구축 과정

이번 로드맵을 위해 산·학·연·관 협업 연구 체계를 2018년 4월부터 마련하였다. 범부처 드론 해커톤(‘18.4) 및 기술·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체계(‘18.10)을 마련하여 로드맵 연구방향을 도출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2019년 4월 공청회 및 7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드론 업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하였다.

드론 협업체계 (총 30개 기관 참여)



정부 내에서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하고,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로드맵을 종합하는 형태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4) 드론 기술발전 단계 예측

이번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효과 로드맵은 드론의 3대 기술변수인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다섯 단계로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의 국제 드론 연구기관인 DII(Drone Industry Insight)의 발표자료를 참고하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①비행방식은 사람이 직접 조종하는 방식에서 자율 비행 방식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②수송능력은 소형 화물만 적재하는 현재 수준에서, 대형 화물을 운송하고 나아가 사람도 탑승하는 방식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③비행영역은 인구 희박지역에서 밀집지역으로, 밀집지역 중에서는 가시권에서 비가시권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보았다.

드론의 기술 발전 5단계 시나리오 (작성협조 : 항공우주연구원)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연도	현재 ~ 2020	2021 ~ 2024	2025 ~ 2027	2028 ~ 2030	2031 ~
비행 방식	조종 비행		자율 비행		
	원격 조종	부분 임무위임	임무위임	원격감독	완전자율
	직접 조종	고난도 임무만 사람이 직접 조종	사람 임무 부여 → 드론 자율비행	드론 자율비행, (필요시) 사람 개입	드론 자율비행
수송 능력	화물 적재		사람 탑승		
	화물 10kg 이하 5km 미만	화물 50kg 이하 5~50km	2인승(200kg) 5~50km	4인승(400kg) 50~500km	10인승(1톤 이상) 500km 이상
비행 영역	인구희박지역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비도심 지역	가시권 도심지역	비가시권 도심지역 관제국 이용		전파 비가시권 도심 전파음영 지역

(5) 규제 이슈 발굴

드론 발전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①인프라 영역 ②드론 활용 영역별로 예상가능한 규제이슈 총 35건을 발굴하였다.

먼저 인프라 영역에서, 국민안전을 보장하고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프라 영역의 규제 이슈 19건을 발굴하여 각 단계별로 배치하였다.

- 1단계 : **안정적인 드론 운용·관리 단계** (7건) → 드론 교통관리시스템(UTM) 구축, 안티드론 도입 제도 마련 등
- 2단계 : **본격적인 드론 활용 단계** (9건) → 도심 내 드론 비행운영기준 마련, 글로벌 인증 지원 체계 등
- 3단계 이후 : **드론의 고도화 단계** (3건) → 중대형 드론의 이착륙장 기준, 수소·전기 충전시설 기준 마련 등

다음으로 활용 영역에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 이슈 16건을 발굴하여 단계별로 배치하였다.

- 1단계 : **단순 임무수행 단계** (6건) → 시설점검, 교통경찰, 관측드론 등의 모니터링과 근거리 농약살포 등
- 2단계 : **고기능 임무수행 단계** (4건) → 센서 고도화, 장거리 비행을 통한 해양생태 모니터링, 인공 강우 등
- 3단계 이후 : **고난이도의 '배송·운송'** (6건) → 인구밀집지역 비행, 사람탑승 등을 통한 택배 드론, 드론 택시 등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전체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발전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후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비행방식 수송능력	원격 조종/화물 10kg 이하		부분 임무위임/화물 50kg 이하				자율비행인무위임 원격감독/인승(200g)~10인승(1톤)			
비행영역	인구희박지역 비가시권		인구밀집지역 가시권				인구밀집지역 비가시권			
규제이슈	국민안전	기체	안티 드론 도입 제도 마련	영상·위치 모니터링 강화						
		사람	드론 기체 등록기준 마련	소음·진동 관리 기준 마련						
		비행	드론 보험제도 개선	비행기록 및 조종자 관리 시스템 마련						
		사업활성화	조종자 자격기준 마련	사고 관리시스템 구축						
규제이슈	사업활성화		군집 비행 허가 기준 마련		도시 내 드론 운영기준 마련					
			국가중요시설 및 관제권 드론 비행허가기준 마련		UTM(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비행시험장 실증도시) (2단계: 전국 확대) (3단계: 해양 공간)					
			드론 공원 전국적 확대							
			드론 비행 정보시스템 구축	드론 운영 자유 구역 지정	중대형 이착륙장 기준 마련 및 설치		전기 / 수소 충전시설 기준 마련 및 설치			
사업모델	규제이슈	단순 임무수행	고기능 임무수행		배송·운송					
		수색·구조, 측량·드론, 시설 점검, 교통 경찰, 해양환경 감시, 기상 관측, 농업(병제·파종)	환경오염 감시, 산림 조사, 해양생태 모니터링, 통신용 (기차국, 중계국), 인공강우	배달·택배, 의료용품 운송, 레저 드론, 드론 택시 (4단계), 드론 앰블런스 (5단계)						
		(수색·구조, 해양환경 감시) 現 비행특례 적용대상을 공무수행 사업자까지 확대	(산림조사, 인공강우) 특례 적용 공공서비스 확대	(배달·택배) 배송 기준 마련						
규제이슈	규제이슈	(측량·드론, 시설점검, 교통경찰) 영상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	(해양생태 모니터링) 장거리 운행 주파수 발굴	(배달·택배) 옥상 헬리포트 이용 가능						
		(기상관측 정규망 편입) (1단계) 현장 실증 등 시험운영	(기상관측 정규망 편입) (2단계) 현장 실증 등 시험운영	(드론 택시 레저) 운송사업 규정마련 및 실용화						
		(시설 점검, 측량·드론) 항공촬영 절차 규제 완화	(통신용) 드론의 이동 중계국 허용	(의료용품 운송) 의약품 운송 기반 마련						
		(농업용) 보조금 지원 대상 농업기계에 드론 포함	(통신용) 기간 통신 사업자의 통신용 드론 개발 허용	(드론 앰블런스) 활용 근거 마련(~'30)						
		(드론 택시, 앰블런스) 사람 탑승 규정 마련	(드론 택시, 앰블런스) 사람 탑승 실용화							

(6)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상황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여 신산업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제3절

추진방식 혁신(how) : 정부 입증책임제



석선영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397, ssy1214@korea.kr

1. 개요

정부는 2019년 1월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 때 제기된 기업인의 혁신적인 건의를 수용하여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본격 시행하였다. 이는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의 주체를 바꾼 것이다. 그동안 정부 입증책임제도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부 시행(신설·강화규제 심사 등)되고 있었으나, 올해 전 부처 및 기존규제 정비에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2019년 2월 전 부처에 정부 입증책임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차관 또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민간전문가로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과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였고 규제개선을 건의한 기업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다.

2. 추진현황

각 부처에서 3월부터 6월말까지 4개월간 정부 입증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총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그동안 접수된 경제단체와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중에서 규제 소관 부처에서 '수용 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로 답변했던 건의과제를 규제입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불수용되었던 건의과제 1,248건 중 375건(30.0%)을 추가로 수용·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 등)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800여개 중 552개 행정규칙 상의 3,527건의 규제를 심의한 결과 642건(18.2%)을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1,200여개에 대한 행정규칙 정비는 2020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규제혁신의 새로운 추진방식인 정부 입증책임제를 본격 시행한 결과 1,000여건의 규제혁파 뿐 아니라 규제 심층검토와 소통강화 등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건의자 및 민간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재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건의자들은 토론을 통해 고충과 애로를 상세히 전달할 수 있었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제·개정된지 오래되어 낡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방치되어 오던 행정규칙 상의 규제들을 일제히 검토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3. 향후계획

정부 입증책임제 대상을 행정규칙에서 확대하여 2020년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및 자치법규까지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생활·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여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고, 국민·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4절

공직사회 혁신(who) : 적극행정 확산, 소극행정 혁파



문유진 서기관

집필자

Tel. 044-200-2431, yujin700@opm.go.kr

1. 개요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로 정의된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법령과 제도를 합목적으로 유연하게 해석해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필요가 대두되면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긴요해졌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공직사회 확산을 위한 불입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 “장관 책임 하에 적극행정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극행정은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9.2 국무회의)

2. 적극행정 추진방안 마련

가. 추진배경

정부는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인식 확산, 실천 유도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① 기관장의 솔선수범 및 선도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② 적극행정 지원 및 획기적인 보상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며, ③ 소극행정의 엄정한 제재를 통해 소극행태를 개선 및 예방하고,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나. 주요내용

적극행정 추진방안은 4대 추진방향 17개 핵심과제로 이루어졌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장이 적극행정을 책임지고 앞장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감도 평가’와 연계하여 매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의 적극행정 노력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지도’를 작성·공개하여 기관간 발전적인 경쟁을 통한 적극행정을 유도하도록 한다.

또한,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을 제정하여 적극행정 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적극행정이 정부의 중점정책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2) 감사원과 함께 면책과 적극행정 지원을 강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면책*을 인정하고, 지자체 정부합동감사시 「현장면책창구」를 운영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적극행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제* 도입(18.12)에 따라 일부부처에서 운영 중인 사전컨설팅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하고,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감사시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를 운영한다.

* 사전에 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에 따라 업무처리 한 경우 감사를 면책해주는 제도

** 현재 규제담당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경유) → 시·도 감사부서 → 중앙부처컨설팅 절차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등 소관부서의 업무처리가 지연될 경우에 이해관계자인 일반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한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구상권 행사 대상 결정시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판단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일하고도 개인이 책임지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도를 신설하여, 개별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결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법률전문가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 입증부담을 덜어주도록 한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한다.

(3)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가칭)소극행정 신문고」를 개설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토록 한다. 아울러, 조사결과 소극행정으로 판단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민원인의 각종 애로사항 건의, 제안, 인허가 회신 및 제도 안내시에 표준설명양식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경감한다.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악성·상습사례에 대해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엄정조치하도록 한다. 그밖에도 소극행정 징계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각 기관에서 징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4)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정책수요자인 국민·협회·단체 등이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을 추천하도록 하여, 국민과 현장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공직자를 포상한다. 인사혁신처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만들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의견쓰기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그밖에도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 행안부, 인사처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한다.

다. 후속조치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신속히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최초의 종합규정인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19.8)을 포함하여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임용령 등 총 22개의 법령, 지침을 정비하였다. 또한, 적극행정의 구심축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사전컨설팅 역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까지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한 체계를 완비하였다.

앞으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추진방안을 보완하여 국민과 기업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3.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붐업 추진

「적극행정 추진방안」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구축을 신속히 완료한 이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관별 성과공유 및 우수사례 발표 등 붐업을 추진하였다.

가. 차관회의 릴레이 발표(9.26~11.8)

(1) 추진배경 및 개요

매주 개최하는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부처 차관들이 직접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시책과 우수사례를 릴레이로 발표하도록 하였다.

릴레이 발표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및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각 기관이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우수사례를 차관들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벤치마킹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27개)과 차관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지만 모범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단위 기관 3개를 포함, 총 30개 기관이 발표에 참여하였으며, 7차(9.26~11.8)에 걸쳐 이루어졌다.

일자	발표 부처
(1차) 9.26	인사처,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2차) 10.4	해경청, 법무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3차) 10.11	관세청, 행안부, 국방부, 문체부
(4차) 10.17	복지부, 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5차) 10.24	해수부, 고용부, 국토부, 여가부
(6차) 11.1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7차) 11.8	서울시, 보훈처, 식약처, 권익위, 법제처

(2) 주요 내용

(가) 기관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릴레이 발표에서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선정, 발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적 법령해석 및 개정을 통해 현장과 규정의 괴리 극복

- (복지부) 긴급한 위기가구 지원확대가 필요한 상황 발생 → 복지부 지침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시·도의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면책을 권고하여 시급한 위기가구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 이후 규정을 개정
-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내 분유 제조업체가 투자·입주계약 체결했음에도 규정상 입주자격이 문제되어 무산 위기 →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조건부 허용 결정,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최대규모(1,700만불 상당) 외자 유치 지원
- (식약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유주방(1개 주방을 2명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을 도입 결정('19.7) → 창업비용 절감 등 효과, 고속도로 휴게소 35개소, 위국 30개소 등에 설치 예정
- (고용부) 로컬 JOB센터 사업은 기존의 사업예산 기준이 다양한 지역특성으로 인해 사업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획일적인 예산편성기준을 변경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는 샌드박스 유형을 신설, 사업 활성화(취업자 257% 증가 등)

②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

- (환경부) 의료폐기물의 처리시설 부족으로 폐기물이 적체 → 감염우려가 낮은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토록 지침을 마련하여 신속히 조치(법령상 위반여부를 사전 컨설팅으로 해소), 이후 법령 개정 추진
- (복지부) 필수약품(안과 녹내장 관련)의 국내공급 중단 가능성이 발생,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려했으나, 일부 기준이 미흡 →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면책을 인정받고 신속히 조치하여 필수약품 공급 유지
- (서울시) 민간의 유지책임이 있는 에스컬레이터에 안전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민간의 조치가 지연 → 서울시에서 우선 조치하고 이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전컨설팅으로 확인, 시민안전을 위해 선조치 시행

③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불편 해소

- (국토부) 창고업 등록기준(1,000㎡이상)으로 영세 물류기업은 창고업 등록이 어렵고 화재보험 가입도 어려움 → 창고업계, 보험회사와 특별약관을 도입, 종전에 가입이 불가능했던 18개 기업 가입 성과
- (해수부) 수산물 수출증명서의 형식이 다양하여 온라인발급 곤란, 수출업체 불편 → 온라인 수산물 수출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하여 수출업체 편의 증진
- (농식품부) 양파 가격 하락 → 백종원 유튜브 양파 레시피 등 새로운 홍보방식 시행, 또한 검역절차·조건 등 간소화하여 수출 지원
- (행안부)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국민 개방과정에서 보안책임문제가 대두되어 소극적 → 안전,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하여 상시개방 실시('19.9), 기존대비 4.5배 증가한 일평균 267명 방문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나) 기관별 적극행정 범업방안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공통으로 시행해야하는 대책 외에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시행중인 적극행정 범업 방안도 소개되었으며, 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기관장·부서장이 앞장

- (해수부) 실국별 적극행정 선도과제를 1개 이상 발굴, 매월 점검
- (환경부) 적극행정이 필요한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여 추진 관리
- (행안부) 실국 부서장이 직원과 함께 적극행정 도전과제 발굴, 성공/실패요인 분석
- (중기부, 문체부, 인사처 등) 북 콘서트 등 기관장 다짐대회, 기관장 서신 발송 등

② 적극행정 인센티브

- (해경청, 관세청 등) 매월 우수직원 선발, 쏠 직원들에게 시상식 생중계
- (문체부) 승진 심사시 승진자로 최우선 고려
- (산업부) 우수공무원 성과평가 최고등급 사전확정 및 포상금 지급
- (인사처, 해경청) 실패사례라도 의미있는 경우에는 포상

③ 적극행정을 위한 조직정비 등

- (환경부) 사전컨설팅 전담팀 설치로 제도 활용 독려 및 처리 신속화
- (행안부) 부서내 적극행정 상담센터 설치, 운영
- (관세청) 내부 감사를 징계중심에서 잘한 일을 발굴·공유하는 방식으로 변경
- (복지부) 국장급 2인으로 구성된 공감소통관 운영, 정책개선 및 개인고충 등 처리

④ 직원참여·소통 활성화 등

- (행안부) 격식, 업무경계, 결론이 없는 3無 아이스브레이킹 토론회
- (국토부) 부서별 적극행정 슬로건 제작 및 실천다짐으로 분위기 확산
- (인사처, 과기부 등) 5급 이하 직원으로 구성된 혁신 동아리 운영
- (국방부, 여가부, 환경부) 조직내 적극행정 문화 공유를 위한 연구모임 운영

5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적극행정 조치

-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개정, 기관별 추진방안 수립, 경영평가 반영
- (행안부) 주 지자체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지자체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 운영
-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별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 (금융위) 산하기관 적극행정 책임관지정, 음부즈만 및 금융회사 방문 등 현장소통반 운영
- (외교부) 재외공관 영상회의를 통해 전파, 국립외교원 적극행정 신규과목 편성

(다) 향후계획

국무조정실은 30개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모든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공유하여 우수한 제도는 각 기관이 20년 초 수립예정인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벤치마킹하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

나.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 공유대회(10.10)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중앙·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중앙·지방·공공기관의 적극행정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적극행정 추진전략, 우수기관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적극행정 확산의 품질과 속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2) 주요내용

먼저 공무원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적극행정을 테마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과 김경훈 구글코리아 전무의 발표시간을 가졌다. 대한상의 이경상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따라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일선 공무원과 중앙부처 간 협업, 융복합 신사업분야 종합대책, 일선 공무원의 전문성 여건 조성 등 기업이 원하는 개선사항 등을 설명했다. 구글코리아 김경훈 전무는 적극행정 업무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의 효과적인 권한위임과 역량강화기법 등을 발표했다.

이어 국조실, 행안부, 인사처에서는 기존과 차별화된 적극행정 추진방안* 및 추진상황을 소개하고 공무원과 기업의 활용방안도 제시했으며,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상세히 소개하고, 향후 감사원의 적극행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분산된 제도를 종합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 △사전컨설팅, 면책기준 완화 등 감사와 징계부담 완화 △적극행정은 파격적 인센티브, 소극행정은 엄정한 패널티 실시 등

또한,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실천사례를 소개했다.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 **(중소벤처기업부)** 안전헬체어를 개발했으나 인증문제 등으로 제품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위해 직접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하게 의료기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경기 성남시)** 성남시 면적의 대부분이 관제권에 포함되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 드론기업들이 비행테스트를 할 수 없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57회 릴레이 협의로 시험비행장 조성

우수기관별 발표에서 환경부는 △중앙부처 최초 사전컨설팅 도입 △적극행정 이어달리기를 통한 내부활성화 등을 소개하고, 전북도는 △전담부서인 대도약 기획단 운영 △자체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 등을 설명했다.

(3) 후속조치

정부는 행사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중앙부처, 지자체를 비롯한 전 공공기관에도 공유하였다. 특히, 우수기관의 추진방식은 다른 기관도 내년도 실행계획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수사례도 교육자료로 만들어 활용하도록 하였다.

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7)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직사회 안팎에 공유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678개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 등 치열한 예선을 통과한 12개 기관 사례가 본선에 진출하였다. 본선 심사에는 전문가 심사위원 외 대전·충청 지역 주민, 기업인, 대학생 등 100여 명의 국민

현장평가단이 참여해 국민 입장에서 적극성과 창의성, 난이도, 국민체감도, 확산가능성 등을 평가하였다. 3개 기관이 최우수상, 9개 기관이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용부) 근로시간 산정·분석에 두달 가량이 소요되어 기업에 부담이 되자 5분만에 처리가능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 신속·정확하게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600억원 가량의 미지급 임금 지불
- (경기 여주시) 초유(소가 새끼를 낳은 후 이틀간 생산되는 우유) 속 면역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키트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 양질의 초유를 통한 송아지의 설사·감염병 예방으로 농가소득 증대
- (울산항만공사) 울산 현대차공장의 '자동차 부두'가 협소하여 수출자동차가 적체되자, 울산항 인근 부두를 활용하도록 하여 다른 항만에 환적 시 발생하는 100억원 가량의 물류비용 절감

또한, 실패가 더 나은 성공과정으로 용인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아름다운 도전상'을 수여하였다. '아름다운 도전상'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여러 한계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사례 중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 사례를 선정하는 것으로 총 84건이 접수돼 최종 3건 선정됐다. 수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 (특허청) 특허권 창출 장려를 위해 특허출원에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제도를 공공부문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여 운영 중단
- (경기 용인시) 빈곤·학대 등에 노출된 아동대상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아동 합창단을 구성, 전국대회 공연을 목표로 하였으나 일부 아동의 특성(과잉행동) 등으로 인해 활동 중단
-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 핵심부품인 미분기(석탄 분쇄에 사용)를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어, 자립화를 위해 중소기업과의 협업 하에 기술 개발중이나 인력과 기술노하우 부족 등으로 난항

본선에서 최종 입상한 사례 담당자들은 공적심사를 거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인사혁신처장 표창 등을 수여받았다.

4. 민관협력 강화 : 중소기업중앙회-국무조정실 업무협약 체결(12.2)

(1) 추진배경 및 개요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무조정실은 중기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를 운영(19.10)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중기중앙회에 협업을 제안하였으며, 중기중앙회가 이를 수락하여 업무협약을 맺게 되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적극행정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 규제혁신의 현장성과를 높이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힘을 모아하기로 하였다.

(2) 주요내용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성장·발전 촉진 및 규제혁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필요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본부를 비롯하여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소통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를 받게 된다.

또한, 기업이 실제로 겪은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를 알리고 기업이 원하는 적극행정 제도개선, 현장의견도 접수하여 국조실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국조실은 제도 및 사례 안내와 함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등 요청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추천할 경우 이를 심의하여 우수한 사례에 대한 민간포상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필요시 국조실과 적극행정 관련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하였다.

5. 직접규제기관(금융위·공정위·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 발표(12.19)

(1) 추진배경 및 개요

기업애로 해결 등 현장에서 적극행정으로 인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대책 마련을 통해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이고자 금융위·공정위·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2.19)에 상정하였다.

위 3개 기관은 기관 고유의 감독·규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기업과 국민들의 편익 제고 및 경제활성화를 고려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TF를 구성, 관련 기업·협회와의 간담회 개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2) 주요내용

(가) 금융위

첫째,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부담 없이 비조치의견서*를 금융협회 등을 통해 익명으로 감독당국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한다.

*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

둘째, 핀테크 규제혁신 및 핀테크 생태계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법령정비 요청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또한, 핀테크 기업 릴레이 방문 등 현장을 찾아가 업계의 규제건의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의 업무·규모 등을 감안한 특화된 임시허가(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추진한다. 핀테크 혁신펀드('20~'23년간 3,000억원) 및 정책자금(3년간 3.35조원)을 조성하는 등 핀테크 생태계 스케일업도 추진한다.

* 해당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 출시 이후 사업의 혁신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규제당국에 규제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마지막으로, 소비자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가 카드 포인트를 편리하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보유 중인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현행)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각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가능
(개선) 조회된 카드포인트를 일괄하여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기능 추가

(나) 공정위

첫째, 소통채널을 다각화한다. 비공식적·간헐적으로 이루어지던 소통방식을 개선하여, 정기적·공식적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요구사항, 불만사항 등을 접수하고 적극 처리하도록 한다.

* (對국민) 공정위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 신설
(對기업) 반기별 1회 소통의 장 마련,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상시적 의견 청취

둘째, 다양한 기업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미한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범위반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도록 '경고' 범위를 확대*한다. 대기업 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관련하여서는 단순 실수 등에 따른 오기의 경우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한다. 또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도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 지자체에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를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 불공정거래행위 : (현행) 연간매출액 50억원 미만 → (개선) 연간매출액 75억원 미만 등

마지막으로, 사건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사건접수부터 조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 세부단계별로 처리기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장기사건 신속처리 방안'을 추진한다. 사건진행과정을 분기마다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 피조사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 현재는 사건 조사개시 3개월 후 최초 1회만 통지하므로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 피조사인은 사건진행과정을 알 수 없음

(다) 국세청

첫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본청·지방청·세무서별로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서 경제현장을 방문하여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또한, '영세납세지원단'을 통해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한다.

* 전통시장, 창업보육센터 등에 직접 출장하여 현장상담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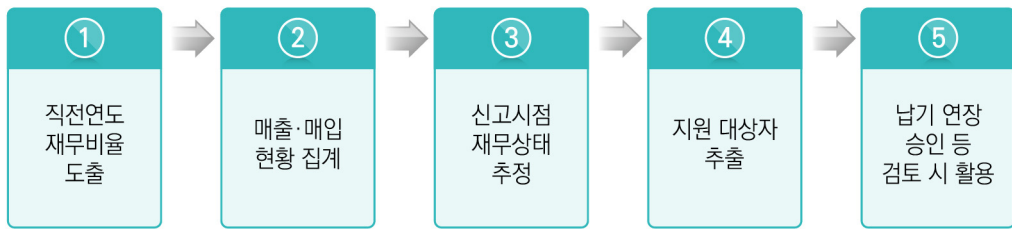
둘째,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한다. 순환조사 대상* 모범납세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호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조사부담이 적은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간편 조사가 아닌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사일수를 10% 단축한다.

* 연간 수입금액이 1,500억원 이상인 법인(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법인은 제외)

** 일반적인 조사보다 짧은 기간동안 세무자문 등 위주로 조사, 기간연장 및 일시보관 원칙적 금지

셋째,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매출급감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를 선제 발굴하고 세정차원에서 신속 지원한다. 또한,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실효성이 입증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과세 後 불복청구뿐 아니라, 과세 前 적부심사까지 확대한다.

빅데이터 분석 개요 (예시)



마지막으로, 혁신·일자리 창출기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던 세정 지원*을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핵심 산업분야 기업까지 확대한다. R&D 세액공제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사전심사제도도 신규로 도입한다.

* 납기연장, 징수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6. 적극행정 종합평가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신설하였다. 대상은 44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1개)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2019년이 적극행정을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본격 실행한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적극행정 추진 노력(50점)’과 ‘실질적 추진 성과(50점)’를 균형 있게 평가하였다. 기관장 주도로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창의성과 구체성, 이행실적의 우수성을 심도 있게 평가했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효과성과 국민 체감도 조사결과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낸 실질적인 성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이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나뉘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중 ‘규제혁신’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에 반영된다.

1.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이미경 사무관

집필자

Tel. 02-6050-3292, lmgjae@korea.kr

가. 추진배경 및 개요

추진단은 규제혁신에 있어 민과 관이 협력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 부회장, 연구원장과 관계부처 차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를 신설하였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례적(반기별)으로 개최되는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는 경제계와 정부간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업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나. 제1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제1차 간담회는 2019년 2월 25일에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조정실장이 ‘2019년도 규제혁신 방향 및 민관협업 계획’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을 공유하였으며, ‘규제혁신을 위한 민관협업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자리가 되었다.

(1) 일시·장소

- '19. 2. 25(월),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

(2) 참석자

- (정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교통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

- (민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등

(3) 주요 내용

-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민관협업계획
- 규제혁신 민관협업 추진방향 논의, 규제개선 건의 청취



다. 제2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제2차 간담회는 2019년 11월 11일에 대한상공회의소 컨퍼런스룸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조정실장의 '2019년도 규제혁신 추진현황'을 설명하여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여 주요 규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경제단체와 연구원에서는 정부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1) 일시·장소

- '19. 11. 11(월),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

(2) 참석자

- (정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

- (민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성장실장,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원장, SGI경제연구원 원장 등

(3) 주요 내용

- 2019년 규제혁신 추진현황
-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정부 규제정책에 대한 평가 및 규제개선 논의



2.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집필자

박도연 사무관
Tel. 02-6050-3293, doyeonpark@korea.kr
김윤희 사무관
Tel. 02-6050-3372, goongsuni@korea.kr
유만석 사무관
Tel. 02-6050-3364, you2309@korea.kr

가. 개요 및 추진실적

(1) 개요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013년 9월 출범 이래 기업과 소상공인, 일반국민의 경제활동에서 애로로 작용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창출,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과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관부처에서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규제혁신 추진성과 발표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에게 알려 규제개선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다.

(2) 현장건의 규제혁신 실적 및 사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출범 이후('13.9~'19.12) 총 9,259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 건의과제 중 6,588건을 처리 완료하고, 이 중 2,377건(36.1%)을 개선하였다.

(단위 : 건)

계(누적)	일반민원 (이첩)	처 리 결 과			
		소계	개선(기시행)	중장기검토	불수용
9,259	2,671	6,588	2,377 (1,095)	813	3,398
		100%	36.1% (16.8%)	12.3%	51.6%

분야별로는 영업 363건(15.3%), 국민불편 266건(11.2%), 위생안전 208건(8.8%), 환경 203건(8.5%), 기술인증 163건(6.9%), 공장입지 160건(6.7%), 자금·금융 152건(6.4%), 재정·세제 137건(5.8%), 인력 132건(5.6%), 판로조달 129건(5.4%) 등을 개선하였다.

(단위 : 건)

계	영업	국민 불편	위생 안전	환경	기술 인증	공장 입지	자금 금융	재정 세제	인력	판로 조달	창업	교육 의무	대중소 상생	기타
2,377	363	266	208	203	163	160	152	137	132	129	44	38	30	352

부처별로는 국토부가 327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부 273건, 산업부 203건, 고용부 179건, 식약처 183건, 중기부 125건, 금융위 125건, 복지부 111건 순으로 개선하였다.

(단위 : 건)

계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식약처	중기부	금융위	복지부	기타
2,377	327	273	203	179	183	125	125	111	851

2019년에는 총 1,380건의 규제 및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924건을 처리 완료하고, 이중 376건(40.7%)을 개선하였다.

(단위 : 건)

계	일반민원 (이첩)	처 리 결 과			
		소계	개선(기시행)	중장기검토	불수용
1,380	456	924	376 (118)	91	457
		100%	40.7% (12.7%)	9.8%	49.5%

(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 완화

- 현행** 산업단지에 지원시설은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여 진입 장벽으로 작용
- 개선** 법령에 명시된 제외 업종 외의 모든 업종이 원칙적으로 지원시설로 입주가능하도록 개선(네거티브 규제) 「산업집적법 시행령」개정 (산업부, '19.9월)
 - ☞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진입장벽이 제거되어 근로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일터 조성

(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

- 현행** 임상시험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임상시험도 식약처장의 승인* 및 임상시험기관의 임상시험 심사 위원회** 필요
 - *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심사(30일)
 - ** 임상시험의 윤리적 측면을 심사(최소 1개월 이상)
- 개선**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진단목적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임상시험*의 경우 식약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추진
 - * 식약처장의 임상시험 승인 기간(30일) 및 식약처 심사비용(연평균 7건 접수, 약 3억 5천만원) 절감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 '19.12월)
 - ☞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품의 신속한 개발 촉진 및 개발비용 부담 완화

(다) 신의료기술 보험 수가 조기 검토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결과가 고시된 이후에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할 수 있어 시장진입 애로

* 신의료기술 보험등재까지 소요기간 : 최대490일

개선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면서 관련 비용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의료기술 보험등재까지 소요기간 : 최대 390일(최대 100일 단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복지부, '19.07월)

☞ 신기술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 확대 및 국내 제품에 대한 신뢰 증가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

(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규정 개정

현행 건강기능식품 영업소 출입·검사를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영업신고 후 6개월 내 출입·검사 의무로 기업부담

개선 영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출입·검사 의무 규정 삭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식약처, '19.12월)

☞ 신규 창업자의 부담 감소와 그로 인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활동 활성화

(마)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재보증 대상 확대

현행 신용보증재단 중앙회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원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재보증*하고 있으나 사치·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어 있으며 주류도매업은 소주·맥주 등 일반 서민 제품을 대상으로 하여 사치·투기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보증 제한 대상으로 지정되어 사업자금 확보 애로

*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불건전업종(도박, 향락, 사치, 투기), 자금조달이 용이한 업종(금융) 등 재보증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분류되는 업종

개선 주류도매업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재보증 제한업종'에서 제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방법서」개정 (중기부, 19.9월)

☞ 주류도매업의 운전자금을 적시 공급하여 경기침체시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주류 도·소매업 등 전반적 주류산업의 활성화 기대

(바) 연체 30일 이하 채무자 대상 채무조정제도 마련

- 현행**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연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
- 개선** 연체 30일 이하인 채무자의 경우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도입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6개월간 긴급상환우예를 부여하고, 상환능력이 회복되어도 연체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상환곤란자에게는 10년간 분할상환 혜택을 추가로 부여
「신용회복지원협약」개정 (금융위, 19.9월)
- ☞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인 연체 30일 이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

(사)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소유 허용

-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밀접(직접)관련 업종이나 효율적 업무 수행에 기여시에만 출자 가능
- 개선**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AI, 빅데이터, IoT 등 신기술 기업,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일반, ICT 기술 제공기업 일반(S/W 개발 및 공급업 등)으로 확대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마련 (금융위, 19.9월)
- ☞ 금융회사도 ICT를 수용하거나 그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

(아) 초소형 전기자동차 튜닝 허용

- 현행**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국내 안전기준이 없어 튜닝 불가
- 개선** 국내 안전기준 시행일('19.7월) 전 초소형 전기자동차 기준적용 특례 시 적용된 외국의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튜닝 허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유권해석 (국토부, '19.2월)
- ☞ 전기차업계의 투자 여건 개선과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자) 초소형자동차 1회 충전주행거리 평가 규정 개선

-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초소형자동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80km/h 이하로 제한되어 고속도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 측정시험에서 고속도로 주행모드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주행시험의 비용 및 시간 측면에서 초소형자동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
- 개선** 1회 충전 주행거리 시험 시 고속도로 주행모드 시험항목을 폐지하고 도심주행모드만 시행하도록 개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개정 (환경부, '19, 8월)
- ☞ 초소형자동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초소형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에 기여

(차)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

- 현행** 통신3사 간 접속료 정산방식이 기존 무정산에서 트래픽기반 상호정산 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내 콘텐츠 기업의 망사용료 부담 급증,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 등 발생
- 개선**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통신3사 간 접속료가 관련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접속료 무정산 구간을 설정(1:1.8) 하고 중소통신사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접속요율을 인하(최대 30%)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개정 (과기부, '19.12월)
 - ☞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OTT, VR·AR 등 혁신적인 신규 플랫폼서비스를 부담 없이 출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카) 공공공사 자재단가에 시중물가 적용

- 현행** 시설자재 가격조사(시설공사 원가검토에 기초·반복 사용되는 공공공사 자재 품목에 대한 가격변동 조사)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에 적용률 및 가격변동률을 통하여 가격 결정
- 개선** 가격결정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적용률 및 가격변동률을 폐지하고,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 「시설자재 가격조사 제도개선안」 마련 (조달청, '19.12월)
 - ☞ 시공 안전관리 부실 방지 및 국가시설물의 총생애비용 절감과 시공사의 경영부담 완화

(타) 공장내 가스저장소의 신설 및 변경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외

- 현행** 공장내 가스저장소의 신설 및 변경시, 가스공급시설의 도시 인프라로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가스저장소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 의무화(6개월 소요)
- 개선** 공장 내 부대시설로서의 가스저장소 등 공공기능이 약한 '자가소비용 가스저장소'는 절차 간소화 및 행정부담 완화로 효율적인 기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됨(6개월 단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국토부, '19.8월)
 - ☞ 불필요한 이중규제 제거를 통해 시장 및 가격 변동성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 및 생산활동에 유연성을 부여

나. 지역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단은 규제혁신에 대한 지역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소통하고자 규제개혁위원장, 국무1차장 등이 직접 찾아가는 규제혁신 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충북, 대구, 충남, 대전, 인천, 제주, 경북, 경기, 서울, 울산, 광주 등 총 11개

시도 지역 현장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규제애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앞장섰다.

지역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지역의 기업인·주민이 참석하여 지역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를 현장에서 발언하고, 관계부처의 국·과장이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동시에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해 봄으로써 규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였다.

추진단은 지자체와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한편, 관계부처에는 과제해결을 독려하고 추진 시기를 앞당기는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였으며, 나아가 ‘Follow-up(후속조치) 간담회’를 통해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역의 기업과 주민의 규제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지자체의 규제개선 의지를 고무하였다.

지역 현장간담회는 현 정부 출범이후 총 16개 지역으로부터 152개의 과제를 건의받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69개 건의 개선을 이끌어내어 지역주민의 건의를 수용하였으며 수용률은 45.3%의 수용률을 달성했다.

현장간담회 건의 주요 개선사례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용처 확대	현재 병원 진료비로 한정되어 있는 임산부 지원범위를, 임산부·영유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 필요	진료비, 약제비 및 치료재료 등 임신부와 1세미만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요양기관(약국 포함)에서 결제 가능하도록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예정 ('20.6월)	복지부
국내체류 외국인 동반가족 관리체계 개선	가족을 동반하여 국내 체류하려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으며, 국내체류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외국인 동반가족발급대상 체류자격을 확대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 체류자격 자끼리도 동반가족 기재 허용	동반비자(F3) 등 27개 체류자격 외국인에 대해 가족과 동반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추가 확대 추진 「외국인 동반가족 관리지침 제정 운영」('20.6월)	법무부
소수력발전의 전기안전 관리대행 위탁 허용	발전설비 1개소 설치시 1명의 전기안전관리자 의무선임으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어 소형 수력발전설비 보급 확산에 난항으로 태양광 발전의 경우처럼 소(小)수력발전에 대해서도 전기안전관리를 대행업체에 위탁 허용	수력발전의 특성, ICT기술을 활용한 운영 자동화 등 수력안전관리기술의 발전과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여부 검토 「소수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20.6월)	산자부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소각열회수 시설의 폐기물소각 시설로 변경시, 인허가 간소화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소각시설로 변경시, 신규허가가 아닌 변경허가로 가능토록 간소화 필요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소각시설로 변경시,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받은 설치검사결과서로 대체 가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19.12월)	환경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규격(KS) 제정	고체산화물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품목(KS)에 포함되지 않아, 조속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규격(KS) 제정 필요	현재, 표준개발협력기관(에너지공단)에서 KS 제정안 마련 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 제정 및 인증절차 진행 예정 KS 제정 고시 예정('20.3월)	산자부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최대 용량 기준 허가제 도입	의료기기법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시험·검사하는 기관의 경우 제품 검사시 건별로 사용허가를 받고 있어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최대 허용량 기준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일정 용량 이하의 장치는 허가 면제	방사선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용량으로 허가하고 그 이하는 별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도록 법령 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9.12월)	원안위
하수관 매설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도로법상 주요지하매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공공하수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하수관의 공사방법,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주요지하매설물과 같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령개정 추진('20.12월)	환경부
농촌주택 개량사업 증빙자료 제출 개선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바, 농촌 노령자에게 증빙자료 요구는 부담이 되므로 이를 준공확인서 내지 건축물대장으로 대체하고 대출한도는 대출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건물감정평가금액 내 대출 가능토록 개선 필요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 가능하고, 대출한도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건물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칙」개정 완료('19.10월.)	농림부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효기간 기준 변경	이미 평가인증 받은 법인·단체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시 신규 평가인증 필요. 평가인증기간(6~8개월) 동안 조리원 인건비가 미지급됨으로 기존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인정하여 조리원 인건비 지급 필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으로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신규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기존 평가인증 결과 존용하여 지원하도록 지침 개정 완료('19.5월)	복지부
건강기능식품 신규 영업소 강제 출입·검사제도 폐지	건강기능식품 영업시설은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나, 관련 출입·검사규정을 통해 다시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 점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로 폐지 필요	현행 6월 이내에 1회 이상 강제 출입·검사 규정을 개정하여 의무 점검을 면제 추진토록 법령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9.12월)	식약처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다. 기업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단은 수요자 중심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사항을 최대한 직접 청취하기 위해 기업 현장 중심으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2019년은 보다 적극적인 기업 현장과의 소통 및 실질적인 규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산업 전반 업종별 12개 분야로 분류한 95개 협·단체와 기업 현장 소통 등을 통해 다양한 과제개선을 위한 의견 교류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다.

기업 현장소통을 통해 총 567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였고 이 중 161건을 개선하였으며 수용률은 45.6%로 높은 수용률을 보였다.

① 의약·바이오·화장품(5개)	② 금융·보험·핀테크(15개)
③ 건설·주택(7개)	④ 인터넷·정보통신·방송·광고(11개)
⑤ 중소·소상공인(9개)	⑥ 공장·입지·산단·테크노파크(7개)
⑦ 농림수산·해양(10개)	⑧ 안전·도로·자동차(9개)
⑨ 에너지·소재(6개)	⑩ 유통·물류·무역·통관(4개)
⑪ 사회·문화·복지(3개)	⑫ 기타(9개)

기업 현장소통은 기존의 공급자 입장에서의 규제혁신이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기업 애로에 대한 일선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해하는 기업현장 방문 활동은 내실있는 기업견의를 돕고 관계부처의 이해 괴리를 좁힘으로써 협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보다 긍정적인 규제개선을 이끌도록 기여하였다.

(가) 의약·바이오·화장품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지 않는 진단목적의 소프트웨어 개발 시 식약처장의 임상 시험계획 승인 면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개정으로 식약처 승인기간(30일) 단축되어 신속한 시장 진출이 가능 (19. 4월)	식약처
화장품 제조업체 소재지 변경 시 기존 포장재 사용 유예기간 허용	제품에 대한 문의창구(전화번호·홈페이지)에 변경 없이 업체 소재지만 변경된 경우, 새로운 포장재 제작 기간(약 2개월) 동안 기존 포장재 사용 허용	소재지 변경 시 기존 포장재 사용 유예기간 허용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포장재 폐기·제작 비용 등 업체 부담 해소 (19. 9월)	식약처

(나) 금융·보험·핀테크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연체 30일 이하 채무조정제도 마련	연체 30일 이하인 채무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 시행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개정으로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연체 30일) 내 신속 대응으로 채무조정 지원 효과 극대화 (19. 9월)	금융위
벤처기업육성 위한 벤처투자기관** 확대	벤처투자기관에 일정 요건*을 갖춘 농식품 전문투자조합(펀드)·액셀러레이터도 포함 * 요건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①자본금의 10% 이상이면서 ②5천만원 이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예정으로 농식품전문투자조합(펀드)·액셀러레이터가 투자한 기업도 다양한 정책지원 수혜 가능 (20. 6월)	중기부

(다) 건설·주택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점 개선	건설공사 중이라도 부분 완공·사용 가능한 부분은 해당 시점부터 하자담보 책임을 기산하도록 법령 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으로 식약처 승인기간(30일) 단축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합리적 적용으로 하자담보 비용 등 부담 완화 ('20. 6월)	행안부
건설업종 추가 등록 시 적용되는 자본금 특례의 소급 적용	자본금 특례*를 제도 시행 전('10. 2.) 건설업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 *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특례 제도의 역차별 해소 및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19. 12월)	국토부

(라) 인터넷·정보통신·방송·광고

과제명	건의내용	처리결과	소관부처
안테나 교정업무 중복 성능검사 해소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사용하는 측정설비는 국내·외 기관에서 발행한 교정성적서 제출시 성능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으로안테나 성능(교정)검사를 이중으로 받아야 함에 따른 부담 해소 ('19. 12월)	과기부
온라인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 폐지	법적 근거 없는 PC 온라인게임의 성인 월 결제한도 50만원 폐지(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월 결제한도 7만원은 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내용 정보기술서」개정으로 국내 게임업계의 투자 선순환구조 마련 ('19. 6월)	문체부

이외에도 추진단은 전국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보유한 대한상공회의소(70여개 지역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산업단지공단·대한건설협회 및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현장소통을 통해 다양한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있으며, 현장건의 규제혁신 신고전화(☎02-6050-3366)를 운영하여 기업과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주요 개선사례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3.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파



육성훈 사무관
Tel. 044-200-2666, ryuk456@korea.kr

가.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정부는 기업현장 간담회 등 적극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산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 총 74건을 발굴하였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69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였다.(12건은 규제준치 인정)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처리결과(비율, 건수)

총계	수용	대안마련	기조치	규제준치*
100%(74건)	37.8%(28건)	47.2%(35건)	8.1%(6건)	6.7%(5건)

* ①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생산시설 규모제한 완화, ②건강기능식품 기능성과 일반식품 유용성 표시 제도 통합 등

특히, 신산업 현장의 개선 목소리가 높은 친환경차, 드론 분야를 핵심테마로 선정하여 현장과제를 집중 발굴·개선했다. 친환경차의 경우, 2018년 8월 수소차·전기차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미래자동차)에 새롭게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개선이 시급한 현장과제를 선제적으로 집중 발굴한 후 정부(국조실·국토부·산업부·환경부)와 수소융합얼라이언스⁴⁾ 추진단 등 관련 업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 단계에서 풀어야 할 과제를 중점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15건의 과제를 해소했다.

이러한 규제개선 효과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즉시 해당 부처별로 각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이행토록 조치하고 있다.

나. 주요 규제혁파 사례

(1) 친환경차(수소차)

(가) 복합 형태의 수소충전소(마더스테이션)의 시설간 이격거리 완화

최근 수소 충전과 제조·공급이 함께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수소충전소에 기존 안전기준을 적용한 결과 기능별 각각의 시설들을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여 구축비용과 운영비용이 불필요하게 과다 소요되는 불합리를 유권해석을 통해 신속하게 시설간 이격거리를 완화하였다.

* 유권해석('19. 7월 조치완료)

(나)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 허용

수소충전소를 복층으로 설치하면 부지면적이 감소하여 구축비용(부지 매입비)이 절감되고 도심 내 기존 충전소 등과 용·복합 충전소 구축이 용이해 수소충전인프라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연구용역을 통해 복층이 가능한 시설을 구체화한다.

* 연구용역을 통해 복층 설치가 가능한 시설 구체화('20. 4월)

(다) 개발제한구역 내 제조식 수소충전소(자체 제조·충전)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저장식 수소충전소는 설치가 가능하나 제조식 수소충전소에 대한 설치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인정범위에 제조식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도록 명확한 유권해석을 하였다.

* 유권해석('19. 8월 조치완료)

4) 정부·지자체, 수소차·부품업체, 수소 제조·유통업체, 수소충전소 설치업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16.8월 발족)

(라)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

수소충전소는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만 구축이 가능하나, 제조 기능이 있는 수소충전소를 산업시설로 분류하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유권해석('19. 11월 조지완료)

(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에서 일반차량(승용차) 충전 허용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 부대시설로 설치된 수소충전소에서는 일반차량 충전이 불가하여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황, 일반인이 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 6월)

(2) 기타 신산업

(가) 터널 내 사고감지 설비 시설 확대

터널 내 유고

감지설비로 CCTV 외에 '레이더센서 기반 검지시스템'* 등 다양한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19.12월)

* 조명이 어둡거나 분진 등으로 CCTV를 통해 식별이 어려운 부분을 레이더센서(전자파)로 감지·분석, 해당 정보를 IoT 기능을 이용해 운전자와 도로관리자에게 전송

(나) 공동주택 홈 IoT 인증심사 시 현장 검증 부담 완화

공동주택 홈IoT 인증심사 시 IoT 서비스 제공사의 직접 5개 제조사 가전제품 준비 및 현장검증(평형별 1세대씩) 의무화를 현장검증 대신 전문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하였다.

* '17.7월 시행 후 현재('19.3.6.)까지 본인증 3건, 예비인증 4건

(다) VR시뮬레이터 탑재 종목 확대

유원시설에서 시뮬레이터와 VR 영화(기존에는 게임만 가능)가 결합된 서비스 가능하게 하여 도심에서 다채로운 VR 체험이 가능하여 VR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개선했다.

*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연령별 등급을 받은 VR 영화도 허용('20.3월)

(라) PC게임·모바일게임 등 멀티 플랫폼용 게임등급 중복심의 개선

동일한 게임물(VR 게임·일반게임)을 다양한 플랫폼(PC·비디오·모바일·아케이드 등)으로 출시할 경우 각 플랫폼별로 심의하였으나, 동일한 게임물을 어느 하나의 플랫폼으로 심의 받았을 경우 타 플랫폼별 게임도 심의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중복심의에 따른 낭비요인(비용·시간) 제거 및 다양한 플랫폼별 게임개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20.1월)

* 단, 아케이드 게임 등은 다른 게임과 등급분류 체계(전체, 청불) 및 등급분류 절차(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술심의 추가)가 달라 제외

(마) 신개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 심사방법 개선

“신개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제조소는 GMP 심사(최초·정기·변경·추가) 시 반드시 현장조사를 받아야 하였으나, 제조소 최초 심사시 현장조사를 통해 GMP 적합성 인정을 받았다면 차기(정기·변경·추가) 심사부터는 현장조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개정(’19.10월 조치완료)

(바)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 개선

AI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이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제한되어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는 소프트웨어와 장치에 대해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AI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기기도 하나의 의료기기로 인정하여 단 한 번만 인허가 절차만 진행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의료기기 분야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19.10월 조치완료)

제6절

민생불편·부담규제 혁신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1.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



김정아 서기관
Tel. 044-200-2917, wheat1224@opm.go.kr

가. 추진배경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중소기업은 규제를 주요한 경영 부담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다양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분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고, 이번에는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하여 규제로 인한 불편·부담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였다.

* 행정조사 혁신('17.12),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17.12, '18.12), 온라인·전자문서 혁신('18.5), 지역제한 규제혁신('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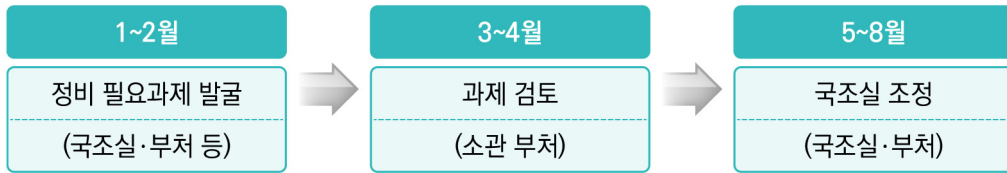
나. 의의 및 특징

금번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 영업 → 폐업 → 재창업'에 이르는 생애주기(life cycle) 전반에 걸쳐 각 단계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
- 2 규제가 기업규모에 대한 고려가 없어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불편·부담이 초래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만 한정하여 규제를 완화
- 3 현장애로 확인(Bottom-up)과 관련 검토(Top-down)를 병행. 특히, 기업 현장에서 직접 제기하는 불편·부담 요인을 발굴하여 현장 체감도 제고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정책과 병행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완화하는 규제혁신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와 함께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도모하였다.

이번 안건은 8개월여 걸쳐 300여개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300여건 중소기업·소상공인 건의 접수, 27회에 걸친 협회·단체 간담회·지역방문, 70여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다. 주요 정비사례

(1) 창업규제 혁신

(가) 물적요건 완화

창업시 필요한 사무실·장비·자본요건 완화 또는 공유 허용

① 건설기계 대여업 / 매매업 사무실 공유 허용(국토부)

기존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매매업(중고 알선·매매)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나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설비·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 필요

개선 복수의 건설기계 대여업자 / 매매업자간 사무실 공동사용 허용

효과 1개 업체당 연간 6백여만원 비용부담 완화 예상

②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 요건 완화(국토부)

기존 건축물을 개량·보수·보강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육안 검사를 위해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 필요

개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는 요건에서 제외

효과 1개 업체당 약 2백여만원의 비용부담 완화 예상

(나) 인적요건 완화 : 각종 경력·자격요건을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① 반영구화장 기술자격 확대(복지부)

기존 모든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가능하나, 반영구 화장 등은 미용관리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도 시술하고 있어 불법문제 발생

개선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자격·교육·준수 사항 등) 마련

효과 영세미용업의 반영구화장 합법화로 영업 여건 개선 및 수익창출 확대

② 근로자파견사업자 겸업제한 완화(고용부)

기존 근로자를 모집·고용후 타사업장에 파견 하는 영업을 하는 근로자파견 사업자는 식품접객업 전체(총 6개)에 대해 겸업이 금지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

개선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유흥접객영업이 아닌 업종은 겸업제한 완화

효과 근로자파견사업의 진입장벽 완화

(2) 영업단계 규제혁신

(가) 영업범위·판로 확대 :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품과 서비스 영업범위 확대 및 공공기관 조달에 중소기업의 참여 범위 확대

①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음료베이스) 제조방식 다양화(식약처)

기존 물에 타서 음료를 만들어 마시는 제품인 음료베이스는 분말, 과일원액 등의 형태는 가능하나 정제(분말을 원판형태로 압축) 형태는 불가하여 제품 다양화 제한

* 정제 형태는 의약품이라는 국민인식을 고려하여 제한하였으나, 해외에서는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가 일반화(현행 규정으로는 외국 정제 음료베이스 수입도 불가)

개선 정제 형태 음료베이스 제품 출시 허용

* 정제 형태를 물에 담갔을 때 기포를 발생하며 녹아 음료가 되는 제품 등 다양한 제품 출시 가능

효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음료베이스 제조업체(287개소)의 출시제품 형태 다양화로 영업환경 개선

②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 진단·처방 허용(농식품부)

기존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일정 시설 및 검사장비를 갖추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동물의 진단·치료·처방 등 진료행위가 가능하고 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는 시설 및 장비는 갖추지 않았더라도 신속한 동물 치료를 위해 진단·처방이 가능하나,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케어·자문, 메디컬 트레이닝 등만 가능하고 진단·치료·처방이 모두 불가 하여 신속한 동물치료가 어렵고 축산농장 수의사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개선 축산농장 상시고용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동물원·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진단* 및 처방 허용
* 수술·처치 등이 아닌 처방을 위한 진단만 가능

효과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의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동물원·수족관내 동물의 신속한 치료대응

(나) 영업방식 제한 완화 : 영업규모·시설·시간·장소에 대한 제한 완화 및 상호·광고 등 영업 관련 표시 방식 합리적으로 개선

① 주유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급유량 확대(소방청)

기존 산업부는 석유 이동판매를 5천리터까지 허용하고 주유소 주유차량도 5천리터 이상 으로 출시되고 있으나 소방청은 주유차량 적재를 3천리터까지만 허용하여 현장 혼란

개선 운용중인 주유차량(석유 이동저장탱크)이 5천리터까지 적재해도 화재·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 적재상한을 5천리터로 통일

효과 이동저장탱크 용량 확대로 중소기업 위주의 주유취급소* 영업불편 해소
* 주유취급소(15,058개소, '18.12월 기준) 중 휘발유·경유 주유기 3개 이하의 중소기업체가 96.2%로 대부분을 차지

② 전통시장내 식육점 외부진열대 판매 허용(식약처)

기존 전통시장내 채소, 분식 등 식품에 대해 상인회 자율(시장상인회 규약 등)로 외부 진열대 설치 및 판매가 가능하나, 식육점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가 허용되고 외부진열대 판매 불가

개선 위생관리 확보(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비가림 시설이 있는 장소)를 조건으로 전통시장내 식육점도 시장 상인회 자율에 따라 외부 진열대 판매 허용

효과 전통시장(1,450개)내 식육점 영업자의 판매 불편해소 및 판매 활성화(연매출 3%(328억) 증대 전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다) 영업부담 경감 : 신고·등록, 법정교육·자료보관 의무 등 행정부담이 완화 및 수수료·분담금·부담금 등 비용부담 완화

① 해상여객 운송사업자 사업서류 전자적 보관 허용(해수부)

- 기존** 해상에서 여객선 등을 이용하여 사람·물건을 운송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 동안 보관 의무
- 개선**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서류 외에 전자적으로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
- 효과**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문서 보관 부담 완화

② 해외건설 상황보고 간소화(국토부)

- 기존** 해외건설업자는 모든 해외사업의 시공상황, 준공보고, 수주활동, 계약체결결과, 실적 보고의 5개 사항(238개 보고항목)에 대해 최소 연7회 국토교통부에 상황보고 의무
- 개선** 시공상황, 준공보고의 주기를 완화하고, 단기공사의 경우 수주활동, 시공상황 보고를 면제
- 효과** 단기·소규모 해외건설업자의 행정부담 완화

(3) 폐업·재창업 단계 규제혁신

(가) 폐업절차 간소화 : 폐업시 필요한 서류·방문기관 간소화 및 신고기한 연장

① 폐업 신고시 허가·등록·신고증 제출의무 완화(공정위 등)

- 기존** 그동안 폐업신고시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첨부 의무를 계속 완화하였으나 방문판매업 등은 여전히 의무화되어 분실시 재발급 불편 초래
- 개선** 방문판매업·소독업·가축분뇨처리업 등 10개 업종의 폐업 신고시 허가증 등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로 대체
- 효과** 민원인의 편의 제고 및 행정력 낭비 감소

②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복지부 등)

- 기존** 안경업소 등은 폐업시 지자체 및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 필요
- 개선** 안경업소·치과기공소·유원시설업·주택임대사업 폐업시 지자체·세무서중 한 곳에서 일괄처리
- 효과** 민원인의 편의 제고 및 행정력 낭비 감소

(나) 재창업 제한 완화 : 영업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

① 영업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 완화(식약처 등)

기존 영업취소후 재허가 제한기간은 소비자 안전·피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은 유사 업종·위반사항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

개선 ① 직업소개사업 등은 유사업종 사례를 고려하여 5년에서 2년으로 완화 ②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의 경미한 취소사유는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 소비자 안전·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은 업종(일부 식품접객업 등)은 현행(3~5년) 유지

효과 결격사유 완화로 영업 손실·부담 경감 및 재창업 기회 확대

라. 향후 추진계획

이번에 개선하는 과제 외에도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민관합동규제개선 협의체,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생불편 규제혁신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 지역 민생규제 혁신



송윤상 서기관
Tel. 044-200-2917, songneg@mai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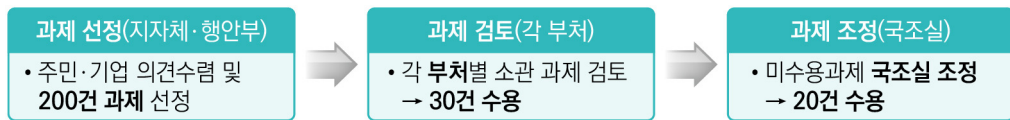
가. 추진배경

규제혁신은 국무조정실과 중앙부처가 창업·금융·데이터 등의 테마별로 각종 규제를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 뿐 아니라, 일반국민과 기업·지자체 등의 현장건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도 활용한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은 민생혁신 일환으로 '17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기업의 건의사항 개선(Bottom up)으로, '19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는 △지역개발 △생활불편해소 △영업부담 완화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어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 '17년은 낙후지역 재생 등 47건, '18년은 지역일자리 등 33건 개선

나. 의의 및 특징

주민·기업·지자체가 겪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개별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또한, 개별적으로 발굴된 과제라 하더라도 효과는 전국에 적용되도록 조치하였으며다.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가 규제를 발굴하면 규제 소관부처에서 개선 검토하고 국조실·행안부가 쟁점사항을 조정하는 중앙-지방 협업의 모범모델을 확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50건의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으며, △ 법률 10건 △ 시행령 11건 △ 시행규칙 9건 △ 행정규칙 9건 △ 법령해석 3건 △ 시스템 개선 등 8건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개발 촉진 (18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사업 기간 단축 (6건) 농산림지역 이용 확대 (5건) 지역특화발전 지원 등 (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발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 농공단지 조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 •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생활불편 해소 (1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교·공원 활용 확대 (3건) 여행·관광 편의 개선 (3건) 공동주택 편의 개선 등 (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공원에 도서관시설 설치 허용 • 내국인 대상 국내외여행업 신설 •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입지 요건 완화
영업부담 완화 (19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영업여건 개선 (4건) 중소기업 구인부담 완화 (3건) 영업불편 해소 등 (1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민박 형태 다양화 • 타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 • 폐콘크리트 공시체 재활용 허용

다. 주요 정비사례

(1) 지역개발 촉진

(가) 도시재개발 사업 건축심의회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회

기존 광주 서구청은 광천동 일대 노후지역의 재개발사업 추진. 주택법에 따른 주택개발 사업*은 건축심의회·교통영향평가 등을 동시에 받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개별법에 따라 건축위원회(건축법, 건축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각각 받아야 함에 따라 심의에만 2년 이상 소요

* 주택법(§18①)에서 건축심의회,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회, 도시관리계획 등 통합심의회 허용

개선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심의회는 반드시 순차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회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회로 사업기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 가능

(나)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

기존 전남 영광군은 '17년부터 묘량면 21만㎡ 부지에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 중. 단지 예정부지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속해 있으나 국가산단·일반산단 등과 달리 농공단지는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추진 차질

개선 지자체의 공영개발에 의한 농공단지 조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효과 묘량 농공단지 조성 장애요인 해소로 사업추진기간 1년 단축(6년→5년) 및 400여명 신규 일자리창출

(다)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기존 여수시는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앙동 여수엑스포장과 오동도 일대를 연결하는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 오동도와 여수엑스포장 일대는 임야·택지 등이 70%이며 직접 관광에 직접 활용되고 있음에도 관광진흥법령상 임야·택지는 비관광성 토지로 분류되고 비관광성 토지가 10% 초과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없어 추진 애로

개선 임야·농지·택지라도 실제 관광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비관광성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개선(임야·농지·공업용지, 택지 등 비관광성 토지 예시규정 삭제)

효과 관광특구 지정으로 여수 엑스포장·오동도 등 지역관광 자원 활용도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

(2) 생활불편 해소

(가) 폐교부지에 공익목적 시설물 설치 허용

- 기존** 경기도 용인시와 경기도 교육청은 공동으로 용인시 기흥중학교 폐교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건립을 추진중이나 폐교활용법상 지자체·교육청 공동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대부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 지연
- 개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교육청의 폐교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로 면제 및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허용
- 효과** 접근성이 우수한 폐교재산을 활용한 생활 SOC 보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나) 고령자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

- 기존** 경남 의령군 주민이 부모님과 중국여행을 준비하면서 지역 전염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사망이 포함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80세 이상인 고령의 부모님은 질병사망이 포함된 여행자 보험가입 불가
- 개선** 80세 초과 고령자도 여행지에서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질병사망 보험금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효과** 80세 이상 고령 해외 여행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불편 해소

(다) 임대사업 대상 오피스텔(준주택) 실제 거주 확인 방식 다양화

- 기존** 경기 의정부시 오피스텔(준주택)사업자는 세제혜택 등이 있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함에 따라 임대차 계약후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 지자체 제출 필요.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더라도 주소지 이전 없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제출을 꺼리는 임차인이 많아 계약시마다 불편 발생
- 개선** 주소이전 없이 임시거주가 많은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 임차인의 실제 주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공공요금 영수증* 등 다양하게 확대
- 효과** 임대차 계약 이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제출해야 하는 임차인의 불편 해소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사례 방지

(3) 영업부담 완화

(가)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지역범위 확대

- 기존** 전남 보성군의 어촌계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어업권 행사가 가능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 어촌계원 외에 어업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 어촌계에 주소지(통상 리 단위로 어촌계 구성)가 있는 경우로 한정됨에 따라 어업인 부족시 어업권 불법 임대 및 전대 사례 발생
- 개선**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 대한 어업권 행사 계약 요건 중 주소지에 관한 요건을 해당 어촌계 주소지(리 단위)에서 해당 자치단체 (시·군 단위)로 확대
- 효과** 인구감소·고령화 어촌계에 어업권 불법 행사를 예방하고 어촌계 인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

(나) 관할 고용센터 외에서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 기존** 경북에는 의성군·안동시를 담당하는 안동고용센터, 구미시를 담당하는 구미 노동센터 등이 운영 중. 경북 구미시·의성군 경계지역인 의성군 단밀면 농공 단지 소재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서를 발급시 인근 구미고용센터는 해당 관할이 아니어서 40km 이상 먼 안동 고용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
- 개선** 관할 고용센터 외에 인접 고용센터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EPS) 개선
- 효과** 외국인 근로자 구인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절감을 통해 농어촌 소재 기업의 인력수급 고충 해소 및 불편사항 해소

(다) 보조사업 대상자 은행계좌 신설요건 완화

- 기존** 경남 사천시 원예사업자는 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2개의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 동일인이 복수의 지자체 보조사업에 선정된 경우 보조사업마다 은행계좌 개설이 필요하나 단기간에 1개 이상 계좌 개설이 제한되어 사업포기 또는 가족명의로 사업신청하는 문제 발생
- 개선** 보조사업용 은행계좌 신설시 금융회사의 간편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 허용
- 효과** 보조사업 신청자의 불편 해소

라. 향후 추진계획

이번 규제개혁의 효과를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50건 중 법령 개정이 필요 없이 현행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해결 가능한 11건은 즉시 조치하고, 나머지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20년 내에 조기완료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년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 사업 관련 규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양정부의 규제법령 외에 불합리한 자치법규(조례·규칙) 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록



이영광 공익법무관
Tel. 044-200-2639, 2glory@korea.kr

1. 규제개혁신문고 개요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국민건의 창구이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3대분야 중 ‘민생불편’ 규제개혁을 위한 핵심 국민소통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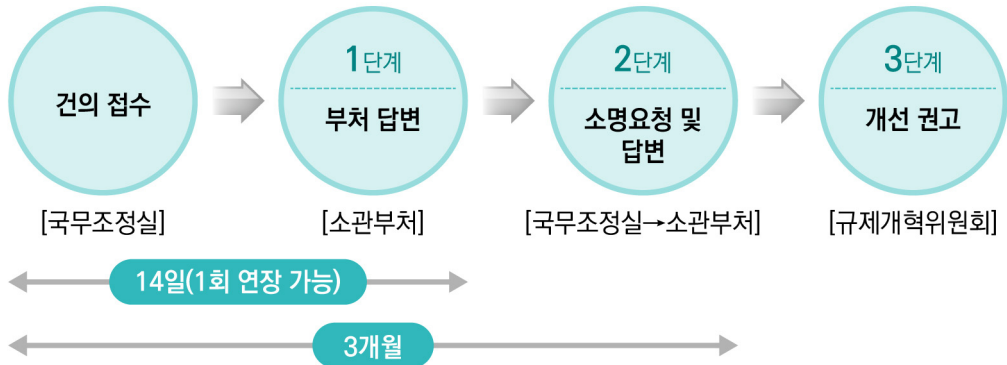
- 국민의 기존규제 폐지 또는 개선 요청
- 규제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제도
- 정부의 답변·소명의무(실명제)

국민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에서 손쉽게 규제개선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각 부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를 등을 통한 규제건의도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일괄 접수해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절차(3단계 검토과정)

규제개혁신문고 시스템의 핵심은 3단계 검토과정에 있다. ‘부처답변 → 소명 → 개선권고’ 3단계 검토과정을 통해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규제건의가 사장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규제개혁신문고 3단계 처리절차



1단계 소관부처는 규제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규제건의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책임자 실명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2단계 국무조정실은 답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부처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다.

3단계 규제개혁위원회는 소관부처가 규제존치로 소명한 건의에 대하여 타당성 및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을 권고한다.

소명제도 소명제도는 소관부처가 규제건의를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소명통보를 받은 소관부처는 심층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소명하여야 하며 규제존치가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사유를 소상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문재인 정부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강화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를 개편하여 국민참여형 규제혁신 제도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였다.

제 1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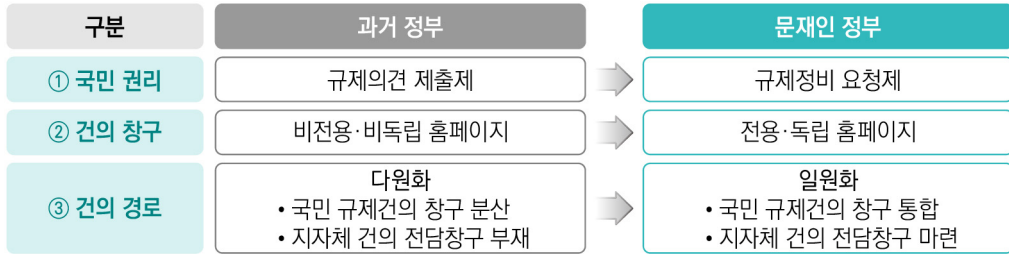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록



- ①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정비 요청제’를 도입하였다. 규제정비 요청에 대한 정부의 성실 답변·소명 의무를 법령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 기반을 조성하였다.
- ② 종전에는 규제정보포털의 일부로 운영되었으나, 규제개혁신문고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의 규제건의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 ③ 다원화된 국민 및 지자체 규제건의 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하여 규제건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③-① (국민 건의 → 규제개혁신문고) 중앙부처·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개선 국민건의 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하였다.(‘17~’19)

* 건의 창구 단계적 통합 : 중앙부처(‘17, 41개) → 광역단체(‘18, 17개) → 기초단체(‘19, 226개)

※ 건의 창구 일원화 예시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p>규제예로 신고센터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p> <p>신고접수 · 세종시청 규제개혁담당관(☎ 044-300-2833)</p> <p>신고방법 · 방문, 전화, 시 홈페이지 등</p> <p>신고대상 · 법령, 조례, 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행정규제 ·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 및 기업규제 예로 사항 · 각종 인허가 및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시 부담한 절차서류 요구 또는 조건 등의 부의</p> <p>국민 불만 규제, 세종특별자치시-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지방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l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지방기업 규제예로 신고센터(충기부 승인) 규제정보포털</p>	<p>규제개혁 신고센터 ☞ 연원 > 신고센터 > 규제개혁신고센터</p> <p>규제개혁이란? ·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행정규제 기본법) ·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지침, 부대조건 등)로 인하여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사례 · 법률의 과도한 제약을 불합용 초과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례 · 각종 인허가, 신고, 발급 업무 등 처리 시 제기되는 제도 불합 사례 · 법률상 불합요한 민원서류 요구 등 개선되어야 하는 사례 · 평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p> <p>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지방기업 규제예로 신고센터</p>

㉓-㉔ (지자체 건의 → 규제개혁신문고) 2020년 상반기에는 지자체의 다양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즉각적·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내에 지자체 건의 전달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 지자체 규제건의 전달창구 마련(시범)



4. 2019년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성과

가. 규제건의 처리현황

2014년 3월 규제개혁신문고 개설 이후 2019년 말 현재 총 19,959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처리하였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총 4,482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처리하였다.

2019년 한해 규제건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총 1,735건(중복건의 포함)의 규제건의를 접수·처리하였다.

2019년 규제건의 처리현황

규제건의	처리	전부 수용	일부 수용	대안 제시	기시행	불수용	중장기 검토
1,735	1,735	149	156	4	196	1,167	63

또한, 소관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건의 중 18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건의로 판단하여 소관부처에 소명요청을 함으로써 소관부처가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였다.

2019년 규제건의 1,735건을 규제대상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 건의가 48.2%로 가장 많았고, ▲기업 건의 21% ▲자영업 건의 18.3% ▲기타 건의 12.2% 순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애로 등 민생분야 관련 건의가 약 66%를 차지한다.

수용된 규제건의 309건을 규제대상별로 분류해 보면 ▲국민생활 건의가 38.2%로 가장 많았고, ▲기업 건의 23.3% ▲자영업 건의 23% ▲기타 15.5% 순이었다.

5. 주요 규제 개선 사례

가. 새로운 시장기회 창출 분야

(1) '공유 미용실' 영업 허용 (복지부)

- 기존** 미용실은 별도 분리(구분)된 영업공간에서, 각각의 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1개 미용실 : 1명 사업자(미용사))
- 높은 창업비용(임대료 등)·폐업률(3년내 40%), 열악한 고용환경(4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속 80%)으로 특히 창업단계에서 공유미용실 허용 필요
- 개선**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 사업자(미용사)가 영업공간 분리(구분) 없이, 시설과 장비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업계 의견수렴 등 거쳐 공동위생관리방안 등 병행시행 검토
 - *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개정('21.6월)
 - ☞ 미용실 창업 진입규제 완화로 창업 활성화 기대

(2) 에어컨·냉장고 등에 친환경 냉매가스 사용 허용 (산업부)

- 기존** 해외는 온난화 지수가 낮은 친환경 '냉매가스(R1234yf)'를 에어컨·냉장고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불허(프레온 가스류 사용)
- 국내에서는 해당 냉매가스를 가연성 가스*로 분류 → 냉매용 가스용기에 충전 금지(에어컨·냉장고 등에 사용불가)
 - * 공기 중에서 연소되어 폭발 위험이 높아 미국, 일본도 재충전 금지용기 충전을 원칙적으로 금지(다만, 해당 냉매가스는 가연성 가스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여 허용 중)
- 개선**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여 해당 냉매가스를 가연성 가스 범위에서 제외 → 냉매용 가스용기에 충전 허용(에어컨·냉장고 등에 사용가능)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2월)
 - ☞ 냉매가스 사용규제 완화로 해외 수출시장 진출 및 가격·기술 경쟁력 확보

(3) 모든 식품·음료대상 '식용금박' 사용 허용 (식약처)

- 기존** 주류 등 일부 식품*에 한해서 식용금박(금가루)으로 장식을 허용 → 위반시 행정 처분(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
- 식용금박을 활용한 식품·음료 등 다양한 제품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
 - * 기존 허용대상 : 주류, 잼, 과자·빵 또는 만두·초콜릿·아이스크림
- 개선** 모든 식품과 음료대상 식용금박(금가루)으로 장식이 가능하도록 개선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19.7월)
 - ☞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반영한 식품·음료 개발 및 출시 지원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산업부)

- 기존** 자동차의 종류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포함되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는 제외(자동차관리법, 친환경자동차법)
- 전기이륜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대상 각종 세제혜택(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 감면) 배제 → 내연기관 이륜차와 동일한 세금 납부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이륜차 제외한 △저속전기자동차(승용, 화물, 경·소형승합) △고속전기 자동차(승용, 화물, 경·소형승합) △전기버스(중·대형 승합)
- 개선** 환경친화적 자동차 종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토록 개선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12월)
 - ☞ 환경친화적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에 온실가스 및 대기환경 개선

(5) 전기차 충전기 정격용량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산업부)

- 기존** 국내 전기차 충전기 KC 안전기준은 타입1(교류 5핀) 충전방식*의 정격용량을 안전 문제 등으로 최대 7kw(초당)까지만 허용
- * 타입1(교류 5핀) 충전방식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사용[유럽은 타입2(교류 7핀)]하고 있으며, 미국은 정격용량을 최대 17.6kw까지 허용
 - 전기차 탑재 배터리 용량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수준으로 충전기 정격용량을 상향(안전 문제 미발생)하여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 필요
 - * (한국 정격용량 7kw) 약 7~8시간 소요 → (미국 정격용량 17.6kw) 약 3~4시간 소요
- 개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국내 전기차 충전기 타입1(교류 5핀) 충전방식의 정격용량을 미국 수준인 최대 17.6kw까지 확대(7→17.6kw)
- * 「전기차 충전기 KC 안전기준」 개정('20.7월)
 - ☞ 전기차 충전기 제조사들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전기차 사용자들의 편의 제고

(6) '댄스스포츠' 무도시설 학원 등록 허용 (복지부)

- 기존** '댄스스포츠' 무도시설은 신고체육시설업의 하나인 '무도학원업(근거 : 체육시설법)'으로만 보아 '학원(근거 : 학원법)' 등록 불허
- '무도학원업'은 유해업소로 분류되어 청소년 출입이 제한되며, 주거지역 내 입지 불가 등 영업 제한
 - * 국제댄스스포츠연맹이 국제표준무도로서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룸바,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 개선** '댄스스포츠' 무도시설도 일정한 시설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 * '댄스스포츠' 학원 등록관련 시·도교육청 처리요령 안내('18.7월)
 - ☞ 댄스스포츠의 대중화와 자영업자의 창업 애로 개선

(7) 하천구역 내 드론공원 설치 근거 마련 (국토부)

- 기존** 하천점용허가 대상시설에 무인비행장치(드론)을 비행이 가능한 공간(일명 '드론공원') 설치근거 규정 부재
- 개선** 하천구역 내 무인비행장치 비행 가능 공간·시설 설치 근거 마련함으로써 드론공원 설치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명확화
-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개정('18.10월)
 - ☞ 드론공원 조성 활성화로 드론 저변 확대 및 관련산업 육성에 기여

(8) 번역 서비스업도 수출 용역으로 인정 (산업부)

- 기존** 현재 번역 서비스는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불포함 → 국내기업이 번역 서비스를 외국에 제공하더라도 수출 실적으로 불인정되어 무역금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 불가
- * 수출인정 용역 : 경영 컨설팅, 법무, 회계·세무, 디자인 등
- 개선** 번역 서비스를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에 포함
- *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19.9월)
 - ☞ 번역 서비스의 수출 용역 인정으로 관련 국내기업 수출지원 강화

(9) 연구개발특구에 신재생에너지발전업도 입주 허용 (과기부)

- 기존** 현재 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구역에서는 태양력발전업만 입주 허용하고 있으나, 수소·풍력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발전업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확대 필요
- * 연구개발특구 : 전국 5대 특구(대덕, 대구, 광주, 부산, 전북), 세제지원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
-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가능 업종을 태양력발전업 이외에 기타 청정 신재생 에너지발전업까지 확대
-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과기부 고시) 개정('20.3월)
 -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통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및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나. 자영업·중소상공인 경제 분야

(1)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국토부)

기존 공공청사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의 범위에 수소차 이용자를 위한 '수소충전소'는 미포함(→공공청사내 입지 불가)

* 편익시설 : 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 위한 시설(어린이집, 금융업소, 근생시설 등)

개선 공공청사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범위에 수소충전소 포함 (→공공청사 내 입지 가능)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19.12월)

☞ 공공청사에 수소차 인프라 확보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도모

(2)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 통일 (문체부)

기존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연령기준' 상이* → 야간 PC방 출입 제한 조치 의무가 있는 PC방 업주 등 자영업 중심으로 현장 혼란 발생

* (게임산업법 청소년) 만 나이 18세 미만 + 고등학생(나이와 무관)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연 나이 19세 미만(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개선 상이한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으로 단일화

(※ 고등학교 졸업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성인으로 술·담배 구입 및 PC방 야간출입 가능)

* 「게임산업법」개정('20.6월)

☞ 청소년 연령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통해 단속 등 관련 자영업자 애로 해소

(3)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대상 '공동 구내식당' 허용 (산업부)

기존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 식당이 허용되지만,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부대시설 개념적 범위)

-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업체의 근로자 대부분*이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 호소(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득이 원거리 배달음식에 의존)

*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입주 영세업체(50인 미만) 약 97%가 자체식당 미운영

개선 소규모 영세기업 종사자의 식사 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 허용

-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집단급식소 형태인 경우 허용(→인근 자영업(식당) 영업피해 최소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3월)

☞ 영세한 중소기업 종업원(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4)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교육부)

- 기존** 당구장은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는 개설이 불가
- 당구장은 체육시설(체육시설법)이고,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이며, 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업제한
 - *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거리
- 개선**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당구장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감안하여 중·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3월)
 - ☞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을 통해 자영업자 애로 해소

(5) 건설업(종합·전문) 등록시 진입 문턱(자본금 기준) 완화 (국토부)

- 기존** 종합 및 전문 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등록조건으로 일정 금액 이상 자본금* 확보 필요
- * 종합건설업(△토목(7억) △건축(5억) △산업·환경(12억) △조경(7억) 등)
전문건설업(△실내건축(2억) △도장(2억) △철도·궤도(3억) △포장(3억) 등)
- 개선** 종합 및 전문 건설업 자본금 등록조건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 추진
- (1단계) 기존 100%→70% 수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6월))
 - (2단계) 기존 70%→50% 수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12월))
 - ☞ 자본금은 적지만 능력있는 신규 건설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소자본 창업 확대

(6) 직업소개업과 식품접객업 일부업종의 겸업 허용 (고용부)

- 기존** 직업소개업은 인신지배, 불법고용 등의 문제를 우려하여 모든 식품접객업*과의 겸업을 엄격히 금지
- *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등
- 개선**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일명 '티켓다방')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겸업을 계속하여 금지
 - * 「직업안정법 시행령」개정('18.10월 완료)
 - ☞ 과도한 직업 선택 규제 철폐를 통한 구직자의 취업 기회 확대

(7) '출원 중인 발명' 대상 가치평가비용 지원 허용 (특허청)

- 기존** 산업재산권* 중 '출원 완료된 발명'은 가치평가** 비용의 정부 지원*** 가능 → '출원 중인 발명'은 정부지원 불가
- 초기 창업기업들은 대부분 '출원 중인 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가치평가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산업재산권 : 발명(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상표권
 - ** 가치평가 : 외부 전문가 등이 산업재산권 가치를 가액·등급·점수 등으로 산출
 - *** 정부지원 : 평균 2천만원 소요되는 가치평가 비용의 70%까지 지원(최대 5천만원 한도)
- 개선** 가치평가 비용 지원 대상을 '출원 중인 발명'까지 확대
- ☞ 산업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금 확보 기회 확대로 사업화 촉진

(8) 외국인 고객상담 사무원도 특정활동비자(E-7) 허용 (법무부)

- 기존** 특정활동비자는(E-7) 일정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82개 직종에 한하여 발급이 허용
- 신서비스 산업으로 유망한 다국어 콜센터 등의 경우 전문 외국인 인력이 필요하나 E-7 발급대상 직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자발급 불가
 - * 학력·경력: 3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자(△근무분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학사학위이상+1년이상 경력 △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
- 개선** 국내 외국인 인력수요를 반영하여 특정활동비자(E-7) 직종에 국제용역 수행을 위한 '고객상담 사무원' 등 3개 직종* 추가 신설
- * 발급대상 추가 직종: 고객상담사무원, 로봇공학전문가, 산업안전위험관리자
 - ** 「특정활동(E-7)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개정('18.4월)
 - ☞ 안정적인 외국인 전문인력 공급을 통해 국내 관련서비스 산업 경쟁력 확보지원

(9)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우유류 판매업' 신고 면제 (식약처)

- 기존** 구내식당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는 포장 식육·달걀 납품시*와는 다르게 포장우유류 납품을 위해서는 별도의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 필요
- * 영업신고 면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포장된 식육·달걀 판매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상의 식육판매업 및 식용란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면제
 - ** 추가부담 : 별도 시설투자 비용,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 자체위생관리기준 준수 의무, 지방세 납부 등
- 개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 대상 포장식육 및 달걀 납품과 동일하게 우유류 납품시에도 별도 영업신고(우유류 판매업) 의무 면제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개정('20.9월)
 - ☞ 우유류 판매관련 진입규제 개선을 통해 우유류 소비 및 판매 활성화 도모

(10) 수출과정에서 재사용되는 충격기록기 수입관세 면세 (관세청)

기존 충격기록기*는 수출제품이나 포장박스에 부착하여 수출되고 이후에 재사용 가능하나, 재수입되는 경우 수입관세 감면 불가

- 컨테이너 등 수출 후 재사용되는 용기는 관세가 감면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충격기록기는 감면규정 부재(조세형평성 문제 발생)

* 물품의 운송이나 하역 중에 발생하는 가속에 의한 진동 및 충격을 측정하는 기계

개선 컨테이너처럼 수출 후 재활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 충격기록기 대상 수입관세 감면토록 개선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20. 6월)

☞ 반복 재사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으로 수출기업 지원

(1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측정기 납품기준 합리화 (국토부)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기록 의무를 지며, 사용되는 음주측정기는 '국가기관 납품업체 생산제품'으로 한정

- 일선 현장에서는 '국가기관 납품업체 생산제품 외 장비'는 사용할 수 없는 장비로 인식되어 발주대상 장비에서 제외되는 사례 발생

*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국토부 훈령)

개선 '국가기관 납품업체 생산제품'이 아니더라도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장비는 발주대상 장비에 포함되도록 납품기준 합리화(유권해석)

* 전국지자체 및 운송사업조합 대상 안내공문 시행('19.10월)

☞ 기술력 갖춘 음주측정기 제조기업 애로해소 및 납품기업의 다양화

(12) 중소·중견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 확대 (산업부)

기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을 신청하였으나, 조건부 신용장* 및 수입국(에티오피아)을 사유로 보증 제한

- 신용장에 조건이 붙고 수입국(에티오피아)이 인수제한국이라는 사유로 수출신용보증을 거절하여, 수출 제작자금 마련 애로

* 신용장의 이행이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따라 좌우되는 신용장

개선 통상적인 조건부 신용장* 및 신용장 거래에 한해 인수 제한국(에티오피아 포함 31개국)도 보증 허용

* 신용장 개설은행의 대금지급 책임이 면제·경감될 수 있는 내용 이외의 조건

** 「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운영지침(한국무역보험공사 내규)」개정('19.8월)

☞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신용시장 진출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확대 통해 수출활력 제고

(13) 내포장이 완료된 건강기능식품의 외포장 식품제조업체 위탁 허용(식약처)

- 기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가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 GMP* 인증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만 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가능
-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요건(위생,제조공정,시설 등)을 설정한 기준(고시)
- 개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서 1차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일반 식품제조업체에도 최종 포장공정 위탁가능(GMP건기제조업체+식품제조업체)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12월)
- ☞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출시를 위한 업계 애로 해소

(14) 연구개발특구 지정 이전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증설 허용 (과기부)

- 기존**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기업은 연구개발특구** 신규 입주를 제한하고, 지정 이전에 입주한 기존 기업도 배출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만 증설 가능(패적인 연구환경 조성 목적)
- 기존 기업의 경우, 생산시설 등 증설시 자동적으로 배출오염물질 총량 증가 불가피→공장 생산설비 증설 애로
- * 벤젠·다이옥신 등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에서 지정한 특정유해물질
- ** 연구개발특구: 대덕, 대구, 광주, 부산, 전북 5개 특구
- 개선** 배출 오염물질 총량 제한을 폐지하되, 지역별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특구별 지자체 자율로 기존공장 생산설비 증설을 허용
-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개정(20.3월)
- ☞ 산업 특성에 따른 환경기준 개선으로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다. 취약계층 지원 확대 분야

(1)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 허용 (산업부)

- 기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제공 → 재직자는 아니지만, 실제 해당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협력업체 근로자나 용역업체 근로자(경비, 청소 등)는 입주 불가
-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 발생
- * 근로자 직주근접이 가능토록 주거시설이 부족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개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을 확대(입주기업 '재직자' → 입주기업 '근무자')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19.12월)
- ☞ 산업단지내 근로자간의 차별적인 정주여건 개선

(2) 울산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요금기준 합리화 (울산시)

- 기존** 울산시가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면서 장애인이 부담하는 요금 기준을 도시(구) 및 농촌(군) 지역간 상이한 체계로 운영
-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구·군간 요금이 구·구간 요금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차등 운영(상한요금 : △구·구간(4,500원) △구·군간(9,000원))
 - * 울산시 5개 기초지자체(4개 구, 1개 군)에서 장애인 등을 위해 운영을 보조하는 콜택시로 장애인 부담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약 30% 수준
- 개선** 도시(구) 및 농촌(군) 지역간 동일한 요금체계로 운영토록 개선
- *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19.12월)
 - ☞ 요금체계 단일화로 지역간 행정서비스 지원 형평성 제고

(3) 보훈보상대상자 비영리법인 설립허용 (보훈처)

- 기존**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보훈보상대상자'*는 당사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금지(단체난립 우려)
- 국가유공자는 보훈단체(상이군경회 등 13개)나 비영리법인((사)6.18자유상이자회)이 존재하나, 보훈보상대상자는 별도의 비영리단체 등이 없어 권익 도모 활동 제약 → 헌법상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도 존재
 - * 인정기준: △국가유공자(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업무) △보훈보상대상자(직무 중 단순사고, 질환 등)
- 개선** 보훈보상대상자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 폐지
-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19.12월)
 - ☞ 보훈보상대상자 수의 급증을 반영하여 자발적인 권익도모 활동기반 조성

(4) 고용노동부 외 다른 기관을 통해서도 탈북민의 취업 지원 및 알선 (통일부)

-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이용은 엄격히 제한되며,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및 알선 업무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위탁(북한이탈주민법)
- 탈북민의 취업지원 업무가 고용노동부(취업지원담당관)를 통해서만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취업지원 및 알선이 가능한 것으로 현장 해석·적용
 - 타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등) 일자리사업 담당자*는 즉각적·직접적인 탈북민의 취업 지원 및 알선 업무가 제한(고용노동부에 이첩 처리)
 - * 여성새일센터(여가부),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지자체), 대학일자리센터(각 대학) 등
- 개선** 법령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타 기관 일자리사업 담당자도 즉각적·직접적인 탈북민의 취업 지원 및 알선 업무가 가능토록 개선
- (고용노동부에 이첩 처리→타기관에서도 바로 처리)
 - * 공기관 일자리사업 플랫폼인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 시스템 개선 조치('19.12월)
 - ☞ 탈북민의 취업알선 담당자 확대를 통해 탈북민 편의 제고 및 고용기회 확대

라. 국민 생활불편 분야

(1)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1종 보통면허 응시 허용 (경찰청)

- 기존** 2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은 자동·수동변속기 차량 모두 응시가 가능한데 반하여, 1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하도록 제한
- 보통면허 대상 차량은 대부분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으나, 1종 보통면허 응시자는 운전하려는 차와 관계없이 수동변속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개선** 제1종 보통면허도 자동변속기 조건의 면허를 신설하여, 수동변속기 외에 자동변속기 차량으로도 면허시험 응시 허용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20.6월)
 - ☞ 실제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에 맞는 면허취득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응시자의 부담·불편 경감

(2) 안전성 검토를 거쳐 혈액암 환아(患兒)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식약처)

- 기존** 성인용으로 허가된 혈액암 신약(레볼레이드정)은 투약용량 등 안전성 우려로 12세 미만의 재생불량성빈혈(혈액암 일종) 소아환자에게 사용 금지 → 중증소아환자의 경우 국내에 어린이용으로 허가된 의약품이 없어 약물치료 불가
(치료를 위해선 이식자를 찾아 항암치료 병행한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불가피)
- 개선** 치료 시급성 고려, 12세 미만 소아환자 대상 안전성 검토과정* 거쳐 성인용 신약의 환아대상 임시 사용을 신속히 조치하고, 이후 정식 사용 승인('19.7월)
- * (임시 사용) 병원내 '임상심사술팀' 심의 거쳐 복용주기 조절을 통해 허용('19.4월, 서울대병원)
 - (정식 사용) 정식 심의절차를 거쳐 승인('19.7월, 심평원)
 - ☞ 중증재생불량성 빈혈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대상 획기적인 신약 치료기회 제공

(3) 유원지 내 반려동물을 위한 위탁시설 등 설치 허용 (국토부)

- 기존** 놀이공원 등 유원지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범위에 동물위탁시설 등 비포함 → 유원지 방문시 반려동물을 맡기고 유원지 시설들을 이용하려 하나, 현재 유원지 내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 설치 불가
- * 동물위탁시설, 동물미용시설 등
- 개선** 유원지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 범위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위탁시설, 미용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여 해당 시설 설치를 허용
-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0.3월)
 - ☞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원지 이용자 중심으로 국민불편 해소

(4) 배아·태아 대상 산전(産前)유전자 검사대상 확대 추진 (복지부)

기존 배아·태아 유전질환 검사는 기술적으로 6,000종 이상 가능하지만, 검사 남용을 우려*하여 102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 임신중절(낙태) 남용 방지, 생명권 보장(인공수정 등 생성된 다수 배아 보호)
- 검사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유전질환이 있는 부부인 경우 산전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해 심각한 유전질환을 가진 자녀 출산 우려로 출산 기피

개선 바터증후군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하는 유전질환에 대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전 유전자검사대상 질병 범위 확대 추진

- *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개정('20.3월)
- ☞ 심각한 유전질환이 있는 부부에게 사전검사를 통한 건강한 2세 출산기회를 제공

(5)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 (복지부)

기존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틀니·임플란트 시술비용 정부지원* 받기 위해서는 일반 건강보험대상자(1회 방문)와 달리 관계기관 3회 방문절차 필요

- * 만65세 이상 노인대상 틀니(7년마다 1회) 및 임플란트(평생 2개) 비용 지원

개선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일반 '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한 절차로 틀니 등 시술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3회 → 1회 방문)

- *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19.12월) 및 전산시스템개선('21.6월)

(기존) ① 치과 방문 → ②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 ③ 치과 방문
 (등록신청서 발급) (등록신청서 제출·등록) (건강보험공단 조회·시술)
 (개선) ① 치과 방문(건강보험공단 조회·시술) (: 일반건강보험대상자와 동일)

- ☞ 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틀니 등 시술비용 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한 불편해소

(6) 비(非)이공계 학부졸업자 대상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식약처)

기존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4년제 이공계 학부 졸업자격을 갖춘 자를 제조소마다 제조관리자로 배치 의무화

- 비이공계 학부 졸업 이공계 석·박사 취득자는 이공계 학부 전공자보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전문성이 인정되나, 제조관리자 자격 요건 비해당(취업 불가)
- * 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붕대 등 섬유·고무제품으로 구성된 의약외품

개선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을 이공계 학부전공자 외에 이공계 석사 또는 박사취득자까지 확대

- *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19.2월)
- ☞ 불합리한 자격 제한 완화를 통해 이공계 석·박사 고용기회 확대 및 창업 활성화

(7) 지하철 등 구분지상권 설정토지 분양규제 개선 (국토부)

- 기존**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아파트·오피스텔 등 분양시 해당 토지의 저당권·지상권 등이 전부 말소되어야 입주자 모집 및 분양 허용*
- * 주택공급규칙(아파트), 건축물분양법령(오피스텔, 상가 등)
 - 지하도로·철도 등 공공사업시* 구분지상권 설정 불가피·말소 불가 → 재건축·재개발 등 분양사업 추진 불가(재산권 과잉 제약)
 - *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등
- 개선** 공공사업으로 설정된 구분지상권 해당토지는 구분지상권자 동의하에 입주자 모집 및 분양 전면허용(분양 공고시 사전공지 조건)
- * 「주택공급규칙」 및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19.11월)
 - ☞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기반 조성 및 국민의 재산권 선제적 보호

(8) 대형마트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규제의 단계적 시행 유도 (환경부)

- 기존** 주요 대형마트 4社は 폐기물 저감을 위해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운영을 중단하는 자율협약 체결(환경부·대형마트 4社, '19.8월)
- 본격시행('20.1월) 준비과정에서 폐기물 저감효과에 비해 과도한 국민생활 불편 초래한다는 부정적 여론* 지속(탁상·줄속 규제라는 언론지적 등)
 - * 사용중단 종이박스는 재활용이 가능하고, 유통과정에서 이미 사용된 것을 재사용
- 개선** 국민입장에서의 쇼핑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주된 환경 위해 원인인 포장용 테이프·끈 제공은 지양하되, '종이박스 자율포장대' 운영 중단은 보류토록 조치(단계적 접근→규제 수용성 제고 추진)
- 시범운영, 설문조사 및 실태 모니터링 등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 후 최종 추진방향 결정 추진
 - *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운영 시행방향 결정('20.6월)
 - ☞ 환경규제 시행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및 규제정책 신뢰도 제고

(9) 복수면허 소유 건설업체에 대한 자본금 특례대상 확대 (국토부)

- 기존** 설립 면허 등록시 업종별 최소 자본금 규제가 있으나, '10년 2월 이후 복수의 면허를 추가 등록할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의 1/2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건설업자본금 등록기준 특례)
- '10년 2월 이전 건설업 면허 소유자는 해당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여 매년 상대적으로 더많은 자본금 보유의무 발생(등록기준 역차별)
- 개선** '10년 2월 이전 복수의 건설업 면허 소유자도 자본금 등록기준 특례 적용토록 개선(특례대상 확대→등록 기준 역차별 '해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2월)
 - ☞ 제도 시행 전 복수의 건설업 면허 소유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마. 행정 불합리 분야

(1) 특성화고 학생 '호텔' 현장실습 허용 (여가부)

- 기존**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를 위해 관광호텔 등 숙박업*대상 청소년 고용을 원칙적 금지(청소년보호법)
- 정부는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후 고졸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 중이나, (先취업後진학 유도)
 - * 호텔·관광·조리분야 특성화고 현황 : 학교단위 21개교, 학과단위 66개교
 - 관광호텔에서의 고교생 현장실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결과적으로 청소년 취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로 작용
 - * 청소년 고용금지 숙박업 : △관광진흥법상 '숙박업'(관광호텔 등,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호텔(8개)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예외적 허용) △공중위생법상 '숙박업'(모텔 등 일반·생활 숙박시설) 등
- 개선** 교육(실습)을 위한 경우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대상에서 제외→ 관광호텔 등에서 현장실습 허용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개정(20.6월)
 - ☞ 특성화고 중심으로 호텔·관광·조리분야 고졸취업 활성화 기대

(2) 자동차매매장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개선 (환경부)

- 기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일정 산정·부과 기준(건물용도별 일일 오수발생량×건물면적×오염도)에 따라 건축주가 비용 부담
- 최신 빌딩형 중고자동차매매장의 경우 오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자동차 전시공간도 건물면적에 산정되어 부담금 과다 부과
 -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경우 일정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개선** 자동차매매장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건물면적에서 제외토록 제도 개선
-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개정(19.11월)
 - ☞ 투자기업 부담 해소 및 자동차매매업종 미래형 서비스 산업혁신 기반 조성

(3) '나무도마' 사용 음식점도 위생등급 우수 업소로 인정 (식약처)

- 기존** 나무재질의 도마를 사용하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위생등급 평가시 '우수' 위생등급(매우 우수 및 '우수') 획득* 이 원천적으로 불가
- * 우수 위생등급 지정 혜택 : 시설 개선자금 지원, 출입·검사·수거 면제, 정부 홈페이지 공표, 식당 내·외부에 우수업소 게시·표시 가능 등
- 개선** 나무도마 사용식당도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우수한 경우 우수등급 지정 가능
-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19.12월)
 - ☞ 불합리한 위생평가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자발적인 음식점 위생강화 유도

(4)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환경부)

- 기존** 하천수 사용료는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365일)로 사전 허가량*에 따라 산정·부과하여 실제 사용량 대비 과다납부 발생
- 하천수 사용패턴이 연중 일정하지 않고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등 시기별로 상이한 경우, 과도한 금전적 부담
 - * 하천수는 수도·전기와 달리 미사용시 타인도 사용하지 못해 자원낭비가 발생(배타적 사용권리) 하므로 사전 허가량에 따른 요금 부과
- 개선** 실제 하천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 개선(연 단위 산정 → 분기·월·일 등 기간별로 달리 산정 가능)
- *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제정(19.12월)
 -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 절감

(5)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기준 합리화 (환경부)

- 기존** 다른 전기자동차 시험을 모두 통과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기차 보급평가시험'을 거쳐 평가기준을 통과한 차량의 구매자에게 구매보조금 지급
- 다른 시험*에서 거친 항목이 전기보급평가시험 항목에도 있어 중복시험에 따른 불편 초래(신청 및 평가 기간의 장기화 등)
 - * 자동차안전기준 시험·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중복항목: 1회 충전주행거리, 최대등판능력,충전 규격·속도 등
- 개선**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항목 중 중복 항목에 대해서 다른 시험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소요시간 및 절차 단축)
-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19.8월)
 - ☞ 중복된 시험 평가기준 합리화를 통해 전기자동차 관련 행정불편 해소

(6)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 즉시 허용 (문화재청)

- 기존**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입목 벌채, 임산물 채취, 토지 형질변경 등이 원칙상 금지
- * 경관보호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 필요성으로 인해 지정·고시한 지역
 - 예외적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임도 등 일부 행위는 가능하나, 매장 문화재 지표조사·발굴은 '허용 행위'에 불포함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발굴 경우에도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후에야 가능
→ 산림보호구역 해제에 장기간 소요(최소 6개월 이상)
- 개선** 매장문화재 조사·발굴이 가능토록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행위'에 포함 (→ 산림보호구역 해제절차 없이 매장문화재 조사·발굴 즉시 가능)
- *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20.5월)
 - ☞ 신속한 문화재 조사·발굴로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

(7) 소형자동차정비업자의 소형차대상 '자동차종합검사' 기능 (국토부)

기존 정기검사 검차장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로 차등화되어 있으나, 종합검사 검차장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자'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구분없이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단일화

-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정기검사업체로 지정받기는 쉬우나, 종합 검사 검차장의 과도한 시설기준으로 인하여 종합검사업체로 지정받기 어려움

개선 종합검사 검차장의 시설기준을 대형·소형으로 구분하여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종합검사업체 지정을 용이하게 받아 소형차대상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20.3월)

☞ 시설기준 합리화를 통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 경쟁력 강화 및 현장애로 해소

(8) 전화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금융위)

기존 보험상품을 전화로 모집시 보험계약관련 모든 설명의무 사항을 보험모집인이 직접 낭독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야 청약 종료 가능

- 보험계약 체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이 소요되고, 계약자 입장에서도 집중도 감소로 상세한 계약내용 이해 곤란

*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작성, 모집종사자가 해당대본에 따라 직접 낭독·설명하고, 고객에게 확인받는 형태의 통신판매 방식

개선 필수 사항*은 직접 낭독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비필수 사항**은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선 (직접 낭독 대상 : 설명의무 사항 '전부'→ 설명의무 사항 중 '필수사항')

필수 사항*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중요내용 (면책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자동갱신조건, 중복가입에 따른 비례보상사실 등)
비필수 사항**	사후확인으로 충분한 사항 (보험약관중 분쟁조정절차, 모집종사자 정보 등)

* 「보험업 감독규정」개정(19.12월)

☞ 보험계약 내용의 이해도 제고 및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9) 중간층 다락 설치시 지역 건축제한(1.0M 이하)이 개선 (제주도)

기존 건물 층 제한 없이 모든 층에 1.5m 이하 다락 설치 가능하나, 제주도만 자체규정으로 중간층에 다락 설치시에는 1m 이하로 제한

- 공간활용이 가능한 복층형(다락) 건물에 대한 고객 선호가 높으나, 타 지역과는 다른 건축규제로 건설사업 추진상 현장애로 초래

개선 건축법령상 허용한대로 건물 층 제한 없이 모든 층에 1.5m 이하 다락 허용(중간층 다락 높이 : 1→1.5m)

* 「다락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제주도 자체규정) 개정(20.6월)

☞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 정비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10)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교육부)

- 기존** 국내 진출한 외국교육기관*은 산학협력법상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 산학협력 활동** 참여 제약
- 국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상황에서 직업훈련과정 운영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한 재정자립도 제고 필요
 - * 외국교육기관 : 대구·인천 소재 7개 외국교육기관(대구국제학교, 송도뉴욕주립대 등)
 - ** 산학협력단 개설, 산업교육과정 및 산업실험·실습시설 운영, 지식재산권 취득·관리 등
- 개선** 국내진출 외국교육기관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여 직업훈련 과정 운영 등 산학협력 활동 참여를 허용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0.12월)
 -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산학협력활동 허용 통해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인프라 활용

(11) 적극행정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규제 현장으로 해결 (환경부)

- 기존**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신고하도록 의무화('06년~)
- 사업내용 변경으로 설치대상에 신규 포함되었으나, 既 설치시설이 설치·신고 기준에 미부합 사례→기존시설 철거 후 신규 설치 필요(사업비 증가, 환경오염 발생 우려)
 - * 비점오염원(도시, 도로,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 배출되는 오염물질) 제거·감소하는 수질오염 방지 시설
- 개선** 既 설치시설이 있는 경우, 신규 설치 없이도 시설보완을 통해 저감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면 '설치기준 충족'한 것으로 적극 해석
-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유권해석('19.9월)
 - ☞ 환경규제 합리화를 통해 저감시설 철거·재설치 소요비용 절감

바. 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 어업 분야 허용업종 확대 (법무부)

- 기존** 농·어번기 계절적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는 어업 분야의 경우 멸치·김 건조 등 '육상 가공' 작업만 허용
- * 집중적인 농·어업분야 계절 인력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단기간(3개월) 고용제도('15~)
 - 해상작업 안전성 우려로 '해상양식'작업은 불허→ 미역, 다시마, 김 등 해상양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촌지역에서는 인력수급 애로
- 개선**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육상 가공 → 육상가공 + 해상양식), 해상양식 작업에 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 우선 시행(완도군, '20년)
- *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반영('19.12월)
 - ☞ 해상 양식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통해 어민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의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 허용 (농식품부·해수부)

기존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비농어업인에 한해서만 귀농어시 정부지원이 가능(→농어촌지역의 비농어업인 귀농어시 지원 불가)

개선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어업인도 귀농어시 정부지원 가능(→농어촌 지역의 비농어업인 귀농어시에도 지원 가능)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6월)

☞ 귀농어 지원대상 확대를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농어촌 일자리 창출 기대

(3)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 '지역조합' 외에 '품목조합'도 공판장 설치 허용 (국토부)

기존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설치는 '지역조합'에 한해 가능하고, '품목조합'의 경우 설치 불가

- '품목조합'은 '지역조합'과 동일한 기능(지역농산물 판매로 농가수익 극대화, 지역산업 육성 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규제 적용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은 '지역조합' 뿐 아니라 '품목조합'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20.2월)

☞ 공판장 설치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일자리 창출

(4) 철거 예정인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활용 추진 (산업부)

기존 현행 법령은 해저광물채취를 위한 인공구조물(동해가스전 등)의 재활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①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저광물채취용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계속사용 필요성이 인정되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개선 동해가스전을 해저광물 채취용도 이외에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설 용도로 재활용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타당성이 검증되면 법령 개정 추진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20.12월)

☞ 동해가스전 재활용을 통해 가스전 철거비용과 신규시설 설치비용 절감

6. 향후 운영 계획

2020년에는 국정 4년차를 맞이하여 ‘국민불편·민생분야’ 규제혁신 창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작지만 의미 있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각고의 정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첫째, 국민의 규제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국민건의 창구 일원화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규제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전면개편 등을 통해 국민의 규제건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둘째, 규제건의 수용률 및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의 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합리적 건의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올해에도 규제개혁신문고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홍보를 통해 일반 국민 등 실질적 정책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단체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전략적 홍보를 통해 규제건의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과의 전방위적 소통 및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선도하여 ‘국민이 만들어 가는 규제혁신’ 창구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록



이정호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414, turtleb@korea.kr

1. 규제일몰제 개요

가. 개념

규제 일몰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고시 등)상 행정규제에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폐지하거나 개선을 검토하는 제도로써,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유형

규제 일몰제는 효력상실형과 재검토행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효력상실형은 규제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해당 규제가 자동으로 폐지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재검토행은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개선 여부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법적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서 신설·강화 규제 및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행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행 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행 6개월 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토록 하고 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3항)

라.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마. 적용원칙 및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속적으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여야 하며, 기존 규제 역시 규제 목적이 한시적이거나, 규제시행 상황에 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완화 등의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을 설정하여야 한다.

원칙적인 일몰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존속시켜야 할 사유가 명백하거나 재검토키의 여지가 없어 일몰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규제 등에 대하여는 일몰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2. 2019년 재검토키한이 도래한 일몰규제 심사결과

2019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가 요청된 총 29개 부처의 2,462건의 재검토키형 일몰규제에 대해 규제존속 및 일몰유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11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361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인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기한 도래 재검토키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단위 : 건)

총계	규제 폐지	규제개선			규제존속			비규제*
		소계	일몰유지	일몰해제	소계	일몰유지	일몰해제	
2,462	11	361	305	56	1,917	1,338	579	173

* 과징금·과태료(17.11.28 법 개정으로 제외) 및 행정내부절차·기준 등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경우

2019년 일몰규제 심사는 '19년 규제개혁 추진방향(△규제 입증책임 전환 △혁신성장 및 민생 △체감도 제고)에 맞춰 ①규제 개선여부 및 ②재검토키 기한 유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규제정부입증책임제를 엄격 적용하여 부처에서 존속 필요성·적정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폐지·개선 하였으며,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재검토 규제 TF의 민간전문가 보강*(20명 이내 → 36명) 및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개최하였으며, 재검토 실익이 없거나 기한 설정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기한해제를 검토하여 향후 재검토 규제 관리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 '18년 대비 16명 증원 : ('18년) 22명 → ('19년) 36명

** '19.4월 3차례 개최, 규제심사관리관 및 TF 전문위원, 국조실 실무자 등 30명 참석

3. 주요 정비 사례

가. 신사업·신기술 촉진

(1) 5G 이용가능지역 등 정보 제공 확대 (과기부)

- 개선내용** 신규 정보통신서비스(5G, 10Giga급 유선인터넷)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정보를 지도형태 등으로 제공
- 기존** LTE, 3G, WiFi 및 초고속·Giga급 유선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가능 지역 정보 지도형태 등으로 제공
 - 변경** 5G, 10Giga급 유선인터넷 서비스 이용가능 지역정보 추가
- 기대효과** 소비자 서비스 선택권 보호, 관련 신산업 육성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시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완화 (산업부)

* 입주업체 고부가가치화 등 입주업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

- 개선내용**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중 의무적으로 재투자해야하는 비율 완화
- 기존** 복합구역(공장부지와 지원시설 혼합구역)으로 개발시 기존용도 부분도 개발이익 산정,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개발이익 1/4이상 재투자
 - 변경** 복합구역으로 개발시 실제 용도변경되는 부분만 개발이익 산정, 비수도권 지역은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1/8로 경감
- 기대효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산업 육성(공장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

(3) 플랫폼택시* 관련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기준 완화 (국토부)

* 인터넷·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통한 고객 요청에 따라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개선내용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 기준 완화

기존 특별시·광역시 내에 소속 가맹점 택시 4천대 이상 보유 필요

변경 특별시·광역시 내에 소속 가맹점 택시 1천대 이상 보유 필요

기대효과 플랫폼택시 가맹사업 확대 및 다양한 운송 부가서비스 제공

(4) 4차산업 관련 하도급가능 안전전문 기술 확대 (국토부)

개선내용 하도급이 허용되는 안전전문 기술에 신기술·로봇 등을 활용한 시설점검 포함

기존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을 누수탐사·수중조사 등 13개 기술로 한정

변경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신기술과 무인체, 점검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 조사 및 영상분석도 하도급이 허용되는 안전전문 기술에 포함

기대효과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안전점검 전문기술 촉진, 비용절감 및 안전사각지대 등에 대한 사고예방 증진

(5) 벤처캐피탈 소액해외 송금업 투자 허용 (중기부)

개선내용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도 소액해외송금업에 대한 투자 허용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이 금융기관에 포함되어 벤처캐피탈 투자 제한

변경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도 소액해외송금업 투자 허용

기대효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창업 유도

나. 시장진입규제개선

(1) 환경컨설팅회사 등록기준 완화 (환경부)

개선내용 환경컨설팅 회사 등록을 위해 보유해야 하는 인력(고급 1명, 일반 2명 이상)의 경력요건을 민간에서 근무한 경력까지 확대

기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변경 민간기업에서 환경분야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

기대효과 환경컨설팅업 창업 활성화

(2) 농수산물자조금* 운용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 (농림부·해수부)

* 농수산물의 소비촉진·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운용하는 기금

개선내용 농수산물자조금 운용평가기관 인력요건(경제·경영·재무·회계·농수산분야별로 전문가 1명)의 경력인정 확대

기존 경력요건으로 학력(박사학위 소지자 등)만 인정

변경 관련분야 자격증(회계사, 세무사, 농수산분야 자격증)도 허용

기대효과 운용평가기관의 인력확보 용이성 증진

(3) 의약품제조업자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식약처)

개선내용 의약품(자양강장제 등) 제조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제조허용

기존 의약품제조시설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변경 의약품제조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기대효과 중소·영세업자 시설투자비용 감소

(4) 축산물가공업 영업시설 기준 완화 (식약처)

개선내용 축산물가공업 제조공정에 대해서도 일부위탁 허용

기존 축산물가공업 제공공정의 경우 전부위탁만 허용

변경 포장 완료 축산물에 한해 살균·멸균 등 공정은 일부위탁 허용

기대효과 축산물가공업자에 대한 고가의 제조시설 구비 부담 완화

(5) 천일염인증기관 인력기준 완화 (해수부)

개선내용 천일염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 완화

기존 인증심사원 6명 이상 보유 필요 → **변경** 인증심사원 2명 이상 보유 필요

기대효과 천일염인증기관 인력부담 완화

다. 경영부담 개선

(1) 동물장묘업 영업시설 규제 완화 (농림부)

- 개선내용** 지자체의 동물장묘업 수요에 따라 시설제한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전국에 동일기준 적용(민간은 화장로 3기 이하로 설치)
- 변경** 동물장묘업 수요가 많은 지역은 조례로 시설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
- 기대효과** 동물장묘업 관련 산업 확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시설의무 완화 (식약처)

- 개선내용** 판매형태 및 판매방식 등을 고려해 식품위생에 위해성 등이 없는 경우 진열·판매시설 설치의무 면제
- 기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 설치 필요
- 변경** 식품의 판매형태 및 판매방식을 고려해 면제 가능(택배, 우편 등으로만 판매하고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진열·판매하지 않는 경우 등)
- 기대효과** 중소·영세업자 시설투자비용 감소로 소상공인 판매·영업 활성화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자율성 확대 (여가부)

- 개선내용**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배치해야 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총수는 유지하면서 등급별 배치인원의 자율성 부여
- 기존** 청소년지도사 배치인원을 급수별로 규정(급수별로 0명 이상)
- 변경** 청소년지도사의 총인원은 유지하면서 등급별 배치 인원의 자율성 부여(0급 포함 0명 이상)
- 기대효과**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자의 구인부담 완화 및 자율성 확대

(4)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부담 완화 (식약처)

- 개선내용** 박람회 등으로 인해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외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경우 신고의무 완화
- 기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위해서는 관할 지역 지자체에 영업신고 필요
- 변경**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외에서 1개월 이내 한시적 영업(행사장 등)의 경우 영업신고증 제출로 신고 같음
- 기대효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성화 및 영업자 편의 증진

(5)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완화 (식약처)

- 개선내용**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포장육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 신고의무 면제
- 기존** 온라인으로 축산물을 식육·포장육으로 판매하거나 영업자·구매자간 포장육 등을 증개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 필요
 - 변경**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포장육(닭·오리는 식육도 가능)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및 포장육 판매를 증개하는 경우 영업신고 제외
- 기대효과**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부담·불편 해소 및 통신판매 등 판매경로 다양화

(6) 선원의 승·하선 공인* 신청 간소화 (해수부)

*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시, 정부의 공인을 받는 제도

- 개선내용** 선원 승·하선 공인 신청지역 확대
- 기존** 선원의 승·하선교대가 발생한 지역 지방해양수산청에만 신청 가능
 - 변경** 승·하선 장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기대효과** 선주의 신고편의성 증진

(7) 원산지 표시대상 간소화 물품 확대 (관세청)

- 개선내용** 원산지 표시를 세트 단위로 할 수 있는 대상 확대
- 기존**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트물품(구급상자와 구급대 등 15개)만 포장용기에 원산지 표시가능
 - 변경** 기 지정된 세트물품이 아니어도 세관장이 인정할 경우 세트물품으로 인정해 포장용기에 표시 가능
- 기대효과** 수입업자의 원산지 표시부담 경감

(8) 정부관리 양곡 공급의 품목 제한 폐지 (농림부)

- 개선내용** 정부관리 양곡공급시 쌀 가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입쌀 종류 제한 폐지
- 기존** 정부관리양곡공급시 가공업자의 생산품목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수입쌀 종류 제한
 - 변경** 쌀 가공업자가 생산하는 품목과 관계없이 수입쌀 수급 허용
- 기대효과** 쌀 가공기술 발전 등 쌀 가공산업 육성

라. 민생 및 국민불편 해소

(1) 세종시 특별공급 대상에 국제기구 종사자 포함 (국토부)

- 개선내용** 세종시 소재 국제기구 종사자도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기존** 세종시 입주기업, 연구, 의료기관 종사자 등만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가능
- 변경** 행복청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종사자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 기대효과** 세종시의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종사자 정주여건 개선

(2) 외국인 대상 민원사무 전산화 (법무부)

- 개선내용** 외국인이 각 종 민원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하거나, 행정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등 제출 면제
- 기존** 체류변경허가 신청시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 증명서 제출, 체류지변경시 서면으로 체류지 변경신고
- 변경**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행정시스템으로 확인 가능), 체류지변경 온라인신고 허용
- 기대효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민원처리 편의성 제고

(3) 말산업자격취득에 필요한 마약 중독자 검사기관 확대 (농림부)

- 개선내용** 말산업 관련 자격 취득을 위해 마약 중독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 기존** 치료보호기관에서만 마약 중독검사 가능
- 변경** 일반 병원·의원에서도 판별 허용
- 기대효과** 말산업 국가자격 취득 희망자 불편 완화

(4) 개인묘지 변경신고 완화 (복지부)

개선내용 개인묘지의 형태를 평장으로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 면제

기존 분묘형태와 관계없이 묘지 형태를 변경할 경우 변경신고 필요

변경 평분 또는 봉분 → 평장으로 변경시는 신고의무 면제

※ 봉분 : 봉분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1m이내

평분 : 봉분의 윗부분은 평면으로 하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cm 이하

평장 : 봉분이 없는 형태로 지면과 같은 높이로 조성, 비석 역시 평면으로 설치

기대효과 개인묘지 변경인의 신고 부담 완화

4. 향후 계획

규제개혁위원회는 2020년에도 기한이 도래하는 일몰규제에 대하여 규제의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규제 폐지·개선 등 준비를 하나갈 계획이다. 2020년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규제는 약 800여건으로 '19년과 마찬가지로 부처입증책임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폐지·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고, 일자리 창출 유도 및 민생 불편·부담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소관 일몰규제 법령 정비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규제영향분석서 결과 평가 및 규제 운영성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증적 증거에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정비 추진을 통해 규제품질의 향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3장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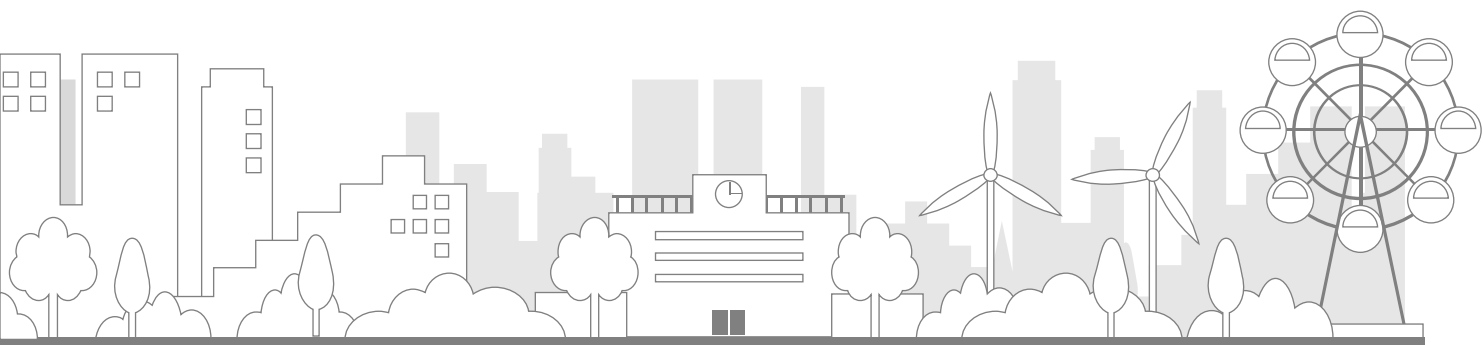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제2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제3절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제4절 규제정보포털 운영

제5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제3장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역량강화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추진



집필자

문유진 서기관

Tel. 044-200-2431, yujin700@opm.go.kr

1. 입법 연혁

행정규제기본법은 1997년 8월에 법률 제5368호로 제정되었다. 제정 법률에서는 규제법정주의 원칙, 규제의 등록 및 공표의무, 규제 신설·강화시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존속기한 설정 의무(규제 일몰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절차, 기존규제 정비,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구성, 규제개선 점검·평가, 규제개혁 백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타법 개정을 제외하고 6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다. 2005년 개정 법률 제7797호는 규제사무목록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규제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를 강화했다.

2010년 개정 법률 제9965호는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적으로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2013년 개정 법률 제11935호는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규제가 주기적으로 재검토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개정 법률 제13329호는 규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지는 부담을 완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영향분석시 해당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중소기업영향분석(평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2017년 개정 법률 제15037호는 벌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그 목적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아니한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어 과징금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도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018년 개정 법률 제15609호는 국민의 규제부담 경감과 규제품질 제고를 위해 규제의 신설·강화 또는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하여는 규제적용 면제 또는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행정규제의 차등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요청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답변, 규제개혁위원회의 소명 요청 등의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연혁

제·개정일(시행일)	주요내용
'97.8.22('98.3.1)	△행정규제 등록 및 대국민 공표 △규제영향분석제도 △기존규제 정비△신설·강화시 규제 일몰제 △규개위 설치 등
'05.12.29('06.6.30)	△규제사무목록 국회 제출 △규제영향분석서 공표 △존속기한 도래시 국회 제출 △규개위 위원 증원(20명 → 25명)
'10.1.25('10.1.2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13.7.16('13.8.17)	△재검토행 일몰제 근거 마련
'15.5.18('15.5.18)	△규제영향분석시 중소기업 영향 고려
'17.11.28('18.3.1)	△과징금·과태료 행정규제기본법 적용 제외
'18.4.17('18.10.18)	△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차등적용 △규제정비 요청 처리절차(규제개혁신문고) △연관규제 개선 △규개위 회의록 공개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2. 2019년 개정사항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先허용-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17.9월,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했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7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금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시행으로 “규제혁신 5법*” 체계가 완비되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법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이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정보통신융합법(1.17), 산업융합촉진법(1.17), 금융혁신법(4.1), 지역특구법(4.17)

- 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입법화하고, 그 세부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된다.

* 네거티브 리스트,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 평가·관리

- ②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4개 분야와 함께 다른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정부(지자체 포함)는 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법제 심사단계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에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국무조정실은 부처가 의무적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정하였고, 부처가 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적용 여부를 심사한다.

법제처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반영된 「법제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4월에 마련하였고, 앞으로 법제심사 단계에서 기존의 법체계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아울러, 신설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노력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한 3차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총 235건)에 이어, 하반기에는 부처별 중점추진 분야를 선정하여 네거티브 전환 노력을 적극 확산한다. 아울러, 기업과 민생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 자치법규와 공공기관의 지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다은 사무관
Tel. 044-200-2429, leeda@opm.go.kr

1. 개요

규제개혁 국제협력은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정책·수단에 대한 현황과 추진성과를 정확히 알려 한국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는 한편, 규제개혁에 대한 선진국 동향을 연구하고 각국의 규제개혁 정책 사례와 교훈을 공유하여 국내 규제정책이 나아가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국제협력의 주요 업무는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를 통해 한국의 규제개혁 제도, 정책 현황 및 추진성과를 알리고 선진국의 규제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규제개혁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규제정책의 국제적 동향을 연구하고, 다자 또는 양자 간 접촉을 통해 선진국과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경험을 전수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국정과제인 신남방정책의 이행을 위해 태국, 미얀마 등 ASEAN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규제개혁 경험을 공유하는데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일환으로 태국 부총리 방한시 「한-태국 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 「행정규제기본법」 등을 참고한 태국의 「입법발의 및 입법성과평가에 대한 법률」의 시행전 보완을 위해 협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규제혁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던 미얀마를 방문하여 「한-미얀마 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초기단계인 미얀마의 규제혁신을 위해 한국의 규제혁신 경험 및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 외에도 제21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등 규제정책 분야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강화하였다.

2. 태국부총리 방한

국무조정실은 위싸누 크르아 응암 태국 부총리와 내각사무처* 관계자 10명을 맞이하여, 「한-태국 규제혁신회의(국무1차장 주재, 9.5)」를 개최하였다.

* 총리 및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을 작성, 각 정부기관에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태국의 중앙행정기관

태국 내각사무처는 한국의 규제정책을 참고하여 자국의 규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연이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번 위싸누 부총리의 방문은 그 중 최고위층의 방문으로, 이를 통해 양국은 규제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 '17, '18 내각사무처장 방한 시 KDI, 행정연구원, 법제연구원 등 방문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 두시간 여에 걸쳐 태국 관계자들과 규제혁신에 대해 논의하였다. 태국측은 올해 11월 「입법발의 및 입법 성과평가에 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한국의 규제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했다.

* 한국의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법률로, 입법시 필요성 심사 및 의견수렴, 규제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

태국측은 “한국의 규제개혁 시스템이 롤모델”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순방 시 면담에 참여하여 이번 방한에서 규제정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①대통령과 총리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 ②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③공무원의 적극적인 태도와 ④이를 뒷받침하는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⑤국무조정실 등 규제관련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 등 다섯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3. 한국 규제개혁 경험 공유를 위한 ASEAN 국가 방문

국무조정실은 위싸누 부총리의 방한(9.5)에 대한 답방 및 ‘한-메콩 비전*’ 이행을 위한 메콩 국가와의 규제분야 협력 제고를 위해 태국 및 미얀마를 방문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 아세안 순방(19.9.1~9.6)시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메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①경험을 공유하는 번영 ②지속가능한 번영 ③동아시아 평화와 상생번영의 3대 비전 발표

태국에서는 내각사무처를 방문하여 「제2차 한-태국 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태국 부총리 및 내각사무처의 국무조정실 방문 시 진행하였던 「제1차 한-태국 규제혁신회의」에 이은 것이며, 태국측은 방한 이후 「입법발의 및 입법성과평가에 관한 법률」의 시행성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1차 회의에서 설명하였던 한국의 규제혁신 시스템에 이어,

규제혁신 제감도 제고를 위해 새롭게 추진중인 적극행정 추진노력 및 관련 제도를 설명하였다.

미얀마에서는 연방정부실을 방문하여 사무차관 주재로 「한-미얀마 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의 규제혁신 성과 및 규제관리를 위한 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미얀마와는 최초로 양국간 규제분야 협력을 추진한 것으로, 이는 「한-아세안 공공행정혁신 행정장관회의(11.26, 부산)」에서 미얀마 연방장관이 한국 규제혁신에 관심을 표명함에 따른 것이다.

4. 제21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 참석

제21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는 11월 6~7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으며, 규제정책에서 의회의 역할, 국제규제협력 및 사후평가·규제영향분석·윈스톱샷 등에 대한 모범관행이 논의되었다.

유럽의회는 28개 EU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회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28개 EU 회원국 중 4개국(폴란드, 헝가리, 핀란드, 불가리아)에서 의회가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7개국(폴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기존규제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음이 소개되었다.

OECD는 최근 국가간 무역협정에 '규제의 정합성 및 모범규제관행의 이행' 관련 조항을 두는 추세를 설명하며, 그 주된 내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규제 집행·순응에 필요한 정보교환 △국제표준 채택 △상호인정협정 등이 주로 포함되며, △공동 규제영향평가 △기존규제 평가결과 공유 등 보다 긴밀한 협력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음이 소개되었다.

또한, OECD는 제19~20차 회의에서 초안이 공개되었던 사후평가 원칙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으며, 규제영향분석을 영향력이 큰 정책에 집중시키기 위한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회원국의 비례성 테스트 도입 현황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원국의 윈스톱샷 사례를 공유하고, 정치적 지지, 리더십, 역할의 명확성 등 여러 원칙들의 우선순위와 규제설계 단계에서의 서비스 통합을 논의하였다.



이채영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913, chaeche@opm.go.kr

1. 개요

가. 의의

규제비용관리제(Cost-In, Cost-Out)는 규제 신설·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규제 폐지·완화를 통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제비용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규제를 도입할 때, 피규제자에게 어떠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지 분석하도록 하고, 준비비용이 발생하면 기존의 규제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정비(폐지·완화)하려는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신규로 도입되는 규제의 품질은 높이고 기존 규제는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비용관리제는 2년 간('14년7월~'16년6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총리 훈령 제정(「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16년7월)을 통해 28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중이다. 2018년 1월에는 규제비용관리제 종합평가 연구용역('17.9~12월) 결과에 따라 법제화 및 확대 시행(기관·대상)은 곤란하지만 훈령·지침 등의 제도개선·보완을 통해 지속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규제비용관리제 법안*(김종석의원안, '17.1.25)에 대하여는 법제화 및 확대 시행은 곤란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른 정부의견을 반영하여 '18.3.7 법안소위에서 폐기하였다. 최근 유사한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송언석의원안, '19.5.20)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다.

* 중요규제 신설·강화시 예상되는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기존규제 정비

해외 사례

- (영국) 신설·강화규제가 기업·사회단체에 비용을 증가시킬 경우 기존규제 폐지·완화를 통해 비용을 상쇄시키도록 하는 “One-In, One-Out” 제도 도입('11년), “One-In, Two-Out”(‘13년), “One-In, Three-Out”(‘16년) 방식으로 대체하였으나, 최근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BIT(Business Impact Target) 제도 도입·운영중(‘16년)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Two for One Rule” 도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17.1월)

나. 운영절차

(1) 적용대상

규제비용관리의 대상은 신설·강화되는 규제 중 규제대상 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의 사업 활동에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는 규제이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규제, 국가 위기 상황 대처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는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을 제외하여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규제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있다.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제외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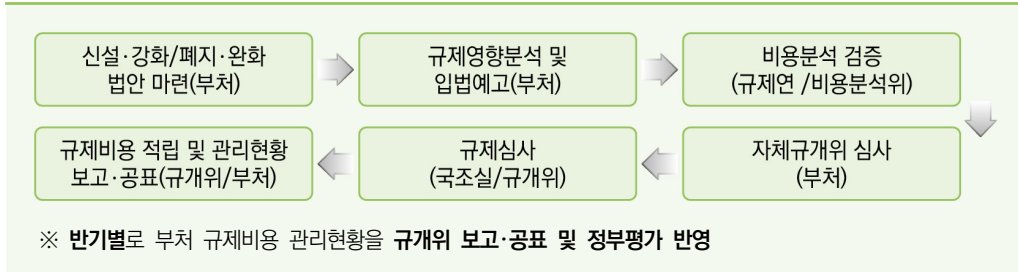
-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 **금융·외환시스템** 위기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경쟁을 촉진하는 규범
-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규제
- 1년 이하의 효력상실형 일몰기한이 설정된 규제

(2) 운영절차

규제비용관리제는 기존의 규제심사과정에 비용관리제 적용여부 검토 및 비용분석검증을 통한 비용적립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제 폐지·완화 규제를 동시에 제출하기 곤란한 현실을 감안,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규제비용 증가분과 폐지·완화로 인한 규제비용 감소분은 부처별 계정(Account)에 적립(Banking)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대상 규제는 연간균등순비용 10억 원을 기준으로 표준절차와 간편절차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준절차 대상 규제는 규제연구센터의 비용편익분석 검증과 함께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간편절차 대상 규제는 규제연구센터의 비용편익분석 검증만 거치며, 비용분석위원회의 2차 검증은 생략한다.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절차는 다음과 같다.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절차



(3) 운영관련 조직

(가) 규제연구센터

2014년 6월, 규제비용관리제의 운영을 위해 KDI와 한국행정연구원 산하에 규제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규제연구센터는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KDI와 한국행정연구원은 각각 경제부처와 사회부처의 비용편익분석 검증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연구원의 규제연구센터의 경우는 '18년 초기까지는 제도연구실이 규제연구센터에 포함되었으나 하반기부터 별도의 제도연구실로 분리되었다. 비용분석업무는 KDI의 경우는 분석평가실에서, KIPA(행정연구원)에서는 비용분석팀에서 전담하고 있다. 2019년 비용검증실적을 살펴보면 KDI에서는 신설강화 규제는 101건, 폐지완화 규제는 32건을 심사하였고, KIPA에서는 신설강화 규제는 192건, 폐지완화 규제는 19건을 심사하였다.

규제연구센터 현황

	KDI 규제연구센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사회 부처 규제비용분석 검증 비용분석기법 컨설팅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연구
인 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22명(소장 : 김정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9명(소장 : 이민호)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실(분석평가실, 제도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팀 (비용분석팀)

(나) 비용분석위원회

2014년 8월,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규제비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비용분석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총 5명으로 위원장 1인(규제심사관리관)과 규제연구센터장 2인, 교수 등 민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의 경우는 29회에 걸쳐 55개 안건을 심사하였다.

2.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및 주요 사례

가. 규제비용관리제 운영실적

2019년 28개 중앙행정기관의 운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713억 원의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다. 동 기간 중 신설·강화(Cost-In) 규제 84건으로 899억 원의 규제비용이 증가되고, 폐지·완화(Cost-Out) 규제 35건으로 1,612억 원의 순비용 감축이 이루어졌다.

또한 올해부터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차등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편익을 비용관리제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규제 차등화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면서 중소기업에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이다. 비용관리제와 연계하여 운영한 결과 총 5건의 규제 차등화 사례가 비용검증을 완료하여 Cost-Out 금액에 적용되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28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으며, 순비용이 증가한 기관이 7개, 순비용 증감이 없는 기관이 9개로 나타났다. 감축 규모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435억 원), 방송통신위원회(-375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7억 원) 등으로 규제 순비용을 감축하였고, 환경부(123억 원), 교육부(83억 원), 고용노동부(63억 원)등 은 규제순비용이 증가하였다.

누적 순비용에 있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3,980억 원), 국토교통부(-3,090억 원)가 감축 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등 15개 부처가 규제순비용을 감축하였고, 고용노동부(394억 원), 보건복지부(124억 원), 교육부(106억 원) 등 8개 부처는 증가하였다.

2019년 규제비용관리제 기관별 운영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 감축비용 누계순)

부처명	Cost-In		Cost-Out		규제비용 (*19년)	규제비용 누계 (*16.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84	89,919	35	-161,176	-71,258	-853,330	
1	농림축산식품부	5	1,992	2	-5,209	-3,217	-398,017
2	국토교통부	9	9,633	1	-6,283	3,350	-309,045
3	산업통상자원부	6	362	3	-43,849	-43,487	-58,662
4	산림청	0	0	7	-176	-176	-47,868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7,732	2	-34,456	-26,724	-43,181
6	방송통신위원회	2	19,573	2	-57,135	-37,562	-37,615
7	식품의약품안전처	10	4,314	9	-9,440	-5,126	-11,037
8	여성가족부	6	1,073	1	-14	1,059	-9,793
9	문화재청	0	0	1	-1	-1	-3,281
10	중소벤처기업부	0	0	0	0	0	-3,241
11	기획재정부	0	0	1	-445	-445	-2,733
12	관세청	0	0	0	0	0	-1,891
13	특허청	0	0	1	0	0	-1,886
14	행정안전부	4	-1,277	0	0	-1,277	-1,236
15	공정거래위원회	0	0	0	0	0	-276
16	경찰청	0	0	0	0	0	-
17	법무부	0	0	0	0	0	-
18	인사혁신처	0	0	0	0	0	-
19	소 방 청	0	0	0	0	0	-
20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0	0	0	-
21	국가보훈처	0	0	0	0	0	4
22	해양수산부	1	8,770	3	-3,324	5,446	2,152
23	문화체육관광부	4	2,443	0	0	2,443	3,266
24	금융위원회	7	14	1	-426	-412	2,785
25	환경부	15	12,288	0	0	12,288	5,808
26	교육부	5	8,255	0	0	8,255	10,580
27	보건복지부	5	8,455	1	-418	8,037	12,421
28	고용노동부	1	6,292	0	0	6,292	39,416

나. 주요 사례

(1) Cost-In 주요 사례

▶ Cost-In 규제 84건, 총 899억 원 증가

(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리 지침 부재
-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리 지침 마련 의무 부과
- 효과** 사업자에 영상기록장치 설비비용 및 유지관리비용 연간 42.44억 원 발생
 - ▶ 대형 교통사고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사회적 편익 발생

(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기준 개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 기존** 지상파 및 종편·보도채널 분담금 징수율을 매년 별도로 결정
- 개정** 종편·보도 채널을 지상파 산정기준 체계에 편입하고 지상파 채널의 분담금 징수율 산정기준을 재정비
- 효과** 지상파 사업자의 경우 전반적인 징수율이 인하됨에 따라 매년 사업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연간 약 27억 원 감소
 - ▶ 방송사업자 간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 제고

(다) 영세한 중소기업카드가맹점 범위 확대, *사회적 편익 반영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기존** 연간 매출액 5억원 이하 중소기업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
- 개정**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우대수수료를 적용 중소기업가맹점 확대
- 효과** 카드사 영업이익 감소(-6,347억원) 및 소상공인 영업이익의 증가(+6,347억원)
 - ▶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

(라)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보험·준비금 적립 의무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기업의 자력배상 한계 및 이용자 피해구제 어려움
- 개정** 이용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자 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준비금 가입 의무화
- 효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부담하는 연간 보험료 223억원 발생
 - ▶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가능 및 사고 발생시 기업 배상 부담 완화

(마)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구체화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 기존** 긴급복지 신고의무교육*에 대한 세부 규정 부재
 - * 신고의무자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있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게되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함(법 제7조)
- 개정**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내용,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효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비용 연간 81.6억 원 증가
 - ▶ 신고의무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 예방

(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결과표시 의무화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기존**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에 관한 규정 미비
- 개정** 모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자체평가하고 평가결과(재활용 용이성)를 포장재에 표기하도록 규정
- 효과**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동판교체비용 및 기기분석 비용 약 67억 원 발생
 - ▶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소비에 있어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포장재의 재활용 활성화

(2) Cost-Out 주요 사례

▶ Cost-Out 규제 35건, 총 1,612억 원 감축

(가) 전파사용료 감면기한 연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시행령)

- 기존**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개정** 알뜰폰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효과** 알뜰폰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편익 약 344억 원 발생
 -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및 가계통신비 인하

(나)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23개 품목)에 대한 제품시험검사 제외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기존** 생활용품 중 위해도가 낮은 23개 품목(우산, 텐트 등)도 KC마크 표시, 제품안전성 시험검사 의무화
- 개정** 위해도가 낮은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23개 품목)'은 KC마크 표시, 제품안전성 시험검사 면제
- 효과**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안전검사 수수료 및 행정비용 연간 약 239억 원 절감
 - ▶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다)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산업부,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 기존** 설치비용이 높은 고정식 수소충전소 설치만 가능
- 개정** 이동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 허용 및 시설기준 규정
- 효과**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사업자의 설치비용 연간 약 196억 원 절감
 - ▶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 및 수소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

(라)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공유주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기존**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영업자가 영업행위를 하면 영업신고 불가
- 개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공유주방 허용
- 효과**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조리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절감을 통한 편익 연간 약 63억 원 발생
 - ▶ 투자비용 감소를 통해 창업기회를 확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영업자들의 영업 편의성 제고

(3) 규제 차등화 편익

(가)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 가입범위 규제 차등화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화
- 차등화** 매출액 및 이용자수를 고려하여 최저가입금액 차등화(0.5~10억원)
- 효과** 일률적인 최저가입금액을 설정하는 경우 대비 기업 부담 약 562억원 감소

(나) 농약 판매·구매정보의 전자적 기록·보존의무 유예
(농림축산식품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 내용** 농약판매업자에 농약 판매·구매정보의 전자적 기록 및 보존의무 부과
- 차등화** 컴퓨터가 없는 약 350개 영세 판매업소를 위해 유예기간(6개월) 부여
- 효과** 컴퓨터 및 프로그램 구입시기가 6개월 유예됨에 따라 영세한 농약판매업자의 유지관리비 연간 약 52.5백만원 절감

제4절

규제정보포털 운영



이용하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406, dufma@opm.go.kr

1. 규제정보포털 개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국민과 소통하고자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운영하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선해 가는 국민참여형 정보시스템으로, 규제관련 법령정보, 규제개선 건의, 정부 발표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성과 등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와 행정부의 규제관련 내부 업무처리 지원을 위하여 규제정보화시스템 (ris.go.kr)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시스템의 처리현황 및 결과는 ‘규제정보포털’과 연계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한다.

‘규제정보포털’의 주요 기능은 ①법령내의 규제정보 제공 ②범정부적 규제혁신 주요과제 공개 ③규제 샌드박스 안내 ④ 규제법안 처리현황 및 관련법령 소개 ⑤규제심사 일정·심사결과·회의록, 규제혁신 보도자료·홍보자료,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등 공개 ⑥규제혁신 건의 및 결과 확인 등 국민의 규제혁신 정책 참여 및 소통 등 범정부적 규제정보의 종합적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2.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을 통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충실한 규제혁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의 정보를 공유하여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은 기본적으로 규제현황, 규제혁신과제, 규제샌드박스, 규제법령, 알림마당 메뉴를 구성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 먼저, 규제현황과 규제혁신과제에서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규제현황과 규제개선과제의 현황과 추진실적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알림마당을 통해서도 정부가 발표하는 범정부적 규제혁신 정책과 보도자료, 각 부처에서 발간하는 규제 관련 홍보자료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규제정보포털 초기화면

먼저, 규제현황에서는 규제등록제도에 대한 정보와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규제현황을 제공하고 있으며, 규제현황을 다시 부처별·맞춤형 등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쉽게 조회하여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규제혁신 과제 코너를 통해서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와 협업을 통하여 범 정부적으로 발표한 규제혁신과제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신산업 현장제기 규제혁파과제, 혁신성장 선도사업과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제, 경쟁제한 규제혁파 과제, 영업·입지 규제혁파 과제, 시장진입·영업규제혁신 과제, 중기·소상공인 규제혁신방안, 창업 규제혁신 방안, 행정조사 혁신방안 과제,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과제,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과제, 민생불편 규제혁신방안, 기업현장애로 개선과제 등으로 분류하여 게재하고 있으며, 각 과제별로 부처별 담당자와 개선방안, 추진실적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용자는 해당 과제의 세부내용을 찾아보고 필요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은 바로 소관부처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공유·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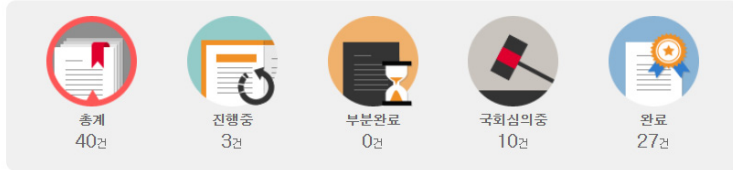
범정부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

규제혁신과제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 신산업 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
- 혁신성장 규제혁파 과제
-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경쟁제한 규제혁파 과제
- 영업·입지 규제혁파 과제
- 시장진입·영업 규제혁신
- 중기·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 창업 규제 혁신방안
- 행정조사 혁신방안 과제
- 온라인·전자문서 활용 확대
- 시험·검사기관 규제혁신

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혁신 과제의 추진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소관부처	완료예정일	진행사항
40	전자통관심사 적용 요건 완화	관세청	2018-12-31	완료
39	수입주류업자들의 수입주류 폐기방식 확대	관세청	2018-10-31	완료
38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	농림축산식품부	2018-12-31	국회심의중
37	농지의 전용허가 적용기준 명확화	농림축산식품부	2018-12-31	국회심의중
36	정부양곡 국내산 쌀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발급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2018-05-31	완료
35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분석에 대해 저작권 침해 예외 인정	문화체육관광부	2019-06-30	국회심의중
34	크루즈 관광상품 허가요건 완화	법무부	2018-06-30	완료

다음으로 규제샌드박스 메뉴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제도와 업무처리 절차를 소개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체계 및 승인기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규제정보포털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4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융합분야),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분야),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분야), 금융위원회(금융혁신))의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기업들이 편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부처 홈페이지와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화면

The image displays two screenshots from the 'Better Regulation' portal. The left screenshot shows the 'Regulatory Innovation' section with a focus on 'Innovation's Experimental Regulatory Sandboxes'. The right screenshot shows the 'Regulatory Sandbox Operation System' page, which details the application process and lists the four participating agencies: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t also includes a flowchart of the application process and a list of participating agencies.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한편, 규제법령을 통해서는 정부입법 추진중인 법안 중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되는 정부입법 규제를 사전 공개하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접수 받고 있으며, 의원발의 법안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

알림마당에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범정부적 규제혁신 정책과 보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부처에서 발간생하는 보도자료를 별도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보도자료 이외에도 규제개선 동영상, 간행물, 인포그래픽 및 개선사례, 홍보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규제조정실과 소관 부처가 협업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규제정보포털에 등록되는 다양한 규제관련 소식을 주간단위로 재분류하여 매주 목요일 마다 4천여명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 뉴스레터 수신을 원하는 이용자는 규제정보포털-알림마당의 뉴스레터 메뉴에서 '메일링신청'을 통해 매주 발행되는 규제혁신 뉴스레터를 수신할 수 있다.

규제@뉴스레터

뉴스레터

규제개혁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모아서 뉴스레터로 보내드립니다.



그 외에 '규제개혁위원회' 메뉴를 통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규제심사 메뉴에서는 규제심사 일정과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어떻게 심사했는지 그 규제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며, 각 부처, 지자체 등 규제정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규제정보포털이 규제개혁의 온라인 국민 소통창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록

제5절

규제등록제도 운영



이다은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429, leeda@opm.go.kr

1. 개요

정부는 국민과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규제의 명칭·내용·존속 기한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한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 대상 및 단위

규제등록제도에 의해 등록·관리되는 규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규제 중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만 해당된다.

행정규제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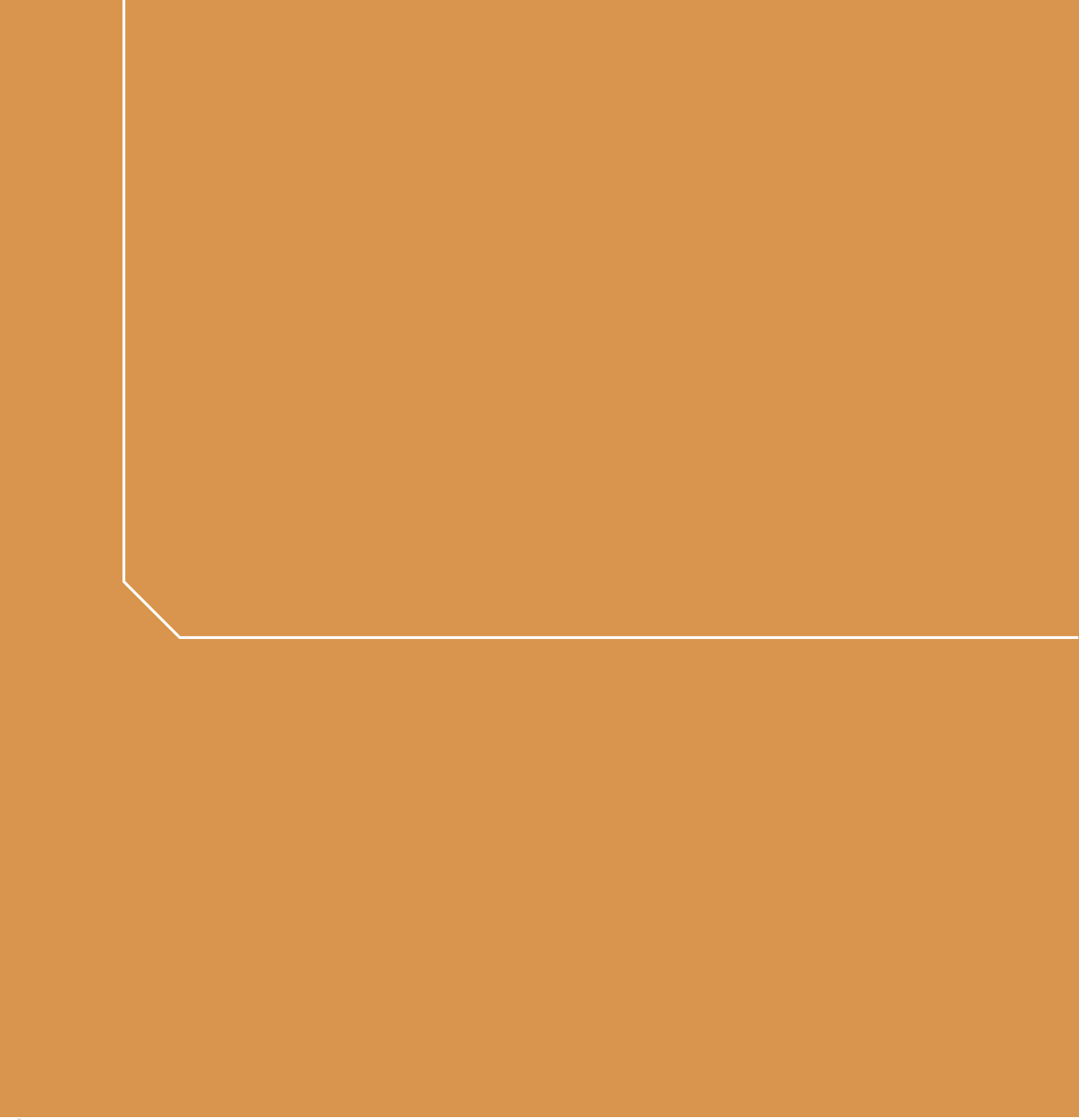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등록제도 도입이후부터 2015년 전면적인 제도개편 이전까지 정부는 규제등록시 '규제사무'를 하나의 등록단위로 하여 제도를 운영해왔다. 즉, '규제사무'별로 규제정보카드가 작성되고 하나의 규제정보카드를 한건의 등록규제로 간주한 것이다. 이때 '규제사무'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개의 조(條)를 묶어서 하나의 '규제사무'로 정하였다. 담당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규제사무'가 정해졌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며, 부처별 규제수 및 총 규제수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또한 주관적인 '규제사무'가 실제로 법령에 어떻게 규정되어있는지를 국민들이 한 번에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신설 또는 변경되었음에도 부처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등록체계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9월, 규제등록제도의 전면개편을 실시하였다. 우선 규제등록 단위를 '규제조문'으로 변경하여 등록자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등록의 객관성을 확립했다. 그리고 규제등록 시스템과 법령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를 규제등록시스템으로 전송받고, 각 부처 규제 담당자들이 해당 규제정보를 즉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등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등록된 규제조문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법령정보시스템(www.law.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특히, 규제정보포털에서는 수요자별 관심분야에 대한 등록규제 조회가 용이하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생활규제 정보(필요한 조치 및 구비 서류, 절차, 관련 법령 등)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국민은 규제정보포털에서 음식점 창업 관련 규제를 '사전 준비 → 점포 준비 → 영업시설 등 설치 → 위생 관리 → 영업신고 및 허가 등 → 사업의 등록'과 같이 절차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제4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제4절 국토·해양 분야

제5절 농림·산림 분야

제6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제7절 노동·환경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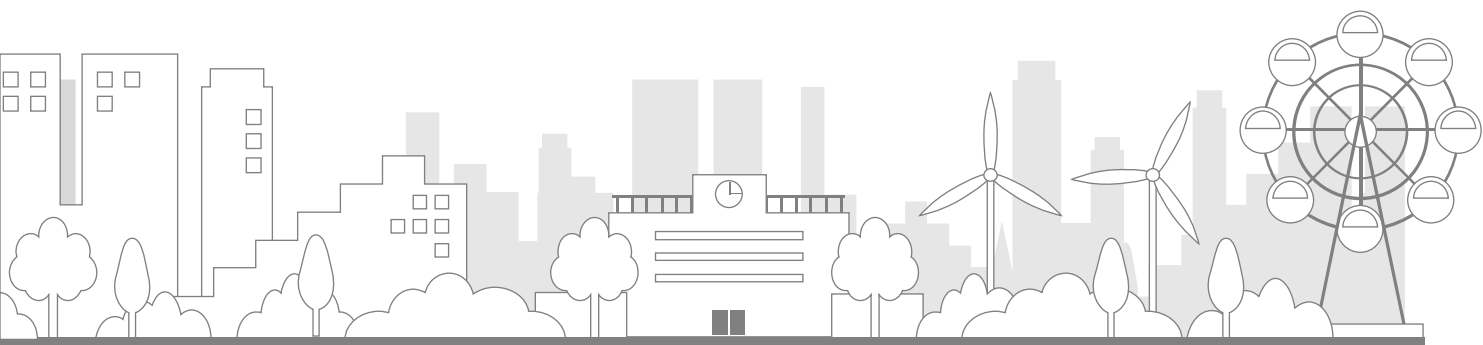
제8절 교육·문화 분야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제12절 규제영향분석



제4장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제1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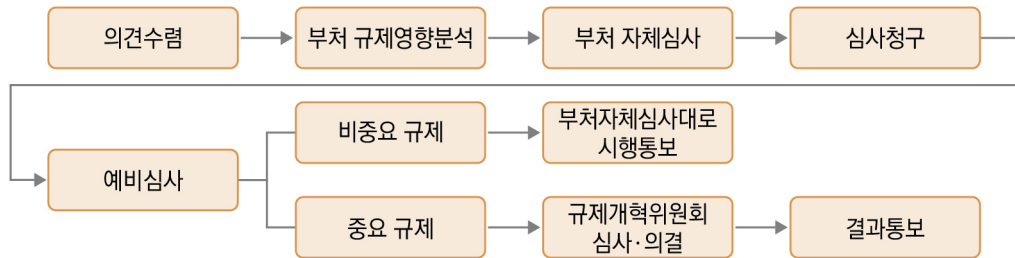
이정호 사무관
Tel. 044-200-2414, turtleb@korea.kr

1. 신설·강화규제 심사 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본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 인지 여부를 결정한다.(동법 제11조)

예비심사 결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경우는 예비심사로 심사를 종결(위원회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규개위에 상정하여 본심사를 실시한다.(동법 제12조) 위원회는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14조)

중요규제에 대한 심사는 심사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2. 2019년도 신설·강화 규제 심사 결과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974건(중요규제 22건, 비중요규제 972건)을 심사하여 이 중 3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고 11건에 대해 부대권고를 하였다. 각 부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규제를 개선하였다.

'19년 부처별 신설·강화 규제 심사결과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비중요 (B)	2019년도 규제심사 결과				
				중요				
				계 (C= 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기획재정부	8	13	13	0	0	0	0	0
금융위원회	33	65	64	1	0	1	0	0
금융감독원	4	6	6	0	0	0	0	0
공정거래위원회	6	6	6	0	0	0	0	0
관세청	6	7	7	0	0	0	0	0
산업통상자원부	32	48	48	0	0	0	0	0
중소벤처기업부	7	10	10	0	0	0	0	0
특허청	1	1	1	0	0	0	0	0
국토교통부	94	187	181	6	0	0	2	4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2	2	2	0	0	0	0	0
해양수산부	29	45	44	1	0	0	1	0
농림축산식품부	21	47	47	0	0	0	0	0
산림청	6	12	12	0	0	0	0	0
농촌진흥청	3	3	3	0	0	0	0	0

부처별	법령수	심사 규제수 (A=B+C)	2019년도 규제심사 결과					
			비중요 (B)	중요				
				계 (C= D+E+F+G)	철회권고 (D)	개선권고 (E)	부대권고 (F)	원안동의 (G)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	24	24	.0	0	0	0	0
방송통신위원회	12	16	16	0	0	0	0	0
원자력안전위원회	6	17	16	1	0	0	0	1
고용노동부	12	53	49	4	0	0	3	1
환경부	60	113	112	1	0	1	0	0
기상청	1	1	1	0	0	0	0	0
교육부	20	30	29	1	0	0	0	1
문화체육관광부	12	19	19	0	0	0	0	0
문화재청	6	13	13	0	0	0	0	0
보건복지부	36	58	53	5	0	1	4	0
식품의약품안전처	54	100	99	1	0	0	1	0
외교부	2	2	2	0	0	0	0	0
통일부	3	3	3	0	0	0	0	0
국무조정실	1	1	1	0	0	0	0	0
행정안전부	13	20	20	0	0	0	0	0
법무부	5	15	15	0	0	0	0	0
인사혁신처	1	1	1	0	0	0	0	0
경찰청	7	14	14	0	0	0	0	0
소방청	12	20	19	1	0	0	0	1
국민권익위원회	1	2	2	0	0	0	0	0
계	532	974	952	22	0	3	11	8

제2절 재정·금융 및 공정거래 분야

1. 기획재정부



이현정 사무관
Tel. 044-200-2398, hjlee2838@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관세사법 시행령 등 총 8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관세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04.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담배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26)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2)
(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1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7)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1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1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계	-	원안의결 13	신설 6, 강화 7 (비중요 13)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나. 2019년도 신설·강화제 세부심사내용

(1) 관세사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관세사 정보공개 의무 신설

- 관세사의 정보공개 관련 세부사항(공개범위, 공개방법) 규정

심사결과 정보공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시행령 위임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개범위에 포함된 사항들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워 공개를 의무화하는데 따르는 부담이 크지 않고, 유사 직종인 변리사의 경우와 규제수준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세사 연수교육 의무 신설

- 연수교육 시간 및 내용 관련 세부사항(1년에 8시간 이상 이수,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 포함) 규정

심사결과 교육이수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 전문자격사의 법정 교육 이수시간과 규제수준이 유사하고, 교육 내용은 법에 규정된 교육이수제도의 목적(직업윤리 제고)에 부합하며, 질병·휴업 등으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예외도 인정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국유재산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 규정 신설

- 물납 비상장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를 가족과 관계법인으로 확대

심사결과 「국유재산법」을 개정함에 따라 위임사항인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다수의 세법에서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상의 특수관계인 범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신설**

- '19.4.1~5.6 및 8.1~8.31동안 석유정제업자 등의 과다반출, 과다수입, 과다구입 및 보유, 판매기피 또는 과다공급을 금지
- 반출 등과 관련된 정보 제출 의무 부과

심사결과 유류세 인상 발표 전 선제적으로 매점매석을 금지하여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석유정제업자 등의 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과거에도 유류세 인하 기한 도래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여 관련 사업체의 부당한 폭리 취득 행위를 방지해 온 점, 매점매석 감시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집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담배사업법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담배제조장비 제공의 금지 **신설**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장 내 담배제조장비를 갖추고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여 담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

심사결과 불법적 영업행태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및 관련 규제를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제담배점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점, 부칙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어 담배유통 판매점의 업종 전환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고,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기조 및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조치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담배소매인 명의 대여 제한 **강화**

-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

심사결과 현재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는 처벌 대상이나, 명의를 빌려 준 소매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법적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약사법」등 여러 법령에서도 등록증 등의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적발 시 빌려준 자와 빌린 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어 특별히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신설**

- 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경고처분 부과
- 법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거래정지처분 부과

심사결과 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 시 기준 부재로 자의적인 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있어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위반사항·횟수 및 위반금액별로 차등화된 처분기준을 마련하였고, 위반의 동기 및 사안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처분의 감경·면제 근거도 마련하는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6)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강화 2)

심사내용 공공기관의 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금지 **강화**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단체 및 그 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의 수의계약 금지

심사결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퇴직자 단체간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없어 특혜성 계약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바,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동 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퇴직자 단체와의 특혜성 수의계약만을 금지할 뿐 일반경쟁 등 공공계약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공사 확대 **강화**

-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발주 전문공사 등의 범위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7억→10억원)

심사결과 중소·지역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공사비 및 물가 등 변화한 업계 여건을 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지역제한 입찰여부는 강제규정이 아닌 발주기관의 선택사항으로, 세부 업종별·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재량적 판단하에 제한입찰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규제강화 조치로 지역제한 입찰

적용 범위에 추가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전문공사 건수가 많지 않아 추가적인 경쟁제한효과도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 및 지자체 계약법령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관세법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보세판매장 특례 중소·중견기업 제외 요건 추가 **강화**

-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법인(외국법인 포함)과 지배 또는 종속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면세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

심사결과 중소·중견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이 특례 혜택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중소·중견기업이 관세법상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합리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중소·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제한경쟁입찰이 아닌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면세점 특혜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확대 **강화**

-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및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심사결과 현행 규정상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적용대상 품목 범위가 협소하여 불법 쓰레기 밀수출 행위를 방지하기에 부족하여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됨. 적용범위가 다소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나, 고시를 통해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연장 **강화**

- 사망사고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
 - (현행) 사망근로자 수에 따라 최소 6개월~최대 1년6개월 → (개정) 최소 1년~최대 2년

심사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여 업체의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임범위 내(2년)에서 사고 규모에 따라 입찰참여 제한 기간을 차등화하고 있고, 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를 발생시킨 업체의 입찰 또는 하도급 참가를 2년 이내 범위에서 금지하고 있는 등 다른 법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뇌물 제공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감경 배제 **강화**

- 뇌물 제공을 이유로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경우 참가 제한기간 감경규정 적용을 제외

심사결과 뇌물 제공자에 대한 감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감경 여부도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인정됨.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령) 및 방위사업(방위사업청훈령) 분야의 경우에도 뇌물 제공시 제재 감경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도 권익위 권고를 수용, 뇌물제공자에 대한 제재 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금융위원회



집필자

이현정 사무관
Tel. 044-200-2398, hjlee2838@opm.go.kr
이종상 전문위원
Tel. 044-200-2413, jslee03@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금융투자업규정 등 총 3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65건의 규제를 심사,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6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04)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2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7)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9)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0)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2)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0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록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15)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16)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7) 전자등록업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07.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8) 전자등록업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07.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9)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0)	원안의결 5	강화 3, 신설 2 (비중요5)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0)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 1 (비중요3)
(23)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3	강화 1, 신설 2 (비중요3)
(2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22)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8)
(27)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8)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9)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0)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1)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2)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0)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4)
(33)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본위원회 (2019.12.27)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강화 4, 신설 1 (중요1, 비중요4)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64	신설 29, 강화 36 (중요 1, 비중요 64)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금융투자업규정 (신설 4)

심사내용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등 **신설**

- 거래정보저장소가 거래정보의 수집·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
-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새로운 시장인프라기관(TR)의 도입 및 운영(거래정보의 수집·보관 및 관리업무)에 있어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규정 마련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TR의 고유업무와 관련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되며, TR의 고유업무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거래정보의 제공 **신설**

- 거래정보저장소가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금융당국 등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 및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TR이 수집한 거래정보가 감독당국에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국제 권고기준을 준용하여 거래정보의 제공을 명시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거래정보저장소의 선정 **신설**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 수집·보관 및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서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 근거 마련
- 거래정보저장소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심사결과 감독당국의 장외파생상품시장 전반의 리스크 파악 및 선제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으로, 국내여건 및 국제 권고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내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도입목적, 업무특성 및 국제기준(PFMI)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거래정보저장소 도입시 예상되는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거래정보의 보고 **신설**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참여자(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게 거래정보저장소로의 거래정보 보고의무를 부과

심사결과 현행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보고체계로는 금융당국이 시장 전반의 선제적 리스크 파악 및 관리가 어려워, 거래정보에 관한 현행 보고체계를 효율적이고 체계화하기 위한 통일적인 보고의무체계 구축이 긴요함. 보고 대상범위를 일부로 한정하였고, 보고의무 경감 및 면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영세한 중소기업가맹점의 기준 **강화**

- 우대수수료를 적용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2구간에서 4구간으로 확대

심사결과 내수부진·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는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3년 주기)하여 산출된 인하여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카드매출 증가세, 마케팅비용 절감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강화 2)

심사내용 영세한 중소기업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기준 **강화**

- 영세·중소가맹점 적용 우대수수료율을 연간 매출액 5~10억원 구간은 1.4% 이하로, 연간 매출액 10~30억원 구간은 1.6% 이하로 규정

심사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 등의 카드수수료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3년 주기)하여 산출된 인하여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예상되는 수수료 감소 규모는 카드사 전체 수수료 수익 및 적격비용 재산정 인하여력 등을 감안할 때 감내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결제대행업체 등을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적용 **강화**

-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연간 매출액이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 신규가맹점의 최초 반기말까지 매출액 기준이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할 경우 사업 개시 시점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소급하여 적용

심사결과 온라인사업자, 개인택시사업자 및 신규사업자의 경우 실제 매출규모가 우대가맹점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우대수수료율을 미적용하고 있음. 실질적 영세 소상공인임에도 업종 특성상 직접 가맹점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업초기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공정성을 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금번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는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인하여력에 기초한 것으로 카드매출 증가세, 마케팅비용 절감 추진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요건 등 **신설**

- 주권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갖추어야 할 등록요건(인력-상시 근무 공인 회계사 수 등,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감사보고서 사전심리 의무화, 보상 체계)을 신설

심사결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호 역할이 중요한 상장사 감사인에 대하여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인정됨. 최근 10년간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기초한 공인회계사 수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간의 관계, 전체 평균 등을 감안할 때 등록요건(40인 기준)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로 평가되며, 지방 회계법인 합병의 현실적 어려움 및 지방 상장사 중 지방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방 회계법인의 등록요건을 차등 적용(20인

이상)하고 있는 등 규제 수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대상자 추가 **신설**

- 전자금융업자 및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전자금융거래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에 대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① 고객확인, ② 의심거래보고, ③ 내부통제강화(업무지침 마련, 임직원 교육 등))를 부과

심사결과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 및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개정안 시행으로 피규제자의 업무부담 및 비용이 다소 발생되겠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거래건전성 제고 등의 규제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대부업자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신설**

- 금융투자업자의 무분별한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행위(①서면으로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행위, 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행위, ③전문투자자 지정을 예상하고 미리 투자권유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를 법령상 금지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포함

심사결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적절한 전문투자자 지정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여 금융투자업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개정안은 전문투자자 지정 권한을 금융투자업자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부적절한 지정 행위에 대한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 편의 개선 및 개인별 투자정보의 적절한 반영 등의 지정 권한 확대 효과 및 제재근거 마련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특별히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보험업법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대주주 심사요건 정비 강화

- 보험업 허가시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SPC의 업무집행사원 외 SPC에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 및 사원도 대주주 요건을 심사

심사결과 현행 관련 법규상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요건 심사 대상이 보험업 허가시와 대주주 변경승인시 서로 상이하므로 규제차익 해소를 위하여 이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개정안은 보험업 허가시 대주주 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시 및 저축은행 등 여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채발행한도 산출 대상 추가 강화

- 사채발행한도 규제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을 포함
- 사채 및 자본증권의 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심사결과 보험회사 차입방법 중 기존 후순위채권은 사채발행한도 규제 대상인 반면 신종자본증권은 발행한도 규제가 없으므로 유사한 자본확충 수단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자 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신종자본증권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일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등 후순위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채발행한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지급여력비율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명시적인 사채발행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의 명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합리적 조치로 평가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대부업자에 대한 연체이자율 상한 신설 신설

-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약정이자율 + 3%p 이내”로 제한

심사결과 대부업자의 대출은 그동안 일반적으로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약정이자율을

부과했던 관계로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최근 법정 최고금리와 상당 폭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연체 가산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인정됨. 저신용 대부 이용자의 금융비용부담 완화, 대부업자의 건전성 영향 및 여타 여신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의 규제에 평가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은행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신설**

- 대출금리 부당산정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①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 ②고객에 대한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행위)을 규정

심사결과 대출 고객들이 대부분 은행이 제시한 금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정할 경우 이에 대해 대항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감안, 불공정영업행위임이 분명한 경우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금지행위로 열거한 유형과 금지행위 적용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업계-금융당국간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피규제자(은행)의 규제 수용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보험계약대출의 집중관리 및 활용 근거 마련 **강화**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활용하는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에 보험계약대출 사항을 추가

심사결과 여신심사를 고도화하고, 가계부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정보의 집중관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보험계약대출의 법적성격이 대출과 달라 정보집중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경제적 실질 및 법령상 정보집중 가능 범위 등을 감안할

때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보험계약대출과 성격이 유사한 예·적금 담보대출,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정보가 집중·활용되고 있어 특별히 불합리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고객확인 사항 주기적 점검의무 부과 **강화**

- 거래유지 고객에 대한 주기적 고객확인 수행,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

심사결과 FATF 국제기준은 금융회사등이 고객에 대한 확인을 실시한 이후 확인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의 규제 강화 필요성이 인정됨.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이미 금융회사등에 대한 고객확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다, 국제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적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며, 금융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고객확인 의무에 확인사항의 지속 점검 의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규제준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보험업 감독규정 (강화 2)

심사내용 내국법인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강화 **강화**

- 보험회사 허가시 대주주인 내국법인의 부채비율 요건을 200% 이하로 조정(기존 300% 이하)

심사결과 현행 관련 법규상 보험회사 설립(보험업 허가)시와 인수·합병(대주주 변경)시 내국법인 대주주 심사 요건이 상이하므로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이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업권 간 상이한 내국법인 부채비율 요건 및 보험업 허가·변경시 대주주 심사 요건을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T/F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인 데다 향후 신규로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피규제자(보험업 신규허가 신청자)의 규제 수용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계획 세부요건 정비 **강화**

- 보험업 허가시 제출받아 심사하는 보험회사의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 (①경영전략 마련, ②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타당성 있을 것, ③추정재무제표의 일관성 유지 및 합리적 설명이 가능할 것, ④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을 구체화

심사결과 현재 보험업 허가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심사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상당히 추상적인 바, 인허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사업계획 요건에 대한 추가 없이 세부요건만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규제 명확화·투명화에 따른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비용 절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규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불분명한 사업계획 세부요건을 그간의 허가 심사시 통상 적용되었던 기준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특별히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 **강화**

-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가중평균금리 8.5% 이하, 최고금리 12% 미만으로 각각 8.0%p 하향 조정

심사결과 중금리대출 인정 금리요건을 비용요인, 중금리대출 취급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으로써 중·저신용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호금융(신협)의 비용구조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규제준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일 뿐으로, 상호금융은 해당 조항 준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특별히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강화 2)

심사내용 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 **강화**

-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가중평균금리 16%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으로 각각 0.5%p 하향 조정

심사결과 증금리대출 인정 금리요건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조정함으로써 중·저신용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저축은행의 비용구조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규제준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일 뿐으로, 저축은행이 준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특별히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정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 정비 **강화**

- 저축은행의 부동산 관련 업종(PF대출·건설업·부동산업)에 대한 합계 신용공여한도를 신용공여 총액의 50%로 일원화

심사결과 부동산관련 신용공여한도 조항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 쏠림현상을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세부업종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부동산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단순화·명확화함으로써 규제허점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평가되며, 부동산 관련 업종(부동산임대업 포함)에 전체 대출의 50% 이상이 쏠려 있는 저축은행의 경우 이를 해소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되나,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및 예금자 위험 감소 등의 규제 편익을 감안할 때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강화 2)

심사내용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정비 **강화**

- 신용카드사의 가계신용대출(카드론 외 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복수 카드론에 대한 추가 충당금 부과 의무를 '카드론 외 신용대출'에도 적용

심사결과 '카드론'과 '카드론 외 신용대출'간 규제차익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카드사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내용 및 성질상 동일한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규정 개정시 카드사의 추가적인 충당금 적립에 따른 투자기회 상실의 기회비용도 미미한 수준으로 추산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금리대출 인정기준 정비 **강화**

-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신용카드업자(카드사) 및 신용카드업자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사(캐피탈 등)로 구분하여 차등 조정
 - 카드사: 가중평균금리 11.0%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
 - 캐피탈 등: 가중평균금리 14.0% 이하, 최고금리 17.5% 미만

심사결과 중금리대출 인정 금리요건을 비용요인, 중금리대출 취급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정함으로써 중·저신용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업권의 비용구조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규제 수준으로 판단되며,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도출한 방안으로 기 협의되어 발표된 사항임을 감안할 때 피규제자(여전사)의 규제 준수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자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강화**

- 금융회사등의 상법상 자회사로서 금융거래를 하는 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규정 적용대상을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해외자회사등(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으로 확대

심사결과 우리나라는 지난번 FATF 상호평가지 자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규정 부재를 지적받은 바 있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 차원에서의 필요성이 인정됨. 동 개정안은 규제의 정도,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및 금융거래 건전성 제고 등 규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 주요국의 자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전자등록업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전자등록업 허가 심사기준 **신설**

- 전자증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력, 물적·전산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요건에 관하여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허가제에 관한 제도의 실효적 운용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전자증권제도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전자등록업 허가요건 운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제정(안)은 자본시장 관계기관(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및 거래소)의 허가요건 규정 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사실상 단독운영이 예상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미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히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자등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적립, 분담 의무 및 구상방법 **신설**

- 전자등록기관: 영업 시작 전까지 수행예정인 업무의 허가단위에 따른 최저자기자본 이상의 재원을 초과분 해소 목적의 적립금(전자등록적립금)으로 적립
- 계좌관리기관: 전자등록적립금을 소진하였음에도 잔여 초과분이 존재하는 경우 각 계좌관리기관의 전자등록기관 이용비율에 따라 해당 잔여분을 분담

심사결과 現 전자증권제도가 초과분 발생 대응에 대해 사후 연대보전책임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제도 참가기관의 책임분담액을 사후적으로 산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중심운영기관인 전자등록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한 초과분 해소를 위한 별도의 재원을 미리 준비토록 하는 등 규제의 불가피성이 인정됨. 제도 상황 및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되며, 사실상 전자등록기관으로 단독 운영이 예상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전자등록적립금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으로 특별히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전자등록업규정 (신설 2)

심사내용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실물증권의 보관기관 범위 **신설**

-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실물이 보관되어야 할 장소로 이미 법에 규정된 외국 전자등록기관 외에 ①외국 전자등록기관의 출자 기관, ②국제적 업무수행 기반·능력이 검증된 기관을 규정

심사결과 실물 발행을 금지하는 전자증권법의 원칙과 실물 발행이 강제되는 자국 증권법의 규제를 받는 외국법인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실물이 국외에 보관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동 제정(안)은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없는 외화증권의 예탁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해당

국가 증권예탁기관 또는 국제적 보관기관에 보관)을 준용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외국법인등에게 별도의 새로운 부담을 주지 않는 등 규제 목적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비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자등록 의무대상 주식등의 범위 **신설**

- 전자등록 의무대상에 상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전자등록 되어 있거나 전자등록이 예정된 증권과 연계되어 있는 ① 우선주 등의 종류주식, ② 신주인수권증서·증권을 포함

심사결과 이미 전자등록 되었거나 전자등록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과 연계되는 종류주식, 신주인수권증서 및 신주인수권증권 역시 전자등록 의무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자본시장법상 現 예탁제도하에서도 종류주식, 신주인수권증서·증권은 이미 실물 발행 없이 일괄 예탁발행 되고 있어 제도 참가자의 추가적 부담은 없는 반면 편리성과 효율성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업무상 추가 부담도 없어 규제수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보험업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불완전판매방지교육 강화 **신설**

-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보수교육과 분리하여 별도의 집합교육으로 실시

심사결과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조건, 가입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분쟁 발생 축소를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불완전판매가 일정 수준 이상인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며, 기존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분리하여 강화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고, 규제부담이 크지 않아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독당국의 행정적 집행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예대율 규제 **신설**

-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에 예대율을 추가

심사결과 타 수신업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업권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대출증가 방지 및 건전성 강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업권간 형평성 및 “동일기능-동일규제” 측면에서 동 규제 도입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대율 준수를 위한 대출 축소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위축 및 경영악화 우려 등을 감안하여 소형저축은행은 예대율 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설 2, 강화 3)

심사내용 PEF 회계기준 위반시 업무집행사원(GP) 제재근거 마련 **신설**

- PEF의 제재사유에 회계기준 위반을 추가
- 자본시장법에 부합하게 [별표6]의 제목을 ‘업무집행사원’에서 ‘업무집행사원 및 해당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으로 정비

심사결과 현재 PEF의 경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업무집행사원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상황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발생 우려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회계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기준 위반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여타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의 규제라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동산 개발신탁 자금조달 및 수탁된 금전의 운용방법 **강화**

- 금전수탁에 대한 별도 한도를 정하지 않고(현재는 사업비의 15% 이내), ‘사업비 사용 목적 금전수탁 +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이 사업비의 100% 이내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도록 금전수탁 규제 변경
- 부동산 신탁업자가 수탁한 금전의 운용방식을 투자성 없는 방법으로 제한

심사결과 규제 강화를 통해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사업비를 위탁자의 여건에 맞게 원활히 조달하고 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해당 규제는 금전수탁 한도를

완화하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수탁한 금전의 운용방식 제한을 신설하고 수탁액과 차입액의 합에 대한 한도를 규정하여 규제 완화를 보완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에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동화증권 관련 분산투자 규제 강화 **강화**

- 공모(公募)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유동화증권 분산투자 규제시 유동화증권의 발행인이 아니라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의 원 발행자를 기준으로 적용

심사결과 유동화증권의 경우 기초자산이 동일하면 사실상 같은 증권이지만 발행법인(SPC)이 다르면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원 발행자가 동일한 유동화증권에 대해 분산투자규제보다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가능함. 이에 기초자산이 동일한 경우 같은 발행주체가 발행한 것으로 보아 특정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이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현행 분산투자규제의 기준을 실질에 부합하게 변경하는 것이고, 현재 투자자산이 아닌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유동화증권부터 적용되므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에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익자총회 제도 개선 **강화**

-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되, 결의를 위한 출석수익자 의결권 행사비율은 강화

심사결과 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가 강화(13.5월)된 이후 수익자총회 결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익자총회의 성립가능성을 높여 펀드의 효율적 운용을 가능케 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보다 적은 의결권으로도 수익자총회 결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방지하고자 출석수익자의 결의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에 판단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동산개발신탁 자금조달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 사업비 관련 조달한도 비율 초과에 대한 제재를 정비하고, 수탁한 금전의 운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

심사결과 제재를 위한 명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법 준수를 위한 이행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를 통한 자금조달 규제 개선 효과, 제재근거 신설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규제 개선** 강화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신탁계약 등에 규정해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사항을 변경사유·절차, 손실보상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변경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로 인한 손실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신탁계약, 정관 등에서 기재해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변경사유, 변경절차, 손실보상 등의 항목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그 세부내용까지 규제하지는 않고 있으며, 규제부담이 크지 않아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법인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시가평가제도 도입** 강화

- 가격 변동성이 큰 MMF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시가평가제 근거 마련

심사결과 현재 국내 MMF의 기준가격 산정시 장부가 평가 방식을 적용하되, 시가와외의 괴리율을 $\pm 0.5\%$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시가와 장부가간 차이로 인해 시장 불안시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을 취하려는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환매에 나설 경우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변동성 높은 MMF에 대해 장부가평가 방식이 아닌 시가평가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변동성 높은 MMF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외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운용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신설

- MMF에 대한 운용규제 위반시 제재근거 신설

심사결과 현재 MMF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정의조항에 따라 운용규제를 하고 있으나 동 규제 위반시 제재근거가 불명확하여 규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제재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미 MMF가 준수하고 있는 운용기준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타 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도 운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히 과도한 규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보험업 감독규정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 **강화**

- 내부통제체계 및 준법감시인 요건을 강화

심사결과 현재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제도는 보험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보험대리점이 자율적으로 모집 질서를 확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 운영 여력을 갖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라 판단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의 세부사항** **신설**

- 교육대상 및 시간 확대, 교육강사의 자격요건 등 규정

심사결과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완전판매방지교육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강화될 예정임. 이에 따라 감독규정에서 불완전판매 방지교육에 적용할 구체적 규제수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불완전판매방지 의무교육을 현재 보험업계 자율협약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불완전판매방지 교육 대상 및 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자문 설명의무** **신설**

-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지급단계에서 의료자문 관련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보험금 지급심사 시 의학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보험사기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실시하는 의료자문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의료자문 관련 사항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보험금 심사·지급단계에서 보험금 감액 또는 부지급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 심사·지급단계에서 설명대상에 의료자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예대율규제 신설

- 저축은행의 건전성 비율에 예대율을 추가하고 100% 이하로 관리. 다만, 대출금 잔액(직전 분기말 기준)이 1천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은 예대율 적용을 배제

심사결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예대율 규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독규정에서 저축은행업권에 적용할 구체적 규제수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 업권의 규제수준을 감안하여 100%로 설정하되, 업권부담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고금리대출은 억제하고 정책금융상품(사잇돌·햇살론)은 확대되도록 예대율의 세부적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점, 소형 저축은행의 영업현황 및 타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직전 분기말 대출잔액이 1천억원 미만인 경우 예대율 규제 적용을 배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일반투자자에 대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강화 강화

-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주식등의 대량보유를 '단순투자'와 '일반투자'로 세분화하고 보고의무 차등화
- 공적연기금등도 '일반투자'의 경우 '단순투자'보다 보고의무를 강화
- 보유목적 등 중요사항 변경보고 및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시 공적연기금등의 소유상황 변동보고 특례에도 상기 구분 적용

심사결과 투자자의 주주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보유목적을 보다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보고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를 통해 보고의무가 강화되는 부분은 일부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보유목적별로 보고의무 내용을 차등화하고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은 합리적 조치로 판단됨.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운영하는 해외 주요국의

경우도 보유목적별로 보고의무를 차등화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투자자 유형, 지분율, 기업 지배권 영향 목적 등에 따라 보고의무를 다층적으로 적용 보유목적별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준수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독당국의 행정적 집행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신설 8)

심사내용 거래정보의 보고의무 **신설**

- 거래정보 보고 의무자에게 거래정보를 TR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

심사결과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TR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거래정보의 보고의무 및 보고업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미국·EU 및 일본 등 주요국도 관련 내용을 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 **신설**

-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거래기관에 증거금 교환의무를 부과

심사결과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되고 있는 증거금 교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미 도입된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독당국의 행정적 집행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거래정보저장소 및 임직원에 대한 의무 부과 **신설**

- TR 및 임직원에게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법령상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를 규정
- TR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수검 의무 부과, 검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심사결과 국제기준 준수 및 TR과 그 임직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TR에 대한 관리·감독사항 및 검사권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거래정보 오·남용 등을 방지하는 한편 TR 운영의 연속성·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경영업무 및 부수업무 **신설**

- TR이 고유업무인 거래정보저장업 외 영위할 수 있는 경영업무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고유업무와 경영업무의 분리운영의무를 규정

심사결과 업무영역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일반사업위험의 증대 및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 및 부수업무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TR의 겸업을 허용하되 그 범위를 제한하고 고유업무인 거래정보저장업과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분리·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다른 금융투자업관계 기관의 경우에도 고유업무 외 경영·부수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관련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특별히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업무규정의 제·개정 **신설**

- TR이 업무규정을 정할 때 필요한 주요내용을 규정하고 금융위원회에 TR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부여

심사결과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TR 업무규정 관련 조항이 있으나 업무규정의 내용에 대해 정하지 않고 있어 중요한 업무규정 사항에 대해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으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독당국의 행정적 집행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거래정보의 제공 등 **신설**

- TR에 거래정보를 감독기관 등에 제공하고 통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

심사결과 금융투자업규정에는 거래정보 제공의무와 대상기관만 규정되어 있고 거래정보 보관의무나 공시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해외주요국에서는 TR의 거래정보·공시 및 보관에 관하여 대부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감독당국의 행정적 집행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원 및 내부통제규정 **신설**

- TR 임원의 자격과 TR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상충 방지 등에 필요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임원 관련 조항은 없으며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있음. 이에 TR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도입의 필요성 및 적정성이 인정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 **신설**

-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TR 선정제를 인가제로 변경하고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

심사결과 글로벌 합의의 국내 도입을 위해 TR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TR의 설립에 관하여 미국·EU·일본 등 해외주요국은 실질적으로 국내 자본시장법상 인가제와 유사한 등록·면허제 등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준수가능성 및 집행가능성 측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보험업 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LTV 규제 대상 확대
-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LTV규제 도입

심사결과 동 규제는 대출규제 회피성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LTV규제를 보완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사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규제부담이 크지 않아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감독당국의 행정적 집행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LTV 규제 대상 확대
-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LTV규제 도입

심사결과 동 규제는 대출규제 회피성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LTV규제를 보완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사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규제부담이 크지 않아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감독당국의 행정적 집행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LTV 규제 대상 확대
-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LTV규제 도입

심사결과 동 규제는 대출규제 회피성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LTV규제를 보완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사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규제부담이 크지 않아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감독당국의 행정적 집행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LTV 규제 대상 확대
-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LTV규제 도입

심사결과 동 규제는 대출규제 회피성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LTV규제를 보완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사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규제부담이 크지 않아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감독당국의 행정적 집행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은행업 감독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강화**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內 LTV 규제 대상 확대
-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의 부동산 신탁을 활용한 수익증권 담보대출에 LTV규제 도입

심사결과 동 규제는 대출규제 회피성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택가격 하락시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출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LTV규제를 보완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사한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며, 규제부담이 크지 않아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감독당국의 행정적 집행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강화 4)

심사내용 소속 외 근로자 현황 공시 강화

- 상시 300인 이상 고용 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사항으로 '소속외 근로자 현황'을 추가

심사결과 투자자 등이 간접고용 현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고용 관련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전달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미 공개되고 있는 정보를 사업보고서 기재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고, 기업 부담을 고려하여 규제 대상을 사업보고서 제출 상장법인 중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 고용하는 회사로 한정하였으며, 분기·반기 보고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합리적 수준의 규제라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라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 강화

- 임원 선임 목적 주주총회시 주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참고서류 추가

심사결과 현재 임원 선임시 제공되는 정보로는 주된 직업 및 약력만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어 중요 정보를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고 후보자의 독립성(사외이사인 경우) 및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도 부족함. 이에 후보자의 세부 경력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 이사회의 추천 사유 등을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제공하여 주주총회의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의 임원 후보자 정보에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고 규제대상이 상장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동 법인들의 통상적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의 규제라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라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요 회계이슈 공시책임 강화 강화

-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 보고서 기재사항으로 '재무제표 중 이해관계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회(또는 감사)와 회계감사인인 논의한 결과'를 추가

심사결과 연중 상시감사를 유도하고 기업, 투자자 등이 중요 회계이슈를 사전에 인지, 투자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여 갑작스런 회계이슈로 인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요 회계이슈를 분기·반기 사업보고서 공시대상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의

규제에 일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고 규제대상이 상장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동 법인들의 통상적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주총회 소집공고시 전년도에 지급된 임원보수 정보 제공 **강화**

- 임원 보수 한도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참고서류에 전기의 지급된 임원 보수 총액 정보를 선택적이 아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주주총회 개최시 전년도 임원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 금액에 대한 정보가 대부분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임원 보수가 한도 대비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전년도 보수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기존의 공개항목 중 일부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규제대상이 상장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동 법인들의 통상적인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보험업 감독규정 (신설 1, 강화 4)

심사내용 보장성보험 중 위험보장기능이 없는 부분의 해약공제액 한도 축소 **강화**

- 단일보험료 적용 보장성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의 표준 해약공제액을 축소
- 표준해약공제액 과다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보험료에서 제외되는 저축성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정방식 일부 정비
- 금융위 사전신고대상에 모집수수료 등 보험계약체결비용을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균등하게 부가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에 비해 모집수수료를 보다 많이 지급하므로 모집종사자가 충분한 설명 없이 과다하게 권유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업비를 부가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표준해약공제액 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 강화로 예상되는 보험사의 인건비 발생 및 수익 감소 대비 보험료 인하 혜택 및 보험모집 관련 분쟁 감소 효과 등 편익이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갱신형 및 자동갱신형 보험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축소 **강화**

- 갱신·재가입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이 최초 계약의 70%를 초과하는 경우 금융위 사전신고대상으로 추가

심사결과 보험계약 갱신시점에는 보험계약 모집 노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인수심사 없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등 사업비 인하 요인 발생하나 최초계약과 동일하게 사업비를 적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갱신·재가입형 상품의 재계약시 계약체결비용을 최초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갱신·재가입형 상품의 재계약 사업비 수준을 실제 비용에 부합하게 조정하여 소비자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 판단되고, 이미 대부분이 계약체결비용이 규제수준을 충족하고 있어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감독당국의 행정적 집행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신설**

- 모집수수료 성격의 금액을 모두 포괄하도록 용어 정비
- 초년도 모집수수료등이 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수수료 분할 지급방식을 추가로 도입

심사결과 행정예고기간중 이해관계자가 초년도 모집수수료 상한 제한시 예외 인정항목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중요 규제의 판단기준) 제1항 제6호의 “이해관계인 간 이권이 침해하게 대립”하는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현재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에게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계약 초기에 과다 지급하면서 보험료 인상 촉진, 가입자에게 유리한 상품보다 수수료 높은 상품 위주의 판매, 부실한 계약관리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고, 초년도에 한해 보험료에 비례하여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점, 수수료 총액 제한 방식 등 他 대안 대비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준비기간 등을 감안한 유예기간을 설정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초년도 수수료 상한 설정 조항 등에 대한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모집수수료 성격의 금액을 모두 포괄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면서 이익수수료 조항을 삭제한 것이 이익수수료 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이익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이익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 조항에 명확히 나타낼 것을 **개선권고함**.

심사내용 표준계약공제액을 초과하여 계약체결비용을 부과하는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공시기준 강화 **강화**

- 계약체결비용이 표준계약공제액보다 더 큰 보장성보험의 경우 공시 강화

심사결과 모집수수료를 많이 지급하기 위해 계약공제액 한도를 넘어서는 사업비를 책정하여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제는 계약공제액 한도 이내로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보다 공시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합리적 수준의 규제에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 **강화**

-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

심사결과 저축성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하여 보장성보험을 판매하지 않도록 보험료 추가납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보험료 추가납입 자체는 허용하되 그 한도만 낮게 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 수준의 규제에 판단되며, 현재 추가납입이 기본보험료 1배를 초과한 보험계약은 미미한 수준으로 규제부담이 크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금융감독원



집필자

이현정 사무관
Tel. 044-200-2398, hjlee2838@opm.go.kr
이종상 전문위원
Tel. 044-200-2413, jslee03@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등 총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6건의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금융감독원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계	-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 6)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산출기준 개정 **강화**

- 외화LCR 산출시 고유동성 외화증권에 대해 발행국가별 인정한도 도입

심사결과 특정 국가 편중을 완화하여 국내은행의 위기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LCR 산출기준에 발행국가별 인정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된 기준에 따른 은행들의 외화LCR 수준을 고려할 때 규제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외화자산구성을 조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국내은행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경과조치를 개정안에 반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강화 1)

심사내용 금리리스크 산출기준 개정 **강화**

- 현행 금리리스크 산출방법을 BCBS 기준에 따라 변경
- 금리리스크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주의은행 선정기준을 강화
- BCBS 기준서에 제시된 표준화된 공시양식을 반영

심사결과 우리나라는 BCBS 회원국으로 BCBS 현장에 따라 국제기준을 국내규제로 도입할 의무가 있음. 이에 국내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체계와 글로벌 규제 수준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국내은행의 리스크 대비 적정한 자기자본 보유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운용 구조를 정착시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제기준의 도입이 불가피한 점, 개정된 기준에 따른 금리리스크 영향평가 결과를 고려할 때 합리적 수준의 규제라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퇴직연금 감독규정 시행세칙 (신설 2)

심사내용 비교공시 체계 개선 **신설**

- 현재 개별 퇴직연금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는 내용(퇴직연금 수수료율,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현황 등)을 소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업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수료, 원리금 보장상품 내역 등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개별 퇴직연금사업자가 대부분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정보를 비교가능성 향상을 위해 소관 금융협회에 비교공시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업무보고서 개편 **신설**

- 적립금 운용방법 관련 보고서의 상품구분 항목에 개인형IRP 가입현황 관련 적립금 수준, 폐업기업 관련 미지급 퇴직연금 현황 항목 등을 신설

심사결과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현황 파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영업(업무)보고서 시스템을 보완하여 퇴직연금사업자 감독업무에 필요한 핵심정보들을 추가로 수집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연금 선진국인 호주 등 주요국 규제수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동 규제방안을 마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신설 2)

심사내용 저축은행 예대율 산정 세부 방식 마련 **신설**

- 저축은행에 신규 도입되는 예대율의 구체적 산정산식 마련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예대율 규제 도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구체적 산정산식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업권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대율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였고, 그간 감독정책(자본충실화)을 준수해 온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업계 의견에 대한 협의 조정을 거친 사항임을 감안할 때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저축은행 업무보고서 신설 **신설**

- 신규 도입 규제 관련 보고항목(주택담보대출 건전성 현황(개인사업자) 등 총 4개 항목) 및 정기보고 필요 항목(부동산담보대출 현황 등 총 4개 항목) 업무보고서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그간 필요시 수시 자료요구를 통해 파악하던 자료 중 상시감독 필요성이 인정되는 항목 업무보고서를 신설하여 관리 편의를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영업(업무)보고서 시스템을 보완하여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추가로 수집하는 것으로 규제부담이 크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션 사무관
Tel. 044-200-2442, lms08811@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등 총 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6건의 규제를 심사,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06.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6)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6	신설 2, 강화 4 (비중요 6)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직전년도 상·하한 가격 공개대상인 주요품목의 지정 범위 **강화**

-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에 해당되는 ‘주요품목의 범위’를 구매금액 기준 상위 50%로 규정

심사결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필수품목 관련 분쟁 해소를 위하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관련 ‘주요 품목’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가맹본부의 부당한 차액 수취여부 판단 등의 중요한 정보에 해당되어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이해관계자와 협의·결정하였고 매 3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규정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부당특약 고시 제정안(신설 1)

심사내용 부당특약에 간주되는 행위 유형 추가 지정 **강화**

- ① 수급사업자의 권리(위탁내용 확인요청 등) 제한, ②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 제한, ③ 수급사업자의 의무(계약이행 보증금액 등)를 법정기준 보다 높게 설정, ④ 원사업자의 의무(검사, 재해예방 비용 등)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 ⑤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

심사결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며, 부당특약 설정행위 금지 제재 사례, 신고내용 및 위·수탁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의무규정 등을 반영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부당특약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과도하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신설 1)

심사내용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및 기만 정보제공행위 유형 추가 지정(9종) **신설**

- II.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 제4호(가~라)
- III.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 제3호(가~마)

심사결과 최근 범위만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행령의 대표적인 행위 유형(5개) 규정으로는 범위만 판단이 어려워 범위반 유형 추가 및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맹점사업자·희망자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및 판례·분쟁조정사례 등을 분석·검토하여 유형을 추가 지정한 바 적정성이 인정되며, 법 집행의 객관성·효율성 제고 등 사회적 편익 측면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계속거래 해지·해제 시 위약금 및 대금환급 기준 강화 **강화**

- 요가·필라테스업 대상 추가 및 위약금 청구기준을 총계약대금의 10%로 규정
- 미용업 위약금 기준 강화
 - (현행) 재화등의 제공 개시 전이고,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면제’
 - (개정) 서비스 개시 및 계약해지 시기와 상관없이 ‘총계약대금의 10%’

심사결과 일반 국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위약금 부과기준이 없고, 미용업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라 부과기준을 개정하여 분쟁 방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성이 유사한 생활스포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한 규제 수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등에 따라 관행화 되어 있는 위약금 한도를 명문화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자문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 추가 **강화**

심사결과 ‘경영 자문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시장 자율감시 강화를 통한 부당한 내부거래를 방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미 연1회 공시하고 있는 용역거래 현황 중 경영자문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을 분리, 공시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없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감시를 통해 지주회사의 부당 내부거래 방지가 가능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형평성 증가 등 사회적 편익 측면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부당한 기술자료의 사용·제공 행위 심사기준 **강화**

- 부당한 대상행위에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추가

심사결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하도급법」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개정(18.4.17)됨에 따라 위법 심사기준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논쟁이 되었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하였고 타법사례,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료 원안의결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5. 국세청



이현정 사무관
Tel. 044-200-2398, hjee2838@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 총 1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주류 도매업자 및 중개업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강화

- 주류도매·중개업자의 금품 및 주류 수취를 금지
 - (현행) 장려금·수수료 명목의 금품·주류 제공 및 외상매출금 경감 금지 → (개정안) 명칭·형식 불문하고 대여금을 제외한 금품 및 주류 수수 금지

심사결과 주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규제 도입시 주류도매·중개업자의 금품 등 수취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지고, 이미 금품 등 수취금지의무를 부과받고 있던 소매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되는 점, 유사사례로 의료인 등에 대해서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취를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관세청



이현정 사무관
Tel. 044-200-2398, hjlee2838@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총 6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관세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1)
(3)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7	신설 6, 강화 1 (비중요 7)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구매자의 현장인도 가능여부 확인의무 및 위반시 경고처분 부과 **신설**

- 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구매자의 현장인도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면세품을 인도하도록 의무 부과
- 구매내역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록

- 면세품 현장인도가 제한된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경고처분 부과

심사결과 면세품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여 보따리상 등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특히 화장품)을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함에 따라 국내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유통질서 교란 및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 도입으로 인한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추가적 부담이 경미하고, 위반시 부과되는 행정처분도 과도하지 않으며, 기존의 조직과 인력으로 운용 가능한 규제로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신설 2)

심사내용 입국장면세점의 시설요건 **신설**

- 입국장 보세판매장 특허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요건(판매장과 보관창고의 장치면적) 규정

심사결과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및 주변국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관세법령을 개정,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였음. 입국장면세점 설치가 신규 허용됨에 따라 특허에 필요한 시설요건을 확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동 시설기준을 통해 공항만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세관의 감시목적 달성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출국장 면세점의 시설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세판매장 면적 확대 요건 **신설**

- 면세점 매장면적 확대시 확대되는 면적의 40% 이상을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매장으로 설치하도록 의무 부과
- 단, 출국장·입국장 면세점, 지역별 판매장의 최소면적 미만 만큼의 면적을 추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심사결과 현재 시내면세점에 한해 면세점 특허시 매장 면적의 일부를 중소기업 제품 매장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영업중인 면세점이 매장 면적을 추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 매장 비율 관련 규정이 없어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됨. 업체 자율적으로도 국산품 매장을 늘리는 추세를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매장면적의 20%

이상만 중소기업·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수입물품 국내 유통이력 신고 **신설**

- 유통이력 대상물품 재지정(황기, 당귀 등 22개 품목) 및 신규 지정(활방어 1개 품목)

심사결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유통이력 관리기간 종료를 앞둔 품목의 관리기간 연장 및 신규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해당 품목은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제출된 신청의견을 바탕으로 관세청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유통이력 신고방법이 간편하고 신고내용도 필수사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기내판매품 구매자 관리 **신설**

- 기내판매품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등에 관한 자료 제출기한 단축(면세범위 초과구매자 자료는 항공기가 국내 입항한 다음날까지, 전자상거래 등 예약자 관련 자료는 항공기 국내 입출항 전날까지)
- 자료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주의처분 부과

심사결과 현재 월별로 면세범위 초과구매자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나, 구매자가 입국한 이후 자료를 제출받음에 따라 입국단계에서 정보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출기한을 단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자료제출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됨. 제출기간이 현행 대비 단축되거나 피규제자가 준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자료제출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주의처분'은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과도한 규제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수입물품 국내 유통이력 신고 **강화**

- 지정기간 만료예정인 2개 품목(냉동고추, 뱀장어) 재지정

심사결과 제도 적용 이후에도 뱀장어 및 냉동고추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유통이력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됨. 해당 품목은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제출된 신청의견을 바탕으로 유통이력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것으로, 법령상 허용범위(5년) 내에서 품목별로 지정기간을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준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확대 **신설**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폐플라스틱 및 생활폐기물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대상으로 지정

심사결과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하여 수출한 후 상대국이 적발하여 우리나라로 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다른 대안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이미 제도 적용중인 중고차의 경우 등 제도 적용 후 불법수출이 감소하는 등 제도의 효과가 이미 검증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3절 산업·에너지 및 중소기업 분야

1. 산업통상자원부



이현정 사무관
Tel. 044-200-2398, hjlee2838@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총 3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8건의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48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0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3)
(3)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0)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1)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06.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8)	원안의결 6	강화 4, 신설 2 (비중요6)
(1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4) 전기용품 안전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9)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7)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8)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9.08.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2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0)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30)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2)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2)
(2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1)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2)
(24)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5)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10.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6)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7)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2)
(28)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9)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0)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1)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3)
(32)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계	-	원안의결 48	신설 25, 강화 23 (비중요 48)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고압가스 폐기 증명자료 첨부 **강화**

- 사업 폐지 신고시 신고서에 고압가스 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심사결과 고압가스 제조·판매·저장시설 폐지 시 잔가스 방치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법령상 근거가 미비하여 허가관청이 사업자에게 잔가스 제거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 타 법 사례와 유사한 수준이며, 신고 수리 과정에서 규제 준수여부 확인이 용이하여 집행가능성도 높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강화 3)

심사내용 안전인증대상에 일부 단전지를 신설하여 안전관리 강화 **강화**

-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PC에 적용되는 리튬 이차전지로서 에너지밀도 700Wh/L, 충전전압 4.4V 이상 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

심사결과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사고 등 전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전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등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배터리만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고시발령 후 약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되어 규제 준비를 위한 충분한 대응시간도 부여됨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확인대상이 되는 전기차 충전기의 범위 확대 **강화**

- 안전확인대상이 되는 전기차 충전기 범위 확대(100kVA → 200kVA 이하)

심사결과 최근의 전기차 충전기 개발 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대상 전기차 충전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특별히 과도한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고, 시험 수수료 등 피규제자에게 일부 부담이 발생하지만, 제품의 안전확인 획득은 판매 및 충전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PCB LED 모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강화**

-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PCB LED 모듈을 LED 램프(모듈)로 간주하여,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의무 부과

심사결과 교체형 PCB LED 모듈은 소비자들이 매일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게 교체형 PCB LED 모듈의 인증을 위한 시험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나, 안전성 확보에 따른 소비자보호 편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위험성이 낮은 제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대외무역관리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전문무역상사 지정의 취소 **신설**

- ①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 보고서상 신용등급 중 최하위 2개 등급인 경우,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받은 경우, ③사기, 횡령, 배임,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전문무역상사 지정 취지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전문무역상사 지정 거부 또는 취소 가능

심사결과 수출대행업무 수행 능력이 없는 업체가 국가 공인 전문무역상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제시된 지정취소 요건 중 신용등급 요건은 국가지정제도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판단되며, 타 법령에서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지정 후 지정 취지를 해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문제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정을 취소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준과 품질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바이오중유의 성능평가기준 신설 **신설**

- 황산화물 18ppm 이하, 질소산화물 180ppm 이하, 먼지 50mg/Sm³ 이하

심사결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시 성능평가 결과를 포함한 품질시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원활한 등록업무를 위해 성능평가기준 설정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배출가스 평가항목 수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일반보일러 배출허용기준’ 수치를 준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다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설정되어 집행가능성 및 피규제자의 기준 준수에 어려움 없는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 신설 신설

- 바이오중유에 대해 ①생물유기체 이외의 원료 함유 금지, ②총 18개 항목의 품질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

심사결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시 품질시험서를 제출해야 하며, 생산된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검사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품질기준 설정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발전용 바이오중유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상의 품질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정안에 제시된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바이오중유는 시범보급사업 4년간 5개 발전사업자의 중유발전기에서 사고나 문제점 없이 사용되어와 기준의 적정성이 입증된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 개별기준 신설

- 아래의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횟수별로 7일~60일의 사업정지·제한처분을 부과
 - 특정고압가스 제조자·판매자가 ①고압가스 공급시 가스 사용자 및 사용시설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②가스 사용자 및 사용시설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공급 중지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심사결과 고압가스 제조자·판매자가 가스 공급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접적인 법 위반행위가 아닌, 타인 소유 시설의 적법성을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대한 제재임을 감안하여 다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비해 낮은 제재수준을 부과하고 있는 점, 행정처분기준 중 일반기준에 따라 필요시 1/2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품목(합성수지제품) 추가 **신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품목에 '합성수지제품'을 추가

심사결과 그간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었던 합성수지제품에 대해 유해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안전관리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은 전안법상 안전관리체계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여 특별히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고,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하위 고시에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시기까지 유예하고 있어 규제 대응에 충분한 시간이 부여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상권영향평가 **강화**

- 상권영향평가서 평가대상업종 확대 및 평가방법 구체화

심사결과 기존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내실있는 상권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복합쇼핑몰 등 다수 업종을 포함한 초대형 점포의 출점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고려할 때 분석대상 확대가 시급하므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로 인해 분석 대상 업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분석범위가 협소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분석 필요성이 있는 주요 업종만 대상으로 하고 분석의 실익이 없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으로 분석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외국 사례에 비해 분석범위 등의 측면에서 과도한 수준은 아님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추가 **신설**

-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차 충전기의 세부 품목에 자동차 어댑터를 추가

심사결과 전기차 보급 확대추세를 감안, 충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 어댑터를 안전확인대상 세부품목에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됨. 어댑터의 안전확인대상 편입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어댑터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도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중인 점, 시험기관의 추가적 업무부담이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전기용품 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자동차 어댑터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

- 자동차 충전용 어댑터의 안전시험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전기차 충전용 어댑터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편입될 예정으로, 제품시험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전기차 충전용 어댑터의 특성을 감안, 유사 부분을 다루는 기존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등을 통해 적정성이 인정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신설**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형식승인 기준, 검정 및 재검정 기준,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을 신규 마련

심사결과 향후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술기준으로, 신설의 필요성 인정됨. 동 규제는 국제기준 및 유사 타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중복의 우려가 있는 시험항목을 면제하여 충전기 제조업체의 불필요한 인증 부담을 경감하고 있고, 다수의 간담회를 통해 유관기관 및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마련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신설 2, 강화 4)

심사내용 전력설비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신설**

- 전기사업자에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의무 부과

심사결과 발전기 및 전력설비 정비에 따른 전력생산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시 정비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비계획의 작성 및 제출의무는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고, 설정된 제출대상 자료 및 제출처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재생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신설**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에게 발전 관련 정보(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등)를 제공하도록 함

심사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접속이 증가하게 되면 기상변화 등으로 인해 전력공급의 예측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 및 송배전사업자가 신재생발전기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보제공 목적에도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통주파수 조정 및 유지범위 **강화**

- 주파수의 단계별 회복기준, 회복시간 규정

심사결과 현행 주파수 유지 기준은 평상시·비상상황시 단일 주파수 유지기준만 명시하고 있어 체계적인 조정 및 유지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다양하고 복잡해진 전력계통의 안정적 지속 운영을 위해 일정시간 내 일정 수준 이상의 주파수 회복·유지 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조문의 평상시 및 비상시 주파수 유지 범위는 현행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였으며, 발전기 고장 시 일정 시간 내 일정수준으로의 주파수 회복 의무만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현행 기준 대비 과도한 규제수준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운영예비력 저하시 조치 **강화**

- 운영예비력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저하될 경우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운영예비력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수요관리사업자에게도 운영여건 변경 또는 부하 관리를 수행한 때 전력거래소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

심사결과 '14년부터 수요자원거래시장이 개설,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계통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규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기사업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이행하고 있던 내용을 입법 보완 목적으로 고시에 반영·구체화하는 것으로, 동 규제 도입으로 인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의무 및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적고, 전력계통 운영에 영향이 큰 주요 수요관리사업자에게만

적용할 예정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통안정화장치 강화

- 계통안정화장치 설치대상 발전기 범위 확대
 - (현행) 전력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500MVA 이상의 발전기 →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300MVA이상의 발전기(단, 복합화력발전기는 500MVA 이상만 해당)
- 발전사업자에게 계통안정화장치의 실시간 운전상태를 전력거래소에 제공할 의무 부과

심사결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계통안정화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운전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발전사업자의 설비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통안정화장치 설치 대상을 최소화하였고, 시행시기도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0.1.1. 이후로 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고, 북미와 유럽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상상황 강화

- 수요관리사업자에게 비상시 급전지시 및 수요감축요청 이행 의무 부과

심사결과 수요관리사업자는 고객이 절감한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중개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전력거래소의 전력감축요청이 수요관리사업자에게도 전달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기사업법」 및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이행하고 있던 내용을 입법 보완 목적으로 고시에 반영·구체화하는 것으로, 동 규제 도입으로 인해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의무 및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사안임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전기공사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전기공사 금액의 하한 신설

-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을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②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공사업자, ③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속하는 공사업자로 규정

-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1건당)으로 설정

심사결과 중소 전기공사업자의 실질적 시장참여를 확대하여 전기공사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로 판단되고, 他 법령에서 유사한 취지로 설정된 참여제한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전기용품 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전기용품 안전기준(LED 조명 시스템) **신설**

- LED조명 시스템에 적용되는 안전요구사항

심사결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LED조명 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업계의 인증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품목인 등기구 및 컨버터에 대한 안전기준을 상당부분 준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단위로 인증을 받게 되면 기존 방식(개별조명단위 인증)에 비해 인증비용 절감 가능성 높아 피규제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 확대 **강화**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 (현행) 2년 이내 → (개정안) 2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 (현행) 1년 → (개정안) 2년

심사결과 제재 수위를 타 부처 수준으로 일치시켜 동일 행위에 대한 부처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R&D 수행 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타 부처의 제재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치시키는 것으로, 특별히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고, 타 법령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료·사업비 환수금의 미납, 지식재산권의 개인명의 특허 등록 행위에 대해 국가 R&D 참여제한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업비 환수 기준 및 범위 강화 **강화**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비 환수 범위 확대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사업비 환수

심사결과 국가 R&D 수행시 출연금 및 연구개발결과물(지식재산권)의 사적 유용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부 R&D 수행 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한 출연금 범위 내에서 환수하는 것으로, 특별히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렵고, 타 법령에서도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의 범위에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신설 1)

심사내용 기존에 사용 불가능한 LED 조명 시스템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권으로 편입 **신설**

- 안전인증대상 일반조명기구의 범위에 LED 조명 시스템 추가

심사결과 LED 조명 시스템은 디밍 및 조도를 설계값보다 낮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 플리커 발생 및 낮은 단계 디밍에서 안전에 위해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인증 대상에 편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해 적정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전기용품 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LED 구동장치 출력전압 제한 **신설**

- 기존 안전기준에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사용되는 등기구의 전자제어장치 및 LED 구동장치의 출력전압 요건 추가(SELV적용, 42V 이하)

심사결과 최근 고전압의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피규제자가 규정을 준수하는데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여된 점, 관련 업계 및 시험인증기관 등이 참석한 공청회 및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명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광융합기술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신설 1)

심사내용 전담인력 및 시설의 세부기준 **신설**

- 전담인력, 업무공간, 그 외 통계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등 보유 요건 마련

심사결과

법에서 명시한 전담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세부 요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설정된 항목들은 전담기관 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이고, 他 입법례 등과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전담기관 지정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되는 사안으로, 집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단전지를 안전인증품목으로 추가 **신설**

-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차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품목으로 지정

심사결과

ESS용 리튬이차단전지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품목의 경우에도 안전인증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별히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볼 수 없고, 미국·유럽 등에서도 ESS용 리튬이차단전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확인품목으로 추가 **신설**

-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확인대상품목으로 지정

심사결과

ESS용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포함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품목의 경우에도 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고, 다수의 화재 사고 발생으로 인한 대책 차원에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효율관리기자재인 공기청정기의 대상범위 확대 **강화**

- 효율관리기자재인 공기청정기의 대상범위를 정격소비전력 200W 이하에서 표준사용면적 200㎡ 이하로 확대

심사결과 최근 대기질 악화로 인해 대용량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현행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용량 공기청정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됨. 적용범위를 조정할 경우 기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0W 이상의 수입 공기청정기 및 대용량 공기청정기도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53GWh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효율관리 대상 기자재(의류건조기) 추가 **신설**

- 의류건조기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하고, 세부 효율관리 기준(적용범위, 등급기준, 측정방법, 사후관리 등) 마련

심사결과 최근 의류건조기의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효율관리기자재에 편입,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최근 제품 출시 및 판매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으며, KS 표준 및 EU 기준 등을 반영하여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벌크로리 주차장소 지정제도 도입 **신설**

- 벌크로리를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지정장소에 주차하도록 의무 부과

심사결과 벌크로리의 주택가 인근 장시간 주차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규제로, 도입 필요성 인정되며, 동 규제 도입으로 LPG 용기 운반차와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타법에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밤샘주차시 정해진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강화 **강화**

- 다중이용시설, 가연성건조물(가연성 외장재 건조물 포함)의 주변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현행 대비 2배로 강화하고, 종래 기준 적용 제외되었던 저장능력 250kg 미만의 소형저장탱크에도 기준 적용
- 다만 살수장치 또는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사람을 수용하지 않는 건조물의 경우에는 현행 이격거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

심사결과 現 LPG 소형저장탱크 이격거리 기준이 지나치게 짧아 화재 발생시 대형폭발의 위험 및 화재 진압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소방당국의 의견이 있어,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예외·경과규정 및 시행유예기간을 두어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고 외국의 경우 국내 기준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의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 운용중으로 특별히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강화**

-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세분화하고 일부 국가를 하향분류

심사결과 현 규정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모두 가입 여부만을 기준으로 전략물자 수출시 우대조항을 적용 중이나, 실질적인 제도 운용상황을 감안하여 관리가 부실한 국가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대한 통제수준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이나,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통제 조치로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신설**

- 안전관리대상으로 추가된 품목(ESS용 리튬이차단전지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에 대한 모델구분 세부기준 설정, 자체검사 실시주기 설정

심사결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ESS용 리튬이차단전지·리튬이차전지시스템이 전안법상 안전관리

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안전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운용요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하였고, 개정안의 리튬이차단전지 관련 부분은 유사품목인 '정보 통신 사무기기용 단전지'의 모델구분 세부기준과 유사하게 마련되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강화**

-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전력변환장치(PCS)의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100kVA 이하에서 2MW 이하로 확대

심사결과 안전확인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ESS로 인한 화재·감전 등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정안은 현재 업계에서 출시하고 있거나 출시 예정인 주력 제품의 용량 상한선 및 국내 시험기관의 시험설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전기용품 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전기용품 안전기준 **신설**

- 산업용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마련

심사결과 ESS용 리튬이차단전지 및 리튬이차전지시스템의 안전기준으로 사용될 산업용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ESS용 배터리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산업용 리튬이차단전지 및 전지의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표준을 기초로 KS 기준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은 국내 실정에 맞도록 일부 변경하여 작성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 **신설**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신규 지정된 합성수지제품에 적용될 안전기준 부속서 신설

심사결과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타 법령상의 안전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술

규제영향평가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행정예고(안)을 수정, 적용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였으며, 시행시기 유예규정이 있는 등 특별히 과도한 규제로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안전설비의 종류 **신설**

- 안전설비(독성가스검지기, 스크러머 및 밸브)의 세부 종류를 규정

심사결과

고압가스 안전설비 인증제도 시행 시기에 맞추어 법령에서 위임한 안전설비의 종류를 고시에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도를 감안하여 일부 품목만 규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고, KS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동법 시행령 규정이 있어 피규제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도로주행에 필요한 제품(전동킥보드) 안전 요구사항 **신설** **신설**

-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에 적용되는 제품 안전기준 준수사항(무게기준, 등화장치, 경음기 등)을 추가

심사결과

現 안전기준에는 제품에 대한 안전요구사항만 있고 도로 주행을 위한 안전요구사항(등화, 경음기 등)이 없어,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준 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됨. 최대무게, 등화장치 및 경음기 부착 의무 등의 안전기준은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부과되는 것으로 특별히 과도한 규제라 볼 수 없고, 다수 선진국의 경우에도 등화장치 및 경음기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내 부속서 5(건전지) 일부 개정 **강화**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중 건전지 안전기준의 적용범위를 단추형 건전지까지 확대함

심사결과

중금속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제협약사항을 국내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규제도입의 필요성 인정됨. 동 규제는 국제협약에 따라 적용이 이미 예고된 사항이며, 국내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 수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동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3 개정 **신설**

- 스텝스툴에 대한 안전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인 휴대용사다리의 안전기준 부속서에 포함

심사결과 가정에서 사용되는 스텝스툴의 경우 미끄러짐,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함. 동 안전기준은 유럽기준을 준용, 이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든 것으로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었으며, 소형·경량화된 휴대용 사다리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주택용 등의 휴대용 사다리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등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시행일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대외무역관리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강화**

- 무계목강관을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으로 지정

심사결과 거래질서 교란 방지 및 국내업체의 피해 저감 등을 위해 무계목강관에 대한 원산지표시규제 도입이 필요함. 유통이력관리제도·수입제한조치 등 다른 대안에 비해 피규제자의 부담 및 부작용이 경미하고, 무계목강관은 치수·규격 등 기본정보가 제품 외면에 기재된 상태로 유통되므로, 기재사항에 원산지만 추가하면 되어 추가적인 부담이 경미한 사안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강화**

- 어린이가 입에 넣어 사용하는 제품(유아용 노리개 젓꼭지, 치발기, 칫솔, 마우스피스, 고무풍선 등)에 대한 니트로사민류 함유 허용기준을 설정

심사결과 어린이가 입에 넣는 제품에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되고 있으나, '노리개 젓꼭지'를 제외하고는 안전기준에 니트로사민류의 함유량 관련 항목이 없어 이를 공통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사용연령 등을 감안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였으며, 이미 니트로사민류 함유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유아용 노리개 젓꼭지'의 기준과

유사하거나 완화된 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하였고, 제조 공정 또는 시설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아 피규제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에너지진단 운용규정 (강화 3)

심사내용 진단기술인력의 투입요건 강화 **강화**

- 에너지진단에 투입되는 초급 기술인력을 1인 이하로 제한

심사결과 에너지진단에 투입되는 인력의 질을 높여 진단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진단기관 기술인력 지정수준으로 에너지진단 인력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진단기관시장의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크지 않고, 간담회 및 행정예고에서도 이견 없음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효율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요건 강화 **강화**

- 에너지소비 개선명령을 실시할 수 있는 요건 중 투자비 회수기간 기준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심사결과 에너지손실요인 개선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현재 개선명령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요건 현실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투자비 회수기간 요건을 확대할 경우 개선명령 대상 물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개선명령의 이행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을 절감시켜 피규제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조치로 특별히 과도한 규제가 아님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에너지진단 면제대상에 대한 절감성과 기준 마련 **강화**

- 시스템 구축 전후 연간 에너지사용량의 4% 이상에 상당하는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의무진단 면제(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 면제)

심사결과 진단의무를 면제받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증가하는 최근 추세를 반영, 진단 면제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해당 기준은 최근 에너지진단결과 절감잠재율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였으며, 他 에너지진단 면제조항의 경우에도 정량적인 에너지절감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이와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임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강화 2)

심사내용 최저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상향 **강화**

-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중 회전저항계수 기준 상향
-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현행 5등급→4등급 체계로 변경

심사결과 국제기준과 국내규정의 조화를 위해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제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타이어의 판매를 '23.6.30까지 허용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로 적용 대상범위 확대 **강화**

- 중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를 에너지소비효율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상관성 시험 방법 등을 마련

심사결과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중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에너지효율을 관리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제기준을 준용하였고, 부칙에 따라 중대형 트럭·버스용 타이어의 등급기준 표시 및 정보제공은 '22.1.1부터 의무화되며,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되는 타이어의 판매 허용 기간을 '24.6.30까지로 설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적정성이 인정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중소기업부



최진수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420, huhuhu27cjs@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7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0건의 규제를 심사, 10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01.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2.2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2.2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8.6.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9.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8.10.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0	신설 9, 강화 1 (비중요 10)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 **신설**

- (가) 사행성,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국민 정서상 보호·지원이 부적절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등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 (나) 해당 업종 내 사업자 중 소상공인의 비율이 전체 종사자의 50% 미만이거나 그 소상공인의 수가 현저히 적은 업종

심사결과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업종임. 동 업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설규제 적용시 규제를 적용받는 업종은 총 8개로 모법의 취지 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유사입법례(중소기업창업지원 대상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도 국민의 정서상 보호가 부적절한 업종은 제외한 점, 관련 단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였고, 별도 이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책임보험 등의 배상기준 및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기준 **신설**

- 사고 유형별로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에 준하는 금액을 배상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제도를 시행하면서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특구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마련해야하는 손해배상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관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인정됨. 책임보험 등의 배상기준은 타법령과 유사한 수준이며, 규제샌드박스를 시행 중인 호주·영국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취소사유 등 **신설**

- 사정변경, 국민 생명·건강·안전에 위해발생, 환경 저해,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소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실증특례·임시허가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특례제도로써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 및 공익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모법에서 위임한 취소사유를 구체화할 필요. 유사법령(산업융합 촉진법)보다 다소 강화된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서는 사업부처에서 직접 규제특례를 취소토록 한 반면, 동법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시·도지사가 부처에 취소를 신청토록 설계하여 보다 폭넓은 취소사유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취소사유 발생시 관할 시·도지사가 부처에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로서, 규제특례가 즉각 취소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 3)

심사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 **신설**

-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의 공급원가 변동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원칙적으로 위·수탁기업간 납품대금 조정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및 협상력 차이 고려시 자율 협의에만 맡길 경우 합리적인 납품대금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 상승하는 등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개입을 통해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하도급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공급원가 변동기준을 설정하여 하도급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 통일성을 유지한 점, 입법예고 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의견을 사전 청취하였으며, 입법예고 중 기타 제출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요건, 방법 및 절차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 협의권 발동과 관련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 대상 위탁기업을 중기업 이상으로 하고,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조정협의 신청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후 의사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제출서류를 규정

심사결과 수·위탁거래는 매출액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간 거래가 포함되므로, 일정규모 이상의 위탁기업으로 대상을 제한(중기업 이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여부를 결정토록 함으로써 조합의 개입 필요성에 대한 신중하고 통일된 의견조성이 가능토록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하도급법 시행령과 유사하게 규정하되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서류 요건을 완화한 점, 납품대금조정에 성실히 임할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별도 제재가

없는 점 등 고려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 사유 **신설**

-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분쟁조정 신청사유로 규정

심사결과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및 협상력 차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조정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사를 밝힌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분쟁조정신청을 원활히 유도할 필요성 인정. 기존 하도급법령과 달리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의 업과는 무관한 물품 등의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하도급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위수탁거래에 적용 가능한 분쟁조정절차를 마련하되, 유사하게 설정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점 등 감안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바, 이에 해당하는 경영정보의 범위를 규정 **신설**

- 수탁기업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등의 매출 관련 정보
-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 수탁기업의 다른 기업에 대한 납품조건 등 영업 관련 정보
- 수탁기업이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심사결과 기존 하도급법령에 유사한 금지규정이 있으나,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위수탁거래에까지 적용되는 상생협력법에도 유사한 금지 규정 도입 필요. 하도급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위수탁거래에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므로,

하도급법령과 유사하게 규정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와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 점 등 감안하여 적적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으로 추가된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신설**

-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보조금법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과정에도 여성기업 차별관행이 존재하며, 지원사업 예산을 민간단체 등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정부의 보조금 등을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하였으며, 이에 더해 중기부 장관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여 규제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등 규제가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사업 운용요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사업전환계획 타당성평가 항목 **신설**

- △시장성 적합 정도, △부가가치증가 정도, △신규 업종과의 연관성, △계획 타당성, △투기 목적 처분·이용 가능성 등으로 구체화

심사결과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전환 승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여 과잉업종 및 투기목적으로의 전환을 방지할 필요성 인정됨. 또한 사업전환 승인기업은 각종 지원과 특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성공시켜 궁극적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전환의 가능성 및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기존평가항목에 더해

부정목적 활용 여부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한 것은 사업전환 승인업종 범위확대에 따른 것으로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레미콘·아스콘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강화**

- 시장점유율 제한을 강화 (50%이하→45%이하)

심사결과 레미콘·아스콘 조달시장은 조합중심의 공급구조 쏠림현상 심화로 업체 간 품질 및 가격 경쟁을 유도할 필요성 존재. 이에 다양한 공급자가 조달시장에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 재정지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별 공급조합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레미콘·아스콘 산업은 특성상 대규모 조달이 이루어지므로 조합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다수공급자 계약(MAS)으로 전환될 경우 조합의 전체 시장점유율 제한(80%이하)이 부적절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 점유율을 폐지할 경우, 다른 물품과는 달리 레미콘·아스콘의 경우 공급권역 내에 2개의 조합만 있는 경우(ex 제주도)가 있으므로, 개별조합의 시장점유율 최대한도를 45%로 설정하여 권역 내 2개 조합이 있더라도 10% 정도는 개별사업자의 참여 유도가 가능토록 한 것이며, 또한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3. 특허청



조가람 사무관
Tel. 044-200-2441, grjo0519@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특허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10.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상표조사전문기관 전담인력 요건 신설

- 상표조사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중 전담인력 요건으로 조사원과 분류원이 각각 5명 이상일 것을 규정

심사결과 상표조사 업무는 '05년부터 민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지정제) 특허정보진흥센터와 경쟁체제로 운영해왔으나,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표 심사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할 필요. 특허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시행('17) 시에도 전담인력 최소 인원을 5명 이상 규정하였고, 쟁점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는 최소 5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여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4절 국토·해양 분야

1. 국토교통부



집필자

이지영 사무관
Tel. 044-200-2423, jjyy00@opm.go.kr
조현선 사무관
Tel. 044-200-2424, jhsun0213@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 총 94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87건의 규제를 심사, 2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하였고, 18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1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01.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01.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2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25)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0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1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1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1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9.02.22)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08)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1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1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0)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2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1) 공항 환경관리 기준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2)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1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19)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26)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26)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26)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03)	원안의결 10	신설 10 (비중요 10)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0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3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9.05.24)	부대권고 1 원안의결 3	강화 4 (중요1, 비중요 3)
(37)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05.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8)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05.3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39)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06.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07)	원안의결 4	신설 2, 강화 2 (비중요 4)
(4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분과위 (2019.06.14)	부대권고 1	신설 1 (중요 1)
(4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5) 철도용품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6)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4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8) 주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0)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9)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5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2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0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23)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56)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30)	원안의결 3	신설1, 강화2 (비중요 3)
(5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5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1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6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5)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7)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6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7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7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9.10.11)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7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9.10.11)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2)
(7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1)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 8)
(7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25)	원안의결 4	신설 1, 강화 3 (비중요 4)
(76)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예비심사	원안의결 3	강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관리기준 개정안	(2019.11.01)		(비중요 3)
(77)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8)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7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3)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8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8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9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92)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93)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4)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부대권고 2 원안의결 185	신설 101, 강화 86 (중요 6, 비중요 181)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고전원전기장치 검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강화

- 고전원전기장치 종합검사를 수행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심사결과 차량의 배터리로 고전원전기장치를 장착한 차량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검사 시 고전원전기장치에 의한 감전사고 등 배터리의 잠재적 위험요소로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인력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를 위해 적정 교육을 받은 인력이 검사업무를 수행토록 할 필요가 있고, 타법사례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서 전기자동차 튜닝작업을 하려는 자의 경우 고전원전기장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수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불법촬영장치 점검 신설

- 철도운영자 등이 화장실, 수유실에 대하여 불법촬영장치 설치여부를 1일 1회 이상 점검(점검주체·대상·방법 등 포함)하도록 의무 신설

심사결과 철도역사, 지하철 등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철도운영자가 소관 화장실 등에 대해 매일 점검하고 있으나, 이를 제도화하여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수차례의 사전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기관들이 점검의무 부여에 합의함에 따라 규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도 관련 점검을 시행 중인바 점검 횟수를 명시한 것으로서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정비 제한 강화

- 자동차정비업자만이 고전원전기장치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도래가 예상됨에 따라 고전원 전기장치에 의한 감전사고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전기차 관련 안전전압 및 허용접촉전압에 대한 분석결과 50V 이상의 경우 감전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바 고전원전기장치(통상 360V)는 등록된 정비업자만 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이며 유사입법례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의무 **강화**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을 신규교육, 정기교육, 임시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고 각 교육기준을 [별표 19]에 세분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차·전기차·수소차 등 첨단자동차가 개발됨에 따라 이를 검사할 기술인력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기검사 검사원도 종합검사 검사원과 동일하게 보수(정기·임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성능인증 등 관련 기록 보관 및 관리 **신설**

-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이 보관·관리하여야 할 자료의 종류 및 보관 방법 규정

심사결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성능 인증·성능평가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하므로, 장비 성능인증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장비 성능 인증 목록, 장비 품목별 내용연수 현황 등을 기록 및 보관·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전자문서 형태로도 기록과 보관·관리가 가능하여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기준 **신설**

- 항공보안장비 종류별* 성능평가시험 기술기준 마련

* 1. 엑스선 검색장비 2. 폭발물탐지장비 3.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4. 액체폭발물탐지장비 5. 문형금속탐지장비 6. 휴대용금속탐지장비 7. 신발 검색장비

심사결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18.12월)되어 항공보안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바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규정은 기존의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국토부 고시)의 내용을 대부분 준용하면서 일부 기술적인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기준 **신설**

- (시설) 폭발물 취급 및 보관을 위한 특수시설 등의 보유
- (장비) 수화물 투입 자동화 시스템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심사결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18.12월)되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시험기관 지정 기준을 국토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한바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의 사용시료에는 비안전물질(화약·폭발물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국내법상 비안전물질은 일정 시설 내에서만 취급토록 하고 있으며, 『방위사업법』, 『위험물관리법』 등 유사입법례 비교시에도 시설기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수화물 투입 자동시스템은 장비가 장시간 운영시에도 검색성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필요한 전용 설비로서 장비 내구성·가동률 시험평가항목과 연관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장비기준 또한 적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 **강화**

- 측도에 연결하는 시설물의 용도·규모·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측도와 다른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 별도 진·출입로 기준 신설

심사결과 태양광발전시설 및 측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 변속차로 설치 길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측도에 연결하는 시설물의 용도·규모·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측도의 연결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도로점용 지자체 담당자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어린이하차 확인장치 설치 **신설**

-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경고음,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는 하차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경고음 발생장치 기준, 경고등(또는 비상점멸표시등) 작동 및 정지 구조 등 신설

심사결과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하차확인장치 설치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동 법의 효과적 시행을 도모하고, 사람의 실수 최소화 및 차량 내 어린이 방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하차확인장치 관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동 규정은 안전기준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 및 자동차안전기준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적 검토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규제 영향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받았음.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개정안을 수정하였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전환 시 임차인 사전 동의 **강화**

-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면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존속 중인 계약조건의 변경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의 일방 의견 외에 임차인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나 동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일부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공임대주택은 이미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시 규제가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대상 확대 **강화**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계약 갱신시에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단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생략.

심사결과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기준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신고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온라인(렌트홈)을 통해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며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첨부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에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임대료 증액 기준 **신설**

- 임대료 증액기준을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적용하고, 그 밖에 민간임대주택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변동률을 적용토록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청구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임대료 증액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임대료 증액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연구용역 및 민간의 임대료 증액현황(168개 단지), 주거비 물가 관련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준을 설정한 점,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 타법 사례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차인대표회의 의무 구성단지 등 **강화**

- 13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 단지 중 ①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②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토록 의무화하고,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에게 반기 1회 이상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임차인 대표회의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타법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요건은 다소 간소하여 규제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대표회의 구성을 통한 임차인의 권익보호, 주거만족도 제고 등 연계되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 요건 **신설**

-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 임대사업자의 하자보수명령 불이행, 임

대사업자의 부대시설·복리시설 파손 등)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 발생 등 계약해지 요건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및 재계약 거절 사유를 본 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 **신설**

-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토록 규정하고, 음주 여부 확인 내용의 기록·관리 방법(측정결과 정기적 출력, 관리대장에 원본 보관 등) 명시

심사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기록이 의무화되고 그 절차 및 방법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표준화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됨. 『철도안전법 시행령』에도 동일 수준의 음주검사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본 개정안보다 더 강화된 수준으로 음주수준을 측정·관리하고 있는 등 해외사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기존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기준 **신설**

- △ (설치기준) 기존 세대 포함 최대 2세대까지 설치 가능, 세대별 1개 이상의 침실, 별도 욕실·부엌, 구분 출입분 설치 의무
- △ (설치세대수)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1/10, 해당 동별 호수의 1/3을 초과하지 아니하되, 지자체에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준 완화 가능
- △ (안전기준) 경량벽체 설치·제거 등 관련 구조안전성 및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충족

심사결과 기존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 시 최저주거기준 및 구조·소방 등 안전 규제를 충족하는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므로 설치기준, 설치세대수 및 안전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 입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을 산정한 점 및 안전기준 준수를 통해 사고 예방 등의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강화**

- 건설기술자 1인을 3개 현장까지 배치할 수 있는 공사 범위 축소
(前) 공사에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종 공사 → (後) 3억원 미만의 동종 공사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동종공사의 경우 2개 현장까지 중복배치 허용

심사결과 소규모 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범위를 축소하여 건설업체의 적정인력 보유를 유도하고 부실 업체의 과다수주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인력추가배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 연계되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접시공 대상공사 확대** **강화**

- 건설업자가 일정비율 이상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 범위 확대
(前)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後) 70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결과 큰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퇴출시키고,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해외사례와 비교시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단계 하도급 방지를 통한 시공 품질 제고 등의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 확대** **강화**

-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 확대
(前) 발주자의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이 60%에 미달하는 공사 →
(後) 64%에 미달하는 공사

심사결과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공공사 낙찰자 선정제도 변경(최저가낙찰제→종합심사낙찰제)에 따라 원도급 평균낙찰률이 상향된 것을 반영하여 판정기준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른 시험방법 및 절차 **강화**

- 신규 개발차의 정의, 의무설치 대상으로 추가된 첨단안전장치(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및 좌석안전띠 경고장치)의 시험방법 및 어린이보호용 좌석 부착장치 등의 시험 기준·방법 등을 마련

심사결과 첨단안전장치, 도난방지장치, 비상탈출장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요구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표준적 시험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능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을 국제기준(UN)에 부합토록 설정하여 국제 자동차무역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자동차 안전기준에 추가 도입된 장치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방법 등을 국제기준(UN)과 조화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한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POS 시스템 설치 주유소로 한정) **강화**

- 유류구매카드 사용 가능한 곳을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로 한정

심사결과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는 판매량 자료가 없어 부정수급 가담·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어려워 실제 적발률이 매우 낮은 현실 감안시, POS시스템 설치 주유소에서만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상적 거래질서를 회복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과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부정수급 감시 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유가보조금 관리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 동 규제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및 반환 사유 **신설**

- 유가보조금 지급청구 거절 및 기지급된 유가보조금 반환 사유에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구매분 및 탱크 용량 초과 주유한 경우 추가

심사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구매분 및 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경우 관할관청이 유가보조금 지급청구는 거절하고, 기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토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탱크 용량을 초과한 사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거절되더라도 실제 탱크 용량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소명된 경우 지자체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예방책도 마련되는 등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강화**

- (前) 공시항목 12개 → (後) 공시항목 62개

심사결과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여 적정 분양가를 유도함으로써 서민주거 안정 등 공공택지의 공적 목적을 달성하고, 先분양제 하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공공택지 내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사업주체의 감리자모집공고시 既 공개하고 있는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항목을 활용할 경우 공시항목 확대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 및 기업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건설기계 부품인증 절차 신설 **신설**

- 건설기계 부품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및 심사 절차 등 규정

심사결과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주요부품에 대해 인증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비인증부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불량부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연구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인증절차를 규정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안전인증 심사절차 규정 및 해외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부품인증 신청 수수료 등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건설기계 부품의

안전성 확보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기준 마련 **신설**

- 건설기계조종사 10년 주기(65세 이상인 경우 5년 주기) 정기적성검사 의무화

심사결과 타워크레인 사고원인 중 하나로 조종사의 운전미숙이 지적되고 있어 조종사의 신체적·심리적 검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조종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수준을 마련하였고 해외사례 및 「도로교통법」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갱신·정기적성검사 등과 비교시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개정안 시행일 기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경과조치를 두고 있음. 정기적성검사 신청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종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연계되는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부적합 사유 확대 **강화**

- △ 권상장치·유압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 구조물이 연결된 경우 해당 연결 볼트·핀 체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심사결과 권상장치·유압장치가 부적합하거나 내력을 많이 받는 안전부품인 연결 볼트·핀의 체결상태가 불량한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적합 판단 기준에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됨.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수준을 마련했고 해외사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비계의 연결부 점검 규정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부품인증 대상기준 **신설**

- 부품인증을 받아야 하는 장치 및 부품 규정 △ 텔레스코핑 유압실린더, △ 브레이크 라이닝

심사결과 타워크레인의 주요부품이 검증절차 없이 임의교체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을 인증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술규제 영향평가 결과 규제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해외사례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및 대체부품 인증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임대기간 연장 **신설**

-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기간 4년(주거 취약계층은 최대 8년) 연장 가능
- 신청 요건 규정 △무주택자,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 시 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이 급등한 지역

심사결과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종료 후 감정을 통해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되므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 자금 마련이 곤란하여 강제퇴거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10년 임대주택 잔여물량은 조성원가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받고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점, 추가 임대기간동안의 임대 수입 및 국민의 주거안정 등 편익 대비 규제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분양전환 준비기간 연장 **신설**

-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기간 만료시 분양전환 통보후 임차인이 일정 기간 응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가 제3자에게 매각 가능
(前) 6개월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 12개월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심사결과 최근 임대 기간이 도래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감정가상승률 및 평균 가구당 근로소득 등을 고려시 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분양전환 준비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수준을 정하였고 추가 연장되는 6개월 동안의 임대수입 발생 및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 감소 등 편익이 큼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분쟁조정대상 확대 **신설**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분쟁 사안으로 △ 분양전환 협의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항 추가

심사결과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이 높게 산정되어 임차인의 분양전환권 행사가 곤란한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 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됨. 현장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수준을 정하였고 既 구성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대기간 연장 **신설**

- 10년 민간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기간 4년(주거 취약계층은 최대 8년) 연장 가능
- 신청 요건 규정 △무주택자, △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당시 가격 대비 분양전환 가격이 급등한 지역

심사결과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종료 후 감정을 통해 분양전환가격이 산정되므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분양전환 자금 마련이 곤란하여 강제퇴거 등의 위험에 노출되므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됨. 추가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 수입 및 임차인의 주거불안 방지 등 편의 대비 규제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한 자금회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임대사업자에 매각이 가능하며, 매각이 어려운 경우 LH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순응도를 제고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대상물질 추가 **신설**

- 신차 실내 공기질 평가대상 오염물질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추가하고 권고기준을 300 $\mu\text{g}/\text{m}^3$ 로 설정

심사결과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호흡기, 피부, 눈에 자극을 주며 간기능 이상, 중추신경계,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인체 발암가능 물질로 운전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관리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국제기준(M.R.3, 300 $\mu\text{g}/\text{m}^3$)과 조화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음. 자동차 제작사와 6차레의 협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년에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규제 순응도를 제고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강화 **강화**

- 신차 실내 공기질 평가대상 오염물질에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추가하고, 포장재 제거 (24시간 前), 습도 조건(50±10%), 모든 물질 30분간 채취, 배경농도(최대 20 µg/m³ 또는 각 오염물질 허용 기준 값의 최대 10%중 작은 값을 초과해서는 안됨, 1일 동안 1회 측정) 등 측정방법 관련 기준 강화

심사결과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의 국제기준 조화를 통해 국제통상 마찰을 해소하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제기준(M.R.3)과 조화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자동차 제작사와 6차레의 협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마련한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공항 환경관리 기준 일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공항대기질 관리 강화 **신설**

- 항공기 운영자 등에 대해 지상전원 공급장치 및 냉난방 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주기장에서 지상전원 공급장치 및 냉난방 공급장치를 우선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우선 사용 제외 사유 명시

심사결과 공항구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57%가 항공기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운영자의 지상전원공급장치 이용율은 15% 수준에 불과함. 이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공항구역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상전원공급장치 사용을 의무화하되, 제도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을 함께 신설할 필요성 인정됨. 영국·일본 등에서도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지상전원 공급장치를 우선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AEROPLANES)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항공기 기종교육 과정의 기준 **신설**

-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항공기 기종교육 과정 기준 신설
(교육시간) 항공기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학과교육 시간을 차등 적용
(교육내용) 항공기 일반·시스템·구조·엔진, 심화과정, 평가

심사결과 최첨단 항공정비 산업이 요구하는 양질의 경력 정비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종교육을 위한 학과 및 실습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항공선진국인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종교육과정의 학과 및 실습교육과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하였고, 항공훈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종교육과정에 필요한 학과 및 실습교육의 내용을 정하여 규제 준수 가능성도 제고한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공기 기종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습장비 요건 **신설**

- 항공기 기종교육 과정을 위해 갖추어야 할 실습장비 기준(항공기 엔진, 착륙장치, 출입문, 보조동력장치 등)

심사결과 저비용항공사(LCC) 증가 및 항공정비업체(MRO) 설립 등에 따라 기종교육과정을 이수한 경력정비사의 수요는 증가하나 현 교육시스템으로는 인력공급에 한계가 있는바, 항공분야 경력 정비사의 안정된 수급을 위해 항공훈련기관에서 기종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습장비 구비요건을 정할 필요성 인정됨. 항공훈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종교육과정(B737)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습장비 구비요건을 정하였으며 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교육기관에서 해당 기종의 항공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실습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한바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 강화 **강화**

- 도시정비사업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변경시 총회의결을 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해당 사항 변경 내용을 조합원이 총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총회의결 사항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인정변경신청 기준 강화 **강화**

- (변경사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내용 변경시 변경신청 및 인정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유 △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결과 인정기관이 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추가
- (신청기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 30일 이내

심사결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의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인정업체도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인정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정제품 공장품질점검 횟수 조정 **강화**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에 대한 인정기관의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횟수를 연 1회 이상 → 연 2회 이상으로 강화

심사결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제품에 대한 공장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개인하수처리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연 2회이상 점검토록 규정하는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품질관리 점검결과 필요시 시료채취 및 실험의뢰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정제품 품질 강화를 통해 층간소음 갈등 예방 등 얻게되는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서바이벌게임 관련시설 설치기준 강화 강화

- 개발제한구역 내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 설치시 △임야인 토지로 석축·옹벽 설치를 수반하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제한, △시설 폐지시 철거 및 원상복구 의무화

심사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 등의 입법취지를 감안시 개발제한구역 내 서바이벌게임 관련 시설 설치 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개발제한구역 내 유사 허가시설물인 야영장, 버스차고지 등의 설치장소 제한 및 원상복구 규정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시설 폐지시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연환경 보전 및 국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 개발제한구역의 목적 달성 편익이 큰 것으로 판된다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야영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신설 신설

-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건축 연면적을 200㎡ 이하로 제한

심사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 등의 입법취지 고려시 야영장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한정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발제한구역 내 유사 허가시설물인 실외체육시설 부대시설, 수목원·유아숲체험원 부대시설 등의 건축 면적제한규정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시설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건축 연면적 추가를 허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주택조합 총회의결 대상안건 확대 강화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2차 안전진단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합원별 추가 사업비 분담금안에 대해 주택조합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심사결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총회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총회의결 대상 안건으로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조합 총회의결 대상안건 규정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방화구획 설치 기준 강화 **강화**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 설치 범위 확대
(前) 3층 이상·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 매층마다 구획, 필로티 주차장은 다른 부분과 구획

심사결과 대형 화재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저층부(1~2층) 및 필로티 주차장의 방화구획 관리 부실로 지적됨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산·학·연 관련 전문가, 업계 및 소방청 등과 협의하여 규제를 마련하였고 미국 등 해외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방화구획 설치범위 확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닫힘 기준 명확화 **강화**

- 건축물의 피난계단 등의 출입구 및 방화구획에 설치하는 방화문 작동방식 변경
(前) 연기, 온도, 불꽃 등 감지방식 → 연기, 불꽃 등 감지방식
- 건축물의 방화댐퍼 작동방식 변경
(前) 연기, 온도 등 감지방식 → 연기, 불꽃 등 감지방식

심사결과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방화문 및 댐퍼가 신속하게 작동되어야 하나, 온도감지방식은 화재 조기감지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므로 그 설치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전문가·업계·소방청 등과 협의하여 규제를 마련한 점, 공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온도감지방식을 허용하여 규제 준용도를 제고하였고,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등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제도 도입 **강화**

-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생산공장 품질관리 상태 확인 및 품질시험 등을 통해 인정받도록 규정

심사결과 불량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는 현실 고려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공장 등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인정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됨. 전문가·업계·소방청 등과 협의하여 규제를 마련하였고,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규제 순응도를 제고하였으며, 미국 등 해외사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 강화

- 건축물에 2개소 이상 직통계단 설치시 Δ 이격거리를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1/2 이상으로 하고, Δ 직통계단 상호 간에 거실과 연결된 통로 설치 규정

심사결과 건축물 화재발생시 원활한 대피를 위해 직통계단은 대피자들의 동선을 고루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직통계단간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 직통계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통로를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문가·업계·소방청 등과 협의하여 규제를 마련하였고, 해외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용도지역내 용적률 최저기준 하향 강화

-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저기준 하향 Δ 제2종전용주거 지역 100%→50%, Δ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100%, Δ 제3종일반주거지역 200%→100%, Δ 중심상업지역 400%→200%, Δ 일반상업지역 300%→200%, Δ 일반공업지역 200%→150%, Δ 준공업지역 200%→150%

심사결과 지자체·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의 확립을 위해 용도지역별용적률의 범위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선택범위를 확장시키고, 용적률을 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용적률의 최저기준을 하향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기준은 연구용역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실제 적용되는 용적률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로 결정되므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허가 없이 가능한 농지개발 범위의 조례 위임 강화

- 농지의 2m 미만 성·절토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따로 설정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농지의 성·절토시 주변 농지와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2m 미만의 경우라도 필요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실태조사 및 지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지역 여건에 따라 규제수준을 달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필요성이 합의된 지자체에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0)

심사내용 인증정비조직의 인증변경 신고대상 **신설**

- 정비조직의 인증사항 변경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대상 명시
- 철도차량 정비업무 수행인력 10%이하 변경, 정비업무관련 토지 면적 1만㎡ 이하 변경, 철도차량 정비의 안전 및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변경

심사결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나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조직 변경인증 면제대상을 명시하여 인증정비조직의 변경인증에 따른 철도운영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항공안전법』 및 『선박안전법』에서 정비조직의 인증사항 변경시 다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신고로 갈음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비교 시 본 개정안의 규제수준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정비조직의 인증취소 등 처분기준 **신설**

- 인증정비조직의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 명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철도사고로 사망자 또는 5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심사결과 철도안전법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과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세부사항을 달리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처분기준은 유사업무 처분기준인 철도안전관리체계 관련 처분기준(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1)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신설**

- 정밀안전진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정밀안전진단 업무와 관련 준수사항 위반횟수에 따라 지정취소 및 1~6개월의 업무 정지를 명하도록 규정
- 위반횟수 산정기준(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가중처분 및 경감기준(1/2) 등을 규정

심사결과 『철도안전법』의 위임에 따라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노후 철도차량의 안전성 확보, 철도 안전사고 및 열차운행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철도안전관리체계 관련 처분기준 및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시험기관의 유사업무와 관련된 처분기준과 비교시 완화된 수준으로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신설**

-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인력·시설·장비기준, 교재 구비 및 교육훈련기관 업무규정 마련 의무)을 신설하고,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2년마다 심사

심사결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기술 교육훈련기관의 조직, 인력, 시설, 장비 및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철도차량 정비품질 제고 및 철도사고 예방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철도안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기준(『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과 유사한 규제수준으로서 교육인원(30명이상시)이 15명씩 더 추가될 경우 추가로 확보해야 할 교수인력을 비전임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신설**

- 위반사항별 위반횟수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경고,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 『철도안전법』의 위임에 따라 정비교육훈련 업무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정비교육훈련기관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전문성 향상을 저해하고 철도 안전사고 및 운행 장애 증가할 우려가 있는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비교육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상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및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분기준을 설정하여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비교육훈련의 기준 신설

- 정비교육훈련의 시기, 교육훈련 시간 및 내용을 정하고,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상 위등급으로 등급 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정비교육훈련 이수 의무화

심사결과 철도운영자 및 철도종사자의 교육훈련 시행 시 혼란 방지 및 정비교육훈련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정비교육훈련의 시기, 시간 및 내용 등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교육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학교, 철도차량 및 용품제작 회사,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이수한 교육 실적이 증명될 경우 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교육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규제 순응도를 제고한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신설

- 철도차량 정비조직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명시
- 정비업무 상시 종사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등

심사결과 정비조직 인증에 따른 인적·물적비용으로 인해 철도운영기관의 건전한 기업운영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외대상을 명시해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기준과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전국의 철도운영기관·전문가 등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각 철도운영기관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규제 순응도를 제고한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차량 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 **신설**

-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 대상 명시

심사결과 철도사고 및 열차 운행장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의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차량정비를 명령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철도차량정비 시정명령 대상을 규정해 철도차량에 대한 철저한 정비를 유도하고 철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됨. 항공 및 선박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안전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항공기의 운항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차량 판매자의 자료제공, 기술지도 및 교육 실시의 의무 **신설**

- 철도차량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할 자료, 기술지도·교육방법, 교육 실시 의무 규정

심사결과 『철도안전법』의 위임에 따라 철도차량의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할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기술지도·교육과 정비매뉴얼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유사입법례 및 現 철도차량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비교 시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차량 판매자의 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의무 **신설**

- 판매자가 정비업자에게 차량 정비를 위해 20년 이상 제공해야 하는 부품·장치를 명시하고, 구매자가 10년을 초과하여 부품의 지속적인 공급 요구 시 동 부품을 해당 판매자로부터 전적으로 구매토록 규정하고, 판매자에게 합리적인 공급 부품가격 결정 의무 등 부과

심사결과 철도안전법의 위임에 따라 철도차량의 정비품질향상을 위해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주는 주요부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부품의 종류, 공급기간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철도차량 정비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노후 철도차량에 대해서도 부품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차량 정비품질을 향상하고, 철도 안전사고·열차 운행의 장애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 및 철도공사·지하철공사

계약서에 명시된 부품공급자의 의무와 비교 시 완화된 수준으로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 신설

- 개인화물자동차를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따라 개인 소형·개인 중형·개인 대형으로 구분된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 허용

심사결과 업종톤수 제한 폐지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기존 용달/개별/일반 사업자간의 운송물품 업역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폐차 범위를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의 용달·개별·일반화물업의 범위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폐차 범위를 마련한 것으로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신설

- 건설공사 하도급 규정 위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관련 법령 위반시 1개월~12개월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설정
-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시, 관련정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

심사결과 불법 재하도급,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하도급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법령 위반시 공공공사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제재처분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일자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원도급사에 대해 입찰 참가제한(1개월~2년)을 규정하고 있는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여제한으로 하도급사의 영업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에 해당하고, 성실한 하도급사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 등 연계되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급인 벌점부과 기준 신설 **신설**

위반 행위	부과벌점
▪ 재하도급 지시·공모(법 제82조제2항제6호)	3점
▪ 재하도급 묵인(법 제98조의2제1호)	1.5점
▪ 재하도급 관리 소홀(법 제99조제6호)	0.5점
▪ 2차레 이상 임금체불 공표(근로기준법 제10조제1항)	1점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산업안전법 제29조3항)	2점
▪ 산업재해 은폐를 교사·공모(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1호)	3점

심사결과 건설현장에서 불법 노무행위 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관리·책임 및 처분 체계가 미흡하므로 벌점 기준을 마련하여 열악한 건설 근로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됨. 일자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수급사업자 등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건설업자가 상호협력시 감경규정을 함께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업종별 예치비율 상향 **신설**

- 건설업 등록시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담보·예치 비율 기준을 자본금의 20~50% → 25~60% 로 상향

심사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이 하향됨에 따라 부실 업체가 난립하는 문제가 우려되므로 건설업 등록시 담보·예치 금액의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하향된 자본금 기준을 고려하여 금액으로 환산시 이전보다 담보·예치금액은 감소한 수준이므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영업정지 부과기준 추가 **신설**

- 임금직불제 허위청구,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허위통보 등에 대한 행정처분(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 규정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노동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영업정지기간 및 과징금)

심사결과 건전한 건설산업 형성을 위해 공공공사 임금 직불제 의무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재하도급 지시·공모시 처벌강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노동법령

위반시 벌점 부과 등 의무 규정들이 신설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동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타 영업정지 기준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신설**

- (심사대상) △수급인의 도급금액 대비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금액이 82% 미달 △ 발주자의 예정가격 대비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금액이 64% 미달
- (심사방법)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방법 준용

심사결과 저가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으로 불량 장비사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건설공사에 적합한 타워크레인이 사용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장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가 마련되었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와 비교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신설**

-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 등으로 부과된 벌점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기준 마련
 - △ 6개월 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대상 : 벌점 10점 초과
 -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벌점 5점 초과

심사결과 건전한 건설산업 형성을 위해 건설공사 수급인에 대한 벌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자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내 제한행위 규정 **신설**

-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행위 규정
 -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자갈·모래 채취, △ 토지분할, △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수산동식물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

심사결과 수질보호를 위해 댐 주변지역은 개발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농업생산기반 시설 등 활용구역 내 제한행위를 규정한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댐 친환경 활용 사업 기반시설 설치시기 및 비용의 부담 규정 **신설**

- 댐 친환경 활용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시기를 활용사업 시행기간 내 완료하도록 규정
-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 설치비용을 공급자와 사업시행자가 분담할 수 있는 설치범위 규정

심사결과 댐 주변지역은 낙후된 미개발 지역으로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댐 친환경 활용구역 내 기반시설의 유무가 사업시행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반시설 공급 기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련 공급자와 사업시행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반시설 비용분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활용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시기 및 범위 등을 규정한 「농업기반시설법 시행령」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 철도사고·장애 시 철도이용자 보호를 위한 철도운수종사자의 이행 사항 및 이에 대한 철도사업자의 지도·감독 의무 규정

심사결과 철도사고·장애로 인해 열차가 장시간 정차·지연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미비로 철도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철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철도이용자 보호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유사입법례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과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개발 요건 및 절차 **강화**

- 사업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 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분할·결합개발시 공익적 사업지구를 우선 개발토록 명시

심사결과 법률에서 역세권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역세권 주변 노후화 및 도심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결합개발 추진 시 최소한의 국민권익 보호(동의요건) 및 행정 신뢰도(공익적 사업지역 우선개발) 제고를 위해 명확한 요건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시 토지 소유자 동의요건과 동등한 수준이고 『도시개발법 시행령』에도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익적 사업지구를 포함·우선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택시운송종사자단체 등록요건 및 등록변경신청 요건 **신설**

- 택시운송종사자단체 등록요건(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일 것 등) 및 등록변경신청 요건(단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관리인 변경 등) 신설

심사결과 「택시발전법」에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자금지원 등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최소 등록요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등록 및 등록 변경 신청요건은 유사입법례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택시운수종사자 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여 규제 순응도를 제고한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감리중간보고서 작성시기 추가 강화

- 3층 이상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 공사감리 시 주요 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제출토록 규정
 -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 완료한 경우, △하중이 전이되는 기둥 또는 벽체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하중이 전이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심사결과 지진 등의 피해 규모가 큰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필로티 건축물 공사감리시 주요 공정별로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됨. 타 건축물 공사감리시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기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가연성 내부마감재료 적용 대상 확대 강화

- 비가연성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추가 △학교 전체·학원, △위락시설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다중이용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심사결과 가연성 내부마감재료로 인한 화재확산 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비가연성 내부마감재료 사용의무 건축물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본 등 해외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비가연성 내부마감재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시행 후 새로 허가신청을 하는 건축물에 적용되며 화재확산으로 인한 재산피해 및 대형 인명피해 예방 등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가연성 외벽마감재료 적용 대상 확대 **강화**

- 비가연성 외벽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 추가 △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전체, △3층 이상 또는 9m이상의 건축물, △필로티에 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

심사결과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외벽 마감재를 비가연성으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독일·EU 등 해외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시공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건축주 등의 부담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화재 예방을 통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 등 달성 가능한 공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다만 가연성 외벽마감재료를 생산하는 업계의 시장축소 등이 우려되므로 가연성 외벽마감재료라 하더라도 화재 안전 성능을 갖춘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실험방법 개발 및 관련 규정 개정시 반영토록 **부대권고**

심사내용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 **강화**

- 건축물의 화재·내진 관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상향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 법 제35조(유지·관리상태), 제48조(구조내력기준), 제49조(피난시설·건축물 용도·구조 제한 등)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 법 제52조(마감재료)

심사결과 지진 및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건축물 대형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화재·내진 관련 법령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축허가 사항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기준을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철도차량 이력관리 기술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철도차량 이력관리 대상 및 관리 방법 **신설**

- ① 철도소유자등이 이력관리 해야 할 철도차량 이력관리 대상 명시
- ② 철도운영자에 대한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 관리의무
- ③ 철도운영자에 대한 주요부품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및 생애주기 이력관리 의무

- ④ 철도운영자에 대한 철도차량 이력관리 전산시스템의 구비 요건
- ⑤ 철도운영자에 대한 철도차량에 의한 열차사고·운행장애에 대한 코드화 관리 등 의무

심사결과 법에서 위임한 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세부기준을 명시해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유도하고 철도사고를 예방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항공의 경우도 정비관리 대상을 명시하고 정비 이력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산시스템 이력관리를 위해 연구용역을 거쳐 철도운영기관의 요구사항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바,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38)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계측기기의 관리 **신설**

- 철도차량정비와 관련된 계측기기 관리·정비책임자를 지정하고, 전문기관에 의한 계측기 교정 검사 및 점검·교정·수리 실시 의무화

심사결과 철도차량 부품·장치 등의 상태확인 및 정비 후 정비결과를 확인하는 계측기기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철도 안전사고 발생 및 열차 운행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아 철도차량 정비에 필요한 계측기기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도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철도운영자는 자체규정에 따라 계측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교정을 시행하고 있어 규제 신설에 따른 추가 부담이 크지 않고, 철도차량 부품·장치 등의 상태 및 정비결과에 대한 정확한 계측을 통해 열차사고 예방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달성되는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차륜의 관리 **신설**

- 차륜의 삭정주기 수립·실행 및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차륜의 정밀검사 주기를 설정·관리토록 하며, 마모한계 초과 운행을 금지하고, 차륜의 적정 점검·정비 및 교체주기 설정, 차륜 정비 이력 관리의무 부과

심사결과 법에서 철도차량 정비 시 준수할 항목, 주기, 방법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바 철도차량 정비에 관한 통일된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됨. 특히 철도차량 주행 중에 차륜과 레일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마모가 일어나고 지속적인 마모로 차륜의 박리, 국부적함몰, 미세균열 등 심각한 차륜의 손상이 발생하여 철도차량의 탈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바 차륜정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철도운영기관 자체규정도 이미 차륜의 정비항목·정비주기·정비기준 등 유지보수 기준을 명시하고 정비결과를 기록·관리토록 하고 있어 규제 신설로 추가되는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차량 고장방지 목표관리** **신설**

- 철도운영자의 철도차량 고장률 관리 목표(고장률 감소대책 포함) 설정·관리 의무 신설

심사결과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차량 고장방지 목표를 설정·관리토록 함으로써 철저한 차량 정비를 유도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 인정되고, 현재도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는 자체규정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고장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있어 규제 신설에 따른 추가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철도차량 고장률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관리함으로써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등 동 규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편익은 클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건설기계 부품의 인증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건설기계부품의 안전성 시험 기준** **신설**

- 교환용 텔레스코핑 실린더, 교환용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용 드럼브레이크 라이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심사결과 타워크레인 사고가 잦고 주기적 교환이 필요한 주요부품을 부품인증대상으로 규정하여 불량부품 사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세부적인 시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KS 등의 기준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건설기술자 영업정지 기준 추가 강화**

- (미작성, 거짓작성, 고의누락) 1차 업무정지 12개월
- (중과과실로 누락) 업무정지 2개월(1차) 업무정지 3개월(2·3차)
- (경과실로 누락) 경고(1차), 업무정지 1개월(2차), 업무정지 2개월(3차)

심사결과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허위·부실작성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미작성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됨. 제406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건설기술인의 고의·중과실 및 경과실 여부를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였고, 건축물에너지평가업무를 고의·중과실로 거짓·부실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강화 2)

심사내용 **보고서 작성의무 기준 강화 강화**

-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범위 구체화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토목·건축·기계·조경 등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사결과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건설기술관리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협회 의견수렴에 따라 규제를 마련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 강화 강화**

- 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굴착공사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 계획 추가

심사결과 굴착공사는 토사붕괴, 낙석 등 사고발생시 공사장 주변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굴착공사 계측계획을 추가하여

위험징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전문가 및 업계 등 TF 회의를 통해 규제를 마련하였고, 지하안전영향평가지 공사장 주변 시설물의 안정성 분석을 하도록 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음. 안전관리계획에 제측계획이 추가됨에 따라 제측비용 및 기술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나, 건설공사 안전확보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계획 수정 및 보완 명령 **신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시정명령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점검 기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수정 및 보완 명령
- 건설안전점검기관 등은 7일 이내에 계획의 수정·보완 완료 의무화

심사결과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건설안전에 위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보완 명령이 이루어지며, 지하안전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조정 의무를 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점검 절차 강화 **신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변경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이 지정
- 안전점검 결과 제출 기한 :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발주청 및 건설업자 등에게 30일 이내 제출 △건설업자 등은 제출받은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안전점검 결과 적정성 검토 및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 명령 등 규정

심사결과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건축법」에 규정된 공사감리자 지정방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안전점검 결과 제출기한 및 수정·보완 의무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내구연한 등 **신설**

-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20년 규정. 다만, 정밀진단 통과시 3년단위로 연장 가능

심사결과

타워크레인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세부과제로 노후 타워크레인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은 인정됨. 연구용역, 현장분석 및 EU 등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시 20년 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업계 이해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사용제한에 따른 경제적 부담, 저가 불량 수입장비 및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양산 등의 문제를 지적한바, △내구연한이 도래하더라도 정밀진단을 통해 사용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 △저가의 부실 타워크레인 수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소형 타워크레인 등 규모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밀진단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부대권고

(4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보일러 기준 변경 **강화**

- 에너지절약 친환경주택의 가정용 보일러 기준을 열효율에서 환경표지인증 수준으로 변경

심사결과

가정용 보일러에서 연소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업계 간담회를 통해 기준을 마련하였고, 「대기관리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본 규제로 주택 건축시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및 국민 건강증진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검사 방법 **신설**

- 음주확인·검사를 호흡측정 검사방법으로 한정하고,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운수종사자의 자가 측정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유 명시

심사결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표준화된 음주측정 절차 및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로서 버스·택시기사가 공무원은 아니나 다수 시민의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철도종사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등 교통안전 제고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음주 측정 결과 등 기록방법 **신설**

- 운송사업자가 음주여부 확인대장에 측정결과를 기록하고 음주측정 수치를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기재토록 의무화

심사결과 음주측정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운수종사자 음주측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음주 여부 확인 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보관토록 명시하고 있어, 관련 서식을 지정·기재토록 하는 것으로서 운수종사자가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기록하도록 하고, 음주측정 확인자를 함께 기록·관리토록 하는 것은 음주측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음주 측정 결과 보존 및 자료제출 의무 **신설**

- 음주여부 확인대장 보존 및 관할 행정청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음주측정 결과물에 대한 보관방법을 명시

심사결과 관할 행정청이 음주 측정제도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여 음주 측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측정결과의 서면 보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관방법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할 행정청이 음주측정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요구 시 대장사본을 제출토록 한 것은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철도용품 기술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장력조정장치 기술기준 강화 **강화**

- 활차식·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의 인장내하중 시험 및 내구시험 등의 절차 및 기준 강화

심사결과 국토교통부는 매년 철도용품 신제품 및 기술개발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을 조사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심의를 거쳐 형식승인 대상 포함·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신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철도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철도용품 제작자의 기술개발 사항을 철도차량 용품기술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술기준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과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개정안을 마련한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대여계약 변경요구 기준 **신설**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수급인에게 대여계약 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항목별 심사점수 합계 미달, 허위 제출) 설정

심사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그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여계약의 내용이나 대여업자를 변경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 제도인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변경요구 기준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여계약 심사 서류 변경·보완·추가 제출 **신설**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서류(자기평가표 및 사실확인 서류) 추가 및 변경·보완·추가 제출 근거 마련

심사결과 건설공사 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해 건설기계 표준계약서 이외에 구체적인 확인 서류로 수급자 자기평가표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서류를 추가적으로 변경·보완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신설**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마련

심사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해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유사 제도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재심사 요구 및 통지의무 기준 **신설**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일 이내 재심사를 요구하고 발주자는 7일 이내 결과 통보

심사결과 수급인이 심사결과를 불수용하는 경우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 제도인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재심사 요구 규정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민감정보처리 기준 **신설**

-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위해 개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처리 규정 마련

심사결과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는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면접조사로 진행되므로 표본설계에 있어 건강 등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보장 지원대상자 발굴시 민감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주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 **강화**

- 주거실태조사를 위해 개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중 여권 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추가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에 주거실태조사 추가

심사결과 주거실태조사는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면접조사로 진행되므로, 표본설계에 있어 건강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취급이 필요하며, 사회보장 지원대상자 발굴에 사무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규정을 마련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주거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처리할수 있도록 한 점,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미미한 반면 궁극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강화 **강화**

- 최대적재량 9톤 미만의 자동차수송용 차량의 경우 총 허가대수 2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를 허용하고, 시·도지사의 공급 필요 판단에 따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공급을 허가 가능토록 하며, 공 T/E* 중 불법 위·수탁 계약 피해차주 외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 일부 제한

* 공TE(Table Equipment) : 허가제('04년) 전환 당시의 지입차주가 향후 지입계약을 해지하면, 신규번호판을 부여하고 기존 번호판은 공TE로 별도 관리(차량 총당 금지)

심사결과 '04년부터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수급조절제를 병행 도입하여 매년 수급분석을 통해 공급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온바, 최근의 화물운송업계 시장여건을 반영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수급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화물차 공급기준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됨. 한국교통연구원의 수급분석 결과를 토대로 운송업계 및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동 규제를 통해 달성할 화물운송 수급불균형 해소와 운수종사자 보호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0)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범죄예방 건축기준 강화 **강화**

-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을 추가하여 범죄예방 의무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며,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대상 적용기준을 강화함

심사결과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지속되고 있고, 여성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의 범죄 취약성이 대두됨에 따라, 범죄예상 건축기준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유사 해외사례가 있으며 범죄예방 건축기준 강화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대비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적 편익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음. 행정예고 기간 중, '검침용 기기의 주택 외부 설치는 안전 및 미관상 곤란'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원격 검침이 가능한 경우에는 세대 내부 설치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한바, 이해관계자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범죄예방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장착대상 **신설**

- 항공레저스포츠사업용 자유식 기구류에 대한 구조지원 장비장착 의무

심사결과 자유식 기구는 기상상황 등 환경여건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기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를 탑재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럽항공안전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류 운행기준과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서 적정성이 인정됨.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유식 기구류는 총 3대로, 추가 안전장비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사고 예방 및 탑승자의 안전확보를 통해 달성되는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 **신설**

- 비행승인시 부여된 운영조건 또는 제한사항 위반 금지, 최대이륙중량 및 풍속 제한 기준 등 기상요건 준수, 비행관련 기록 및 기록사항 유지 준수, 자유식 기구류 조정자에게 비행시간 통보 의무 등을 부여함

심사결과 초경량비행기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비행장치 조종자의 안전관련 준수사항을 강화할 필요가 인정되며, 유럽에서도 조종자에게 비행 전 검사, 비행절차 준수, 비행관련 사항의 기록 및 기구와 관련된 사고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운항승무원의 휴식시설 및 휴식시간 강화 **신설**

- 기장 2명, 조종사 1명으로 운항 시 최대 비행근무시간 30분 단축, 휴식시설 등급 설정 및 등급별 최대 비행근무단축시간 적용, 시차 미적응시 최대 비행근무시간 30분 단축, 휴식시간 2시간 상향 등

심사결과 항공교통은 급격한 시차변화와 야간 시간대 운항으로 인하여 승무원이 피로 유발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업무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고 항공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시킴. 이에 따라 항공안전법에서 승무원 피로관리를 위하여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을 정하도록 한바, 근로여건 개선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기준은 미국 항공관련 연방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수차례의 노·사·정 협의를 통해 마련된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객실승무원의 휴식시간 강화 **신설**

- 객실승무원의 휴식시간을 2시간 상향 조정

심사결과 객실승무원은 다양한 성향의 승객들로 인한 피로감이 상당하므로, 운항승무원과 유사하게 2시간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휴식시간 확대를 통하여 객실승무원이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비상시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한 제한 **신설**

- 공공택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최대 18개월까지만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

심사결과 공공택지 내 토지사용승인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분양이 지연되는 경우 이자비용이 분양가에 그대로 가중되므로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공택지의 국민주거 안정이라는 공적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산입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점등을 감안할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주택공급의 적기 추진을 통한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택지대금 기간이자 적용금리 변경 **신설**

- 택지대금 기간이자 적용금리 변경

심사결과 택지대금 기간이자 비용은 분양가에 그대로 가중되므로 적용금리를 적정한 수준으로 산정될 수 있게 규정해야 하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현실의 금리변동사항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택지대금 기간 이자 비용을 적시성 있게 산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산정시에만 적용되도록 하여 공공택지의 국민주거 안정이라는 공적목적의 달성과하고자 하며, 분양가격 인하분으로 인한 국민 편익이 예상되는바, 규제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대상 기준 강화 **강화**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대상 기준을 계약취소 물량과 관계없이 일반공급·특별공급으로 이원화하여 강화

심사결과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부합하며,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 등에게 재공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주택 공급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주택법령상 이미 규정되어 있는 일반공급·특별공급 대상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인바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택시부제일 유가보조금 지급 인정 조건 **강화**

- 택시 부제일 주유시에는 다음 날 영업준비를 위해 총 운행거리가 20km이내인 경우에만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택시 부제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정수급 초래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시 유가보조금 지급업무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택시 부제일 보조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유가보조금 지급 관할관청과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상한선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전국 LPG 충전소의 배치간격을 조사한 결과 전부 20km 이내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총 운행거리 상한 설정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5)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청소용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 구조 강화

- 방수기능을 갖춘 견고한 재질 및 적재함 상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구조 등 청소용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 덮개 구조 명시

심사결과 화물적재함에서의 낙상 방지 등을 통하여 화물운수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재물 탈락방지를 통한 안전한 도로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물품적재장치의 덮개구조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규제 영향분석 결과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자동덮개 설치 등을 권장하고 있는 등 규제 도입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륜자동차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 강화

- 자동차에 장착된 전자제어장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스템 또는 다른 협대역 발생 원으로부터 방사되는 전자파를 측정하여 협대역 방사시험을 하도록 하고, 30MHz~1,000MHz 주파수 대역에서 방사되는 전자파를 측정하도록 시험조건을 설정하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전자파에 대한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내성시험을 정함

심사결과 전자장치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 운전자를 비롯하여 같은 도로 이용자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륜자동차의 전자장치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인정됨. 또한 동 기준은 기존 국내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며 국제기준에 조화하는 것으로서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초소형자동차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 기준 강화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바퀴잠금 확인시험 방법에 관한 것으로, 고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저마찰로에서의 제동능력·고마찰에로에서 저마찰로 통과시 바퀴잠김 확인시험 등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있음

심사결과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제동 시 바퀴의 미끄러짐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로서, 초소형자동차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EU·일본 등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조화시키는 것으로서 기술규제 영향분석 결과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됨이 확인되나,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조향장치 기준강화 강화

- 조향장치의 경고기준 일반에 시각경고신호 및 청각경고신호를 추가하고 승용자동차의 에너지원 고장 시 주제동장치 제동능력기준을 변경하는 등 조향장치에 대한 세부기준 내용을 새롭게 정함

심사결과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전 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이는 국제기준에 조화시키는 것으로서 기술규제 영향분석 결과 적절한 수준의 규제 검토되었으며, 운전자의 부주의 및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것으로 기대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6)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강화

-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를 허용토록 함

심사결과 친환경 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후 친환경 이외의 차량으로 대폐차를 허용할 경우, 공급 제한된 타 유형 화물차 수량 증가 효과가 발생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 방향에 배치되나 대폐차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범위 제한이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공급을 허용하고 공급제한 차량과 공급허용 차량 간의 대폐차를 금지하는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유형 및 총중량 범위 **강화**

- 특수 자동차는 동일한 유형의 차량으로만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특수자동차는 주로 사고·재난 발생 시 차량견인 및 인명구조 등에 사용되는 특수 목적이 있어, 일반 화물자동차보다 더욱 제한적으로 수급조절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대폐차 허용범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동일한 유형의 특수 자동차 간에는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차를 허용하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신설**

- 개인 소형·중형·대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동일 유형에 속하는 차량끼리 톤급 제한 없는 대폐차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 중형화물자동차의 경우 톤급 상향 대폐차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며, 기준 충족 시 최대적재량 13.5톤 이하 혹은 16톤 이하까지 톤급 상향 대폐차를 허용함

심사결과 대폐차 범위가 크게 확대된 개인 중형화물차의 경우, 급격한 화물차 증톤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친환경 차량으로의 대차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폐차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10톤까지는 제한없는 대폐차를 허용하고 최대적재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차되는 화물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허용하면서, 친환경 차량으로 대폐차 하는 등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더 큰 톤급 차량으로의 대폐차가 가능하도록 함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규제가 설계되었다고 판단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7)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4)

심사내용 분양신고 제출서류 추가 **강화**

- 분양신고 시 제출서류에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자와의 공동협약서를 추가함

심사결과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공급하는 분양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업자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인허가 문제, 미분양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 등 발생시 사업 중단 등으로 수분양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등을 제출토록 함은 부동산개발업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부동산개발업법

준수여부의 사전확인을 위한 단순 서류 제출에 불과하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와 건전한 개발·분양시장 조성 등 도입 효과를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물 분양신고 대상 추가 **강화**

- 생활숙박시설(30실 이상) 포함

심사결과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연면적 3천㎡ 미만)이더라도 30실 이상 분양 시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여 건축물 분양법령의 적용을 받게 함으로써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시장 조성 기대할 수 있으며, 분양시장에서 유사한 성격으로 분양되고 있는 시설인 오피스텔과 동일한 수준으로 분양신고 의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개모집 방법 강화 **강화**

- 공개모집 기간 1일 8시간 이상 및 공개모집 기간 종료 이후 공개추첨 진행 등 공개모집 최소기간 설정 및 공개모집 종료 후 추첨 원칙 마련

심사결과 공개모집 제도의 취지가 건축물 분양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임을 고려할때, 공개모집 최소기간 등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조성을 기대할 수 있고, 대부분의 분양공고 시 공개모집 기간이 1일 이상으로 운영 중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주택 입주자모집 청약, 계약 등의 세부절차 기준과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 포함 사항 추가 **강화**

- 지하에 철도·도로 건설 등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사항을 분양광고 및 계약서에 포함토록 규정

심사결과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분양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국민의 재산권 과잉 제약 및 향후 대규모 지하형 국가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하에 분양사업을 허용하되 구분지상권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 내에 그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며, 분양광고 및 계약서 항목 추가는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8)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건축물 용도변경 기준 강화 강화

-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없이 가능한 용도변경 사항 제외 건축물 규정

심사결과 건축물 용도변경 시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은 변경되지 않아 기재된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불일치하여 안전기준 적용 누락 및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다중 밀집 등으로 재난 발생시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물의 경우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변경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현행 건축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별도 절차가 면제되는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대상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업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영상기록장치 설치기준 및 자료보관 신설

- 자동차 전방과 운수종사자 상황 및 승객 상황이 최대한 포함되도록 촬영하고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해상도를 유지하며 영상기록을 3일 이상 보관하고 보관기간 지난 영상기록은 삭제하도록 함

심사결과 규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승객 및 운수종사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과 영상기록 제공·보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하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기준 및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등에 대하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규제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신설**

-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및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사업정지처분 부과

* (1차위반)10일, (2차위반)20일, (3차위반)30일

심사결과 영상기록장치 설치·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처분 기준을 명시하여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반행위 사전 방지 및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유사 타법사례인 『도시철도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시설개선명령 위반 시 사업정지처분 기준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제재기준을 마련한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영상기록장치 설치 및 관리지침 마련 **신설**

- 노선·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파악 등을 위한 영상 기록장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에 설치하며, 설치 목적, 설치대수·위치·촬영범위, 보관기간·장소, 외부제공 및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 마련할 것 등을 규정

심사결과 차량의 운행상황 등은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확인 가능하나, 차량 내부의 상황 파악은 영상기록장치 없이는 파악이 곤란한바 대형 교통사고 방지 및 사고원인 파악, 범죄예방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 내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인 『철도안전법』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등을 참조하여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설정하였고, 노선버스는 이미 내부에 영상기록장치를 100% 장착하고 있고, 전세버스의 경우도 설치준비 기간을 고려한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규제 준수가능성을 제고한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기준 강화 **강화**

- 분양계약서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임대등록 직권말소

가능시기 단축

(現)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기간 :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 (改) 1년

심사결과 통상 분양계약이 건물 착공 시점에 이루어짐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중 완공되지 않아 실제 입주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등록을 유지토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매매계약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대사업자등록 기준 강화 **강화**

- 민간임대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을 분양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거나 잔금 지급일 이후인 경우로 한정

심사결과 통상 분양계약이 건물 착공 시점에 이루어짐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 중 완공되지 않아 실제 입주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등록을 가능토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에 제한이 없도록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시기를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강화**

- 주택조합원 가입요건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 및 그 배우자는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일부 조합원들이 주택조합을 중복가입한 후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조합 중복가입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됨. 주택조합제도의 취지가 무주택자가 청약경쟁 없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점,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 후 조합원 모집신고부터 적용하는 점 및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입주자모집 시 우선공급 의무기준 및 절차 **신설**

- 소규모 집주인용자형 임대주택(30호 또는 30세대 미만) 입주자 모집시 우선공급 대상 기준(특별공급대상자) 및 공고(30일 이상) 등 세부절차 규정

심사결과 집주인용자형 임대주택사업의 취지 고려시 주거지원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임차인 모집 방법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소규모 주택사업에 한정하고, 특별공급대상자 모집이 되지 않는 경우 일반공급대상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한 점,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행복주택 기준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집주인용자형 임대주택사업 시정조치 **신설**

- 주인용자형 임대주택사업자 의무 불이행 시 제재처분 규정 신설
△임대사업자가 용자금을 신청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선정 취소 및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심사결과 집주인용자형 임대주택사업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공적기금을 지원하므로 정부가 기금의 활용실태를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여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기금이 공적임대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시행 중인 집주인용자형 임대주택자금 대출 회수사유와 동일한 수준이고,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기준」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집주인용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 처리절차 **신설**

- 집주인용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승인에 필요한 서류 및 세부절차 규정 신설

심사결과 집주인용자형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신청 및 처리절차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재 추진 중인 업무 매뉴얼(한국감정원)과 동일한 수준이고 유사 제도인 민간제한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의 신청 처리 절차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사용요건 강화 강화

- 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의 토지수용요건으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규정

심사결과 사업시행자가 물류터미널 개발과정에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필요한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행정과정에서의 혼선 방지 필요성이 인정됨. 개정안의 토지수용요건은 의제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해 온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요건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로서 기존에도 피규제자가 준수해왔던 규정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5)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정비사업 대상 임야기준 신설 신설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요건으로 임야를 포함토록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2등급은 제외토록 규정

심사결과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역에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무분별한 개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일부 임야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연구용역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의 도시관리계획 기준 등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대상, 내용 및 주기 신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3년마다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경우 관리체계의 부재로, 최초 면허 취득 후 별다른 교육 의무가 없어 조종기술 및 안전관리능력 함양에 한계가 있어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연구용역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해외사례

및 소방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안전교육 의무화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건설사고 예방 및 국민의 안전확보 등 연계되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 본 규제의 교육의무를 면제토록 규정함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기계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신설**

- (지정기준) 강의실(100㎡), 전임강사 2명, 전담직원 2명 보유
- (지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교육계획을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경우

심사결과 건설기계조종사들에게 신기술 교육 및 안전사고 사례 등을 교육하여 조종기술 및 안전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연구용역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요건 및 취소기준과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음.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전문인력 고용비 및 시설운영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안전교육 수수료 등 수익 등으로 보전 가능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 **신설**

- 타워크레인 내구연한(20년) 도래 후 해당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려는 경우, 설치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정밀진단 세부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내구연한이 도래한 노후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정도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밀진단 기준을 마련하여 현재의 타워크레인 검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연구용역을 통해 정밀진단 기준을 마련하였고, 해외사례 및 국가표준(KS)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음. 정밀진단에 따른 규제비용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설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비용 절감, 건설지연 비용 감소 및 국민의 안전확보 등의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며, 제524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피규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밀진단 수수료를 경감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7)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건축자재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신설**

- 건축자재 품질관리서를 제조·유통·설치단계에서 제출토록 절차 강화
(現) 복합자재 공급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
⇒ (改) 건축자재 제조자→건축자재 유통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건축주→허가권자

심사결과 화재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화재 관련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설치 단계에서 품질관리서를 작성·제출할 필요성이 인정됨. 건축방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해외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축자재 품질관리 의무대상 확대 **강화**

- (現)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작성 및 제출 → (改) 복합자재, 단열재, 갑종 방화문 및 을중 방화문(건축법 시행령)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뎀퍼(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심사결과 화재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자재의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화재 관련 모든 건축자재는 제조·유통·설치 단계에서 품질관리서를 작성·제출할 필요성이 인정됨. 건축방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해외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방관 진입창 설치의무 대상 확대 **강화**

- (現) 11층 이하의 건축물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 (改) 모든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

심사결과 건축물 화재 발생 시 소방관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소방관이 사다리차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해외사례와 비교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음. 소방관 진입창 설치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으로 인명피해가 경감되는바 국민 안전 확보라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관리비 공개대상 세대수 범위 규정 **신설**

-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중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세대 수 범위 및 공개항목·기한 규정
 -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관리비 공개항목 중 구성명세를 제외한 관리비 항목(47개→21개)
 -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

심사결과 관리비 등은 공동주택을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입주자들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 공개를 통해 입주자 등의 알권리 충족,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집행을 줄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동주택 관리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한 점, 피규제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관리비 공개항목을 차등화한 점 및 비용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고려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리감독 결과 등 공개기한 **신설**

-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감독 결과 등의 통보내용 공개기한 및 공개사항 규정
 - 통보일로부터 10일내에, 7일 이상 공개
 - 동별 게시판에 공개시 통보내용 요약본 공개

심사결과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알권리 충족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의 결과 또는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 등의 통보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관리주체가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공개할 경우 공개효과 감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은 공개하여야 입주자 등이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공개기한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지자체의 공동주택 감사조례와 비교시, 피규제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공개내용을 요약할 수 있도록 완화규정을 마련한

점 등 고려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워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6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에 따른 재검사 기간 단축

신설

- 자동차 정기검사 시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기간을 단축

심사결과 배출가스 기준을 미충족한 차량의 운행을 최소화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재검사기간의 단축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등 규제비용보다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 등의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규제수단의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10일의 재검사 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점 등 고려시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조등시험기 검사방법 강화 **강화**

- 하향등 검사용 전조등시험기의 정밀도검사 기준 신설
 - 전조등시험기의 교정기 광도, 광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 각도변화에 따른 광축의 편차 규정

심사결과 자동차 전조등 검사항목이 상향등에서 하향등 검사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인 전조등시험기에 대한 정밀도 검사기준도 이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성 인정. 기술규제영향평가 결과 전조등 검사기준으로 추가된 하향등 광도기준은 3천칸델라 이상이므로, 시험기기의 광도측정기준을 3천칸델라보다 약간 낮은 2천칸델라부터 측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장비기준(매연포집시설) 강화 **신설**

-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정기검사시에도 매연포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심사결과 배출가스검사 중에 발생하는 매연이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종합검사 시 갖추어야 할 매연포집시설의 기준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도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이해관계인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점, 규제비용 대비 사업장 근무환경 개선 및 대기오염 방지를 통한 검사업무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건강증진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시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강화**

-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금품수수 및 무자격 검사 등 중요 위반행위 : 즉시 지정취소(해임)
 검사결과 조작 및 검사 일부 생략 등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행위 :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기준을 강화

심사결과 검사업체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강화를 통해 부실검사를 방지하고 자동차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사유 위주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바, 목적에 적합한 규제수단으로 판단되는 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에서 안전진단기관·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과 관련하여 유사한 수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종합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기간 단축 **신설**

- 자동차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재검사기간을 단축

심사결과 배출가스 기준을 미충족한 차량의 운행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재검사기간의 단축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 등 규제비용보다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 등의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규제수단의 비례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등 타 입법사례와 비교하여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아니한 바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기술인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위반횟수 산정 시 고려 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
-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금품수수 및 무자격 검사 등 중요 위반행위 : 즉시 지정취소(해임)
 검사결과 조작 및 검사 일부 생략 등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행위 : 업무정지(직무정지) 처분기준을 강화

심사결과 불법·부실검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검사업체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강화를 통해 부실검사를 방지하고 자동차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사유 위주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수준을 강화하고 있는 바, 목적에 적합한 규제수단으로 판단되는 점,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에서 안전진단기관·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과 관련하여 유사한 수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 적정성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강화 **강화**

-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 (現) 감정평가기관은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완료 → (改)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완료 후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서 검토 의뢰 추가 (감정원은 15일 이내 검토 완료)
- 민간택지 감정평가 기준
 - 공시지가기준법 및 원가법 비교하여 합리성 검토

- (現)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조성 완료 대지 기준 → (改) 조성 완료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현실화 또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 반영 제외
- 민간택지 감정 재평가
 - 재평가 사유에 한국감정원 검토 결과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

심사결과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 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이 접수되어 **중요규제로 분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분양가격 산정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감정원의 검토 필요성이 인정됨. 검토 수수료가 일부 발생하나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점, 택지가격의 과다산정을 차단하기 위해 현실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제외함이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7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강화 **강화**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시점 확대
 - (지역요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공통요건) 확대
 - (적용시점)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 확대

심사결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이해관계자 이견이 접수되어 **중요규제로 분류**됨. 높은 분양가로 인한 주택가격 동반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억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연구결과 분양가격이 재고주택 가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 점, 동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내 일부지역’이라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 시행되는 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정비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단지는 유예가 가능토록 하여 피규제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점 등 고려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강화**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
 - (공공택지) 전매행위 제한기간 3년~8년 → 5년~10년
 - (민간택지) 전매행위 제한기간 3년~4년 → 5년~10년

심사결과 주택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해관계자의 이권이 접수되어 **중요규제로 분류**됨.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 및 수도권외의 평균 주택보유기간을 감안하고 시세차익별로 차등적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한 점,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두어 불가피한 경우 전매를 허용하는 점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

(7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8)

심사내용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신설**

- 도급계약으로 시행하는 공사·작업의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고, 공사 구간 내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 시행하는 경우 필요시 2인 이상 배치. 다만, 소속직원이 보수작업을 실시하거나, 열차의 운행 빈도가 낮아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상적인 순회·점검 등 단순 작업으로 작업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책임자 등이 겸임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법 개정으로 철도차량 운행선로 및 그 인근에서 작업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의 의무화됨에 따라 세부적인 배치기준·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작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배치 기준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사고 또는 열차운행 장애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됨. 실무상 철도운영자가 기 준수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으로서 규제 준수가능성이 높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하였는 바, 규제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 **신설**

- (교육주기·대상)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 취득 후 또는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는 사람
- (교육시간) 1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교육내용) 직무전문교육, 철도안전 관련법령, 사고사례, 실무수습 등

심사결과 법 개정으로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 취득자의 정기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의 방법·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기교육을 통해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장기적으로 철도차량 고장 및 사고 예방

등 국민의 안전보호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법 사례(소상시설공사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철도차량 고장·사고 예방 등 철도 이용 편의 증진 및 국민 안전 보호의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시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철도운영안전관리자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기준 **신설**

- 철도운영안전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① 고의·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술에 만취 또는 약물 사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한 경우 및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철도사고 일으킨 경우 등 → 1차 위반 시 자격 취소
 - ② 그 외 고의·중과실로 인한 철도사고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 시 → (1차) 효력정지, (2차) 자격 취소

심사결과 철도운영안전관리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규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작업현장의 사고 예방 및 철도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 입법례(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등)를 참조하여 준수 가능한 수준의 규제안을 마련하였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색장비 성능인증 기준 절차 **신설**

- (성능인증 기준) ① '장비'의 성능, 안전성, 내구성 등을 평가하는 '성능평가지험'과 ② 장비를 '제작·수입하는 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성능인증 품질시스템 평가' 각각이 모두 적합할 경우 인증 부여
- (성능인증 절차)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수입자 및 제작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인증기관에 제출토록 함

심사결과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성능인증을 통해 철도 보안검색장비의 품질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테러 등 대형참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미국 TSA인증·유럽 ECAC·중국 CAAC인증 등 해외 유사제도와 비교 시 기준 및 절차가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유사입법례(항공보안법

시행규칙)와 유사한 수준인 점을 고려시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색장비 성능평가시험 절차 **신설**

- 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시험기관에 성능평가시험을 요청(인증기관→시험기관)하고, 시험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성능인증 기준을 준수하여 시험을 실시토록 하며, 시험 전·후에 시험계획서, 성능평가시험 결과서를 제출 (시험기관→인증기관)

심사결과 법 개정으로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인증업무 중 장비의 성능평가시험을 전담하는 시험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된 바, 시험의 절차 및 시험기관의 지정·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항공보안법 시행규칙)를 참조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규제안을 마련하였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이견이 없는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색장비 시험기관의 지정 기준 **신설**

- 일정한 법인·단체로서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일정 기준을 갖출 것을 규정
(법인·단체의 요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를 받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일 것
(기술인력) 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인정을 받은 시험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 3년 이상 2명, ② 시험·평가 또는 관련 연구 경력 3년 이상 2명, ③ 위험물안전관리 자격자 1명 이상 보유할 것
(시설) ① 항온·항습이 가능할 것, ②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실 보유, ③ 화학물질 보관 및 처리시설 보유
(장비) ① 엑스선검색장비 이미지품질평가용 시험용 장비 및 표면방사선량률 측정 장비, ② 각 항공보안장비별 시험용 시료 등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심사결과 법 개정으로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인증업무 중 장비의 성능평가시험을 전담하는 시험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된 바, 시험의 절차 및 시험기관의 지정·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항공보안법 시행규칙)를 참조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규제안을 마련하였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이견이 없는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색장비 시험기관 지정취소 기준 **신설**

- 위반행위 및 횡수에 따라 차등 제재 기준 마련

심사결과 법 개정으로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인증업무 중 장비의 성능평가시험을 전담하는 시험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된 바, 시험의 절차 및 시험기관의 지정·지정취소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항공보안법 시행규칙)를 참조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규제안을 마련하였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이견이 없는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색장비 성능인증 기록관리 **신설**

- 보안검색장비 성능인증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인증·시험 등에 관한 자료 등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심사결과 검색보안장비의 성능인증에 관한 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를 의도하는 자가 보안검색을 회피·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는바, 관련 자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유사입법례(항공보안법 시행규칙)를 참조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의 규제안을 마련하였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이견도 없는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대상 기준강화 **강화**

- 우선공급 대상자격인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해외거주기간 기준 규정

-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초과한 기간 동안 거주한 경우
- 국외에 거주한 기간이 연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심사결과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대상 기준 중 ‘해당지역 거주기간’ 산정시 해외거주 기간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청약 희망자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현재 유권해석으로 운영 중인 해외거주 기간 30일 기준이 해외여행 및 출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산정시 제외되는 해외거주 기간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재외국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소득세법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계약서 표시 사항 추가 **강화**

- 지하에 철도·도로 건설 등으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사항을 입주자모집 공고 및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토록 규정

심사결과 수분양자가 구분지상권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입주자모집공고 및 주택공급계약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서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입주자모집공고 및 계약서 항목 추가는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인 반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계약서 내에 구분지상권 설정 사실을 표시하는 단순 절차에 해당하여 별도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바,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복도시 특별공급 자격 제한 **강화**

-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대상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제외

심사결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행복도시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외의 특별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신호부부, 생애최초 등) 대상은 무주택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요건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불가피한 사유로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를

감안하여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 허용하는 점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분양대행자의 교육방법 및 기준 **신설**

- 분양대행자 교육 내용(전문지식, 소양 및 윤리) 및 방법(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 8시간) 등 세부적인 기준 규정

심사결과 분양대행자의 잘못된 부실상담을 방지 및 난해한 주택공급 규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분양대행자 교육을 통해 정확한 청약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됨. 「공동주택관리법」에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장 등)는 관리업등록 또는 관리사무소에 배치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일 이상의 전문·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법」에 개인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을 신청하기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이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6)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인정기관의 시료확인 규정 강화 **강화**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료 확인 규정 강화
(現) 인정 신청자와 함께 시료 확인 → (改) 시료를 채취하여 직접 시험하거나 공인시험기관을 통해 품질시험 실시

심사결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대로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시료 품질의 적정성 판단(시험 성적서와의 동일 여부)을 육안으로만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성능시험 통과를 위해 시료를 조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정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통해 시료품질의 동일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인 점, 피규제자인 인정기관과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점, 인정기관이 시료 채취 후 직접 시험하거나 품질시험 의뢰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인정제품 신뢰 제고 및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성능시험 후 해체 시 시험체 제작 상태 확인 **강화**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시험 후 시험체 해체시 인정신청 구조 일치 여부 확인토록 절차 강화

심사결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차단구조 성능시험시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고 인정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성능시험 절차를 강화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인 점, 현행 방법으로는 마감 모르타르 두께 조작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 등 고려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또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제품의 시험체는 원칙적으로 다음 실험을 위해 해체 과정을 거치므로 인정업체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인정기관에 시공 상태의 확인을 의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규제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성능인정신청 보완, 반려 요건 추가 **강화**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신청 반려 요건 추가
 - 품질시험 결과가 신청시 제출된 품질시험성적서와 다른 경우
 - 바닥구조 철거 상태 확인 결과 마감모르타르 두께 등이 인정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심사결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차단구조 인정제도의 절차를 강화함과 동시에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대. 감사원 지적사항 후속조치인 점, 신설 규정 위반시에만 적용되는 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제21조의 타 반려사유와 비교 시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시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7)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신설**

- 기구류에 대한 비행승인 표준요건(시설 및 장비의 관리·점검, 기구류 운영시간 제한, 비행을 위한 기상정보 확인 및 기상요건, 탑승객에 대한 비행정보 제공 체계

수립, 탑승객에 대한 비행정보 제공 의무화, 비상연락망 구축·유지, 탑승자 정보관리 등)을 명시

심사결과 무리한 기구류 비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항공레저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비행승인 요건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럽항공안전기구(EASA) 및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과 비교 시 유사한 수준으로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대기 안정도 등에 대한 국내의 연구결과에 따른 경우 안전운행을 위한 필요·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8)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골재채취 허가취소 기준 강화 **강화**

- 허가기간 내에 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된 경우, 1회 위반시 허가취소

심사결과 「골재채취법」제26조에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해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허가기간 내 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된 경우 위반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무분별한 불법 골재채취 행위를 방지하여 해양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수산업계와 건설업계 간의 건전한 관계 형성이 기대됨. 민관협의체 운영(18.10~19.3)을 통해 본 개정안을 마련한 점, 동 시행령상의 타 위법행위와 유사한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 점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상업용지 등의 계획기준 **신설**

- 공공주택지구계획에 상업용지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
공공주택사업자는 수요분석을 거쳐 상업용지를 계획하고,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사업추진 시기별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급하여야 함

심사결과 적정 상가용지를 계획하여 상가공실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 공공시설용지 계획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업시설에 대한 계획기준은 없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점, 수요분석에 따라 상업시설 면적 일부를 복합용지로 변경·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및 상가용지 계획마련을 위하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공공분양주택 거주유무기간 확대 강화

-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분양가를 고려하여 공공분양주택 거주유무 기간 강화

심사결과 공공분양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되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임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공공분양주택의 취지 고려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거주유무기간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거주유무기간을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로 수분양자의 경제적 이익에 비례하여 차등 설정한 점, 예외규정(거주유무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예외 인정) 및 경과조치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입주자모집시기 기준 강화 강화

- 대지소유권은 확보했으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후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입주자모집시기를 전체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 변경
(現)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 (改)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심사결과 후분양 아파트도 건설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어 수분양자들은 주택 품질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청약에 하게 되며, 건축공정 중 골조공사가 2/3 이상 완료된 시점(공정률 약 50%)에서도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후분양 아파트 공급시 입주자모집 시기를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됨. 후분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시기가 약 3~4개월 지연됨에 따라 금융이자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실시공 등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사업주체의 부도·파산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감소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제출시기 변경 및 추가 **강화**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제출시기 변경 및 추가를 통해 정기점검 형태로 강화
(現)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제출 → (改)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실시 기간 중 매달 10일에 제출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제출

심사결과 반복되는 굴착공사 붕괴사고는 지반침하 등을 수반하여 주변 피해가 크므로 체계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 현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영향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1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굴착공사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매월 10일) 제출토록 하여 보고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제도개선 TF팀(18.4월) 및 지하안전관리 자문단(18.6월) 논의를 통해 본 개정안을 마련한 점,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3)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방법 및 측정기준 **신설**

-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방법과 측정내용 및 판정기준을 명시

심사결과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고령의 택시 운수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하여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의 세부내용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전문 의료진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였고, 택시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쳤으며, 해외 유관 기관의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한 점 등 고려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바, 규제의 적정성을 인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재검사 가능기간의 제한 **신설**

- 의료적성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의 재검사기간 제한 : 직전 의료적성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재검사 신청 가능

심사결과 의료적성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의 택시 운전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의료적성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검 가능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사입법례(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와 비교 시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한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적성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신설**

- 국토부 장관의 의료적성기관에 대한 점검 및 지도·감독 권한 신설

심사결과 불법·부실 의료적성검사를 방지하여 적절한 자격을 갖춘 택시 운전자가 택시 운행에 종사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규제 준수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력·장비 점검 및 검사 실시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성이 인정됨. 동 제정안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 장비·인력 및 검사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불법·부실 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치로 판단되며, 타법 유사사례(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기준)등 고려시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관리사무소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강화**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포함토록 규정

심사결과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등의 근로환경 향상을 위해 관리사무소에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이미 규정되어 있어, 관리사무소에 휴게시설을 포함토록 하는 동 규제는 사업주체의 건설 설계 자율성을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별도의 추가적인 설치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일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인이 부담) 사업주체의 규제 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준공 이후 휴게시설을 설치할 경우 입주인대표회의에서 기존 시설의 개·보수, 행위허가 절차 이행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한 점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전기차 이동형 충전 콘센트 설치대상 및 설치비율 확대 **강화**

- (대상)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 주택단지 전체
- (비율)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50으로 나눈 수 이상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4%

심사결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 등으로 국내 전기차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의 선제적 조치 필요. 특히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하여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전기차 급속·완속충전시설 주차구역 관련 입주인 간 분쟁 발생 등을 고려시 휴대용 기기를 활용하는 이동형 충전기 콘센트를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이 인정됨. 향후 전기차 보급 추이를 고려하여 설치비율을 산정한 점, 비용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 공간 세부기준 신설 **신설**

- (1호) 거실 등 주거생활 공간과 구분될 수 있게 별도로 구획할 것
- (2호)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절한 용량의 배기장치 규격을 고려하여 마련하되, 가능하면 배기장치 규격에 가로 0.5m, 세로 0.7m를 더한 공간으로 마련할 것
- (3호) 주거전용면적이 50m²를 초과하면서 세대 내 거실 및 침실이 2개 이상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최소한 2개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심사결과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 내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최소 2개소(거실 및 안방) 이상에 연결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됨. 발코니 등에 별도로 구획된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주체의 공간 설계 자율성을 일부 제한하나, 별도의 추가적인 설치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일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입주인이 부담) 사업주체의 규제 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분양가 전가시 입주 예정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에어컨 추가설치 희망자의 편익으로 일부 상쇄되며 분쟁 감소 및 주거여건 개선 등의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설치공간 규격과 관련하여 에어컨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것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변경 **강화**

- 예비입주자의 수가 주택공급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방식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 삭제하여 예비입주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제 적용 주택의 예비입주자의 순번은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함

심사결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가점제(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를 시행 중이나, 예비입주자 선정은 예비입주자 수가 일정수에 미달하는 경우 가점제가 아닌 추첨으로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선정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가점이 낮은 신청자보다 후순위의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받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 방식으로 순번을 부여하도록 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예비입주자는 추첨방식으로 선정하는 점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 및 행정처분 강화 **강화**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시 부실의 정도에 따라 평가결과를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강화

심사결과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점검 제도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 강화를 위해 정밀안전점검·진단 평가에 따른 처분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유관기관 간담회(19.6.)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부실의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매우불량인 경우에 한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한 점, 유사입법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시 규제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품질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강화**

- 건설업자 등이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품질관리비를 낙찰률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 발주자는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 전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심사결과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발주자 등은 공사금액에 적정한 품질관리비를 계상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관리토록 해야 하나, 낙찰 과정에서 품질관리비가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됨. 민·관 합동 품질관리 제도개선 TF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유사입법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등)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기타 이해관계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의 사정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9)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및 고지의무 **신설**

- 자동차 제작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한 자동차를 제작 시,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작동영역(운행가능영역)을 지정·명시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 관련 사항과 작동한계 정보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시스템은 지정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해당 조건을 벗어날 경우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바, 제작자가 그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 관련 사항 및 작동한계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하여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 인정.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을 명시하고 구매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로서 규제의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부분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고장 시 안전기준 **신설**

- 부분 자율주행(레벨3)시스템이 충족해야 하는 자동차로 유지기능 등에 대한 성능기준 및 고장 시에도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기준·운전자 경고 관련 기준 등 도입

심사결과 우선 주행차로 및 차간거리 유지, 기타 교통상황 대응 등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되는 정상상황에 대한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에 운전자로의 차량 제어권 전환을 위한 시스템과 운전자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준과 운전자의 반응이 없을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대응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사항을 조정할 점, 국제회의(UN/ECE/WP.29) 기준과 조화하도록 마련했고 자율주행차 도입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차량 공유를 통한 효율성 증진 등 국민의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규제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운전자모니터링시스템 성능기준 **신설**

- 운전자 착석 및 안전띠 착용 여부, 운전조작 가능여부 등을 감지하고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

심사결과 부분 자율주행(레벨3)시스템은 운행가능영역을 벗어날 경우 차량의 제어권이 운전자에게로 전환되는데, 안전한 제어권 전환을 위해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적정한 작동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대응 또한 매우 중요하여, 운전자 상태를 확인하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전에 경고하는 등의 성능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개정사항을 조정할 점, 국제회의(UN/ECE/WP.29) 기준과 조화하도록 마련되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 고려시 규제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자동차 튜닝승인 대상에 고전원전기장치 추가 **강화**

심사결과 상용화 초기인 전기자동차는 핵심부품인 고전원 전기장치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려는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튜닝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며, 성능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고전원 전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성능 저하 및 화재발생 우려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바, 튜닝 승인제도를 통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됨. 해외 유사사례(일본)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의 성능향상을 위한 고전원 전기장치의 변경 등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된 규제로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튜닝이 가능해지는 바, 규제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규제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강화**

-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소규모(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건축물, 다중이용시설(전시장, 영화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추가

심사결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환기설비 의무화를 도입('06년)하여 실내공기질 문제를 해소 중이나, 설치대상에 소규모(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환기설비 설치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산·학·연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유사입법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환기설비 설치대상 확대에 따라 규제비용이 발생하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여 국민건강이 증진되는 사회적 편익증가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연환기설비 필터성능기준 강화 **강화**

- (現) 공기여과기 입자포집률을 중량법으로 측정시 60%이상 → (改) 70%이상

심사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환기설비 성능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산·학·연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자연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입자포집률을 강화하는 것은 단순 필터효율 상향화로, 업계 의견조회 결과 기술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규제비용이 발생하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여 국민건강이 증진되는 사회적 편익증가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계환기설비 필터성능기준 강화 **강화**

- (現) 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을 비색법, 광산란 적산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80% 이상, 계수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40% 이상 → (改) 계수법으로 측정하는 경우 60% 이상(비색법 및 광산란 적산법 측정방법 제외)

심사결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환기설비 성능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산·학·연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점,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측정방법을 계수법으로 통일하여 그 기준을 60%로 상향하는 것은 단순 필터효율 상향화로 기술적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현재는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3가지 방법(비색법, 광산란 적산법, 계수법)으로 하고 있으나,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계수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기술규제의 합리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에도 동일한 기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2)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 **강화**

- 일체형 방화셔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규정을 삭제
→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방화셔터와 갑종방화문을 함께 설치토록 함

심사결과 건축물 화재확산을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체형 방화셔터의 설치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화재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출입구가 없는 일반 방화셔터와 피난 용이성을 위해 사전 인지가 가능한 방화문을 함께 설치토록 개선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주요 선진국의 방화문 및 방화셔터 성능기준에 대한 규정에 일체형 방화셔터 내용이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성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음. 관련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유예기간을 연장(3개월→2년)하면서, 종전 규정에 따른 일체형 셔터라도 동일한

재질 및 구성으로서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셔터로 간주토록 하고, 다양한 방화셔터에 대한 시험기준 마련 등을 위한 방안을 이해관계자와 논의하는 등 피규제자의 규제순응도를 제고한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방화댐퍼의 성능 및 시험기준 등 신설 **신설**

- 방화댐퍼 설치기준, 성능기준 신설, 성능시험 방법 신설

심사결과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화염 및 연기차단 등 방화댐퍼의 성능 기준이나 시험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작동 불량 등으로 화재확산 방지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산·학·연 관련 전문가, 업계 및 소방청 등과의 논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해외사례(일본) 및 경과규정(공포 후 2년)을 도입하여 규제순응도를 제고한 점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3)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추가 **강화**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의 감리업무로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및 공사 지연시 만회대책 검토 및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추가

심사결과 공동주택 시공품질 관련 입주자와 사업주체(건설사) 간의 갈등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됨. 특히, 공동주택 하자 분쟁이 주로 마감 공종(도배·가구·타일·미장공사 등)에 집중되고 있어 시공 단계에서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감리자의 업무에 예정공정표 등의 검토·확인 업무가 既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서 감리자는 세부공정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토·확인하고, 부진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감리자의 검토·확인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감리원 추가 투입 및 감리비 증가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4)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구명복 등 항공기 기술표준품 표준서 신설 신설

- 기술표준품 표준서 중 구명복(KTSO-C13g), 구명정(KTSO-C70b)의 표준서를 변경하고, 안전벨트(KTSO-C22g), 안전구속장치(KTSO-C114), 공중충돌경고장치(KTSO-C119e) 등 3개 품목의 표준서를 추가 신설

심사결과 국내 산업계에서 제작소요가 있는 항공 부품의 인증기준을 미국(국제)기준과 조화시켜 해외 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수출 증진을 통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기준은 미국의 기술기준 개정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원문 내용의 충실한 반영 및 문구의 적절성이 검증되었고, 이를 통해 해외 인증절차를 간소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에 의한 의결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록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지영 사무관
Tel. 044-200-2423, jjyy00@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등 총 2개 법령등 제·개정안에 대해 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행복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강화1 (비중요 1)
(2)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1	강화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조성토지 공급대상자 자격제한 강화 강화

- 행복도시 조성토지 공급대상자 자격제한이 가능한 용지에 특정업무시설용지 추가하고 특정업무시설 공급방법 및 가격 기준 규정

심사결과 행복도시에 특정기능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연합단체·공익단체 등 특정 단체를 위한 별도의 토지공급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업무시설용지를 시범 공급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동 규제는 행복도시 내 토지매수입찰에 참여하는 실수요자(기업·연합단체·공익단체)의 입주 지원 방안으로 이로 인해 얻게되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 명단 제출 의무 확대 강화

- 특별공급 대상기관 전체가 특별공급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시점의 소속직원 명단을 1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대상기관 지정 이후 신규채용자·전입자에 대한 특별공급 당첨 제한

심사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불가피한 이전에 따른 주거불안 해소라는 특별공급의 취지를 살리고 신규채용자·전입자의 기관별 발령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임용자·전입자의 특별공급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명단제출 의무가 既 규정되어 있던 기업·연구기관·의료기관의 경우 추가적인 부담은 없고, 단순히 기준시점만 조정되는 것에 불과하며 의무가 추가되는 대상기관은 공공기관 등으로, 대상자 현황을 제출하는 단순 행정 절차인 점을 고려하면 본 규제에 의한 피규제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3. 해양수산부



조가람 사무관
Tel. 044-200-2441, grjo0519@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 등 총 29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5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5건 중 1건에 대해서는 부대권고 하였고, 44건은 원안대로 의결

특허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0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수산생물질병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12)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3)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12)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5)
(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9.05.10)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1)
(7)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8)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3)
(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3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1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1)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2) 2019년7월~2020년6월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4)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5)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0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1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7)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8) 선박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9)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0)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2)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2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9)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9.12.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44 부대권고 1	신설 30, 강화 15 (중요1, 비중요 44)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근해자망어업의 지지줄 기준규격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근해자망어업 지지줄 사용 기준 규격 **신설**

- 자망어구에 지지줄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1가닥 또는 2가닥의 지지줄을 뜸줄과 발줄 사이에 수직으로 부착하여야 함

심사결과 근해자망어구의 지지줄 사용기준에 대한 기존 규정이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지지줄이 변형된 자망어구를 불법 어구로 인식한 타 어업인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움. 이에 따라 지지줄 사용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어업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인정됨. 미국·중국 등에서도 자망어구 사용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동 규제는 기존 규정으로 다수의 어업인들이 준수해왔던 사항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검역장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신설**

- 검역장소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시정명령 사유에 추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로 인정받은 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의 4가지 사유를 업무정지 및 취소 사유에 추가

심사결과 현행법상의 규정만으로는 검역장소의 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담보하기 어렵고,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도의 지정취소 요청이 없으면 검역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없어 현황 파악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법령 정비 필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도 가축 검역시행장에 대하여 유사한 수준의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강화**

- 「약사법」에 의해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고시를 통해 해당 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를 명령하도록 함

심사결과 기존 사용제한 및 금지 명령 조항만으로는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제한·금지되는 무허가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의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고시로 제한·금지의 사유를 적시하여 수산생물양식업계에 관련 내용 전파를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제한 또는 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상·방법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해양환경관리법 (신설 5)

심사내용 폐기물 배출에 대한 기록의무 **신설**

- 분뇨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이 미처리 분뇨를 해역에 배출할 경우 배출 장소, 배출량 등을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록하여야 함

심사결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분뇨 등 폐기물 배출률 준수 입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록하도록 국제협약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여 해양환경 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국적 선박이 협약 미이행에 따라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됨. 국제협약에 따른 규정이고 기록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은 피규제자에게 발생시키는 부담이 미미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양시설 오염방지관리인에 대한 신고의무 **신설**

- 해양오염 시설 소유자 및 오염물질 관리 업무 수탁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 또는 해임하거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일정한 해양오염 시설의 소유자는 오염물질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하나, 당국에 신고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현황 파악이 어려움. 해양오염물질관리인은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관리 총 책임자로서 오염물질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당국에서 현황을 파악해야하므로 신고규정 필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임면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미미하므로 과도하지 않다고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5,000톤 이상 선박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사 **신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에너지효율계획서를 검사 받고,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비치할 의무 규정

심사결과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도록 하며, 이 중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동 계획서의 적절성을 정부로부터 검사받도록 하고 있음. 국제협약에 의해 발생한 의무를 반영하기 위한 규제로서, 협약 미준수로 인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문화가 필요. 국제협약의 우선성으로 인하여 동 규정 없이도 피규제자에게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는 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의무** **신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으로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연료유 사용량 보고의무 부과

심사결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0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 사용량 등을 매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국내법에 반영할 필요. 국제협약의 우선성으로 인하여 동 규정 없이도 피규제자에게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며, 검증수수료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3,000원)이므로 과도하지 않다고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기물위탁자 지위승계 신고의무** **신설**

- 폐기물위탁자가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경우에 양수인·상속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지위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

심사결과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리기준에 적합하게 폐기물을 해양에 투기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가능하나, 투기를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업자의 사업양도 등의 사유로 타 사업자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여도 법에서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당국에 새로이 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불편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위승계 신고규정이 필요하며,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육상 폐기물처리업자가 양도·상속 및 법인 합병 등을 사유로 지위를 승계받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 시 조치사항 등 명시 **강화**

- 원양어선의 선장 또는 선주는 어선위치추적장치의 고장 또는 미작동시 전자적수단을 통해 4시간 간격으로 지리적 위치 및 일시를 전송하여야 함

심사결과 원양어선의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어선위치추적장치 고장시 보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당국이 원양어선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혼란 발생. 따라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예외 상황 발생 시 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 주요 국제수산기구에서는 가입국에 대한 선박감시제도를 시행하며 원양어선의 어선위치추적장치 고장 시 수동보고 조치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고려할 때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당국의 정보 입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적정성이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선원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원의 자격요건 **신설**

-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액화가스탱커 승무자격증을 보유한 자에게 가스연료추진선박 승무자격증 발급 가능
- 승무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승무 경력 또는 교육 이수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만료일 이후에도 승무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심사결과 국제해사기구(IMO)는 국제협약을 통해 가스연료추진선박에 승무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한 바, IGF Code 적용 선박 등에 탑승하기 위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국내선원이 있어 구체적인 승무자격증의 발급 요건을 규정할 필요. 동 조항은 승무자격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에게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발급기준은 선원당직국제협약(STWC) 제V/3조의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ECA)을 제외한 모든 해역에서 경유(1.0→0.5) 및 중유(각

유종별 기준→0.5)의 황합유량 기준을 강화하고,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ECA)에서 모든 유종의 황합유량 기준(1.0→0.1)을 강화함

심사결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 연료의 황합유량 기준 강화 결정함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ECA)에서 운항하거나 기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밖 경로를 운항하는 국제항해선박의 경우 해당 기준을 당연히 적용하여야 하며, 국내항해선박의 경우에도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황합유량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 있음. 국내항해선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반대 의견이 제출되고 중기영향평가 결과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우려가 제기되어 **중요규제로 분류되어 본위원회에 상정된 결과**, 국제협약의 준수 및 해양환경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하되 영세 내항해운업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으로 **부대권고** 함

(7) 선박구명설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강화**

- 연안여객선에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유아용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유아의 신장 및 체중의 범위를 표시하여야 함

심사결과 현재 연안여객선은 국제여객선과 달리 유아(만1세 이상에서 6세 미만)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가 없어, 비상사태 발생 시 유아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규정 필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구명조끼의 비치 기준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수산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중요사항 설명의무 **강화**

- 공제계약 체결단계, 공제금 청구단계, 공제금 심사·지급단계별로 설명의무를 추가함

심사결과 수산협동조합은 수협은행과 지구별 수협 등을 공제자로 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 「보험업법」이 아닌 「수산협동조합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그간 공제상품이 민간보험상품만큼 복잡·다양화되어 사실상 민간보험과 동일하게 운용되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보험업법」상 규정보다 다소 미비한 상황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설명의무 강화 필요. 「보험업법 시행령」상 민간보험사의

설명의무를 준용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제상품 판매목록 제출 **신설**

- 해수부 장관은 공제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제자에게 분기별 공제상품 판매 목록(생명공제·손해공제별 상품목록, 상품 세부내역, 판매현황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심사결과 고시 개정으로 사전신고제 완화 등 상품개발이 자율화되면서 공제상품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며, 공제사업이 민간보험에 비해 인지도는 높은 반면 감독 규정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최소한의 관리·감독 수단이 필요. 공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판매 목록은 지도·감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간보험사 역시 「보험업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판매 목록을 제출하고 있는 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확인담당계리사 중복선임 제한 **신설**

- 수산협동조합 중앙회는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 또는 타공제사업자의 확인 담당계리사를 확인담당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음

심사결과 확인담당계리사는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의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타 보험회사 등과의 겸직 등으로 인해 업무의 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중복선임을 제한하여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제사업 경쟁력 확보를 할 필요. 「보험업법 시행령」상 민간보험사의 선임계리사 역시 타 보험사의 선임계리사와 중복하여 선임할 수 없는 바,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항만시설의 임시항만보안심사 **신설**

- 항만시설소유자가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 임시항만보안심사를 받아야 함

심사결과 항만시설은 최초보안심사를 받은 후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아야 운영 가능하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 시험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식 절차를 밟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이에 항만 보안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험운영을 원하는 항만시설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임시항만보안심사의 필요성 인정됨. 시험운영을 원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제도이고 현재 항만시설의 보안심사 수수료는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으나, 임시항만보안심사는 면적과 무관하게 최소수준인 55,700원 부과 예정이므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만시설 등에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근거 **강화**

- 항만시설이나 항만 내의 선박에 무기(탄저균, 천연두균 등 생화학 무기 포함),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위해물품 반입·은닉 금지(금지대상 구체화)

심사결과 항만시설은 '국제선박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Code)'에 따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반입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반입금지되는 물품은 '무기류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보안상 위협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 항만시설 현장에서 「항공보안법」에 준하여 보안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해당 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 자격요건 **신설**

-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퍼센트 이상이거나 매출총액이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30퍼센트 이상인 법인(1호) 또는 민관합동법인(2호)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3호) 또는 어촌계(4호)는 관리청의 지정에 의해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 가능

심사결과 현행법상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리청이 시행하며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게 시행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관리청 외의 시설사업 시행사례가 없어 지방 중소형 해수욕장의 경우 이용여건 악화로 이용객 수가 상위 10개 해수욕장에 비교하여 매우 적은 상태임. 민간에 의한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확대로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중소형 해수욕장의 활성화로 지역 주민의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항만법 시행령」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할 때 그 자격요건이 유사하거나 더 완화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신설 1)

심사내용 유분농도계 성능시험의 시험원유에 바이오 연료 혼합물 추가 **신설**

- 유분농도계의 시험에 사용되는 원유에 75% 이상의 석유를 포함한 바이오 연료 혼합물을 추가하고, 기존 시험원유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 실시

심사결과 현행법상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은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치에 포함되는 유분농도계는 형식승인의 대상이 됨.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오염을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바이오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유분농도계의 시험대상이 되는 원유에 ‘바이오원료 혼합물’을 추가(13)한 바, 국제협약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반영 필요. 국제협약의 기준을 준용한 규정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2019년7월~2020년6월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강화 1)

심사내용 2019년7월~2020년6월 총허용어획량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고시안 **강화**

- '19.7.1부터 '20.6.30까지 총허용어획량계획에 쌍끌이대형저인망에 의한 오징어 어획량(11,290톤) 추가

심사결과 총허용어획량이란 어종별로 어획할 수 있는 상한선(배분량)을 정하여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오징어(‘살오징어’에 한함)의 경우 대형트롤, 근해채낚기 등 어업에 의한 총허용어획량이 할당되어 있으나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의 경우 제한이 없음. 현재 감소 추세에 있는 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쌍끌이대형저인망 어업에 의한 오징어 어획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금번에 할당된 어획량은 시범사업 시행 결과와 실제 어획량을 반영한 것이며, 향후 배분량이 부족할 시 유보량(최대 30%)을 확보할 예정으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여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1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추가 **강화**

-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에 다랑어, 아귀, 쭈꾸미 추가

심사결과

다랑어, 아귀, 쭈꾸미 등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량·수입량이 많은 대표적인 해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기때문에 원산지 거짓 표시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의무 도입 필요. 동 규제는 소비량, 대중적 전문음식점 유무, 수입량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한 것으로 전문음식점이 없는 품목은 제외하였으며(다시마, 미역 등), 수입량이 적은 수산물 또한 제외(굴 등)하여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 위주로 선정한 바,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한국형 구멍뚫목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기준 **신설**

- 소형어선에 적합한 구멍뚫목인 '한국형 구멍뚫목'의 형식승인 기준 신설

심사결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9.7.1부터 최대승선인원 13인승 이상의 낚시어선에는 구멍뚫목을 반드시 탑재하여야 하나,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상 규정된 팽창식 구멍뚫목은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 적합하여 소형어선에 탑재하기에 부담되어 소형어선에 적합한 구멍뚫목인 '한국형 구멍뚫목'의 형식승인 기준을 신설할 필요. 동 기준은 대형선박 등에 적용되는 구멍설비기준(LSA Code)보다 다소 완화된 국제표준인 'ISO 9650'을 적용하여 어선에 적합한 구멍뚫목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강화** / 무항생제수산물의 생산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강화**

-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자(유기식품은 취급자 포함)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인증기준 이행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심사결과 현재 정부에서는 친환경 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유기식품(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나 살충제 계란 사태(17.8) 이후 이러한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을 받은 생산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됨. 친환경수산물은 생산자의 인증기준 이행으로 품질이 보증되므로 이에 관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동 규정은 친환경수산물을 인증받고자 하는 양식업자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및 외국인 승선 제한 **신설**

- 국제선박 및 공공기관 소유 선박 중 신청에 의하여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 부원(선장 및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장 등이 아닌 선원) 6명 이내로 제한 가능

심사결과 전체 수출입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화물 수송의 차질이 우려됨.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상 ‘국가필수국제선박’을 지정할 수 있으나,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해당 선박을 사용 가능하여 ‘국가필수선박’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과 달리 비상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소유한 선박을 통해 물자를 수송할 수 있도록 할 필요. 동 기준은 국가필수선박 지정을 신청한 선박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존에 ‘국가필수국제선박’의 규정을 이관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만운영협약 체결 사업자 자격기준 **신설**

- 예선업자,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 관련사업자 중 해당 항만에서 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등록 기간이 5년 이상이며 최근 3년 이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없고 기타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자

심사결과 현행법상 비상사태 등이 발생하여 항만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도 이를 재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법률 개정예 따라 비상사태 등이 발생한 경우 업무중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항만운영협약’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 기준은 국가 비상사태 등

발생시 원활한 명령의 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 중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적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한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에 대한 교정주기 **신설**

-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는 교정 이후 5년 이내 또는 제조자가 정한 주기 중 짧은 간격으로 교정되어야 함(교정을 하지 않는 대신 교정된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로 교체할 수 있음)

심사결과 「1978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1973년 국제협약(MARPOL 73/78)」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결정(제70차 MEPC, '16.10.28)에 따라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의 교정주기가 신설되었고, 우리나라는 MARPOL 73/78 협약의 비준국이나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의 교정주기에 관한 규정 부재, 국제협약 준수 및 장치의 성능저하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교정주기 설정이 필요하며 국제협약의 우선성으로 인하여 동 규정 없이도 피규제자에게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는 바, 최소한의 규제에 해당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선박설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선원거주, 위생설비 요건 적용대상 선박 **강화**

- 거주구역 단열, 통풍과 난방, 주방 요건, 세탁시설 등 선원거주·위생시설에 대한 요건 적용 선박의 기준 확대

심사결과 현재 선원거주구역 요건은 연해구역 이상 항해 500톤 이상 선박 또는 국제항해 선박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선박설비기준의 선원거주구역 요건에 대한 적용대상 선박이 해사노동협약('15.1.9 발효)의 적용범위와 상이함을 지적. 우리나라는 해사노동협약 비준 국가('14.1 비준)로 이를 국내법에 도입하지 않으면 국제적인 비난이 예상되며 선원거주·위생설비 요건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여 선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 향상할 필요.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준국가에게는 협약에 따른 기준을 수용할 의무가 있는바,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 **신설**

- 가스연료추진선박 기초 교육을 이수하고 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선장, 기관장, 기관사, 운항장, 운항사, 전자기관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은 가스연료추진선박 직무교육을 받아야 함

심사결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유 규제 강화로 인하여 LNG 등을 연료로 하는 가스연료추진선박의 발주 증가가 예상되어 국제해사기구(IMO)는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통해 IGF Code(가스 또는 저인화점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의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 적용 선박에 승무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한 바, 그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교육을 규정할 필요. 동 규정은 STCW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IGF Code 적용 선박에 승선 가능하기 위한 직무교육을 정한 것으로 해당 선박 승선을 희망하는 경우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선원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가스연료추진선박의 상급 자격증 발급요건 **신설**

- 승무자격증 보유, 경력, 교육이수 등 발급요건 규정 및 자격의 유효기간 규정(5년)

심사결과 국제해사기구(IMO)에서 「IGF Code」를 채택함에 따라 「STCW 협약」에도 「IGF Code」가 적용된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신설됨. 상급 승무자격이 없으면 IGF Code가 적용되는 선박에서 연료 및 연료 시스템을 취급·사용할 수 없고, 선장·기관사관으로 승선할 수 없어 국내 선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STCW 협약의 비준국임에도 현재 해당 선박에 승선하기 위한 상급 승무자격 증명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규정할 필요.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IGF Code 적용 선박에 승선하기 위한 상급증서 보유 요건을 정한 바,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HACCP 이행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국내판매용 HACCP 이행시설의 HACCP 불이행 및 불성실 이행의 경우와 국내판

매용 HACCP 이행시설의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최근 국내 HACCP 이행 양식장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수산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나 현재 국내 판매용 HACCP 시설은 기준 미이행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유해물질이 검출되더라도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어 동 규정 신설 필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불성실 이행 시 행정처분 기준은 현행 수출용 HACCP 이행시설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며,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는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등록취소는 양식장 면허가 아닌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양식업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수산자원의 양식을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양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면허 양식장) 및 신설(허가 양식장)

심사결과 최근 일부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하여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재 양식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양식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경미하거나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규정 강화 필요. 포르말린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수산물에 들어가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양식장의 운영은 가능하되 수산물 출하만을 정지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면허를 받은 양식장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은 양식장도 동일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대상에 화물 고정 항만 용역업 종사자를 추가 하고 재직자 교육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심사결과 항만 근로자의 생명·신체 위협. 현재 항만운송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대상자가 항만하역사업, 항만용역업 종사자만으로 한정되어있고 재직자

교육훈련 주기는 3년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기에 기간이 길어 안전교육훈련 대상자를 확대하고 그 주기를 단축할 필요. 안전교육 대상으로 항만 산업재해 중 비중이 높은 화물고정 작업을 추가하였고,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다고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배기가스정화장치 기준 및 기관일지 기재 내용 **신설**

-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의 예외가 되는 정화장치의 기준 설정(배기가스 중 이산화황 배출량(ppm)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피백분율)의 비율 4.3[4.3 SO₂(ppm)/CO₂(%, v/v)]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 기관일지 기재사항 규정(연료유의 종류 및 연료유의 교환이 완료된 일자, 시간 및 장소, 연료유 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의 양, 연료유의 황함유량 등)

심사결과 항만지역의 경우 선박 등에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여 그 수준이 도심보다 심각함에 따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항만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도모. 동법·시행령에 배출규제해역에서 준수해야 할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무게 기준 0.1%)을 두고 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예외로 규정하였으므로, 예외가 되는 정화장치의 기준을 정하고 연료유 관리를 위한 기관일지 기재 내용을 규정할 필요. 황산화물 기준은 배출규제해역에서 준수해야 하는 저유황유(황함유량 0.1%) 사용시 배출되는 이산화황과 동일한 수준이며, 기관일지 기재사항은 이러한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산먼지 저감조치 의무 항만사업자 기준 **신설**

- 시멘트, 석탄, 사료, 곡물, 고철, 광석, 목재, 토사, 그 밖에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운송하는 항만사업자에 비산먼지 저감조치 의무 규정

심사결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분진성화물 취급 항만사업자에게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분진성화물의 종류를

부령에 위임하였으므로 비산먼지 저감 의무가 부여되는 분진성화물을 규정할 필요. 동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있는 물질 중 목재 및 광석의 운송업을 추가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항만시설 등 출입제한 자동차 예외기준 **신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이 최하가 아니면서 휘발유,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경우는 항만시설 등 출입제한의 예외로 함

심사결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일정등급(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미만인 자동차의 항만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출입제한의 예외가 되는 자동차의 기준을 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항만시설 등 출입제한의 예외가 되는 자동차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동 규정은 일정등급 이하인 경우에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소형차, 휘발유차, 저공해차 등은 항만시설 등에 출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신설**

- 선박소유자는 배출규제해역에서 황 함유량이 0.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안됨(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그 외의 선박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심사결과 항만지역의 경우 선박 등에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여 그 수준이 도심보다 심각함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제한할 필요. 동 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정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ECA)에 적용되는 황함유량 기준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한 것이며, 연료유 교체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적용 시기를 늦춰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선박의 운행 상태(정박 유무)에 따라 이행 시기를 22년까지 차등화하여 적용할 것인바 유예기간은 충분하다고 보여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 **신설**

- 항만사업자는 하역장비를 엔진출력범위에 따라 일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함

심사결과 항만지역의 경우 선박 등에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여 그 수준이 도심보다 심각함에 따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항만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도모. 동 법에서 항만사업자에게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게 장비를 운영할 의무를 부과하며 그 허용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규정할 필요. 동 규정은 미국 연방규정(Tier4-Final)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국제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원상회복 이행기간 **신설**

- 갯벌관리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행위별로 정해진 이행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해야 함

심사결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청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우리나라를 대표할만한 경관·생태계를 가진 갯벌의 경우 갯벌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역 내에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등의 행위를 금지하였음.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명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위반행위의 유형·정도 별로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원상회복 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고 이는 「습지보전법 시행령」에서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 원상회복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갯벌생태해설사 교육이수 기준 **신설**

- 갯벌생태해설사는 해설안내 25시간, 갯벌생태계의 이해 39시간, 인문사회환경의 이해 11시간, 커뮤니케이션 5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심사결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갯벌생태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자체 등에서 갯벌생태관광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내실있는 갯벌생태관광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해설사가 필요함. 따라서 갯벌생태해설사 교육이수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갯벌생태해설과 관련된 4분야를 지정하여 총 80시간을 이수하도록 한 것으로 해설사의 신규양성을 위한 교육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기준 **신설**

-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으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전문 교수요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 운영경비 조달계획 등 규정
-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사유 규정

심사결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서 내실있는 갯벌생태관광을 위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를 규정하고 그 세부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 기본적인 요건을 적절히 갖추도록 하면서 구체적 기준은 고시에 위임하였고, 행정처분기준은 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취소의 3단계로 규정하여 과도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 **강화**

- 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행위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현행 채취원가의 20%)을 연안의 산정기준(도매가격의 30%)으로 일원화
- 도매가격의 기준은 골재채취단지별로 채취된 골재가 인근에서 판매되는 도매가격이며,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는 인근 도매가격의 15%를 적용

심사결과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및 해양환경 훼손 우려로 수산업계·환경단체와 골재업계 간 갈등 발생. EEZ와 연안 간 형평성, 지속가능한 바닷모래 채취, 갈등 해소를 위하여 이원화되어있는 EEZ와 연안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EEZ 점·사용료 인상). 한국골재협회에서 비용산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여 평균 도매가격을 인근에서 판매되는 도매가격으로 규정하였고, 급격한

점·사용료 인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두는 등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신설 1)

심사내용 외국선원 무단이탈 방지 조건 **신설**

- 승선원 등의 무단상륙·이탈 전력 등이 있는 외국선박의 경우 불개항장 기항 허가 조건에 승선자 교육 및 보고의무, 경비원 배치의무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음
- 기항 허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상륙·무단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었거나 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기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심사결과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이 국민안전 위협요소가 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허가시 선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안대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마련할 필요. 승선자의 무단이탈 등과 관련된 전력 있는 선박에 대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므로, 유사사고 전력 다수 있는 경우 기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을 둔 것이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살처분대상 전염병 추가 지정 **강화**

-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수산생물의 살처분 대상 전염병에 포함

심사결과 급성간췌장괴사병은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등재된 질병으로 전염 속도가 빠르고 발병 시 폐사율이 높으며 최근 3년동안 국내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법정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되지 않고 살처분 대상 전염병에도 포함되지 않았음. 발병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살처분 대상 전염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살처분을 명령을 수행하면 그 당시의 수산생물 평가액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적정하다고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인증의 관리 **신설**

- 인증의 유효기간을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규정
- 인증기관의 장의 자료요청·확인 권한 규정
- 거짓·부정 발급을 인증 취소 사유로 규정

심사결과 친환경적인 선박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에서 친환경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인증제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지정하고 이후 재심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증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인증의 근거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5절 농림·산림 분야

1. 농림축산식품부



박지현 사무관
Tel. 044-200-2421, pjh621@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등 총 21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47건의 규제를 심사 47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22)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31)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 5)
(9)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2019.06.21)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5)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6)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7)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25)	원안의결 8	신설 7, 강화 1 (비중요 8)
(20)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21)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47	신설 38, 강화 9 (비중요 47)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맹견의 관리 신설

- 맹견의 이동장치 기준을 설정하는바, 입구는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수 있는 소유자등의 연령을 만 14세 이상으로 설정함

심사결과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통해 맹견을 이동시킬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면서, 이동장치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소유자의 최소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음. 소유자 등의 연령을 만14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맹견 통제 역량을 확보하여 실제 사고 발생 시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맹견의 소유자 교육 **신설**

- 맹견 최초 소유자는 등록신청일 6개월 이내 3시간을, 그 외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교육과 개가 목줄과 입마개를 거부감없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통해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기존 반려동물 영업자의 동물 사육·관리 및 질병 예방 등에 관한 정기교육 이수 시간이 3시간이며, 독일 등 해외사례와 비교시에도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강화**

- 농산물 검정기관 지정기준 중 품질관리기준을 국제 시험운영 기준에 적합한 11개 항목으로 변경하며, 검정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품질관리 분야를 추가하고 품질 관리기준 11개 항목의 품질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토록 함

심사결과 국제표준화기구의 검정기관 품질관리기준을 검정기관 지정 및 평가 기준에 반영하여 검정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검정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검정의 신뢰도 제고가 가능하며, 국가공인 시험기관 인정 기구인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한 공인실험실 품질관리 기준을 선별 적용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판매, 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강화**

- 농약 제조·수입업자의 의무 기록 정보에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 정보를 추가하고,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의 기록 의무 정보를 신설하며,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는 판매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판매 및 구매 정보의 기록 보존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함

심사결과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약제조업자 등이 기록·보존해야 하는 농약 판매·구매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록 보존 기한을

정하는 것으로서, 유사입법례 및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경과 규정 마련 등을 통하여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출입식물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강화**

- 훈증소독 위해방지 조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규정된 훈증제 이외의 가스 주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수출입 식물 검역 과정에서 수출입식물 방제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독한 사례가 적발되어도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처분이 불가함에 따라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출입식물방제업체 및 검역업무 담당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바 규제 순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임대용 농업기계 수요조사 실시 **신설**

- 농업기계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서면·면접·인터넷 조사 등을 활용하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심사결과 지자체 운영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임대 실적이 없는 농기계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2017년 국정감사)됨에 따라, 농기계임대사업자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미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이에 따라 임대용 농기계 수요조사 실시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하는 것으로, 실시 기준 및 구체적 조사 방법 제시를 통해 수요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농기계 구입을 방지하여 예산 낭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검역장소의 관리기준 **신설**

- 재식용식물이 담겨 있는 컨테이너나 용기가 검역장소로 반입된 경우, 검역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재식용식물 반입 시 검역인의 검사 전까지 용기 개봉이 금지되는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식용식물이 검역장소로 반입된 경우 국제 식물검역인증원장에 반입사실을 즉시 알리도록 하여 신속한 검사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검사 누락을 방지하여 고위험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농업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끼칠 수 있는 피해 및 방제 비용을 절감하는 등 국민이 얻게 되는 편익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됨에 따라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 재식용식물 반입 시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1차 위반시 기능정지 15일·2차 위반 시 기능정지 1월·3차 이상 위반시 기능정지 3개월의 기준 마련

심사결과 재식용식물 반입 시 신속한 검역 및 안전조치가 중요한 만큼 검역원에 대한 통지의무 신설과 더불어 규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위반 시의 행정처분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지의무 위반 시 우선 시정명령 후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정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회수·소독·폐기·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 **신설**

-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한 소독 이행 기간을 정하는바,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은 소독명령일로부터 12일간, 경우물품 중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소독명령일로부터 5일간의 소독기간을 정함

심사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비식물성 화물에 대해 해당 병해충의 확산방지와 원활한 소독작업 진행을 위하여 소독이행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동 규제로 인하여 발생할 비용은 미미한 반면 고위험 외래병해충을 차단함으로써 얻게 되는 농업환경 및 자연생태계 피해 예방과 방제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비료 가격표시 **신설**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등으로 비료 가격 표시방법을 구체화함

심사결과 비료 가격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료가격 표시방법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양해진 비료에 대한 가격표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및 비료 시장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사료안전관리인의 대리자 자격 및 대행 기간 **신설**

- 사료안전관리인의 대리자는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직무 대행 기간은 39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함

심사결과 사료안전관리인의 일시적 직무수행 공백 기간 중에도 사료 안전성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대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료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대리인을 장기간 지정하는 등의 의도적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사료 안전성 관리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직무 대행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수준이 적정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신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료검정증명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등은 1차 위반 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차 위반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사료시험검정기관 실태조사 시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미흡 사례를 적발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기준이 없어 제재가 불가하며, 다음 연도 실태조사 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는바, 유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5)

심사내용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신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 시 구비하여야 할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를 도입되어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정하며, 유사입법례(감염예방법)를 참조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동 기준이 가축 전염병 예방 등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는데,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소독 및 방제의 기준과 방법 **신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준수해야 할 소독 및 방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질병 매개 곤충에 대한 소독·방제 방법을 물리적·환경적·생물학적 방법으로 구분하여 마련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 사용을 의무화 함

심사결과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소독 및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소독 또는 방제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한바 적정성이 인정되고,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 영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소독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위법사항 적발 시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며, 그 외 휴폐업 신고 의무 위반이나 시설기준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령에 부합한 방식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의무 도입 농장의 규모 **신설**

- 5만 마리 이상의 산란계농가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소독 및 방제를 하도록 정함. 10만 마리 이상 농가부터 시행('20.1.1.)한 후, 5만 마리 이상 농가로 확대 시행('23.1.)하도록 규정함

심사결과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의무도입 농장규모를 5만마리 이상의 산란계 농가로 정한 것은 규제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한 기준으로 판단되며, 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규모 농가 대상 규제를 유예하고 있으므로 규제 수준이 적정하다고 인정됨. 또한, 동 규제를 통해 가축전염병 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규 및 보수 교육시간 규정 **신설**

-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가 이수할 교육과목 및 이수시간을 신규(연간 16시간)와 보수교육(연간 8시간)으로 구분하여 정함

심사결과 관련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소독 및 방역업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정비·보수 의무화 **신설**

- 농가 등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가축전염병 발생은 예측이 어렵고 확산 시 막대한 방역 비용이 소요되어 축산업계 전반에 큰 손실을 발생시키므로,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설비의 정비·보수 의무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축산업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살처분 등에 따른 환경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므로 적정성이 인정되고, 해외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 제6조제1항 위반 시
 - △ 도매시장법인 등 : 1차위반(경고)-2차위반(업무정지3개월)-3차위반(지정취소)
 - △ 중도매인 : 1차위반(경고)-2차위반(업무정지3개월)-3차위반(허가취소)
 - △ 산지유통인 : 1차위반(경고)-2차위반(업무정지3개월)-3차위반(등록취소)
-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수행 시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모두 1차 위반 시 지정·허가·등록취소

심사결과 도매시장은 먹거리 안전기준 준수 및 올바른 원산지 정보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통질서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국민의 알 권리 및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도매시장 및 공판장 경매사의 교육훈련 의무화 **신설**

-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도록 정함

심사결과 경매사에 대한 정기적인 의무교육·훈련 등 사후관리 체계가 미비하고, 유통 주체 간 불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 발생. 이에,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며,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농어촌민박의 안전시설기준 **강화**

- (기본시설) 능력단위 이상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표지(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난유도등(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초과하는 경우), 완강기(15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3층이상 건물일 경우) 설치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심사결과 농어촌민박은 주택에서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 숙박업 대비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별 사업장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있으나, 투숙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 소득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어촌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 **강화**

- (소방안전) 소화기, 피난유도등 등이 작동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휴대용비상조명등

과 일산화탄소경보기 등의 정상 작동을 위하여 건전지 교환, 소화기 및 휴대용비상 조명등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관리

-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 가스누설경보기 등 설치·관리, 환기 시설 설치, 난방 시설 정기 점검 유지·관리

심사결과 농어촌민박에서 소화기 등 안전시설의 관리·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고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시설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적절한 관리의무 부여, 시설의 위치 표시 등은 필요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소방안전 외에도 일산화탄소경보기 정상 작동 등 난방시설 및 화기 취급처 안전기준을 정함은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적절한 수준임. 또한 건전지 교환 및 노후소화기 교체 등 안전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크지 않으나,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로 투숙객의 생명을 보장하는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인증심사원 1인당 심사관리 사업자수 기준 **강화**

- 친환경농축산물의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인증심사원의 1인당 연간 심사 및 관리 사업자수 기준을 강화함

심사결과 인증심사원의 업무 과중에 따라 형식적인 현장점검과 거짓 심의 결과 보고서 작성 등 부실인증이 양산될 우려가 높아, 인증심사원 1인당 심사·관리 사업자 수를 축소할 필요성이 있음. 동 규제는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친환경인증제품 경쟁력 제고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인증심사원이 심사·관리하는 사업자 수를 축소하려는 것이므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방사선관계종사자 중 임신부에 대한 선량한도 기준 신설 **강화**

-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 중 임신부에 대한 유효선량 및 등가선량 한도를 일반 방사선 관계 종사자보다 강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동물병원에는 촬영자가 동물을 직접 보정해야 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람병원에서보다 촬영자가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세포분열이 활발한 배태아의 경우 방사선

민감도가 높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임신부 종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동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즉,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보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요건 **신설**

-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전문인력 요건 등을 정함

심사결과 동물용 의료기기 등의 수출을 위하여 품질과 안전성 확보가 우선시 됨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의 시험실시가 요구되며,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으로 전문인력 기준 및 시설·장비 요건 등을 정함은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요건 **신설**

-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정함

심사결과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 지정서 및 실시기관 소재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은,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관한 정보 현행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실시기관장 준수사항 **신설**

-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시험에 관하여 준수해야 하는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우리나라의 동물용의료기기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은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됨.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동물용 의료기기는 축산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도모하므로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검토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의 지정 요건 **신설**

-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요건으로 인력현황 및 장비·기구 및 시설 현황 등을 정하고 있음

심사결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은 비임상시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인바, 필요한 인력 및 장비·시설 등을 지정요건으로 정함은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등의 지정변경 신청대상 **신설**

-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지정서 및 변경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은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정보 현행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등의 준수사항 **신설**

-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비임상시험 실시에 필요한 시설관리 및 시험계획서 등에 관하여 시험 분야별 비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확보된 동물용 의약품 등은 반려동물의 치료와 재활을 도울 뿐 아니라, 축산업 생산력 제고를 도모하므로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첨부자료의 요건

- 독성 및 살균 소독제 등에 대하여 비임상시험실시기관 혹은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외국자료의 경우 비임상시험 혹은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준수하였음이 인정되는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 및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자료 등을 통해 품목허가를 진행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능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요건 **신설**

-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 및 기구,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정함

심사결과 동물용 의약품 등의 수출을 위하여 품질과 안전성 확보가 우선시됨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의 시험실시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그에 따라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요건을「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변경지정 신청 요건 **신설**

-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소재지 변경 및 실시기관 명칭 변경, 시험책임자 등의 변경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정함

심사결과 제출 필요서류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에 해당되며,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정보 현행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비중요** 규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 준수사항 **신설**

- 동물용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준수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정함

심사결과 선진국은 이미 검증된 시험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 및 품목허가를 진행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검증된 기관에서 동물용 의약품등 임상시험을 실시함에 따라 수출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축산화계열화사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 규정 **신설**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자기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부속 명세서 및 고정사업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첨부 규정

심사결과 축산계열화사업 도입으로 사업자와 농가 간 분업화된 생산 및 유통으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나, 점차 갑을관계가 형성됨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및 농가 소득 불안정의 문제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화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일정 첨부서류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한 등 규제는 원활한 등록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수준으로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7, 강화 1)

심사내용 계열화사업자가 신고해야할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설**

- △고정사업장 소재지 및 소유 형태의 변경, △임원현황의 변경,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계열화사업 계약서 내용의 변경

심사결과 계열화사업 등록 시 사업장 소재지 및 계약서 내용 관련 서류제출이 요구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고토록 정함은 계열화사업 등록정보의 현행화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등록을 취소토록 하며, 준수사항 위반 및 중요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시에는 1차 적발시 경고, 재차 위반 시 영업정지 및 사업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계열화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토록 유도하여 등록제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열화 사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열화사업자 및 계약능가의 준수사항 **강화**

- 계열화사업자의 가축공급 부당지연이나 계약 내용 변경 시 무통보 행위 등을 금지하

고, 계약농가는 사육자재 수량거부 및 부당편취 등을 하지 않도록 준수사항 규정

심사결과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사이의 갑을관계 형성에 따른 불공정 행위를 관리하고, 계약농가의 성실한 계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거래환경 조성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함에 따라 공정거래 정착 등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등록요건 **신설**

-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시 정보공개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계약농가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열화사업 계약서 양식 사본, 임직원 수 확인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계열화사업자가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농가의 사업자 선택권을 확보하고 당사자 간 분쟁 방지 및 거래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요건 **신설**

- 중요한 사항 변경(정보공개서 표지 기재사항, 일반현황 및 법 위반 사실 등) 시에는 변경등록을 거치고, 경미한 사항(계약사육 절차 및 소요시간, 교육·훈련 등)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를 거치도록 정함

심사결과 변경되는 정보가 경미한 사항일 경우 변경신고만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므로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부담이 크지 않으며 농가의 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축산계열화사업과 유사한 구조의 가맹사업*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한 사항과 경미한 사항에 따라 변경등록 및 신고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심사내용 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신설**

- 계약농가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

심사결과 계열화사업자마다 계약 내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농가의 사업자 선택권이 제한되었으므로, 계약체결 전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하여 거래 관계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농가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계열화사업자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유형 **신설**

- 객관적 근거 없이 계약희망농가의 예상수익을 과장하는 등 사실 미확인 정보 및 중요사항이 빠진 정보제공 행위 등을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규정함

심사결과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통해 계약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신설**

- 판매가격 보고 대상 축산물을 닭과 오리로 한정하고, 주요 판매처별로 판매량과 매출액 등을 판매일의 익일 12시까지 보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닭·오리는 도매시장과 공판장이 별도로 없어 가격이나 공급량 등에 대해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등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이 불투명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이 곤란한 상황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축산물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축산업 허가·가축사육업 등록·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시 제출 서류 강화 **신설**

- 축산업 허가, 가축사육업 등록,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시 가축분뇨 처리계획 및 악취 저감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심사결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담은 최소한 수준으로 규제를 설정한 반면, 환경 개선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은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신설**

- 동물용 의약품 사용과 종업원 교육 내용을 기록·보관토록 하고, 정액등 처리업체에

서 생산되는 정액의 품질에 대한 정기적 관리의무를 부과함

심사결과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및 축산농가 종업원의 방역·위생·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각종 축산물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약품 사용 및 교육내용 기록·보관 및 정액 품질검사 의무는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축산업 허가기준Ⅱ(임신돈 군사공간 제공의무 부과) **신설**

- 돼지 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 임신돈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군사공간 확보 의무 부여

심사결과 임신돈의 일상적인 동작에 지장이 없는 공간을 확보토록 하면서 군사사육 밀도를 특정하지 않음에 따라 동물복지는 개선하되, 농가 부담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설계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축산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강화**

- 다른 사람에게 축산업 허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처분기준을 강화하며, 축사·장비에 관한 규정 또는 소독설비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위반사항에 추가

심사결과 농장을 임차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자가경영 농장에 비하여 방역에 취약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 피해가 심각한바, 가축전염병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농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산림청



박지현 사무관
Tel. 044-200-2421, pjh621@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건 중 12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산림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11)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12	신설 10, 강화 2 (비중요 12)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민간정원의 등록요건 및 정원 전문관리인의 자격 신설

- 민간정원은 정원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정원 전문관리인(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배치 및 주차장·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요건을 정함

-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을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 보유 여부 및 조경·임업·농업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이면서 관련 분야 종사경력 등을 기준으로 정함

심사결과 민간정원의 등록요건을 정하여 정원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심미성과 편의성을 확보하여 관광지로서의 정원문화 확산을 도모할 필요. 정원등록 시 면적제한은 없으나, 총면적 중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녹지면적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격 간 대우 및 경력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전문관리인 배치를 통해 정원이 기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편의시설 설치로 방문객에 편의를 제공토록 하는 등 동 규제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신설**

- 산림경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2년 이내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심사결과 산림경영 교육·훈련을 담당하기에 부적합한 기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임업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임업 후계자가 양산되거나 생산되는 임산물의 품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사후관리 규정을 정하여 전문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

(3)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안전성 평가 등 **강화**

- 15개 목재제품 외에 목재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거나 목조 건축물 등 원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목재에 대해서도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성 평가 대상에 목재제품의 원료가

되는 '목재'도 추가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물리·화학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 **강화**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기관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규격·품질 검사자가 있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격·품질 검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부적격자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검사기관 등의 지정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허위표시 등의 금지 **신설**

- 규격·품질검사 적합여부를 확인한 목재제품이 아니면 해당 목재제품으로 품질표시 하거나 판매·유통·통관할 수 없음을 정함

심사결과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됨.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적합한 목재제품에 대해서만 판매·유통이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 관리법」

심사내용 규격·품질 검사자의 결격사유 **신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기관 등의 지정·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등 규격품질 검사자의 결격사유를 정함

심사결과 적합한 자격을 갖춘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자에 의한 검사를 위하여 검사자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필요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등록의 취소 등 **신설**

-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판정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6개월이내 영업정지 규정 마련

심사결과 규격·품질검사 판정 취소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취소판정에 대한 구속력을 부여하고,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신설**

- 산림경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정함
- 산림경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 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함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음(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2년)

심사결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교육이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나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라 판단됨. 또한 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산림경영 교육·훈련에 적합한 전문교육기관의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귀산촌인·임업후계자 등이 양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고품질의 임산물 생산 및 산림 활용 증가 등 사회적 편익이 크게 나타나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법제처 검토결과(지정취소 사유 등을 시행령이 아닌 동 법에 규정하도록 권고)에 따라, 수정 후 재입법예고

(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신설**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자격을 정하며, 교육과정 구성과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함

심사결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부적인 지정요건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목재교육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요건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신설**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심사결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받은 이후, 적정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지정받지 않은 교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 등을 정한 것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제도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산림보호법 시행령」제12조의8(나무의사 양성기관 지정 등)

(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신설**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토록 하며, 지정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교육과정을 미개설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재차 위반 시 지정취소 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및 부적정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운영을 막고, 양질의 교육과정 보급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으므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며, 유사입법례*에 비하여 과하지 않은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제12조의3 제4항)

심사내용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신설**

- 목재교육프로그램 교육내용 및 구성기준, 최소 교육시간 등 목재 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함

심사결과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은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배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수한 프로그램 기반의 전문적인 목재 교육 확산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됨.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기준은 산림교육 인증기준을 준용하였으며, 목재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적정성 또한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록

3. 농촌진흥청



박지현 사무관
Tel. 044-200-2421, pjh621@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등 총 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3건 중 3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개정안	예비심사 (2019.03.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9.07.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 3)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보통 비료의 공정규격 설정(별표2) 강화

- 상토 1·2호(비료)의 공정규격에 유해성분(병원성미생물) 기준 추가, 수분함량 강화 및 안정도 기준 신설 등 석회처리 비료의 규격을 강화함

심사결과 상토 1·2호 및 석회처리 비료에 대한 공정규격 설정 기준을 강화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양 및 수질 오염 등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인정됨. 동 규제는 전문가·사용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비료공정규격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에도 과도하지 않음. 안정도 기준 삭제 필요 등 이해관계자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침출수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불량비료의 생산·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석회처리비료의 생석회 의무

투입량 등을 규정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안정도 기준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4.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 검사방법

(2) 비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판매가격의 표시방법 **신설**

- 비료의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에 라벨,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진열하는 경우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포장단위·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며, 박스 개봉 시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외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활자크기 36포인트 이상으로 비료 정보를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정함

심사결과 비료 가격 표시방법의 세부적인 규정은, 다양해진 비료에 대하여 원활한 가격표시를 유도하는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비료 시장 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며, 유사입법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고 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표시 방법을 정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및 가격 비교를 통한 선택권을 보호하므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종자 가격표시 관리기준 고시,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3)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에 판정기준 추가 **신설**

- 캡사이신 검사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 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을 분석하여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을 확인토록 함

심사결과 비료 원료로 음식물류폐기물이 추가됨에 따라, 비료의 품질보전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비료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캡사이신 성분 분석과 염분·전기전도도 함량 분석은 음식물류폐기물 사용여부 및 사용량 확인에 적정하다고 판단됨. 특히 전기전도도 함량 분석방법에서는 분석함량 대 이론함량의 비율이 11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 사용량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하며, 염분 함량 분석방법에서는 120%를 기준으로 판정하는바, 결과 값의 오차를 반영하여 판정 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사용량 확인에 적합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6절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분야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진수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420, huhuhu27cjs@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 등 총 1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4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4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9)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0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3) 단말장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6) 전자파적합성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4	강화 4 (비중요 4)
계	-	원안의결 24	신설 16, 강화 8 (비중요 24)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단말장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단말장치 기술기준 **신설**

- 기존에 설치된 케이블을 통해 10기가급의 전송속도를 갖는 초고속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 신설

심사결과 국내 10기가급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를 위하여 국제표준(ISO/IEC/IEEE 8802-3:2017)을 준용하여 단말장치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산업체, 시험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한 연구반 회의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마련한 점 등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강화**

-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보편적 역무와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대상에 추가

심사결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는 등 편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보편적 역무 제공을 위한 설비 구축 등에 발생하는 손실을 사업자들의 매출액에 따라 분담하고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손실부담이 면제되는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3)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무선항행육상국·무선탐지육상국 및 5G 이동통신 관련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강화

- RF(Radio Frequency, 무선주파수) 펄스형 신호(순간적·간헐적 신호)를 갖는 무선항행육상국·무선탐지육상국 및 5G 이동통신 관련 무선국(무선설비)에 대한 측정방법 추가

심사결과 전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파 강도 측정대상 무선국으로 추가된 무선국의 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파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체계적이고 안전한 전자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5G 상용화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전기통신사업법 (신설 1)

심사내용 전기통신서비스(이동통신)의 도매제공 의무 일몰기한 연장 **신설**

- 2019. 9. 22. 일몰예정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2022.9.22) 연장

심사결과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나, 고착화된 이동통신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다수 경쟁사업자의 서비스·요금경쟁을 통한 통신비 절감으로 이용자의 후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도매제공 의무제도 존속 필요성이 인정됨. 노르웨이,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점 등 고려시 규제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이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 고지 **신설**

-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경제상 이익인 마일리지의 적립방법 및 사용범위, 사용가능점수 및 소멸점수 등을 홈페이지나 이용요금 청구서를 통해 안내
-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사용가능 점수를 분기별 문자 고지

심사결과 이용자 중에는 마일리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의 적립 현황 및 사용방법 등을 몰라 소멸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마일리지 관련 현황 등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마일리지 사용을 유도할 필요성 인정. 이용자에게 증대되는 편익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피규제자인 기간통신사업자들도 고지 필요성에 동의하는 점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의무제공사업자 지정 **신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위 규정

심사결과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법률의 위임에 따라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대포폰 등 부정사용 감소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 건전한 통신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점을 고려하여 규제 필요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금지 대상자의 기준 **신설**

- 겸직이 금지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의 규모를 정함
- ①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자 ②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 의무대상자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자로 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많아 침해사고 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한정된 점, 유사 타법사례(전자금융거래법령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금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이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신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겸직금지 대상 기업 정보보호 최고책임

자의 경우 추가 자격요건을 부여

심사결과 직위의 중요도에 비추어 자격요건이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입법 예고 중 이견이 없는 점, 유사입법례(전자금융거래법령상 금융기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 등 고려시 규제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이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생명연구자원 분양 제한 사유 **신설**

-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의 분양 제한 사유를 열거

심사결과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제한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구 자원 확보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가 기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 필요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기준 및 절차 **신설**

- 국외반출 승인 신청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및 국외반출 승인기준 제시

심사결과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해당 자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인 것으로 규제 필요성 인정. 원칙적으로 국외반출을 허용하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반출을 제한하여 네거티브 규제 원칙 준수한 점, 생명연구자원법상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유전자원법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 접근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행정 불편을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탁등록보존기관 등 지정 취소(처분기준) **신설**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탁등록보존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업정지 처분 외에 '시정명령' 근거 마련

심사결과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및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에 대한 이행력 확보 및 책임감 제고 효과 등을 고려 필요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기준 신설 **신설**

-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의 장비운용에 필요한 통신방식, 송수신 조건에 대한 기술기준 마련

* 해안국용 자동식별장치: 선박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 선박국 또는 조난 자동 통보국과 통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심사결과 국제규정을 국내에 제도화하기 위한 개정으로 한글로 작성된 국내 규정을 통해 기술요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국내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국내 기술기준의 내용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ICT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시 규제 필요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강화 1)

심사내용 구내간선계 성능구간 포함 및 꼬임케이블 링크성능 기준 신설 **강화**

- 구내간선계도 100 Mhz 이상의 전송특성을 갖도록 꼬임케이블을 설치하도록 함
- 음성전화 전용(16Mhz이상) 및 고속데이터용(500Mhz) 꼬임케이블 링크성능 신설

심사결과 구내간선케이블을 구내간선계와 연결되는 구간(건물간선계, 수평배선계)과 동일한 성능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성능구간 규제를 합리화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시 저속 케이블(음성용)의 설치를 허용하였고, 국제기준에 부합한 기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예상되는 비용대비 편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 신설 **신설**

-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의 공급전력, 주파수 편이, 점유주파수 대역 등 규격 신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 장치와 관련된 권고문서 M.1798-1 내용을 국내 기술기준에 반영하여 해당 장비가 갖추어야 하는 기능 및 조건을 명시

심사결과 원거리(100km이상) 선박에 해사안전정보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충돌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선박의 안전향해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단파대 디지털 송수신은 위성통신을 제외하면 유일한 장거리 데이터 통신기술로서 연근해에 종사하는 어선들에 대한 선박위치 보고 및 해사안전정보방송 등 디지털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술기준 (신설 2)

심사내용 수해대책 및 제3자 접촉방지 **신설**

- 옥외설비 중 기간통신사업(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설비 및 전송망설비의 수해 및 보안대책 강화
- 수해 우려 있는 장소에 통신 국사 설치 시 기간통신사업설비(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이동통신)에 대한 수해방지조치 의무 강화

심사결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신망의 특성상, 일부 통신국사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피해가 막대하므로, 재난 상황이 통신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재난 예방에 관한 통신국사 시설 규제 강화 필요성 인정. 수해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허용하여 사업자 부담을 감소시킨 점, 이용자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유형별 규제를 차등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재대책 **신설**

- 통신국사 주요시설에 설치해야 할 소방설비를 구체화
기간통신사업설비(전화·인터넷접속·회선임대설비, 주파수할당 무선통신설비, 기타 역무설비) 및 전송망설비, 부가통신사업설비 등 사업용방송통신설비와 자가통신설비를 포함하는 전체 방송통신설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기재된 소방설비 구비 의무 설비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규정

심사결과 주요시설에 대해서 화재시설 구비 의무를 구체화하고, 건축내장재 불연재소재 사용기준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상향하는 것으로서 화재 예방을 위하여 규제 강화 필요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단말장치 기술기준 (신설 1)

심사내용 단말장치 기술기준 **신설**

- 방송통신사업자가 유선방송망(광동축혼합망)을 통해 10기가 속도 인터넷 통신을 할 경우 준수해야할 기술기준신설(송신 출력 신호기준 및 송신 출력 스퓨리어스 기준)

심사결과 10기가 속도 인터넷서비스 확대에 지능정보사회의 실감형 정보 확산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유선방송망을 통한 10기가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시스템과 장비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신설 필요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예비전원설비 설치기준 **강화**

- IPTV 예비전원설비 용량을 '최대 부하전류 기준으로 최소 3시간 이상 유지'로 설정함

심사결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과 품질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작성한 것으로 타 유사 서비스(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의 전원기준에 비하여 과다하거나 불합리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15)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신설 2)

심사내용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등 **신설**

- 지정된 제공사업자(예정 사업자:KT)는 초고속인터넷(최대 100Mbps)이 제공되지 않는 건물에서 서비스 제공 요청이 접수될 경우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함.
- 매출액 300억원을 넘는 기간통신사업자(분담사업자)는 제공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의 60%를 보전

심사결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기본권이 적정하게 보장되도록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역무 제공대상 대역폭 기준(100Mbps)등 마련이 필요하며 손실보전금 부담비율을 정하여 분담사업자로 하여금 적정수준의 손실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규제강화로 발생할 비용부담에 대하여 사업자간 협의를 완료한 점 등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의무 회계분리 **신설**

- 일반 인터넷 서비스와 보편적 의무로서 제공된 인터넷 서비스간 회계 분리 원칙 제시한 것으로, 서비스별로 직접분류가 가능한 계정은 분류하되, 어려운 경우 비용 별 분류기준 마련

심사결과 정확한 손실산정을 위한 회계분리 필요성 인정. 보편적 의무로서 초고속인터넷과 일반 초고속인터넷 간 회계분리 의무만을 규정하고, 세부 내용은 회계분리 상의 기준을 준용하여 규제를 최소화하였으며, 회계분리 기준은 기존 보편적 의무인 시내전화 등에서도 준용되어 사업자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전자파적합성 기준 (강화 4)

심사내용 조명기구류 합체포트의 방사성 방해 측정 주파수 대역 확장 **강화**

- 30~300 MHz에서 30 MHz ~ 1 GHz로 확대

심사결과 국제표준의 선제적 수용을 통해 국내 업체의 국제 경쟁력 제고 기대. 관련 국제기준 (CISPR15)에 부합한 점, 경과규정을 도입하여 규제 준수가능성을 제고한 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해당 규정을 마련한 점 등 고려시 규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철도 차량내 기기에 대한 전자파 장애방지 기준 개정 **강화**

- 보조교류 및 직류전원 포트의 전도성 방해 전압 허용기준에 총 고조파 왜율 신설, 전기철도 차량내 기기에 대한 합체포트의 방사성 방해 측정 주파수 범위 확대 (1 GHz → 6 GHz 이하 대역)

심사결과 철도 차량 내에 공급되는 보조전원(예 : 220 V 등)은 관리 기준이 없어 철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고조파 성분으로 보조전원을 사용하는 기기(예 : 노트북, 핸드폰 충전 등)의 성능저하 및 오동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철도 차량 내 보조전원으로 유입되는 고조파를 일정수준으로 관리하여 고품질의 전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규제 강화 필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규정을 마련한 점 고려 시 규제수준이 적정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철도 차량내 기기의 전자파 내성 측정 주파수 대역 확대 **강화**

- 국제표준을 수용하여 전기철도 차량내 기기, 신호 및 전기통신 기기, 고정 전원설비 및 기기 탑재포트의 내성 측정 주파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

심사결과 전기철도 차량내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서비스를 보호하고 기기의 오동작 및 성능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 강화 필요성 인정. 관련 국제기준(IEC62236)에 부합한 점, 전기철도기기류는 적합성 평가는 자기시험 대상이므로 규제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등 고려시 규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기철도 고정 전원설비에 대한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성능평가 기준 변경 **강화**

-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의 전자파 내성기준준수 범위를 확대하고, 고정 전원설비에 대한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성능시험 기준 상향 변경. 보조교류전력 입력포트의 내성평가 정격전압 범위를 480Vrms까지 확장하고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버스트 성능시험기준을 B에서 A로 상향

심사결과 전기철도 차량내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방송통신서비스를 보호하고 기기의 오동작 및 성능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표준의 선제적 수용을 통해 국제표준과 상이한 제품 생산으로 인한 국내산업체의 국제 경쟁력 하락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규제 강화 필요성 인정. 관련 국제기준(IEC62236)에 부합한 점, 전기철도기기류는 적합성 평가는 자기시험 대상이므로 규제준수 가능성이 높은 점, 피규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규정을 마련한 점 고려시 규제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방송통신위원회



최진수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420, huhuhu27cjs@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등 총 1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6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6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11)	원안의결 2	신설1, 강화 1 (비중요 2)
(2)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02.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방송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1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6	신설 12, 강화 4 (비중요 16)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필수지정사업자의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 단계적 축소 **신설**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필수지정사업자(지역지상파, 위성 제외)의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 편성비율을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심사결과 일반방송에 비해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 편성비중이 과도하게 높음을 고려 시, 시각장애인의 시청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화면해설방송 재방송비율을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토록 하는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장애인방송 시청편의 제고 대상사업자 확대 **강화**

- 장애인방송편성 정보 등을 포함한 전자프로그램가이드 제공 대상자에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사를 추가

심사결과 장애인방송편성 여부 등의 방송정보는 장애인 시청자의 방송 시청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장애인 시청자의 시청권보호를 위해 EPG 제공 대상자에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사를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됨. 국내 대표적인 텔레비전수상기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TV에는 EPG 제공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고 다른 대부분의 제조사 TV도 데이터방송(EPG수신 가능 모델)이 가능함을 고려하여 규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방송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수신료 체납 가산금 인하 **강화**

- 수신료 체납 가산금 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

심사결과 유사 가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행 체납 가산금 비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가산금은 법에서 정한 최대치를 규정하고 있어 유사입법 사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은 3%)보다 지나치게 높아 권익위 권고 등을 반영하여 인하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규제수준이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1)

심사내용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기준 **신설**

- 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 여부(위법성) 판단기준 마련
 - ① 현금 제공여부와 정도, 결합유형별·가입유형별·가입창구별·지역별 등의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
 - ② 현금은 음성적 제공 가능성, 가입자 유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위법한 것으로 추정
 - ③ 다만, 이용자가 제공 받은 경제적 이익 등의 금액이 개별사업자가 서비스별·결합유형별로 제공한 ‘평균’ 경제적 이익 등의 금액의 상하 15% 이내인 경우 또는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

심사결과 정상적 상관행을 넘어서는 과도한 경품 제공에 따라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고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용자 차별 여부를 판단할 위법성 기준 마련 필요. 사업자의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적정한 수준의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시장자율에 맡기되,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을 통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의 기준 마련 **신설**

-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하는 해외 정보통신사업자의 범위 설정
 - ① 매출액 1조원/年 이상인자 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年 이상인자
 - ③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자(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④ 방통위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심사결과 국내 정보통신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법 위반자 등에 대한 정부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 인정. 국내 이용자의 피해 발생에 대한 처리와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등의 권리 행사 등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향상 및 권리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규제 필요성 인정.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 적용 시 국내 이용자가 자주 이용하는 영향력

있는 해외 사업자들이 해당되는 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점 등 고려하여 규제수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신설**

- 이용자수·매출액별보험 및 공제 등 최저가입금액 기준 제시 : 1000명 이상(3개월 평균)의 이용자수를 확보한 사업자의 매출액 및 이용자수에 따라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달리 정함
- 보험이나 공제 가입 대신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상기 최저가입금액 기준 이상으로 적립하되,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병행하는 경우, 최저가입금액 기준에서 적립 준비금을 차감한 만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심사결과 유출 사고로 예상되는 피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이용자 수나 매출액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을 차등화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적절한 피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 인정. 사업자 규모에 맞게 규제를 차등화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유사 타법사례(전자금융감독규정, 신용정보업감독규정)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종편PP에 대한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신설**

- 전체 방송시간 및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전체 방송시간) 채널별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30%이상 (주시청시간대)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이상

심사결과 편성 의무 비율을 정하여, 지상파와 종편의 규제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외주 제작사 및 방송콘텐츠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규제 필요성 인정. 종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규제수준이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7)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고지 **신설**

- 역무중단고지, 손해배상고지의 절차 및 방법, 예외사유 등을 규정

심사결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고지의 구체적 내용·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 인정. 유사 입법사례(클라우드컴퓨팅법, 개인정보보호법), 소규모 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점 등을 고려 시, 규제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신설 1)

심사내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금지행위 등을 위한 관련 자료제출 **신설**

- IPTV사업자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규정 신설

심사결과 IPTV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및 유료방송 사업자 간 비대칭규제를 해소하고 IPTV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필요성 인정. 시청자 권익 보호 및 민주적 여론형성 등 여타 사업유형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방송업의 취지를 고려, 규제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강화 1)

심사내용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강화**

- 별도의 징수율 결정 대상이었던 종편·보도채널사용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징수율 산정체계에 편입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하면서 분담금 부담 방송사업자 전체에 대한 기본징수율 인하

심사결과 징수율 산정 산식을 도입을 통해하여 분담금 제도의 투명성 강화,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및 분담금 제도에 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매년 고시 개정을 통해 징수율을 결정하는 구조대신 종편·보도채널사용사업자도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징수율이 산정되도록 징수율 체계를 개편하여 분담금 부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규제필요성 인정. 방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방송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제고한 점, 부담완화를 위한 경감조치(조정계수 도입, 기본징수율 상한 등) 병행, 종편·보도채널의 경영상황 대비 과도하지 않은 범위로 분담금을 인상한 점 등을 고려시 규제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방송법 (신설 4)

심사내용 협찬의 허용범위 **신설**

- 원칙적으로 협찬을 허용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단체로부터의 협찬과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협찬 금지

심사결과 ‘협찬고지’ 만을 규제하고 ‘협찬’에 대한 규제는 없어 부적절한 협찬을 제재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며, 협찬을 일부러 고지하지 아니한 채, 협찬을 하면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얻게 되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을 준수한 점, 해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시 규제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필수적 협찬고지 의무 **신설**

-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 등을 다루는 경우, 그 밖에 시청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를 필수적 협찬고지를 해야 하는 경우로 규정

심사결과 그간 협찬고지를 할 수 있는 경우와 할수 없는 경우를 정하여 규제하였으나 협찬고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규제는 없어, 협찬주의 상품이나 용역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얻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성 인정. 주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협찬 문제를 유형화하여 규제사항으로 정한 점, 원칙적으로 협찬고지를 허용하되 금지해야 할 협찬고지를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원칙을 준수한 점 등을 고려 규제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협찬 관련 사업자의 준수 의무 **신설**

- 방송사업자 및 외주제작사의 금지행위 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 주도록 방송 제작행위 △협찬주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

△방송프로그램의 재방송을 대가로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 △제작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협찬 받은 물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 협찬주의 금지행위 규정 : 협찬을 대가로 방송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심사결과 협찬제도가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찬 관련 사업자의 준수 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불공정행위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규제할 수 없는 입법상의 공백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금지행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할 개정 필요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자료보관 및 제출의무 **신설**

- (자료보관) 일정규모이상의 방송사업자는 △연간 협찬 매출 현황 △방송프로그램별 협찬의 종류 및 내역을 보관토록 함
- (자료제출) 협찬 및 협찬고지와 관련하여 이 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방통위가 요청할 경우 보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 협찬관련 법률 준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협찬관련 자료를 보관토록 하고, 법률위반 조사 시에 제출하도록 하여 협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 인정. 일정 규모 이상 방송사업자로 규제대상 범위를 한정하여 차등화 설계한 점, 자료제출의무는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행정부담을 최소화 한점 등 고려 시 규제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신설 1)

심사내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유효기간 단축근거 신설 **신설**

-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심사결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공익성 실현 등을 위해, 재허가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하도록 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공정경쟁,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재허가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유효기간 단축 기간의 상한(2년)을 정하여 승인권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재허가 사업자의 사업 기간을 최소한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재허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송사업 허가 등에 관한 타법 사례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규제 적정성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 보관·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1년 이상으로 상향

심사결과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시스템 담당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유출 사고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필요성 인정, 개인정보에 관한 유사 기준(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신용정보업감독규정)과 동일하게 설정된 점 등 고려시 규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록

3.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승희 사무관
Tel. 044-200-2445, tmdgml1209@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총 6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7건의 규제를 심사, 17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9.02.08)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1)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17)	원안의결 7	강화 2, 신설 5 (비중요 7)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4)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 6)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2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7	신설 14, 강화 3 (중요 1, 비중요 16)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요건 신설

- 허가사용자가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자격요건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소지한 사람

-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신고사용자가 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자격요건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중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대리자의 직무 대행 기간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연간 30일 이내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 연간 90일 이내)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여행·질병 등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일시 부재 시 일정수준의 방사선안전관리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세부 자격요건 **신설**

- 방사선안전관리자 대리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여 해당사항을 갖춘 자에 한해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여행·질병 등으로 방사선안전관리자 일시 부재 시 일정수준의 방사선안전관리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대처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법 하에서도 안전관리자 부재시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작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강화 2, 신설 5)

심사내용 제조업자 등록대상 추가 및 등록기준 마련 **신설**

- 방사성 원료물질 취급·관리 및 가공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장비·가공제

품 등록요건을 규정

- 현행 취급자 등록대상 수량기준을 제조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심사결과 방사성 원료물질을 침대에 사용한 라돈침대 사례 발생 이후 라돈을 방출하는 가공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부적합 제품의 제조·유통 차단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정부산물 재활용 금지대상 추가 **강화**

- 전리(電離), 여기(勵起) 등 방사선에 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첨가한 제품
- 신체에 착용하거나 장시간 신체에 밀착되어 사용되는 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심사결과 공정부산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제품이 재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정부산물이 신체밀착제품 또는 음이온 목적 제품으로 재활용되는 것을 방지해 생활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원료물질 취급·관리 종사자 건강진단 및 안전조치 **신설**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 작업 종사자 건강진단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단시기·검사항목을 규정
- 피폭선량 및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규정

심사결과 방사성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관리하는 종사자의 보호조치가 취약한 실정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와 동일한 수준의 건강 보호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거 등의 조치계획 수립대상 확대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거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결함 원료물질 사용 음이온 목적 제품 및 신체밀착제품을 추가

심사결과 제조업자의 결함 가공제품 수거 지연 또는 미수거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결함 가공제품 수거, 폐기 시의 안전조치** **신설**

- 수거·폐기과정에서의 종사자 피폭저감 및 원료물질의 환경누출 방지를 위한 제조 또는 수출입업자의 조치사항 규정
 - 종사자가 수거 등 작업으로 인한 피폭선량이 일반인 선량한도인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수거 등의 과정에서 가공제품에 포함된 원료물질이 환경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 밀폐장소 보관 등 조치

심사결과 결함 가공제품 수거 등의 작업 종사자 피폭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과 수거과정에서 방사성 원료물질 누출로 인한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결함 가공제품 수거 등의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 추가** **신설**

- 수거 등의 조치명령 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에 음이온 목적 및 신체밀착 제품을 추가

심사결과 결함 가공제품 수거 등의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에 신체밀착제품 등을 포함시킴으로서 해당 결함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동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기점검 주기·방법 규정** **신설**

- 원료물질·공정부산물·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재활용 고철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정기검사 주기·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원료물질을 사용한 다양한 종류의 부적합 가공제품이 다수 확인되고 있어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업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통해 국민 건강 위해 요인을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6)

심사내용 제조업자 등록시 등록서류 **신설**

- 등록하려는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의 종류·모델명, 가공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종류, 방사능농도 및 사용량을 제출하도록 규정
-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는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안전성 사전 확인이라는 제조업자 등록제도 도입 목적 달성과 등록제도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위승계 서류제출 대상에 등록제조업자 추가 **신설**

- 지위승계 신고 제출서류 중 취급자 등록증을 취급자·등록제조업자 등록증으로 변경

심사결과 지위승계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등록제조업자의 수출입 신고시 제출 서류 **신설**

-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 수출입 신고 시, 가공제품의 종류 및 모델명, 수량을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가공제품 수출입 현황 파악을 위한 단순한 사항만을 제출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에 따른 비용부담이 없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록, 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 **신설**

- 별표로 정하도록 한 기록·보관·보고의 기준에 건강진단 결과를 추가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총리령으로 위임한 건강진단 결과의 기록·보관·보고 대상 기준을 별표에서 규정하도록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등 **신설**

- 수거 등의 조치결과 보고대상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 목적 및 신체밀착제품을 추가
- 현행 조치계획 항목과 중복되는 조치결과 보고 항목에 수거 등의 조치결과와 부합하도록 수거 조치수량 반영

심사결과 수거 대상 결함 제품으로 규정한 신체밀착제품 등의 수거조치 결과에 대한 신속한 관리·감독 이행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록·보관·보고 항목에 등록제조업자 추가 및 유통현황 보고기한 단축 **신설**

- 정확한 유통현황 파악을 위해 취급자 보고항목에 취득처, 판매처, 수출입처를 추가
- 원료물질 취급·관리 종사자 건강진단결과를 해당 건강진단을 실시한 해당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규정
- 기록·보관·보고 대상에 등록제조업자 추가
- 원료물질 취득현황, 제조·수출입한 가공제품 현황,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등을 기록·보관·보고하도록 규정
- 원료물질 유통현황 관리강화를 위해 원료물질 취득·판매 보고기한을 매년 1월 31일에서 매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로 단축

심사결과 2018년 라돈침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 등의 유통에 대한 보고대상, 보고기한 단축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한 유통현황을 파악하여 부적합한 가공제품이 유통·제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원자력안전법상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신체밀착·착용 제품 종류 규정 **신설**

- 원료물질 사용금지 신체밀착·착용제품 일반기준과 세부 제품 종류를 규정

심사결과 소량 사용만으로도 위험도가 높은 방사성 원료물질을 신체 밀착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생활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의료, 장난감, 장신구 등의 제품에 방사성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부당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신설 1)

심사내용 핵물질 국제운송 운송방호계획 승인과 운송방호 검사 **신설** **신설**

- 핵물질을 국제운송하려는 원자력사업자 또는 국제운송을 위탁 받은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물리적 방호계획 승인과 국제운송 방호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 신설

심사결과 핵물질 탈취 등의 위협으로부터 방호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국제규범 준수를 위해 원자력사업자 등의 방호계획 및 조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전 승인·검사, 시정 명령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방호조치 불비로 관련 국가의 입항 또는 수입 거부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고,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 체결한 미국, 핀란드와의 협정, 원전을 수출하는 UAE와의 협정에 국제원자력기구의 물리적방호 권고안인 INFCIRC225를 반영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국내법 개정이 요구되는 상황인 점,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7절 노동·환경 분야

1. 고용노동부



집필자

이서연 사무관
Tel. 044-200-2447, koko33@korea.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 규제 심사개요

- 2019년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총 1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5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3건 중 3건에 대하여는 부대권고 하였으며, 5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2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1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9)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비중요 6)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9)	원안의결 15	신설 6, 강화 9 (비중요 15)
(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본위원회 (2019.08.05)	부대권고 2 원안의결 18	신설 11, 강화 9 (중요 3, 비중요 17)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록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분위원회 (2019.08.26)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 1)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부대권고 3 원안의결 50	신설 24, 강화 29 (중요 4, 비중요 49)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대한 시설 기준 마련 **신설**

- 외국인 고용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에 대한 시설기준 규정

심사결과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입환*작업 시 추락·충돌·협착 등의 방지 규정 명확화 **강화**

* 입환(入換, shunting): 차량의 분리, 결합, 전선(차량 선로 변경) 등을 하는 작업

- 입환작업 시 '탑승하는 위치'를 '수직사다리'로 용어를 명확화하고, 근로자가 수직사다리에 매달린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며, 근로자가 운행 중인 열차에 탑승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갖춘 탑승설비 또는 발받침 등을 설치·사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의무를 명확히 하고, 열차 입환작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중대재해를 예방·억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특별관리물질 추가 **강화**

- 1,2-디클로로프로판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발암성 물질임을 고지하도록 규정

- 인덱스를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환기장치 설치, 누출방지 조치, 작업방법 관리 등 각종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관리수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제외 **강화**

- 현행 영유아에 대한 배우자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제한 요건 폐지

심사결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허용 제외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신청의 허용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남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 문제, 아동 복지 제고, 성평등 향상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외국인 기숙사 정보제공 기준 **신설**

-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용자(기숙사 제공 여부는 선택사항)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기숙사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통지

심사결과 기숙사 시설과 같은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인권과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 적절한 정보 제공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기준 **강화**

- 사용자가 국내·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숙사의 설치 및 운영 기준 강화

- 기숙사 구조와 설비 기준, 기숙사 설치를 피해야 하는 장소 구체화, 기숙사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용자 준수사항, 근로자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등

심사결과 현행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관련 규정은 기숙사의 구조나 설비, 보안, 위생시설 등 필수적인 생활 설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미비한 상황으로 사용자가 불법 건축물을 제공해도 법률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노동인권개선 측면에서도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요건 신설 **신설**

- 외국인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규정

심사결과 사용주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약속한 기숙사 시설 등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 해당 사업장의 변경을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지게차 조종자격 교육과정 마련 **신설**

- ‘지게차 조종자’의 자격기준 규정

심사결과 지게차 조종자격 교육을 통해 장비의 구조 및 특성을 파악하고 장비를 직접 조종하는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조종자의 장비 오조작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신설 3, 강화 3)

심사내용 지게차 안전조치 강화 **신설**

- 지게차 운행 중 근로자와의 충돌 위험예방을 위해 ‘후방 확인장치(후진경보기, 경광 등, 후방감지기 등)’ 설치

심사결과 지게차 운행 시 후방 시야 미확보 등으로 근로자와의 충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지게차 안전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재·폭발 확산방지 방안 마련 **강화**

- 화재위험 작업 시 유독가스 발생 가연성물질을 화재위험장소에서 분리·보관
- 화재감시자 지정·배치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용접·용단 등의 화기취급 작업에서 불꽃의 비산 거리 11m 안에 배치토록 규정

심사결과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장소에 각종 가연성 자재가 방치되어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 배출로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현행 화재감시자 배치대상 사업장을 대규모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대형 화재·폭발 사고로부터 중·소규모 사업장이 방치되는 문제 등의 예방을 위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재·폭발 사전 예방조치 개선 **강화**

- 사업주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에 '용접·용단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 규정
-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예방 점검대상 장소를 실내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로 규정
- 화재위험작업은 사업주의 '작업승인 후 실시 및 사전 점검 조치사항 작업장소에 서면 게시'하는 안전조치 의무사항 규정

심사결과 현행 화재예방조치 대상을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가연성 물질이 있는 건물 또는 설비의 내부로 제한하여 외부작업 시 화재위험에 방치되는 문제 등의 예방을 위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수, 규제 비용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음압* 유지 결과 기록·보존 의무 규정 **강화**

* 내·외부의 압력차

-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음압 유지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 규정

심사결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음압 유지 결과의 기록·보존 의무 강화를 통해 석면분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실시 의무 **신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내용 규정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 및 안전·보건 조치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무내용이 직종 및 노무제공의 방법·성격의 다양성을 감안한 적절한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신설**

- 물건의 수거·배달 등의 중개업자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면호, 안전모 착용 등) 규정

심사결과 이륜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안전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사고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가 신설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안전조치 등의 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신설 6, 강화 9)

심사내용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강화**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교체명령 요건 중 중대재해 발생건수 강화(연간 3건 이상 → 연간 2건 이상)

심사결과 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활동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상태보고서 전산등록 의무화 **강화**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위탁사업장 상태보고서' 전산등록 의무 규정

심사결과 감독기관도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위탁사업장 상태를 보고받아 관리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당해 보고서를 제출받을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마련 **신설**

- 건설공사발주자가 작성해야 할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 규정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계획·설계하는 단계부터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하여, 구체적 이행사항들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비용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계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 요청 절차 마련 **강화**

- 관계수급인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절차 규정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행 건설공사도급인에게만 부여된 공기연장 요청권이 관계수급인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공기연장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계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절차 마련 **강화**

- 관계수급인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절차 규정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행 건설공사도급인에게만 부여된 설계변경 요청권이 관계수급인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공사도급인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신설 **신설**

- 건설공사도급인의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향타기, 향발기'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사항(소유·대여자와 합동안전점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작업자 자격 확인, 점검·보수 조치 등 의무) 규정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4개 장비의 설치·해체·조립 등의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하위 법령에서 세부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신설 **신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5개 업종(택배원, 쿠팡서비스배달원,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규정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및 교육의무가 신설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 및 방법 등을 하위 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육시간과 내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가맹본부가 마련해야 할 안전·보건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방법 등 마련 **신설**

- 가맹본부가 마련해야 할 안전·보건 프로그램 내용 및 시행방법, 안전·보건정보 제공방법을 규정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가맹본부가 마련해야 할 안전·보건프로그램의 포함 내용 및 시행방법을 하위 법령에 규정토록 위임하여, 안전·보건 프로그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 해외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해인자 허용기준 추가 **강화**

- 사업장에서 허용기준 이하로 노출농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유해인자에 24개 물질을 추가하고 허용기준 값을 규정

심사결과 고위해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발암성 등이 확인된 24종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하고, 허용기준 값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신설 **신설**

*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상·보건상의 기초 자료를 정리하여 이에 따른 항목을 세분하여 근로자에게 지시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취급 물질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된 문서

-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 명칭 및 함유량 비공개 승인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 시기 등을 규정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전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 및 시기” 등을 하위 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에 따른 비용발생이 경미한 점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 명확화 **강화**

- ‘석면해체·제거업자’ 인력기준의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석면해체·제거 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으로 규정 강화

심사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에 필요한 인력(2명)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인력으로 석면해체·제거현장에서 관리자로서의 업무만을 전담 수행하여야 함에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인력으로 중복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어 인력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추가 **강화**

-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1,2-디클로로프로판, 인듐” 추가

심사결과 직업병 발병 원인물질로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과 인듐”을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수준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을 관리토록 하는 등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당해 물질들을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추가 **강화**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1,2-디클로로프로판, 인듐” 추가 및 검사항목 규정

심사결과

직업병 발병 원인물질로 확인된 “1,2-디클로로프로판과 인듐”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병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본의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필요조치 결과 보고절차 마련 **신설**

- 사업주의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의무 신설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어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4가지 유형(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규정

심사결과

근로자 건강진단의 질 관리를 위해 건강진단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부존재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및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기관평가 거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강화 20)

심사내용 공공행정 등 종사 현업근로자 보호 강화 **강화**

-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중 현업업무종사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에서 근무하는 현업업무종사자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증가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 업종 확대 **강화**

- 도급인과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통합 공표하는 사업장 범위에 “전기업” 추가

심사결과 발전업을 포함한 ‘전기업종’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원청의 하청업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 유도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표이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신설**

- 이사회 보고·승인 적용범위 및 안전보건 계획 작성범위 신설
 -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안전보건 계획 작성범위)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 계획, 안전·보건관리 체계·인원 및 역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법에서 위임된 적용범위 및 계획에 포함될 내용 등을 하위 법령에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당해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경우 비건설업의 경우 적용대상을 개정(안)보다 더 강화(상시근로자 300명 이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에서 원안동의(부대권고)로 의결

심사내용 발전업의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 강화 **강화**

- “전기업(발전업에 한함)”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심사결과 현행 발전업(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 해당)은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고위험 작업장에 속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강화(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확대 및 합리화** **강화**

-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 (현행)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 (개정)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 안전관리자 중 필수 전문인력의 자격 및 선임 기준 강화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선임 안전관리자 2명 이상)부터 선임되는 필수 전문인력 기준을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로 한정 등

심사결과 건설업은 전체 산업체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위험 업종으로, 현행 안전관리자 미선임(공사금액 120억 미만) 대상 소규모 공사일수록 산업재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당해 규제의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해외 입법사례 등과 비교 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업종에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추가** **강화**

- 현 운송업 중 보건관리자 선임 적용제의 규정인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삭제

심사결과 버스·화물 운전기사 등은 현행 보건관리자 선임 규정에서 적용제외 하고 있으나, 심야근무, 정신적 부담, 피로축적 등으로 불특정 다수 승객 등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 발생에 노출되어 있어 전문적인 보건관리를 통한 대형 인명피해 및 업무상 질병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관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강화**

-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인력 및 교육교재 등록 요건” 신설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책임지는 위탁교육기관들의 교육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직무교육기관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강화**

- 직무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검사분야” 교육을 규정

심사결과 현행 필수등록인력의 직무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기 시간강사 등을 활용하는 등 부실교육 사례가 빈발하여 교육기관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기관 인력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직무교육 의무 이수자에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가 포함되어,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실습장비 기준 등을 하위 법령에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강화**

-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대상물질의 규정량 정비
• 포스겐 등 18종의 규정량을 하향하여 규정

심사결과 화학공정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996년 안전공정관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동안 산업·기술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PSM대상물질의 규정량은 한번도 재검토되지 않은 실정으로, PSM대상물질의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현실에 맞게 규정량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영국, 미국 등의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도급승인 대상작업 선정 **신설**

- 법에서 위임된 “도급승인 대상작업” 규정
• 중량 1% 이상의 황산, 불산, 질산, 염산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도급의 실질적인 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조항을 신설하고, 하위 법령에 ‘도급승인 대상 작업’ 범위를 위임하여 구체적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액체·기체 등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므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동의(부대권고)로 의결**

심사내용 발주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신설**

-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용대상 건설공사를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로 규정

심사결과 그간 시공사에만 집중되었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발주자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하위 법령에 위임한 규제대상 건설공사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설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신설**

-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 기계·기구에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향타기, 향발기”를 규정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대상장비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27종의 건설 기계·기구 중 대형재해 위험성이 높은 4개 장비만을 규제대상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대상 직종 **신설**

- 안전·보건 조치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규정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신설되어, 하위 법령에 특수형태종사자의 적용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적용대상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직종 **신설**

- 안전·보건 교육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규정

- 건설기계 운전자(27종),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의무가 신설되어, 하위 법령에 특수형태종사자의 적용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등의 대상 가맹본부 **신설**

-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등의 적용대상 가맹본부 규정

- 외식(대분류) 및 편의점(도소매업 중분류) 업종으로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대상 가맹본부를 하위 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가맹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가능한 대규모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 적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중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 업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를 규제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대상 기계·기구 확대 **신설**

-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의 안전조치 대상 기계·기구에 “고소작업대” 추가

심사결과 고소작업대 안전사고는 안전조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대여자 등에 관리·점검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 **신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을 위한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에 대한 등록제가 신설되어,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 **신설**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에 대한 등록 취소 사유 신설
 - 안전수칙 미준수로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의 등록제도가 도입되고,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범상 취소규정을 준용토록 하여,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인 등록 취소요건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호장치 대상 확대 **신설**

-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를 추가

심사결과 최근 7년간 출입문 연동장치 고장 또는 설치상태 불량 등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산업용 로봇 중대재해가 지속 발생하여,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의 품질체계,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하여 해당 로봇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강화**

- 사업장에서 허용기준 이하로 노출농도 유지필요 유해인자에 24개 물질 추가

심사결과 고위해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발암성 등이 확인된 24종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하고, 허용기준 값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요양비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로 변경,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제한 **강화**

- ‘요양비용’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로 변경
-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를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가입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한 의료비용”으로 제한

심사결과 노후 소득재원 확충을 통한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취지 고려 시 중도인출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요양비용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에 따른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한 것으로 규제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작업중지의 해제절차 마련** 강화

- '작업중지'의 해제절차 강화
 - (현행) 사업주의 작업중지 해제요청 접수 → 근로감독관의 안전·보건 조치 확인 →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제
 - (개정) 사업주는 해당 작업 근로자의 의견청취 → 사업주의 작업중지 해제요청 접수 → 근로감독관의 안전·보건 조치 확인 →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한 후 해당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제

심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작업중지의 해제를 결정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법에서 위임된 작업중지 해제신청 절차, 방법 등을 하위 법령에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형해화 되지 않도록 구성·운영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한 필요가 있어 **본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동의(부대권고)**로 의결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 강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 기사, 화물차주'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현행 법령상 산재보험 적용 특고종사자는 9개 직종으로 한정되어, 상당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기본적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에 인한 비용(62억원) 보다 사회적 편익(산재보험 혜택 5,685억원)이 더 크고, 독일, 미국 등의

입법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대상 확대 **강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적용범위를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에서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심사결과 소규모 공사일수록 재해율이 높음에도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없어 충분한 안전시설확보에 어려움 발생하며, 특히 소규모 공사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제도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어 영세한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비용부담 없이 최소한의 안전관리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환경부



신용현 사무관
Tel. 044-200-2443, trustyonghyun@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총 60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13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3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으며, 1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1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가슴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11)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3)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01.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02.01)	원안의결 5	강화 5 (비중요 5)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0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03.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03.0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15)	원안의결 6	강화 3, 신설 3 (비중요 6)
(13)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03.29)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5)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04.0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6) 위해우려중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7) 악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18)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1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12	강화 6, 신설 6 (비중요 12)
(2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21)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2)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3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3)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5)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6)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9.07.12)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2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23)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3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11)	원안의결 5	강화 4, 신설 1 (비중요 5)
(31) 환경보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7	강화 6, 신설 1 (비중요 7)
(3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8)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6) 201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물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2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38) 위해우려중 지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0)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2)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4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5)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6)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4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06)	원안의결 4	강화 1, 신설 3 (비중요 4)
(5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5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53)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0)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5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0)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57)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12.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8)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9)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6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12	신설 48, 강화 65 (중요 1, 비중요 112)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에너지에 대한 환경성 표시·광고 금지행위 강화

- 에너지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오인 예방을 위해 환경부하에 대한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및 환경오염이 없는’ 등 포괄적인 환경성 표시·광고행위 금지

심사결과 친환경적 속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관리 강화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 및 규제 내용 모두 적정수준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노출확인자단체의 구성요건 신설

- 가습기살균제 노출경험은 확인되었으나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하 ‘노출 확인자’)와 단체 구성,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등에게 정보청구 권리 등 노출확인자의 권익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개정되어 노출확인자단체의 구성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시행령으로 세부내용 규정

심사결과 노출확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의 구성, 신고절차 등을 피해자단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이행강제금 대상 확대 **강화**

- 개정 특별법은 매년마다 1억원 범위 내에서 명령 불이행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시행령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부과금액 구체화

심사결과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신설**

- 안전용기 및 포장의 겉모양, 강도 및 누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규정하고,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적용 대상, 적용 제외 대상 및 안전기준을 규정

심사결과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부재시, 살생물제품의 취급·사용 과정에서 제품의 유출·누출로 인한 국민 건강상 큰 위해 발생 우려가 크고, EU, 캐나다, 미국 등 주요국가에서 적용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강화 1)

심사내용 먹는샘물 품목명 표시 의무 **강화**

- 해양심층수, 탄산수 등 다양한 탄산·혼합음료와 먹는샘물 간 혼선을 막기 위해 먹는샘물 제품의 주표시면과 병마개에 '먹는샘물' 추가 표시하되, 병마개 표시는 권장사항으로 함

심사결과 제품표시 수정에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라벨 주표시면의 표시는 의무화하되, 제품표시 수정에 비용이 발생하는 병마개에 표시는 의무에서 권장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피규제자의 부담을 완화한 점을 인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강화 5)

심사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강화**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雪) 스프레이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의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 및 표시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지정 위해우려제품의 관리대상 확대 및 안전·표시기준 **강화**

- 특수목적용 살균제, 날벌레용 기피제, 소이왁스 등 원료 기반의 초(candle) 등 용도가 추가되어 살균제·기피제·초의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품목의 유해물질에 관한 기준 및 표시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용용도, 노출양태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어 품목 내 관리범위의 확대가 인정되고, 제품 내 함유된 유해물질에 과다노출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심각한 국민건강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지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 추가 **강화**

- 세탁세제, 표백제 등 기(既)지정 28개 품목의 함유 금지물질 및 함량 제한물질을 추가하고, 함량기준을 강화

심사결과 안전기준 설정 당시에는 파악되지 않았던 위해성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이후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재평가와 안전기준 강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캡슐형 세탁세제의 안전기준 추가 **강화**

- 캡슐형 세탁세제의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성이 증가하여 동 제품의 水溶性 포장재에 대한 누수, 강도 안전기준 강화

심사결과 캡슐형 세탁세제는 젤리나 장난감으로 쉽게 오인·혼동될 수 있어 어린이가 입에 넣거나 손으로 터뜨리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점,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어린이보호포장 안전기준 **강화**

- 어린이보호포장 품목을 확대(액체형 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 액체형 순간접착

제, 캡슐형 세탁세제 등을 필수 품목으로 규정)하고, 함유물질의 적용기준·적용 제외기준·시험기준 등 기준을 보완 및 명확화

심사결과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의 안전기준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EU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2)

심사내용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추가 **강화**

- 대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고, 부과금 산정에 적용되는 농도별 부과계수를 2단계로 구분

심사결과 질소산화물의 위해성과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인 먼지·황산화물 대비 배출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질소산화물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점, 부과단가를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준이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정 등 **강화**

- 확정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현지조사가 아닌 자료를 통해 추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와 유사하게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최대치 배출을 추정한 값에 20%를 가산하도록 변경

심사결과 배출부과금 제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고, 거짓자료 제출 판명을 위해 현행 20% 가산규정은 유지하되 자료 미제출시의 확정 배출량으로 강화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도 유사하게 개정된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강화**

- 방지시설 면제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결과가 없는 사업장에 기본부과금 대상 오염물질 모두에 대해 배출계수를 통한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자가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 배출계수를 통한 확정배출량

산출대상 확대, 상위법령의 개정취지를 감안, 추가되는 질소산화물도 자가측정결과가 없으면 배출계수를 적용함이 타당한 점을 고려,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관리대상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확대 강화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신규협약물질 2종 추가(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 단쇄염화 파라핀)

심사결과 국제사회는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잔류성유기화학물질의 사용 근절·저감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도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으로서 동 협약에서 신규 등재된 2개 화학물질을 국내 법령체계에 반영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시험·검사기관 지정 기준, 지정기관의 재지정 신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검사결과의 품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구비 요건 및 재지정을 위한 요건 등 세부사항 규정

심사결과 시설기준(시험·검사 수행 시험시설 및 실험실) 및 장비(시료 전처리장비, 정량분석 장비, 필수장비 및 선택장비), 기술인력(기술책임자 2명 이상, 시험기술자 5명 이상)이 상위법령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되었고, 시험·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규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살생물 물질과 제품 승인신청자료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신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 제품의 사전승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가 작성해야 하는 세부사항(승인신청을 하려는 살생물물질 관련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승인신청자료, 신청자료 면제조건, 조건부 제출자료 등)을 규정

심사결과 살생물물질 안전성과 성능평가를 위한 승인신청자료 범위, 면제조건 등이 화평법과 국제기준(유럽 BPR)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신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 제품의 사전승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시 작성해야 하는 세부 사항(승인신청을 하려는 살생물물질 관련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신청 자료, 면제자료, 조건부 제출자료 등)을 규정

심사결과 살생물제품의 안전성과 성능평가시 필수 요소인 유해성, 위해성, 효과·효능 등 확인을 위한 신청자료 범위, 면제조건 등이 화평법과 국제기준(유럽 BPR)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추가**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시키는 대상사업은 방진벽 및 방진망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를 신고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도장공사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페인트 비산먼지 관리 필요성과 주변환경 피해시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신설 3, 강화 3)

심사내용 **대수선공사, 농지정리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 **강화**

- 건축물 축조공사 중 다량의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1천 제곱미터 이상 대수선공사 및 토사 반출입 또는 농지 전용 목적의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시(1천 제곱미터 이상)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추가

심사결과 대수선공사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비산먼지 발생 정도가 건축물의 증·개축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건축물 증·개축과 같이 신고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농민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으로 건설업 분야에 도장공사를 신규로 포함하여,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를 신고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재도장공사의 신고대상 포함은 동일한 성격의 기존 건축물 축조공사(증·개축 및 재축 포함)의 도장공사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하지 않고, 제기된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해 적정하게 검토(준비기간 부여 등)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도장작업시 조치기준 강화 **강화**

- 스프레이 방식 도장공사시 방진막 설치의 의무화하고, 병원, 학교 등 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서 50미터 이내 도장사업장은 롤러방식 도장작업 의무화

심사결과 스프레이 방식 도장작업시 방진막 설치의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롤러방식 도장은 비산먼지 저감을 통한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다른 대안이 없다는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력발전소 저탄시설 옥내화 의무 신설 **신설**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화력발전소 옥외 석탄 저장시설(저탄장)의 석탄 분진 비산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석탄 저장시설의 옥내화 추진

심사결과 민간 발전소의 저탄시설은 모두 옥내화 완료되어 있다는 점, 향후 건설되는 민간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승인기관(환경부·환경청)으로부터 저탄시설을 옥내화 협의의견을 받기에 동 규제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병원, 학교 등 먼지 취약계층 생활시설 주변 소규모공사 관리 **신설**

- 병원, 학교 등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군·구 조례로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먼지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비산먼지 관리 근거 마련

심사결과 기존 신고대상 사업장 규모 미만이라도 학교, 병원, 요양병원 등 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주거지역 등을 기준으로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정한 것은 동 시설 등의 이용자·거주자가 비산먼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고, 이를 모든 사업장에 곧바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점에서 규제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 제한 **신설**

- 수도권 내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 관련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업 신고대상 공사장에서 매연 저감장치(DPF) 등 저공해 조치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는 사용을 금지하되, 건설기계 소유자가 등록 지자체에 저공해조치 신청하고 6개월 이내 저공해조치 완료 예정인 경우는 예외

심사결과 수도권 소재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되며 모든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 점, 상기 공사에 참여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가 발생해도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소유주 부담은 10%(정부 지원 90%)로 부담이 크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 기준 (신설 2)

심사내용 살생물물질의 승인기준 **신설**

- 사람·동물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 효과·효능, 내성, 척추동물의 불필요한 고통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살생물물질 승인기준의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승인기준을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유해성 분류상 '위험'에 해당하고, 국제기준(EU의 BPR, REACH)에 부합하도록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신설**

- 인체·동물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 효과·효능, 내성, 척추동물의 불필요한 고통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살생물제품 승인기준의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법률이 규정한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별 세부기준이 국제기준(EU의 살생물제법)에 부합하도록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축소 **강화**

- (현행)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
- (개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을 축소하여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 간 변경’, 환경성이 강화되는 용도지역 변경(‘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

심사결과 ‘환경적 측면에서 개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 검토’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를 평가대상 개발계획의 환경성이 담보 또는 강화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농지·산지 등 보전용지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환경성을 고려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2)

심사내용 물질동등성 인정기준 **신설**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에서 물질동등성 인정기준으로 유사한 화학적 조성,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 등 효과·효능의 기술적 동등성, 환경부고시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고,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을 환경부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화학적 조성 및 효과·효능을 세부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EU 등 국외제도 및 국내제도 현황을 참고하여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물질동등성 기준을 마련한 점과 기술규제 검토결과 제기된 의견 및 행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이 적절하게 검토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품유사성 인정기준 **신설**

-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제22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기준살생물제품의 성분 함량 비율별 인정대상 살생물제품내 해당 성분이 허용범위를 넘지 않을 것'과 '기준살생물제품 승인시 함량 제한이 부여된 경우 승인통지된 범위 내로 함유하고, 기준살생물제품 사용목적, 용도, 효과 등 준수할 것'을 세부기준으로 마련

심사결과 정량적·구체적 기준이 제시되는 EU BPR(살생물제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한 점과 동 고시(별표3)의 기준살생물제품내 성분함량별 유사성인정대상제품의 성분함량을 EU ECHA(화학물질관리청) 고시보다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은 점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위해우려종 지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위해우려종 추가(과부거미 속) 지정 **강화**

- 과부거미속 전체 종을 위해우려종으로 확대하여 수입·반입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관리 대상 범위 확대

심사결과 독성을 가진 과부거미속 31종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람 및 생태계에 대한 피해 사전 예방차원에서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약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 등 **신설**

- 약취로 인한 주민 건강상 위해 예방 등을 위해 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약취배출시설 등에 대해 5년마다 기술진단 실시하는데, 약취기술진단전문기관의 민간 개방을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고, 법률이 위임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요건(기술인력, 진단장비, 실험장비, 준수사항 등) 마련

심사결과 약취검사기관과 유사한 기능(시료분석 등) 수행은 약취검사기관과 동일한 요건으로, 추가 기능(약취 진단 등) 수행은 필요한 요건만을 설정하였고, 유사입법례인 하수도법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무 **강화**

- 악취배출시설운영자에게 자진개선 및 개선명령(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 개선권고 및 조치명령(신고대상 외 악취 배출시설) 이행 후 지자체에 보고의무 부과

심사결과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명령 이행 여부를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강화**

- 법률에서 위임한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법령 위반행위 유형별, 위반 회차별 적정 수준의 행정처분기준 마련

심사결과 유사 대상시설 및 업무를 수행하는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 5의3)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등록대상 **신설**

- 법률이 위임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사유를 구체적(상호,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실험분석장비)으로 규정

심사결과 신설되는 변경등록사항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환경관서의 관리·감독에 필수적인 사항이어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6, 신설 6)

심사내용 운영기록부 보관 기간 연장 **강화**

- 현행 운영기록부 양식이 상세하지 않고 업종별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기록부 의무 보관기간(2년)과 정기점검 주기(환경공단, 3년)의 차이로 인해 정기점검 시 운영기록부를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상세한 운영기록부 양식 마련 및 운영기록부 의무 보관기간과 정기점검 주기를 일치(보관기간을 3년으로 연장)

심사결과 운영기록부 보관기간 연장(2년→3년)에 따른 부담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정 운영기록부 양식 작성에 따른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플레어스택 관할 행정기관 보고 및 결과 보고 의무 강화 **강화**

- 원유 정제업, 합성수지·접착제·플라스틱 제조업 등 매연 측정기준에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 및 영상기록 의무를 도입(광학적 불투명도 기준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연 발생시 CCTV 기록 및 제출 의무 부여)하고, 행정기관 보고시 제출자료에 '플레어스택 설계자료'를 추가

심사결과 점검공무원의 현장 측정이 불가한 상황이 많아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부분 사업장이 플레어스택 관리와 관련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기설치되어 있어 영상기록을 위한 충분한 용량의 저장장치 구매비용 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플레어스택 매연 불투명도 기준 및 매연 발생 영상기록 의무 도입 **신설**

- 원유 정제업, 합성수지·접착제·플라스틱 제조업 등 매연 측정기준에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 및 영상기록 의무(광학적 불투명도 기준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연 발생시 CCTV 기록 및 제출 의무 부여)를 도입

심사결과 비산배출 사업장이 플레어스택 관리와 관련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기설치되어 있어 영상기록을 위한 충분한 용량의 저장장치 구매비용 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저장시설 관리대상물질 누출 관리 강화 **신설**

- 원유 정제업, 합성수지·접착제·플라스틱 제조업 등에서 VOCs 누출이 우려되는 내부부상형 저장시설 및 외부부상형 저장시설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심사결과 저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저감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 및 누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동 규제수단 외 대체수단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산누출시설 검사용 시료채취장치 저감시설 설치 대상 확대 **강화**

- 원유 정제업 등에서 벤젠 뿐 아니라 톨루엔 등 기타 관리대상물질 포함 시료 채취시

에도 비산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사용하도록 대상 확대

심사결과 상시적인 시료 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유해물질 누출 차단을 위해서는 저감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산누출시설 누출기준농도 강화 **강화**

- 밸브, 플랜지 등 공정 비산누출시설의 비산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류 기준)를 (현행) 1,000 ppm → (개정안) 500 ppm으로 강화(뽕프는 현행 유지)

심사결과 현 비산누출 기준농도가 국외기준(미국의 경우, 500ppm)에 비해 완화된 수준으로 누출기준농도 강화를 통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대기오염물질의 누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산누출시설 점검보고서 내용 추가 **강화**

-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결과를 점검보고서(최초점검보고서, 연간 점검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심사결과 연 1회 자체 실시하는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결과를 환경관서의 장에게 최초점검보고서 및 연간점검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도록 하여 누출기준농도 초과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비산누출시설 식별표시 의무 신설 **신설**

- I·III종 업종에 비산누출시설의 현장 식별 및 위치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설에 시설명과 위치정보를 포함하는 식별 표지판(Tag)을 부착

심사결과 비산배출사업장의 각종 설비에 대한 식별표시는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시 조사·파악하여 신고한 내용으로 시설명 표기, 위치정보 작성에 어려움이 없고, 피규제자의 부담 완화를 통한 규제준수 가능성 제고를 위해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냉각탑 열교환기 누출 관리 **신설**

- 원유 정제업, 합성수지·접착제·플라스틱 제조업 등 공정배출시설에서 냉각탑에 연

결된 열교환기 입·출구의 총유기탄소(TOC) 농도편차를 1ppm 또는 10% 미만으로 관리하는 기준 마련

심사결과 현행 냉각탑 내 냉각수 모니터링 방법은 냉각팬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증발, 열교환기 파손에 따른 공정유체의 냉각수 혼입 및 냉각탑별 다수의 열교환기 연결로 정확한 혼입지점 발견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고, 열교환기 냉각수 총유기탄소(TOC) 측정비용이 크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작차 배출허용 기준 신설(경유철도차량) **신설**

- 관제부처 합동「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9.26)에 경유철도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어 개정 법률에 따라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신설 배출허용기준은 2009년 유럽에서 경유철도에 적용한 배출기준(StageⅢA)으로, 경유철도 적용 최신기준(StageⅢB)에 비해 완화된 점과 규제비용 및 규제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플레어스택 연소구간 총발열량 기준 도입 등 **신설**

- 원유 정제업, 합성수지 제조업 및 제철·제강업 등의 플레어스택에서 배출되는 VOCs를 98% 이상 저감할 수 있는 총발열량 기준을 도입하고, 시설관리기준(광학 가스탐지카메라(Optical Gas Imaging)를 설치·사용하여 불완전연소 배출여부를 일 1회 모니터링 실시,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하고, 그 결과를 월 1회 운영기록부에 기록)을 도입

심사결과 일반카메라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VOCs의 불완전 연소 후 배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광학가스탐지카메라(Optical Gas Imaging)의 설치·사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도로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강화 **강화**

- 오존으로 인한 매년 오존주의보 발령의 증가 추세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저감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관리대상 도로의 종류를 확대(61종→118종)하고, 도로에 함유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강화

심사결과 EU, 미국 등 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고, 업계의 이견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보고 및 자료 제출의무 강화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법률 제33조의3)시 제출서류(휴·폐업 또는 재개업신고서 및 휴·폐업 신고 전의 보관 폐기물 처리계획) 추가

심사결과 재활용업자가 휴·폐업 또는 재개업시, 보관 중인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고,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와 보관 폐기물 처리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과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보관,인계기준 신설

- 개정된 법률 위임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회수·보관기준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기준 신설

심사결과 폐자동차로부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회수·보관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인계 등 과정에서 동 물질의 대기중 무단누출 및 무단 재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한 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회수설비 등 신설 기준에 부합하는 장비 및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추가 비용부담 없이 준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통계조사대상 확대 등 강화

- 화학물질 통계조사 제외 대상을 현행 연간 취급량 1톤 이하 사업장(유해화학물질은 100kg 이하)에서 개정하여 ①제조업, ②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③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한국표준산업대분류」의 사업장 구분)은 취급량과 관계없이 모두 통계조사 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추가되는 사업장은 업종 특성상 전문적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대부분 입·출고내역 등 재고 관리를 하고 있어 통계조사가 용이하다는 점과,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부분이 추가되는 3개 업종 사업장의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동 업종의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 확보가 긴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강화**

- 생물다양성법의 위임에 따라 국외반출 규제가 필요한 생물종을 1,180건 추가 지정 하여 국내 고유종 및 자생생물 보호를 강화

심사결과 '생물다양성 협약', '나고야 의정서'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권한이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고, 국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이 적정하고, 유럽연합과 중국 등에서도 일부 생물종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점과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정수기 부가결합장치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강화**

- 정수기 범위에 포함된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부가결합장치의 품질검사 기준 (구조·재질 검사, 용출성안전성 검사, 위생·청결 매뉴얼 적합성 검사기준) 마련

심사결과 목적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연구용역('17.9.~'18.7. 한국환경수도연구원)과 제조업체 등 의견('18.12.) 수렴을 통하여 검사기준을 마련한 점과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배출시설 측정 대행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 금지 **신설**

-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가 자가측정업무를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시 금지

심사결과 사업자가 측정을 위탁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먹는물 관련 영업장 지도점검 횟수 확대 **강화**

-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현행 3회 이상에서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

심사결과 수질 기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생수 품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므로 점검제도를 강화하여 부적합한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위반업체에 한해 검사 횟수를 추가하므로 수검부담도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생태계교란 생물 추가 지정 **강화**

- 위해성 평가 결과 1등급 판정을 받은 환삼덩굴, 등검은말벌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자연생태계 예찰 및 퇴치 등 관리 강화

심사결과 생태계 균형 파괴 우려가 있는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하여 사전적(수입등 금지)·사후적(방제) 조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하고, '환삼덩굴'은 식물방역법 제2조에 따른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럽식물보호기구에서 침입외래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점, '등검은말벌'에 대해 일본은 특정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에 관한 피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외래생물로 지정하여 사육·수입 등을 금지하는 점 등 고려시 과도하지 않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추가(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 **신설**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 장관 요청 시, 남은 음식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

심사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력이 강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 가능하므로 규제의 필요성 및 그 적절성에 동의하여 **중요규제**로 **심사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을 받은 자기급여 농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동 사항**을 개정안에 명확하게 반영키로 하여 **본위원회에서 개선권고**

(28)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운영 **신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에서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안에서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절차 및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

심사결과 센터의 적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관계자들도 연구기관 지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 확대 **강화**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검증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2개 기관에 불과하여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관'을 추가

심사결과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경우 무분별한 인증기관 확대운영은 지양해야 하고,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사기관은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고, 추가적인 투자비용이 많지 않아 무분별한 인증기관 확대보다 적절한 대안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신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연구관리센터를 허위로 지정 받거나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지정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센터의 적정 운영 유도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이 비슷하거나 제재 수위가 낮으며, 연구·관리센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4, 신설 1)

심사내용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시설·장비기준 **강화**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요건의 시설·장비(수질측정기기 등)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중 COD(화학적산소요구량) 수질측정기기를 TOC(총유기탄소량) 수질측정기기로 전환

심사결과 효율적인 수질오염물질 관리 및 하천의 수질개선 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폐수 중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됨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강화**

- 유기물질 측정지표 변경(COD→TOC)으로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금액을 COD-TOC 전환비율(1.8)에 따라 변경(오염물질 1kg당 COD 250원→TOC 450원)

심사결과 초과부과금 대상 항목을 COD에서 TOC 항목으로 전환하고 객관적인 연구용역 결과로 얻은 전환비율(1.8)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추가 규제 부담비용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강화**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에 ‘공공폐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증액’, ‘인근 지역의 오·폐수, 분뇨, 침출수 등을 1일 100세제곱미터 이상 유입처리’, ‘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화로 시설 폐쇄 후 재설치하거나 시설을 개량하는 경우’ 등을 추가

심사결과 해당규제는 현재에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을 규정하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변경승인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여 시행자의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타당하고,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부착 강화

-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대상 사업자가 기 설치·운영 중이던 측정기기 일부(COD)를 TOC 자동측정기기로 교체

심사결과

효율적인 수질오염물질 관리 및 하천의 수질개선 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폐수 중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됨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교체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내용 신설

- 법률에서 위임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위·수탁업체가 입력할 내용을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폐수 위·수탁자에 관한 내용, 폐수의 종류, 양 등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으로 명시

심사결과

규제 신설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차량센서 설치 등을 국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유발하지 않고, 사전 연구용역, 시범사업 보고회 등에서 업계, 협회,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환경보건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의 고의적 방해 등 금지 신설

- 환경유해인자 배출사업장 등이 역학조사·건강영향조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자료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

심사결과

조사가 필요한 사업장 등에서 역학조사에 협조하는 것은 피규제자에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처분 기준도 식품위생법, 감염병예방법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관련 변경신고 신설

- 생물다양성법에서 위임받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수입

량 또는 반입량, 제공국, 관리방법,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다수 법령에서 기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종의 무분별한 수입·반입 방지를 위해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시 수입·반입 목적 및 제공국 등 사항을 확인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6,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에서 반복적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측정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

심사결과 특별대책지역 외의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고, 유사 사례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 행정처분기준과 비교해서 반복적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과도하지 않으며, 수질자동측정기기(TMS)의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 변경신고 **신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폐쇄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강화

심사결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폐쇄 또는 일부 폐쇄시 신고를 하지 않아 시설물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변경신고 도입이 필요하고, 시설 관리자는 운영 종료시 신고증 반납, 사후관리계획서 작성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피규제자의 부담이 경미한 점과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강화**

-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중 COD를 TOC로 전환하고 COD/TOC 전환 비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변경 적용

심사결과 객관적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새로운 방류수 수질기준을 설정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한 점과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이 없고, '20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측정지표 전환에 따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폐수배출업소 유기물질 측정지표를 COD에서 TOC로 전환하고, 생태독성의 적용 업종을 확대하며, 주석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심사결과 COD에서 TOC 전환은 객관적인 연구용역 결과 얻은 전환비율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였고, 생태독성 대상업종 확대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주석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유사독성물질인 니켈 및 바륨의 배출허용기준은 이미 도입된 상황인 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점(TOC 전환)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통행금지구역 확대 **강화**

- 대청호지역 신설도로를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물질 수송차량 통행제한도로로 추가 지정

심사결과 통행제한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수송차량들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비용에 비해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여 안정적 식수원을 확보하는 환경편익이 크고, 통행제한도로 추가지정 관련 합동조사('18.3.5, 금강환경청·경찰청·지자체 등) 결과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통행제한이 적절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타수질오염원 대상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

- 기존에 안경점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시설은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안경원에 적용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렌즈 제작시설을 제도권내로 관리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부직포 여과 등의 방법으로 적정 처리하기 위한 시설기준 마련

심사결과 연구용역('18.9월~11월, 안경원 폐수 처리성 실험 결과) 결과 안경원 발생 폐수는 부직포 여과를 통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미세플라스틱 등을 저감하여 수질개선

가능한 점과 환경부, 시민단체 민원제기로 안경원 유예조항을 삭제하였고 관련 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일을 연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강화**

- 폐수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중 측정기기를 COD에서 TOC로 변경(단, 기존사업장은 '20.12.31까지 TOC 수질측정기기로 교체)

심사결과 효율적인 수질오염물질 관리 및 하천의 수질개선 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폐수 중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도 유예기간('20.12.31) 내에 전환하여 TOC 중심의 오염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하여 피규제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생태계교란 생물 추가 지정 **강화**

- '미국가재'를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

심사결과 생태계교란생물 지정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확산 방지를 위한 퇴치·제거사업 실시 등 외래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생태계 위해성평가 결과 1등급(생태계 위해 심각)으로 분류('18년)되었으며, 유럽에서도 100대 악성 외래종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행정처분기준 **신설**

-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제도 운영을 통해 석면해체작업감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실 감리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운영하고 있는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은 처분기준을 설정한 점과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신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기준 신설

심사결과 1인 사무소로 인한 대체인력 부재 등 감리인의 영세성을 시정하는 것이 감리인 등록제의 도입목적이므로 최소 2명의 감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감리에 필수적인 장비들로 등록제와 상관없이 현재 감리인들은 구비 증으로 최소한의 장비 수준을 요구하며 입법예고기간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201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를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2019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를 **강화**

- 폐형광등 재활용의무율을 57.1%에서 80.8%로 상향 고시

심사결과 '19년도 상반기까지의 폐형광등 발생량(처리량)을 고려할 때 '19년 말까지 약 14백만개의 미처리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19년 재활용의무를 유지하는 불가하고, '재활용의무를 상향 조정'을 통해 분담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재활용업체가 자발적으로 의무량 초과량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은 수은 등 국민건강 위해요소 제거라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인 점과 이해관계자가 동의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급 **신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명할 기준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3조의2에 따른 '미흡' 등급으로 정함

심사결과 상호·대표자·소속 감리원 등은 등록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변경 등록 의무를 부과한 최소한의 부담이며, 석면해체제거업 등 석면해체 관련업과 소방공사감리인, 전력시설물감리인 등 유사입법례에서의 변경등록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등록 **신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제 운영에서 '상호, 소재지, 대표자, 소속 감리원' 변경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해당 사항 변경시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심사결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주기적 평가 결과 최하 등급을 받은 감리인의 활동을 묵인할 경우 평가제 도입 취지에 반하며, 최하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시정의 기회를 준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하므로 감리인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 **강화**

- House crow 등 외래생물 18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수입·반입시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받도록 관리

심사결과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추가되는 18종은 위해성 평가결과 토착종과 경쟁관계 등 위해 우려를 갖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고, 지정 시 국제사회에서 위해성이 공인된 생물종, 종별 생태적 특성, 분포 유형에 따른 확산 및 생태계 영향 등 분류군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강화**

- 포장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전자제품류 중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을 추가하고, 기존 단위제품에 해당하는 완구·인형류, 문구류를 종합제품에 포함하여 포장기준 강화

심사결과 관계부처 합동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유통단계의 포장 최소화 대책으로 전자제품 등의 과대포장 제한기준을 신설을 발표한 바 있으며, 과대포장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 강화 대상제품을 선정한 점, 해외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제품별 포장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포장규정 강화 **강화**

-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에서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체적(부피) 산출 시, 가산공간을 축소

심사결과 '03년도 법 제정시 포장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제품의 파손을 방지하고 박스에 고정하기 위해 10mm 가산공간을 규정하였으나, 법 제정 이후 15년 이상 경과하여 포장재 재질 및 기술이 발달하여 연구용역 결과 과대포장을 방지할 가산공간 축소가 가능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친환경 포장, 포장 없는 제품 생산, 포장재 사용 감량을 추진하고 있는 점과 기술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수용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포장제품의 재포장 금지 **강화**

- 기존에는 내용물이 30g(건강기능식품은 80g) 이하인 경우 포장규제 제외하였으나, 이에 더하여 제품 총 중량이 50g(건강기능식품은 150g) 이하여야 포장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규정('20.7.1일 이후 제조·수입제품부터)

심사결과 포장검사 기준 및 포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 포장내용물 30g 이하 제품이 총 총량 50g이상인 경우 포장기준을 만족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포장내용물 80g 이하 식품이 총 중량 150g 이상인 경우 포장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총 중량기준 추가'가 과대포장 해소에 적절하고, 중국에 비해 화장품의 경우 규제 수준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통합허가 대상 업종 추가(시행령 별표 1) **강화**

- 매립장과 소각시설이 혼재된 폐기물처리업 사업장도 통합허가 대상 업종에 포함시켜 최적환경관리 적용

심사결과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에서 통합관리대상에 누락되었던 일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대상에 포함시킨 규정으로서,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은 기본적으로 통합허가가 적용되고 있고, 매립시설이 설치된 사업장과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 간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예외조항 삭제가 타당한 점, 최적가용기법이 마련되지 않은 매립시설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에 적용되었던 사업장들과 동일하게 4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와 협의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소용량 제품의 포장규정 강화 **강화**

- 기존에 내용물이 30g(건강기능식품은 80g) 이하인 경우 포장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다가, 내용물이 30g(건강기능식품은 80g) 이하이면서 제품 총 중량이 50g(건강기능식품은 150g) 이하여야 포장규제에서 제외되도록 기준을 강화

심사결과 연구 결과 소용량 제품의 경우 내용물 대비 과도한 포장을 조장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규제 예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포장기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포장검사 기준 및 포장제도 개선방안 연구 결과 개정된 기준에 따르는 것이 과대포장 해소에 적절한 수단으로 나온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 규제 완화 규정 수정 **강화**

-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간이측정방법에서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의 체적(부피) 산출 시, 가산공간을 축소하되, 기존 포장재 등 재고소진 필요성, 과거 유사사례 경과 조치 등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부여

심사결과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의 선물세트 포장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고정재 등 필요공간 용적을 줄여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포장공간비율의 개선, 포장재 감량기술의 고도화, 환경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해관계자 및 기술영향평가 의견을 수용하여 업계 부담을 완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관리대행업 등록기준 강화 **강화**

- 공공하수도 관련 영업자(관리대행업자,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장비 등록기준 중

실험분석장비를 COD에서 총유기탄소(TOC)로 교체

심사결과 효율적인 수질오염물질 관리 및 하천의 수질개선 목적 달성을 위해 산업폐수 중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COD에서 TOC로 전환되었고,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 또는 기술진단을 영업으로 하는 등록업체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변경도 필수적인 점,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강화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특례 폐지 **강화**

- 기존에는 수도권 총량관리사업장에 오염물질 배출 농도 특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배출 농도 특례를 미적용하여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영향을 분석해 사업장별 맞춤형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수도권에도 정상 적용

심사결과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해 기존에 수도권 총량사업장(285개)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농도 특례를 폐지하여 다른지역과 동일한 방법의 농도규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통합허가된 사업장의 배출수준을 검토해 볼 때, 현행 기술로도 허가배출기준의 준수가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강화**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중 정화조에 오수 유입 금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 차단행위 금지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기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

심사결과 정화조 오수 유입 금지, 전원차단 금지 위반시 문제점이 다른 위반행위에 비해 경미하지 않고, 분뇨는 고농도(약 2만mg/L)의 오염물질로서 적정관리하지 않을 경우 하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원을 끄는 경우 오수처리시설 기능에 문제를 야기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6)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환경영향평가사 준수사항 추가 및 벌칙 신설 **신설**

-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

심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방안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유사입법례인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추가 **강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에 “사업규모의 증가에 따라 증가되는 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를 추가

심사결과

개발기본계획 변경 시 협의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일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유사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또한 규제의 집행에 추가적인 인력소요가 없고 비용도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공개 등 **신설**

- 유해성 높은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고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사업장 향후 5년간의 배출저감계획을 수립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작성대상물질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지정하도록 함

심사결과

배출저감 목표를 기업에서 자율 설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유예기간을 두는 등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적절성이 인정되고,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를 운영중으로 해외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대부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신설 3)

심사내용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 강화 **강화**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를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소음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소음관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발전기, 콘크리트 절단기의 관리기준 추가

심사결과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관리기준은 유럽기준 조사 및 소음발생 실태조사, 용역, 전문가 및 업체간담회 등 협의를 통하여 업계가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마련되었고, 국제기준 부합 및 기술개발을 통해 그 적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이어 소음도 측정기관의 장비 및 인력기준 **신설**

-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위임된 측정기관의 장비 및 인력기준 규정을 통하여 소음허용 기준 확인 등을 위한 제도운영 기반 구축

심사결과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장비인 소음계, 표준음발생기, 차속측정장치, 표준도로, 온도계 등은 소음도 측정을 위한 국내·외 표준측정방법에 따른 최소 필요 장비로 적절성이 인정되고, 인력기준도 소음도 측정장비 및 시설 등의 감독·관리 및 운영을 통한 측정결과의 안정적 확보 및 정밀도 향상을 위하여 '책임 분석 전문가 1인, 측정 및 장비 조정 인력 2인 이상'으로 규정한 점과 이해관계자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 조사 및 보고·검사의 대상 **신설**

- 신고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 등을 규정 하고, 보고 및 검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과 유사하게 조사 기준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와 검사도 유사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및 타이어 소음도의 표시** **신설**

- 타이어의 용도 및 규격 등을 고려하여 소음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소음도 기준으로 2개 등급(AA/A)으로 구분하고, 이를 나타내는 표지는 자동차 장착전까지 타이어의 트레드에 부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도로 교통소음을 저감하고 저소음 타이어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및 소음도 표시제 도입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19.10.16)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기준 등 마련이 필요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EU 규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소음허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소음도 표시와 산업부의 타이어 에너지 효율등급을 통합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경감시킨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0)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이 불가한 경우,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 **신설**

-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의 법령 구조를 준용하여,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어 정부가 결함시정을 명함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계획서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시 환불·교체·재매입 명령 근거 신설

심사결과 결함확인검사(대기법 제51조) 및 부품결함을 보고(대기법 제53조)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에도 교체·환불 재매입 명령을 준용(대기법 제50조제8항)함으로써 결함시정에 미온적인 제작·수입사의 결함시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해당차량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결과표시** **신설**

-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재질·구조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공단에 제출, 공단은 10일 이내에 확인서 발급하는 평가 절차 및 평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5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기록·보존해야 하는 장부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리대장을 추가

심사결과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등급표시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되, 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평가 단위를 제품이 아닌 포장재 단위로 변경하고, 표시 유효기간을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개선명령 **신설**

- 개선명령을 통지받은 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고, 개선명령대상자가 개선명령 이행 시 이행결과를 개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며 1년 이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기간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심사결과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선명령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되, 개선명령 대상 조정 등을 통해 규제 실현가능성 및 순응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입법례인 순환이용성 평가의 개선권고 절차와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조 수입판매 중단명령 **신설**

-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단명령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간 및 절차를 규정

심사결과 중단명령 대상 포장재는 전부 대체재가 상용화되어 있고 개선 시 제품 기능에도 문제가 없는 포장재이고, 처음부터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지 않고 개선기간 부여 후 기간 내 미개선 시에만 금지하는 점과 중단명령 기간 내에도 재질·구조 개선을 할 경우 중단명령을 해제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회수·재활용의무이행 대상 전기·전자제품 확대 **강화**

- 기술의 발전과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신규로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이 확대되는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내비게이션, 유·무선공유기, 태양광 패널 등 23종을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

심사결과 최근 다양한 전기·전자제품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어 폐제품의 적정 처리를 위해 회수·재활용의무이행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며, 전자제품의 재활용 확대 및 제품 내

유가자원을 회수를 위하여 폐기량이 많고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는 품목 위주로 대상 선정된 점과 냉매 포함여부, 제품별 특성, 재활용설비 차이 등 재활용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EU 등 해외 주요국의 분류 추세를 반영한 점, 태양광패널 업계와 MOU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회수·재활용의무이행 품목 확대에 따른 기준비용 재산정 **강화**

- 현행 단위비용은 '16년 이후 4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그간의 인건비, 회수 및 재활용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여 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재산정

심사결과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은 재활용 및 회수의무 미이행 시 부과금 산정을 위한 필수요소로 의무대상 확대 및 제품군 재분류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을 근거로 산출하였고, 현재의 단위비용은 '12년 기준 비용으로 산정하였으며, 개정안은 '18년까지의 6년간 비용 상승분에 대하여 전국 45개 재활용센터의 실측치를 공정별로 전수 조사하여 산출한 점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3)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어린이활동공간 범주 확대 **강화**

- 키즈카페에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 확대

심사결과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단위 체중 당 2배 이상 호흡을 하는 등 대사량이 많고, 면역체계가 불완전하여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성인보다 더 크게 피해를 입는 건강 특성이 있고, 지난해 이러한 건강 및 활동특성을 가진 어린이가 많이 찾는 키즈카페 18여 개소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 농도를 조사한 결과 80%이상이 법정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관리강화 필요성이 있는 점, 해외 증금속 등 환경안전 강화 사례에 부합하는 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리콜 제공정보 통지 의무 **강화**

- 제작사가 리콜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구체적으로 전달하도록 기존에는 우편으로 제작자를 선택하여 제한적으로 통지하던 것을 우편 및 언론 공고 방식으로 필수정보를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개정

심사결과 유사입법례인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리콜 절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정안의 리콜 절차가 이와 유사하여 적절성이 인정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도 리콜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자동차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배출가스 보증기간 강화 **강화**

- 대형 이상 휘발유·가스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기존 2년(16만km)에서 대형(3.5~15톤) 6년(30만km), 초대형(15톤 이상) 7년(70만km)으로 EU 수준으로 강화되되,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24년에는 기간을, 이후 '28년에는 보증거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대형·초대형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보증기간은 기존 2년(16만km)에서 5년(16만km)으로 미국 수준으로 강화되되,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28년에 강화

심사결과 자동차 제조사는 미국·유럽의 기준을 이미 지키고 있으며, 미국·유럽 규정과 개정안을 비교할 때 적정성이 인정되고, 당초 '21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적용 시기를 조정해달라는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24년 및 '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업계의 준비기간을 확보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도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강화**

- 중·소형 경유차의 '20년 이후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실내인증기준 대비 기존 1.5배에서 1.43배 이내로 5% 강화하고, 대형·초대형 가스차는 '21년 이후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기준을 기존 0.96g/kWh에서 0.75g/kWh 이내로 22% 강화

심사결과 중·소형 경유차의 경우 한-EU FTA에 따라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은 양 국간 조화대상이므로 EU의 시행시기('20.1~)에 맞춰 국내도 도입될 필요가 있고, 대형·초대형 가스차는 한-EU FTA에 따른 조화범위는 아니나, 그간 EU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하여 관리해 왔고, EU('18.9월)보다 약 2년 늦은 '21.1월 이후 시행하여 국내업계의 대응기간을 고려하고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5)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강화**

- 방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비·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처리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페드립 단위(원/개)는 단위 통일 등을 위해 중량(톤)으로 변경하고, 폐합성수지는 혼합되어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혼합단가로 단일화

심사결과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고시 개정은 2012년 기준의 처리비용을 2019년 기준으로 현행화 하는 것으로 적절성이 인정되고, 방치폐기물 처리단가 현행화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가 납부해야할 보험 수수료가 일부 증가하나, 폐기물의 원인자(폐기물처리업체 등) 처리 원칙에 부합하므로 불가피한 부담인 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보다 적은 보험 수수료로 인해서 잔여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국비 유출과 세금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2차 환경오염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를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5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점검 실태조사 **신설**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대해 지자체 및 대행업체의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를 규정

심사결과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이 예상되나,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공익 확보가 사익침해에 비해 크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감소로 산업재해 보험금 감소 등의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편익이 기대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실적 평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실적보고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신설**

- 청소차량(후방영상장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스위치, 안전멈춤바 등 설치·운영 의무화), 환경미화원 개인 보호장구(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 구비 의무화), 작업지침(주간작업·3인 1조·약천후 보호

조치 등) 안전기준 마련

심사결과 생활폐기물 수거 시 작업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환경미화원이 안전에 취약한 작업환경에 방치되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공익 확보가 사익침해에 비해 큰 점,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7)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 설정 **신설**

- PVC 재질 포장재, 유색페트병, 페트병에 일반접착제 사용 금지

심사결과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여 개선명령 대상이 되는 포장재 재질·구조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에 유해하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의 포장재 중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제하는 것으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법률의 위임사항에 비해 규제내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8)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시행대상 배출시설 **신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에 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중 1개 이상 항목에 대한 TMS 부착 사업장을 추가

심사결과 비상저감조치를 취하게 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 단축, 방지시설 최적 운영, 저황연료 사용 등 사업장에서 준수 가능한 저감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로 제출하며, 이행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하며, 사업장 여건에 맞게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대기오염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9)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내·외부 용기포장(제3조, 제4조, 신설, 비용발생)규정 **신설**

-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의 내부 포장에 열, 외부압력 등에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안전용기 및 포장재 의무사용, 외부 포장에 견고한 상자 내 격벽, 고정식스티로폼 및 완충·흡수제 의무사용을 규정

심사결과 열과 압력 및 화학반응에 견딜 수 있는 고강도의 내부용기·포장과 유해물질 표시 및 운송 용이성을 고려한 견고한 외부 포장으로 택배 운송의 안전관리가 필요하고, '20년도 시약 판매업, 물류업계 인프라 구축상황을 감안하여 새로운 규정적용에 대한 변경이 예상되므로 1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점과 해외사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택배운송 금지물질(제6조, 신설, 비용없음)지정** **신설**

-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견본품 중 폭발성, 인화성, 및 급성흡입독성이 높은 물질을 택배금지물질로 지정

심사결과 美 USPS(United States Postal Service) 내 폭발성, 독성가스 등 운송 전면 금지물질과 국내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급성흡입독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국내 미유통되거나 급성흡입독성이 낮은 물질은 택배 운송 금지물질에서 제외하는 등 시약 판매와 택배 운송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점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제품군별 재활용 방법과 기준** **강화**

- 태양광 패널 내 중금속을 유해물질 기준치 미만으로 관리하고, 재분류된 제품군의 재활용 특성 및 실적 등을 반영하여 제품군별 재사용·재활용 비율을 기존 70~75%에서 70~80%으로 상향 조정

심사결과 제품군별 재사용·재활용 비율은 제품군별 재활용 특성 및 실적 등을 반영하였으며, 과거 4년간 실제 재활용된 비율을 실측하여 산정하였으며, 일반적 재활용 기술 적용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해당 기준을 달성할 경우, 미달성률에 비례하여 재활용 실적을 차감한 점, 과거 4년간('14~'17) 평균 재활용 실적의 경우에도 개정된 재활용 비율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업계 부담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8절 교육·문화 분야

1. 교육부



강주연 주무관
Tel. 044-200-2436, kang@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총 20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0건의 규제를 심사, 30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교육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본위원회 (2019.02.08)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2)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3)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30)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 1 (비중요 3)
(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5.31)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8)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3	강화 2, 신설 1 (비중요 3)
(10)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1)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11)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15)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6)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7)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0)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30	신설 21, 강화 9 (중요 1, 비중요 29)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유치원 회계업무 처리 시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 **신설**

- 유치원 포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결산 및 회계업무 처리시 교육부장관 지정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심사결과 매년 약 2조원의 정부재정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므로 유치원 회계 운영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수적이고, 법령상 유치원은 공공성을 가진 학교로서 모든 회계처리는 감독관청의 감사대상이므로 에듀파인을 통해 그 내역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며, 기존에 운용중인 회계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추가 인력 부담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교원자격검정령 (강화 1)

심사내용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강화 강화

- 유치원 원장의 자격기준을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9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15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상향조정하고, 교육경력은 유치원이상 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심사결과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의 장인 유치원 원장의 풍부한 교육경험과 전문성 구비가 중요하므로 유치원 원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유치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교육경력 기간은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과 동등하게 하되, 학력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여 피규제자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유아교육법 시행령 (강화 2, 신설 1)

심사내용 유치원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포함 강화

- 유치원규칙 기재사항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보수기준 추가

심사결과 일부 사립유치원의 경우 설립자겸 원장에 대한 과도한 급여 책정, 교직원간 불합리한 임금격차 등 부적정한 보수체계가 운영되는 실정으로, 이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사기 저하는 물론 유치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어 조속한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며, 예·결산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되고 있고, 개별 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수준도 매년 1회 이상 공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치원 운영정지 시 재원생 처리계획 제출 의무화 강화

- 유치원이 고의·중과실 등에 의한 법령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등으로 관할청으로부터 운영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관할청에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유치원이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유치원 재원생의 교육중단 문제가 발생하는데, 폐쇄명령 시에는 유아교육의 재원생 처리계획 등을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운영정지 명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재원생의 교육중단 피해가 우려되므로,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폐쇄 또는 운영중단시 보육중인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법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신설**

- 유아교육법 제30조에서 정한 정원 감축, 유아 모집 정지 등 조치를 위한 위반 사유 별·횟수별 행정처분기준 마련
- 동법 제32조에서 정한 유치원 운영정지, 폐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심사결과 유아교육법은 양질의 유아교육 및 안전을 위해 유치원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에 교육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법 등 법령 준수 등 의무를, 감독관청에는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 미이행시 정원감축 등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세부 처분기준이 부재하므로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여 법령의 집행력을 담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법령인 영유아보육법상 행정처분 기준과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은 아니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대학강사의 교원 자격기준 마련 **신설**

-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인 경우 연구실적·교육경력연수 2년으로 하고,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인 경우 연구실적·교육경력연수 3년으로 규정

심사결과 강사도 대학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교수, 조교수 등 다른 전임교원과 같이 연구·교육경력 연수를 바탕으로 한 자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강사 및 신규 유입 강사들이 대부분 석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학위 취득과정에서 연구 및 교육연수 2년의 자격요건을 획득하므로 신설되는 연구·교육경력연수는 신규 강사 임용 등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 필요최소한의 요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교실 내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강화 **강화**

-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유지 관리해야 하는 교실 내 공기질 관리항목중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100→75 $\mu\text{g}/\text{m}^3$, 폼알데하이드 관리기준을 100→80 $\mu\text{g}/\text{m}^3$ 으로 강화

심사결과 미세먼지 및 폼알데하이드 노출로 인한 인체 악영향을 고려할 때, 오염물질에 취약한 성장기 학생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공간의 공기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강화되는 기준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유사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기준과도 동일한 수준이고,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에 따른 피규제자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학교보건법 시행령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보건실의 설치기준 **강화**

- 학교 보건실에서 갖추어야 하는 설비기준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용품을 추가

심사결과 여학생들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보건실에 비치하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신 및 신체 성장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학교 보건실에서 학생·교직원의 건강관리·응급처치 용품을 구비하게 하는 것은 교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고, 위생용품 구매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학교내 보건·위생관리 향상의 공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른 세부 행동요령 마련 **신설**

-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른 세부 행동요령에 담당자별 행동요령, 대응단계별 전파·조치요령, 실외수업 점검·조치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

심사결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단계별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항목들은 작성기준이 되는 교육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른 것이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감염병에 감염된 자 격리조치 시 학원설립운영자의 의무 **신설**

- 학원설립·운영자가 폐렴, 결핵 등 감염병에 감염된 학습자 또는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 조치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사유 및 기간 고지 의무화

심사결과 학원은 많은 학생들이 좁은 강의실에서 교육받는 시설이므로 감염병 확산·의심·우려 환자의 등원을 중지하여 학원내 전염 가능성 등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대상자의 건강권·학습권·근로권 보호 및 부당한 격리조치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학교의 경우에도 감염병에 감염된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중지를 명할 때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강화 1, 신설 1)

심사내용 교실내 공기질 점검주기 단축 **강화**

-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변경

심사결과 건강 취약계층인 성장기 학생들의 보건관리 강화를 위하여 매 학년별로 실시하던 공기 질 점검주기를 매 학기별로 단축하여 보다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 점검주기 등 타법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설치 **신설**

- 교사안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측정기기의 세부 유형 마련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학교장이 실내 공기질 개선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설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성장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분진포집, 냄새탈취, 미세먼지측정 기능이 있는 공기정화설비와 이동식 미세먼지측정기는 공기청정 및 측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피규제자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강화 2, 신설 1)

심사내용 유치원 공시횟수 및 공시시기 조정 **강화**

- 유치원 정보공시 항목중 원장명 및 설립·경영자명은 4월과 10월에 연 2회 공시

심사결과 현행 규정은 9월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유치원 원장 등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정보 정확성의 우려가 있으므로 하반기에도 유치원 원장명 등에 대한 정보 공시를 추가로 실시하게 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현황은 4월과 10월, 연 2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0월에 교직원 정보 공시 시 학원장의 정보를 추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에 특수학교 추가 **강화**

-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자유학기제 운영사항 공시

심사결과 2018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특수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규정 미비로 일부 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사항을 공시하지 않아 학생·학부모들에게 충분한 교육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정보 공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반 중학교에서도 자유학기제 운영사항은 4월과 9월, 연 2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미공시 및 허위공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검증 강화 **신설**

- 공시정보 시정·변경명령을 받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는 시정·변경명령을 받은 다음 연도까지 매 공시시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이후 교육감에게 공시정보 제출

심사결과 의도적인 정보 누락 및 허위정보 등록 등의 사례를 방지하여 공시제도에 대한 신뢰성과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 규제대상을 시정·변경명령을 받은 유치원, 초·중등학교로 한정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은 규제편의 대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사립학교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사립학교 교원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 **신설**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및 징계감경 기준을 국공립 교원의 기준(「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4조)을 준용토록 규정

심사결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비위행위의 수준에 비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신뢰를 회복하고, 정당한 절차나 사유없이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을 실시하는 관행을 근절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징계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공립 교원의 징계 및 징계 감경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평생교육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내용 및 방법 규정 **신설**

- (인권교육 내용) 장애인 인권·권익 보호, 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국제동향, 장애인 차별, 기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교육방법)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원격교육도 가능

심사결과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품질 개선 및 활성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법제화에 따른 회피 범위 명시 **신설**

-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학생 선발업무 회피 신청의무가 발생하는 입학전형 응시 학생과의 특수관계를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입학사정관이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입학사정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배제 범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대학 입학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응시학생에 대한 과거 교육시기를 입학연도로부터 3년 이내로 설정한 것은 고등학교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으며, 교육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미 각 대학에서 운영되던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등 고시 (신설 2)

심사내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규정 **신설**

- 평생교육기관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설·설비 및 배치기준을 충족한 후, 지정신청서 및 교육과정 편성내역, 교육제공인력 현황, 시설·설비설치내역, 경비, 운영규칙 등 관련 서류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발달장애인은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 생애에 걸쳐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정부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보다 충분히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교육제공 인력의 요건 **신설**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관설치·운영자, 교육담당자, 교육보조원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서 개설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평생교육기관의 종사자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품질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수료 요건은 전문성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현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이미 충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신설**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교직원, 학생,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내용을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교육대상자별 필요와 상황에 적합하게 규정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구성원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이견은 교육부에서 수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 실태조사 **신설**

- 관할청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항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현황, 피해교원 보호조치 현황, 침해자 조치현황 등을 포함하며 연 1회 이상 실시 가능

심사결과 실태조사의 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여 정부 행정조사에 대한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교권 침해행위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근거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규제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교육활동 침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부담 **신설**

-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 등이 교원보호조치 비용(전문심리상담 비용 등)을 부담
- 보호조치 비용은 관할청이 먼저 부담하고, 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구상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

심사결과 등 규제를 통해 교원의 신체·심리적 피해를 구제하고 교권 침해행위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령을 통해 지원된 심리 상담 및 요양비용이 중복되어 청구되지 않도록 하여 피규제자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자격기본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 **신설**

- 교육부가 민간 자격 관리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규정

심사결과 국가·민간자격운영자를 대상으로 자격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원활한 환류체계를 통해 자격정책의 시의성·효과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항목을 조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국가 자격체제에 부합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고, 조사항목은 정부의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타법 사례와 비교 시에도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원격교육연수원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2)

심사내용 원격교육연수원의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등 규정 **신설**

- 교원 원격교육연수원의 평가영역, 평가항목 등을 규정하되, 원격교육연수원 특성상 고시된 평가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평가항목 변경 가능

심사결과 교원 원격교육연수원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교원들이 보다 양질의 연수과정을 선택·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원격교육연수원의 평가 방법 **신설**

- 교원 원격교육연수원의 평가방법은 서면평가를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심사결과 교원 원격교육연수원 평가방법을 명시하여 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에도 원격교육연수원 평가는 서면으로 실시하고 있고, 규제에 따른 별도 소요비용 및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유치원 정보공시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신설**

- 유치원이 공시대상 정보를 미공시 또는 허위공시하여 교육감으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제재 처분으로 유치원 재정지원 차등화 추가

심사결과 유치원에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정보를 등록하는 경우, 현행과 같은 교육청 시정명령만으로는 시정조치 및 실효성 있는 정보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시의무 이행방안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공시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시 행정처분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규정 **신설**

-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규정

심사결과 장애인의 고등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환경 파악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대학 선택권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사방법은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피규제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학교 환경위생 관리대상 확대에 따른 환경위생기준 마련 **강화**

- 체육장의 인조잔디·탄성포장재는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고, 정상제품 설치 여부 확인검사 실시
- 교사대지에 있는 놀이시설 바닥 등은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 체육관·강당·급식실에 대한 미세먼지 유지·관리기준을 신설하고, 기숙사는 신축공동주택 권고기준 준수

- 학교시설 위생점검은 일상점검(매 수업일), 정기점검(매 학년 1회 이상 실시하되, 공기 질 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특별점검(특별점검 사유 발생 시)으로 실시

심사결과 학교시설별 사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기 질, 유해중금속 등 환경위생 관리항목에 대한 유지·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 및 신속한 개선조치로 보다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성장기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설 기준은 현행 학교 교실 및 유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과 같거나 완화된 수준이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해당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침해 학생의 장애여부 등을 고려하여 학교·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결정토록 규정

심사결과 합리적이고 통일된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처분조치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학생 처분조치 결정에 대한 재량권 남용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보다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 사례와 비교시 처분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도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문화체육관광부



강주연 주무관
Tel. 044-200-2436, kang@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총 17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9건의 규제를 심사, 19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3)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9.05.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9.05.1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6) 공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9) 카지노기구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07.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12)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16)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9	신설 14, 강화 5 (비중요 19)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기준 등 마련 신설

-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지정요건은 관광매출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관광 특화 구역에 위치하거나, 정부 인증·지정·선정 사업체로 규정

심사결과 관광산업과 밀접한 사업체들을 관광사업체로 편입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광산업 관련 매출액, 입지조건, 품질인증 여부 등을 통해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관광 유관 업종인지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지정요건도 적정하고, 규제에 따른 별도 비용 발생도 없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카지노 휴폐업 사전신고 신설

- 카지노업의 휴폐업 시 10일 이전에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휴폐업 예정일 전까지 신고토록 규정

심사결과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카지노업 휴폐업 사전신고제 운영을 위해 휴폐업 신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규정 미비로 인한 업계 혼란을 방지하고, 휴폐업 여부 등을 사전에 알 수 있게 하여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신설**

- 국가 및 지자체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인력·시설기준 및 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입법 취지에 적합한 기관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세부 인력·시설기준과 지정신청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임교수 경력조건 및 시설기준은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규제목적에 비추어 적정하고, 제출서류의 종류 또한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의 자료이며, 타법사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신설**

- 서예교육 관련 기관이 일정한 교육·인력·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가능토록 규정

심사결과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므로 모법의 위임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대상 및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안정적 제도 정착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의 지정요건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체육도장(신고체육시설업)에 합기도 추가 **신설**

- 현행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합기도장을 신고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인 체육도장업에 추가

심사결과 합기도는 체육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태권도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므로, 체육도장업 지정을 통해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부분의 합기도장이 새로 적용되는 위생·안전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고, 일부 기준에 대한 3년 유예기간 부여, 정부기금 지원, 합기도협회에서 신고 체육시설로의 정식 편입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공연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공연정보제공 세부사항 규정 **신설**

- 공연장운영자, 공연입장권 판매자, 공연기획·제작자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시스템에 제공해야하는 공연정보의 종류를 규정

심사결과 공연예술통합전산망시스템의 구체적인 공연 등록정보의 종류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연 소비자인 국민의 편익 증진, 공연시장 투명성 확대,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 효율성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산망을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 티켓을 발권하는 소규모 공연장운영자 및 영세 공연단체 등은 이미 모법에서 정보전송 의무를 제외하여 현장의 규제 준수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주기 단축 **강화**

-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는 항목에 따라 1년 또는 분기별 1회 실시하되, 7월과 8월은 모든 검사항목에 대해 월 1회 이상 검사 실시

심사결과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여름 성수기에 한 번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사주기를 단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민들이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에 한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하여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 하였으며, WHO 및 미국 등 해외사례, 물놀이형 수경시설 등 타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의 주요 부품 주기적 교체 **신설**

- 허가대상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계획 내용 추가

심사결과 그동안 허가대상 유기시설·기구의 주요 부품 교체는 시설업자의 자율적인 정비 체계에 의해 실시되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문제부품을 교체하기보다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고, 이로 인해 사고 재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계획 제출을 통해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부품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승강기법이나 궤도운송법령에서도 부품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규제비용 대비 국민안전 위해요소 차단 등의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의 주요 부품 주기적 교체 **신설**

- 신고대상 유원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계획 내용 추가

심사결과 그동안 신고대상 유기시설·기구의 주요 부품 교체는 시설업자의 자율적인 정비 체계에 의해 실시되었으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문제부품을 교체하기보다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고, 이로 인해 사고 재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계획 제출을 통해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부품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승강기법이나 궤도운송법령에서도 부품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규제비용 대비 국민안전 위해요소 차단 등의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신설**

- 유원시설업 면적내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운영을 허용하되, 유원시설업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심사결과 가상현실(VR)을 활용한 테마파크에 유기기구와 게임물을 설치하는 경우 유원시설업과 게임제공업으로 각각 등록해야하고 업종간 칸막이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어 VR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 해소를 위해 유원시설업 면적내 VR게임업 입점을 허용하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 국내 VR산업 진흥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50% 면적 상한 규정도 사업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면서 영업형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비율이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카지노기구 기준 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카지노기구 기준 강화

- 카지노기구의 형상·구조·재질·성능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

심사결과 카지노기구별 특성에 맞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위·변조 및 고객과의 분쟁 예방, 이용자 안전 등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카지노업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개별 기준은 카지노기구 기준의 국제표준인 GLI(Gaming Laboratories International)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과도하지 않고, 현재 카지노사업장에서 사용중인 기구는 모두 GLI 기준을 통과한 인증제품으로 동 규제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관광진흥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관광사업 등록기준 강화 강화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기준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추가

심사결과 일산화탄소 누출과 같은 안전사고는 한 번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노력이 중요하므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경보기 설치비용이 발생되나, 사전에 위험을 인지함으로써 투숙객 안전 확보, 사고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 절감의 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되고, 2년의 경과조치를 부여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 강화

-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소방시설 안전점검항목에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소화용수설비, 비상구, 피난통로, 방화문, 가스시설 등 추가

심사결과 다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추가 점검항목은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령상의 점검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체육시설에서 이미 이를 준수하고 있고, 별도 소요비용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가족호텔업 등급평가 의무화 **신설**

- (시행령) 호텔업 등급평가 의무대상에 가족호텔업 추가
- (시행규칙) 가족호텔업자의 등급평가 신청기간 규정

심사결과 가족호텔의 경우 호텔 등급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위생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등급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호텔 위생·안전 관리, 시설·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호텔 등급평가 제도는 1971년부터 시행되어 업계의 이해도가 높고, 등급평가 신청기간·방법도 무리없이 준수되고 있으며, 일반 관광호텔은 물론 가족호텔보다 영세한 소형호텔도 등급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점, 2년의 경과조치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종목 신설 **신설**

- 스크린골프장 및 스크린야구장을 신고대상(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추가

심사결과 스크린골프장·야구장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으로서 시설의 특성에 적합한 시설·안전·위생규정이 미흡(스크린골프) 또는 부재(스크린야구)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체육·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영업자의 자율적인 관리만으로는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관광진흥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신설**

- 한옥체험업의 사업분류를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하고, 객실·편의시설·체험 시설 변경시 관할청에 변경등록 의무화, 한옥의 건축·면적·안전·위생기준 신설

심사결과 이용객의 안전·위생 확보 및 불량한옥 양산을 방지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한옥문화체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각업 대신 한옥체험업으로 우회 등록하는 제도악용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규 사업자의 충분한 준비기간(1년)을 부여하고, 다른 업종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등록기준을 설정한 점, 목조건물의 특성상 대부분의 고택, 한옥문화재 등은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시설·안전·위생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신규 체육시설업의 시설, 안전위생기준 **신설**

-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야구장, 스크린골프·야구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을 신설하고, 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 항목에 야구장업 추가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과 취지에 따라, 야구장 및 스크린골프장·야구장에 필수적인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 최소화 도모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규 체육시설 관리기준은 연구용역 결과, 공청회 논의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고, 중기·경쟁영향평가 결과 자영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 등을 초래하지 않으며, 규제비용 보다 국민 안전확보라는 편익이 훨씬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기존 체육시설업의 시설, 안전위생기준 **강화**

- 체육시설업 공통 및 빙상장업·수영장업·골프연습장업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
- 체육시설업 공통 및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의 안전·위생기준 강화

심사결과 종목별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다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WHO 권고기준, 타법사례 비교시 유사 또는 완화된 수준이고, 중기영향평가 및 경쟁영향평가 결과 자영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해관계자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결정 **신설**

-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결정 권한을 가진 자격종목위원회의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결정 기준 신설

심사결과 현재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을 신설, 변경, 폐지하는 경우,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절차가 없으므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체계 효용성과 전문성 신장, 체육교육서비스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점,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문화재청



이서연 사무관
Tel. 044-200-0447, kkoko33@korea.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6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3건의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1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11)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2)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19.02.01)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 4)
(3)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1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4)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1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13	신설 9, 강화 4 (비중요 13)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발굴허가 제한기간 정비 강화

-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또는 등록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제한 기간 동안 발굴참여를 제한

- (현행) 2개월 → (개정) 업무 정지 기간 또는 등록 제한 기간

심사결과 발굴 조사기관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발굴허가를 지속할 수 있는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록

현행 규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업무 정지 또는 등록 제한기간 동안 발굴허가를 제한하여 행정처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지표조사대상 사업 개선 **강화**

- 지표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 두 명 이상의 의견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과거 행적 및 관련 문헌이 아니더라도 매장문화재 존재가능성이 유력한 경우에 지표조사를 하여 매장문화재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문화재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문화재수리관리관의 업무범위 **신설**

- 책임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및 감리 발주 시, 발주자의 지도감독 범위와 문화재수리 관리관(발주자 소속)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

심사결과 문화재수리 발주자 및 문화재수리관리관(발주자 소속)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책임감리원의 감독권한 확보, 성실한 업무 수행 유도 및 향후 책임소재 명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 **신설**

- 책임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시 책임감리원이 검토·관리하고 보고해야할 구체적 업무 규정

심사결과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을 경우, 신의성실 의무에 기별 수밖에 없어, 문화재수리 수행주체(발주자, 수리업자, 감리업자)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추진되는 수리과정에서 관리소홀 및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가 우려되므로 책임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문제발생 시 업무처리 의무 등을 구체화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구체화** **신설**

- 책임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시 책임감리원이 검토·관리해야할 구체적인 업무기준 마련

심사결과 책임감리원 업무수행 시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함으로써 수리업자의 공사 수행 기준 및 감리원의 업무 수행 판단기준이 되어 문화재수리 과정에서의 관리상 허점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설계변경·기성(준공) 시 업무수행 절차 구체화** **신설**

- 책임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중 설계변경이나 준공 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구체적인 업무 및 발주자와의 비용 부담 등을 규정

심사결과 문화재수리 중 설계변경, 준공(기성)검사 등은 발주자의 확인 또는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감리원(감리업자)과 발주자(문화재수리관리관)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문화재 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합동회의 개최 등 발주자(감독관) 의무 구체화** **신설**

- 상주 감리대상 문화재 수리 시, 문화재 수리 주체(감독관[발주자소속], 수리업자, 감리원 등)간 구체적인 업무 규정

심사결과 문화재 상주감리 착수시 발주자로 하여금 각 수리 주체들과 사전 협의토록 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추가비용 발생 시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리원의 보고·검토대상 업무내용 구체화** **신설**

- 상주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시 감리원이 보고·검토해야할 구체적인 업무 규정

심사결과 민원이나 불법하도급 등 문제 발생 시 발주자에 대한 감리원의 보고 및 검토 의무를

명확히 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구체화 **신설**

- 상주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시, 상주감리원이 검토·관리해야할 구체적인 업무기준 마련

심사결과 감리원 업무수행 시 수리업자 감독에 관한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기함으로써 감리원 및 수리업자간 원활한 협업 수행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문화재 비상주 감리업무 수행지침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조건 명확화 **신설**

- 비상주감리원이 문화재 수리의 부분 또는 전부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문화재 원형훼손 우려 항목 추가

심사결과 감리원 업무수행 시 수리업자 감독에 관한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감리원의 일관성 없는 재시행 및 중지명령으로 수리업자와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설계변경 시 업무수행 절차 구체화 **신설**

- 비상주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중 설계변경 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구체적인 업무 및 발주자와의 비용 부담 등을 규정

심사결과 문화재수리 중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확인 또는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감리원의 보고 의무 등 및 발주자의 비용부담 등 업무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매장문화재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개선 강화

- ‘조사단장’의 자격기준 강화,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중 ‘문화재 관련학과 학사이상 취득자’의 자격기준 강화, 지표(육상·수중) 조사요원 자격기준에 ‘보조원, 보존과학 연구원’ 자격기준 신설, 수중(지표·발굴) 조사요원의 ‘수중분야 조사원’ 자격기준 中 ‘준조사원’ 실무경력을 ‘수중분야’로 한정하는 내용 규정

심사결과 매장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가 어려워 관련 조사·연구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가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매장문화재 조사결과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유·보존·전승되므로 조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조사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사반장, 책임조사원’ 등의 자격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 해외 유사 입법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학술자문회의 참여전문가 전공, 전문분야 제한 강화

- 학술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기준을 “해당 유적의 시대와 성격에 맞는 주제를 전공하거나 전문분야로 하는 자 1명 이상”으로 규정

심사결과 학술자문회의는 발굴대상 매장문화재의 고고학적 판단, 유적의 성격 규명 등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발굴대상 유적의 비전공자만으로 구성될 경우 내실있는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참여 전문가 중 ‘1명 이상’은 발굴대상 유적에 학술적 소양과 경험이 충분한 전공자 등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9절

보건복지·여성 분야

1. 보건복지부



집필자

이효진 사무관

Tel. 044-200-2425, hj1002@opm.go.kr

신연희 사무관

Tel. 044-200-2399, syh2030@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영유아보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36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58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58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4건에 대하여 부대권고, 5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03.22)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3)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5	신설 5 (비중요5)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8)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위원회 (2019.05.24)	원안의결 2 부대권고 4	신설 2, 강화 4 (중요4, 비중요2)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31)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비중요6)
(1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07)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5)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9) 암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0) 치과 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2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1) 재활의료 기관지정 및 운영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08.1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2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3)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본위원회 (2019.09.27)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1)
(2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7)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8)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비중요4)
(29)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0)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2)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2 (비중요3)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35)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12.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계	-	개선권고 1, 부대권고 4, 원안의결 53	신설 40, 강화 18 (중요 5, 비중요 53)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통지 **신설**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등록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

심사결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며, 변경등록이 필요한 정보는 기존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규정하였고,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와 같이 유사입법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고시 (강화 2)

심사내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운영기준 **강화**

-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안전관리 등급(2~4등급) 및 용도(일반, 대량배양, 동물이용)에 따른 설치·운영기준 강화

심사결과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2등급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기준을 강화하여 발생 가능한 위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생물안전 및 생물보안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고위험병원체로 인한 위험 방지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캐나다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고 위험 병원체 취급기관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생물안전등급에 따른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을 이미 준수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안전관리기준 **강화**

-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및 연 1회 소집 의무화, 고위험병원체 위해성 평가, 전담관리자 지정, 취급·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
- 고위험병원체 포장, 수송 및 보존 절차, 고위험병원체 불활성화 절차, 자체 안전점검 및 사고발생시 조치, 고위험병원체 취급구역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 의무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감염·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의 안전관리기준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폐암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 **신설**

- 암 검진기관 구분(현행 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에 ‘폐암’ 추가
- 일반검진기관 중 종합병원으로 인력 4명(영상의학전문의, 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과 시설(CT검사실, 진찰실, 탈의실), 장비(16열 이상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을 갖춘 기관을 폐암 검진기관으로 지정함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폐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해 암 사망자 수 감소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저선량 흉부CT 촬영 및 판독이 가능한 자격·시설·인력 등 최소한 기준으로 암 검진 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은 이미 기준에 충족하며, 폐암 조기검진에 따른 사망률 감소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5)

심사내용 공중위생영업자(숙박·목욕·이용·미용·세탁)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숙박) 1차 위반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목욕·이용·미용) 1차 위반 영업정지 1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월, 3차 위반 영업장 폐쇄명령

- (세탁)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월, 4차 위반시 영업장 폐쇄명령

심사결과 공중위생영업소 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하여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한 숙박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영업자(종업원 포함)가 직접 자신의 영업소 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 수준을 고려한 영업종별 처분기준 차등 적용하였고 행정집행의 수용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 지정취소 사유 추가 **강화**

-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후 3개월 이상 미운영하는 등 기관운영이 불성실할 경우 지정취소 할 수 있도록 취소 사유를 추가

심사결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취소 기준과 유사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내용 등 **신설**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방법, 보호 절차에 관해 긴급복지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시청각·인터넷을 통해 교육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전반적인 교육 사항을 정하였고 여러 교육 방법을 제시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처리 절차 **신설**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방법, 보호 절차에 관해 긴급복지신고 의무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시청각·인터넷을 통해 교육하도록 하는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전반적인 교육 사항을 정하였고 여러 교육 방법을 제시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신설 2, 강화 4)

심사내용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 확대 **강화**

- 「유아교육법」을 위반하여 유치원 폐쇄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을 악용할 가능성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사유에 「유아교육법」위반으로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

심사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유아교육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현행「영유아보육법」도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취급한 것과 비교할 때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강화 **신설**

-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내 아동방치,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하차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및 차량·학대사고 발생 시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처분기준 신설 및 강화

심사결과 하차 미확인으로 중대한 인명사고 발생을 막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을 위해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안전규정 준수를 위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사고 결과가 치명적인 점을 고려하면 설치의무 및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전반적인 교육 사항을 정하였고 여러 교육 방법을 제시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의 관리 강화 **신설**

-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은 보육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보육료 최초 수납 시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 및 필요경비의 수납목적에 따른 사용처,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보호자에게 설명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복지부가 회계시스템 개선 등 보육료 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검토하고 법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전에 강화된 규제 내용을 현장의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대권고함**

심사내용 위반사실의 공표대상 확대 **강화**

- (현행)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한정
- (개정) 위반사실 공표 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비용, 보육료,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까지 추가로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복지부가 회계시스템 개선 등 보육료 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검토하고 법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전에 강화된 규제 내용을 현장의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대권고함**

심사내용 어린이집 폐쇄사유 추가 **강화**

- (현행) 어린이집 폐쇄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한정
- (개정) 어린이집 폐쇄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비용, 보육료,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까지 추가로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복지부가 회계시스템 개선 등 보육료 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검토하고 법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전에 강화된 규제 내용을 현장의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대권고함**

심사내용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사유 추가 **강화**

- (현행)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로 한정

- (개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보육비용, 보육료,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까지 추가로 규정

심사결과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이 제출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복지부가 회계시스템 개선 등 보육료 유용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검토하고 법 개정안 시행일(공포 후 6개월)이전에 강화된 규제 내용을 현장의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대권고함**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신설 등 **신설**

-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학대·폭행, 급여 관련 비리 등 문제가 지속 발생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동 처분기준을 통해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지정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 업무정지)에서 정하였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상습·지속적인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점과 장애인활동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타법에서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규정한 처분기준과 비교하여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3, 강화 3)

심사내용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시간 기준 강화 **강화**

-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종일 보육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현장실습을 이수 하는데 1일 실습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실습의 취지와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어 1일 보육실습시간을 8시간 규정

심사결과 보육교사는 시간대별로 다른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이므로 1일 실습시간을 정하여 보육현장 적응이라는 교육의 목적도 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규정도 두도록 한 점도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장기 미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신설**

-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대부분으로 보육현장의 적응을 돕고 보육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2년 이상 보육 업무 미종사자가 보육시설에 재종사려면 직무교육 이수하도록 신설

심사결과 취업 전 사전교육을 통해 장기 미종사자가 변화된 보육업무 및 환경에 단기간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 예방할 필요가 있고 교육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점과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에 대한 교육 실시 **신설**

-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내 아동방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통학차량 안전관리 방안으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교사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신설

심사결과 안전교육 이수를 통해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제고 함으로써 통학 차량 내 방치 사망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사고 예방 시 편익이 교육 부담을 훨씬 상회하므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집 평가제도 강화 **강화**

-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환경·과정, 교사 전문성을 평가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평가주기를 3년으로 하고 현장·서면평가 방법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심사결과 평가의무는 모법에서 정한 사항이며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대다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이미 참여해 피규제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집 평가결과 공표의 내용 **강화**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서, 평가이력, 전국 어린이집의 평가결과를 비교·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보육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표

심사결과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평가 자료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며 어린이집에 의견 제출 기회도 보장하여 신중하게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점도 적정해 보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집 평가 거부·방해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어린이집 인증평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기피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받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처분기준을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하였고 처분 전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점, 횡수에 따라 처분기준을 달리하고 있고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신설 1)

심사내용 사회복지법인·시설 회계감사 대상 신설 **신설**

-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을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인 경우,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심사결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목적이 인정되고 회계감사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지자체장이 무분별하게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사립학교법」에서도 학교법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기준이 아니며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강화**

- 사회복지법인 정당한 이유 없이 회계감사를 회피·방해·거부한 경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대범죄 발생 시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처분기준 강화

심사결과 시설장이나 종사자에 의해 학대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거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체의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아닌 경우, 개선명령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유사사례의 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규정도 두도록 한 점도 적절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자료제공 업무책임자의 지정 및 신고 **신설**

-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지정하고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일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자,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심사결과 심사결과 자살위험자 구조가 필요한 상황 발생시 혼선 없는 자료를 제공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기준 및 신고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와 신고절차와 유사하게 규정하는 등 규제수준의 적정성도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발·다리 이식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기준 마련 **신설**

-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은 시설(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장비(미세현미경), 인력(수부외과 전문 정형외과 또는 수부외과 전문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기준을 갖추어야 함

심사결과 장기등의 범위에 포함된 손·팔 외에 발·다리도 국가가 그 기증 및 이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식대기자의 건강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발·다리 이식의료기관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장기 등'으로서의 특성이 동일한 손·팔의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라면 이미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의료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입원환자의 전원 절차 규정 **신설**

-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및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등에 필요한 절차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불가피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등 전원 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병원에서 집단 사망사고 등 긴급한 전원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자·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불가피한 사유 및 절차에 대해 최소한으로 규정하였고, 유사입법례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어린이집 폐지·휴지하는 경우 전원조치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절차가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신설 1)

심사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요건 등 **신설**

-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기준을 이수 과목 수를 확대하고 현장실습과목 이수요건 강화, 교과목 범위 개편, 사회복지현장실습(필수과목) 등에 관한 기준 마련

심사결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 이수 과목을 확대하고 현장실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 결과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한 점, 기존 이수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국내 유사 직역 및 해외사례와 유사한 수준이고 이수기준 강화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제도 필요성과 유예기간 부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조사거부 의료기관 행정처분 강화 **강화**

- 사무장병원(의료법 제33조제2항, 제10항 위반) 행정조사 거부 시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상한 기간을 15일에서 6개월로 강화

심사결과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환자 안전 및 국민건강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처분 상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료기관 대상 보건의료분야 행정조사 중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처분 기간을 6개월~1년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 아니며 행정집행의 수용성 및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지도전문의 지정 보고 규정 **신설**

- 수련병원 등의 장은 지도전문을 지정하고 지정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의무

심사결과 성희롱예방 등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수련병원 등의 장으로부터 지도전문의 현황을 관리가 필요하며, 현재도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을 책정받기 위해서 수련병원 등이 지도전문의 현황을 제출하고 있고 지도전문의 성명, 소속, 자격번호, 기초교육 이수여부 등 최소한 현황만을 제출하도록 하여 규제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암검진 실시기준 (신설 1)

심사내용 폐암검진 교육 이수 **신설**

- 폐암검진은 영상판독 영상의학과 전문의 경우는 5과목(160분), 결과상담 의사의 경우는 6과목(180분)을 이수하여야 함

심사결과 폐암검진은 다른 암 검진과 달리 조기발견이 중요하나 조기발견이 쉽지 않기에 충분한 수준의 질 관리가 필요하여 폐암검진인력의 검진역량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며, 폐암검진 사업 참여 전에 1회만 이수하면 되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폐암검진으로 검진 부작용 감소와 조기폐암발견 가능성 증가되는 사회적 편익이 크며, 유사사례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에서도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0)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신설 1)

심사내용 외국수련자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 **신설**

- 해당 기간을 치과의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인정

심사결과 외국에서 수련받은 치과의사의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인정에 대해 외국 의료기관 수련기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량적 평가하여 외국에서 실제 수련받은 기간만큼

수련경력을 인정함으로써 국내외 수련내용의 차이가 해소되어 자질을 둘러싼 논란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사례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서 해외수련 경력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산입하고 수련한 것으로 동일한 수준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신설**

- 장애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기능 회복·유지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정적인 재활서비스 여건 조성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 면적 및 장비) 신설

심사결과 환자중심의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 전문가 자문회의와 재활의료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정기준을 마련한 점, 현재 재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라면 이미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피규제자의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요양병원 입·퇴원 현황 제출 **신설**

- 요양병원은 환자의 입·퇴원 일시 등 진료 현황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토록 함

심사결과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적절한 요양급여 관리와 장기입원환자의 적기 퇴원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 입원진료 현황을 제출 후 요양급여를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에 요양병원이 활용 중인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에 기능을 단순 추가하는 형태로 손쉽게 입력·제출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고 건강보험 수가청구 시 적정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하므로 규제준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규정 마련 **신설**

- 부정행위자의 국가시험 응시제한을 위반행위별로 1~3회 제한

심사결과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정한 운영과 엄격한 자격 관리를 위하여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위임에 따라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으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응시제한 기준을 정하여 적정성 또한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국민건강증진법 (신설 1)

심사내용 담배판매 촉진행위 금지 **신설**

- (담배사업법상 담배 및 전자담배 기기) ① 「제조·수입·판매업자(도·소매인)의 일반인에 대한 금품 또는 체험·시연 등 편의 제공 금지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체험·비교 등 이용정보 게시·유포 금지
- (유사담배) ① 「제조·수입·판매업자(도·소매인)의 일반인에 대한 금품 또는 체험·시연 등 편의 제공 금지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체험·비교 등 이용정보 게시·유포 금지 ③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금지

심사결과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담배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담배판매 촉진행위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해관계자(한국담배협회 등)의 반대의견이 제기되어 **중요규제**로 분류함.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 담배유사제품의 무분별한 광고, 인터넷게시 등 우회적 판촉행위가 성행하여 흡연을 조장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정부정책기조 및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 국제협약과 부합하고 국민 건강 증진의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 다만, '정보통신망 게시·유포 금지'는 '영리 목적'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므로, 규제대상 행위 유형을 법률안에 예시적으로 추가하거나 하위법령으로의 위임근거 조항을 추가하도록 개선권고함

(2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신설 2)

심사내용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보고 **신설**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심사결과 지역별 및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인력 적정 배치 방안 마련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 등의 실태 파악이 필요하며, 신고편의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으며,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약사 등도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등 유사한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신설**

- (대상기관) 공공기관,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지정요건)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심사결과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부에서 지원계획이므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운법 시행령에서도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 지정 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도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강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응한 경우나 고의적·악의적으로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상습적·고의적 위반인 경우에 한해 이행강제금을 가중부과토록 규정하였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의료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필요 시설 출입 세부기준 **신설**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수술실 등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하고 수술실 등 출입자의 성명, 출입 목적, 출입 승인 사실 등 기록·보존(1년) 및 수술실 등 출입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술실 등 입구 등에 게시 의무

심사결과 수술실 등 출입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환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의료법 제4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병원감염을 예방의무가 있어 각 병원에서는 ‘수술실 내 관계자 외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 중에 있고 유사사례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도 응급실 출입 제한기준을 규정한 점 등을 고려시 적정성이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동의**

(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잔여검체 제공 고지 의무 **신설**

- 잔여검체를 제공하려는 경우 잔여검체 종류, 인체유래물은행의 범위, 피채취자의 권리 등을 피채취자에게 서면고지하도록 함

심사결과 피채취자의 거부사표시가 없으면 서면동의 없이 잔여검체를 연구용으로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채취자에게 본인의 인체유래물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잔여검체는 인체유래물과 성격이 같으므로 인체유래물과 유사한 절차로 서면고지 한 점 등을 고려시 적정성도 인정되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강화 **강화**

- 보존 중인 잔여검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 폐기 또는 손상하는 경우 행정처분(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이상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신설

심사결과 잔여검체를 타당한 사유 없이 사용, 폐기, 손상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피채취자의 권리 보호 및 인체유래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필요하고 잔여검체는 인체유래물과 성격이 같으므로 同 시행규칙의 인체유래물에 대한 행정처분과 동일하게 처분기준을 정한 점 등을 감안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잔여검체 제공 거부 절차 **신설**

- 피채취자는 잔여검체의 제공 거부시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잔여검체를 채취한 후 3일 이내 거부의를 표시(서면)하고 의료기관에 피채취자 요구 시 거부서의 열람·사본교부 의무

심사결과 피채취자에게 본인의 인체유래물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적정 수준의 잔여검체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잔여검체는 인체유래물과 성격이 같으므로 인체유래물과 유사하게 제공 거부 절차를 규정한 점 등 목적에 비해 규제준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잔여검체 제공 기록보관 등 의무 **신설**

- 의료기관의 잔여검체 제공시 기관위원회의 심의, 잔여검체 제공관련 기록작성·보관(5년) 및 처리 실적 보고 의무(연 4회)

심사결과 피채취자에게 본인의 인체유래물과 관련된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적정 수준의 잔여검체 활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럽의 경우 잔여검체를 간단한 동의절차를 통해 공공 인체유래물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등 해외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취소 기준 등 **신설**

- 사회복지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취소 기준, 실습의 방법 신설

심사결과 현장실습 실시기관의 지정취소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합한 기관에서 양질의 실습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루에 이수 가능한 현장실습시간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현장적응이라는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료기관 종사자의 범위 **신설**

- 결핵을 검진·치료하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매년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도록 함

심사결과 간호조무사는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과 유사하게 환자와 밀접 접촉하고 있음에도 매년 잠복결핵검진에서 누락되어 건강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 대상자에 추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잠복결핵검진 치료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만 대상으로 지정하고 검진비용 일부도 지원하여 규제부담이 크지 않고 잠복결핵에 감염된 간호조무사 치료를 통한 환자, 보호자 등이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낮아지는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요양병원 입·퇴원 현황 제출 **신설**

- 요양병원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입원시켜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입·퇴원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심사결과 요양병원 환자의 입퇴원 시점에 현황을 제출받아 의료급여 중복지출을 방지하고 적기에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 복지자원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입력·제출할 수 있어 요양병원의 행정업무부담이 과도한 수준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요양병원은 이미 건강보험가입자 입퇴원 현황을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유사사례와 비교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신설 **신설**

- 산후조리원 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질병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격리 조치하는 등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감염예방 및 질병확산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면역력이 약한 산모·영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재기준을 마련이 필요하고 산모·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전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 기회를 부여한 점,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업무정지 처분하도록 한 점과 반대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3)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 산후조리업자에게 소독등의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 위생관리 및 기록사항 세부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산후조리원의 감염·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기록물 관리의 경우 감염병 발생 원인 및 발생 추이 분석을 위해 관련 서류를 1년간 보존하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관리기준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이미 자율 준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강화**

-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사, 미화원 등 건강관리인력 대상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감염 및 질병 예방 교육 실시방법 및 시간 등을 정함

심사결과 산모의 산후조리업무,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염교육을 수강하고 감염 발생 우려가 높은 조리원, 미화원도 최소한 연 1회 1시간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자체교육을 수강토록 하여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질 필요가 있고 24시간 3교대하는 근무환경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으로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대한 피해의 범위 규정 **신설**

- 임신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원 폐쇄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에 규정하였는데 중대한 피해의 범위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신부 또는 영유아의 신체를 고의·중과실로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중대한 피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처분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인정 요건을 산후조리원의 고의·중과실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유사사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배치기준 신설 **신설**

- 연장보육교사 배치기준을 만 3세미만은 영유아 5명당 1명, 만 3세이상은 영유아 15명당 1명, 만 1세미만 또는 장애아는 영유아 3명당 1명으로 하고 연장보육교사 근무시간은 평일 4시간을 원칙 규정

심사결과 연장보육반 신설에 따라 교사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 기존 보육교사 배치기준과 유사하고, 연장보육교사 인건비를 국가·지자체가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단체·시설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치는 등의 견수렴 과정에서 연장보육반의 탄력적 운영·사용자 부담금(4대보험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연장보육반 탄력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반영토록 하고, 사용자부담금 예산도 일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강화**

- 연장보육반 운영하는 경우 영유아에 대한 등·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출석부의 경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사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영유아 등·하원 시간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하여 정확한 보육료 산출의 근거자료가 되며 보육교사의 행정업무 부담도

경감되고, 장치 설치비를 국가·지자체가 모두 지원하는 점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신설 1)

심사내용 자살위해물건 지정 **신설**

-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T58)를 유발하는 물질, 제초제 및 살충·살진균제의 독성효과(T60.0, T60.3)를 유발하는 물질

심사결과 자살사망자 중 가스 중독, 농약 음독, 약물 음독,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를 차지하므로 자살수단의 불법적 판매·유통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자살위해물건을 지정하여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의 유통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며, 자살수단 중 가장 빈도가 높은 수단만 제한적 지정 및 자살방법 홍보하는 역효과 발생 등 감안하여 상징적 의미를 갖는 통계청 코드를 지정한 점 등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예·결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강화**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일 평균 이용자 20명이하)은 예결산 보고 시 관련 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회계 문제의 소기가 있었으나 일일 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예·결산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

심사결과 소규모 장기요양기관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재정을 지원받고 이는 국민으로부터 징수된 보험료 및 국고 지원, 본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므로 최소한의 제출서류로 부당 청구 및 회계 부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급여수가 책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자료를 마련하여 합리적 수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집필자

이효진 사무관

Tel. 044-200-2425, hj1002@opm.go.kr

신연희 사무관

Tel. 044-200-2399, syh2030@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총 54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00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00건 중 1건에 대하여 부대권고, 99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25)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3)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25)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9.02.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19.02.28)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5)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28)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0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7)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0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8)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1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3)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0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1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1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0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16)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6	신설 3, 강화 3 (비중요6)
(18)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1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6)
(2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21)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2019.05.3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14)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0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5) 의료기기 기준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6)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7)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26)	원안의결 6	신설 6 (비중요6)
(28)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9)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2) 의약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11)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3)
(3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35)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6)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7) 의약품 범위 지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비중요2)
(39)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1)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3)
(40)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1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42)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1)	원안의결 6	신설 4, 강화 2 (비중요)
(4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44) 의료기기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3	신설 2, 강화 1 (비중요3)
(4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46)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7)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8)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9)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2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0)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13)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5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본위원회 (2019.12.13)	부대권고 1	강화 1 (중요1)
(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4)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7)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2)
계	-	부대권고1, 원안의결 99	신설 43, 강화 57 (중요 1, 비중요 99)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신설**

- 고령자 대상 고령자용 식품을 쉽게 인식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고령자 대상 식품의 위생 기준·지표 및 영양 기준 등을 규정

심사결과 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령친화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기준 및 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시장형성단계이고 업계 협의를 거쳤으며 유사제도인 일본의 고령친화식품인 ‘스마일케어식’과 비교해 경도 및 영양 사항에서 동 개정안과 유사한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재분류 및 삭제 **강화**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갈매보리수나무 씨앗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고 호손, 쿠네아타 산사를 식품 원료 목록에서 삭제

심사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국내에 호손, 쿠네아타 산사의 경우 최근 3년간 품목제조보고 이력이 없어 기존 생산·수입 관계자가 없고 갈매보리수나무의 씨앗을 사용한 제품 1개 역시 식약처 의견조회 결과 이견 없음을 회신하였으므로 업계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강화**

- 디클로베닐 등 농약 8종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

심사결과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량 평가결과 등 과학적 근거 확보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재설정하였고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이며 국민 건강을 위해 다른 규제 대안이 없어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강화 2)

심사내용 미역귀에 중금속 기준 강화 **강화**

- 미역귀에 납, 카드뮴 기준 신설

심사결과 미역귀는 미역과 동일하게 우리 국민의 다소비 식품일 뿐 아니라 수유부가 단기간 집중 섭취하는 식품으로 조사결과 특히 카드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유해물질 기준설정 원칙인 '최소량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금속 오염도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부적합률 5%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강화**

- 메토닐 등 농약 4종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

심사결과 식약처는 독성 시험을 거쳐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량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과학적 근거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을 재설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다른 규제 대안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자율심의기구 등록요건 **신설**

- 특수용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의를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독립적으로 하도록 하되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의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심의기구의 난립을 방지하고 심의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와 사무실, 인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제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상시 관리자와 전문가 2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광고 심의 수수료로 인한 편익과 식품광고 심의의 질, 신뢰성 보장 등의 편익이 있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4)

심사내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신설**

-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도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주류와 건강기능식품도 주문자상표부착 방식 위탁생산하는 경우 위탁생산제품임을 표시, 식품과 축산물의 경우에도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 표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용 제품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여부를 표시하여 식품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임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가독성을 위해 기준을 설정하되 예외규정을 두어 업체 부담을 완화한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광고 시 준수사항 신설 및 자율심의 대상범위 확대 **신설**

- 식품, 축산물의 경우 부당한 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광고를 중단하도록 하고 표시 또는 광고 심의대상에 조제유류(축산물) 추가

심사결과 소비자 합리적 선택을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할 필요가 있고 조제유류를 과장·허위광고할 경우 소비자가 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섭취할 수 있으므로 조제유류에 대한 표시·광고는 전문인력을 갖춘 자율심의기구에 심의하는 것이 적정하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별도의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회수대상 범위 확대 **신설**

-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표시를 하지 않거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잘못 표시하거나 누락한 축산물·건강기능식품을 회수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표시사항을 위반하여 회수 및 폐기가 필요한 식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미 회수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정하였고 표시의무위반으로 인한 위해 발생 가능성도 큰 사항이므로 회수 및 폐기가 불가피함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신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판매업자의 유통기한 변조에 대한 처분기준, 다른 유형의 식

품·축산물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시 처분기준, 원재료(성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표시·광고 시 행정처분기준 강화

심사결과 소비자를 기만하고, 악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는 처분을 강화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변조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화장품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 **강화**

- 화장품 사용원료 사후보고(다음연도 2월까지)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전까지 보고로 강화

심사결과 인증기관 지정 신청 자체를 허위로 하여 악의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정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 부재하여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제도의 이행력 확보 및 인증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위반사항의 경중이나 위반횟수에 따라 처분을 차등화하였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신설**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이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정취소
- 인증기관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1회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2회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3회 위반시 지정취소

심사결과 상위법 위임에 따른 입법사항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용품을 위생용품으로 관리하여 국민보건 위생을 확보할 필요성 인정되며,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정부 대책에 부합하고 유사품목은 이미 위생용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강화 2)

심사내용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의 등록대상자 확대 강화

-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식품의 이력을 등록하고 추적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등록대상자를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까지 확대

심사결과 유통전문판매업자도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별도의 시스템이나 장비를 구축하지 않아도 등록할 수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건강기능식품 취급시설 기준 강화 강화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취급시설기준 강화

심사결과 프탈레이트에 대해 안전성 논란이 있는 만큼 건강기능식품에 용출되지 않도록 제조시설에 사용을 금지 필요성이 있고 시설개선이 어렵지 않으며 국내 유사사례와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의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강화 1)

심사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사항 강화

- 제품 간 나트륨 함량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표준값을 표시하고 실제 함량을 황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되, 2000mg (1일 섭취기준량) 초과할 경우 붉은 색으로 표시

심사결과 현행 표시방법으로는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을 쉽게 비교할 수 없고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져 나트륨 섭취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비교표시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하는 식약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강화 3)

심사내용 국제심사기준 개정사항 반영 **강화**

- ISO13485:2016을 반영한 심사기준에 따라 의료기기 적합성 심사

심사결과

의료기기 안전성 관리 강화 및 품질관리 국제조화를 위하여 새로 개정된 국제심사기준 (ISO13485:2016)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제표준 준수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내수기업에게는 개정 기준 적용을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등급별 시행일을 차등 적용한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서류조사시 입증자료 제출목록 추가 **강화**

- 의료기기 GMP 서류심사시 제출자료 6종 추가(조직도, 품질문서 관리 개요, [별표2] 기준 점검표, [별표2] 기준 적합선언문,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유효성 확인 요약 자료, 모니터링 및 측정 장비의 관리 요약 자료)

심사결과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는 상위법에 의해 부과된 의무사항으로 GMP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심사가 필요하고 GMP 서류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추가하여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해외의 경우 대부분 GMP 현장심사를 실시하므로 심사자료가 일부 추가되더라도 현장조사 대비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현장조사 대상 확대 **강화**

- 제조의뢰자가 2개 이상의 제조자 보유시, 최초심사에 해당하는 제조소는 모두 현장 조사를 통해 GMP 심사

심사결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특성상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를 판매·유통할 책임이 있으므로 최소 한 번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 GMP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는지를 확인, 품질 사각지대 발생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GMP 최초 심사의 경우에만 현장조사를 하도록 확대 범위를 제한하는 등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현행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를 받는 공동제조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신설**

-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해 수입위생평가가 필요한 경우(수출국 정부가 해당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 최초로 수입허용요청 하는 경우, 수입 허용 이후 국제기준 변경이나 위험요인의 신규 발견 또는 수출국의 식품위생 제도 변경 등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세부절차(수출국 수입허용 승인 요청 → 수출국 위생관리 시스템 서면평가 → 정부기관 및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조사 → 수출국 수입허용 여부 평가 및 결정 → 위생증명서 서식 협의 → 수출국 정부가 제공하는 해외제조업소 목록에 한하여 해외제조업소 등록)를 신설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특별위생관리식품 중 위생평가가 필요한 대상 및 세부 절차를 위임했고 수입 여건상 변화가 있는 경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필요도 있으며, 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대상 및 절차와 동일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특별위생관리식품 대상 지정 **신설**

- 어류머리, 어류·연체류의 내장을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지정

심사결과 해외에서는 식재료로 잘 쓰이지 않는 어류머리 내장 등의 수산부산물은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수출국의 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농림부 지침으로 어류머리와 내장에 대해서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규제 수준은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의약품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 강화 **강화**

-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순도시험 관련 의약품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 강화

심사결과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의약품 품목 허가시 안전성 입증자료를 확대하여 의약품 품질 확보 및 국민 보건 향상하고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것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규정의 국제조화 확보에 필요해 보이며 발사르탄 사고를 계기로 의약품 위해성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식약처에서 적절하게 검토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강화

-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1,037종 (니트로메탄, 메칠렌글라이콜,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 피비비, 펜타브로모디페닐옥사이드 등 7종 추가)

심사결과 발암가능성, 각종 알레르기 및 피부질환 유발 우려가 있는 성분을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여 화장품 품질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해성 평가에서 안전역(margin of safety)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금지물질(피비비 등 2종)과 EU에서 사용금지 물질(아트라놀 등 4종)을 등 고시에 반영한 것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 규제로 국제기준에도 부합하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강화 1)

심사내용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강화

- 포장지 면적이 50cm² 이하인 경우에만 QR 코드와 연계한 전자적 표시가 가능하도록 제한

심사결과 업체에서 표시면적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대신 QR코드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나트륨 함량을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표시방법을 강화할 필요. 포장지 인쇄를 위한 동판 교체비용으로 품목당 10만원이 소요되나 기존 포장지 소진을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업체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고,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QR코드 표시가능한 포장지 면적기준을 50cm²로 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축산물 이물발견 보고 의무대상 영업자 지정 **신설**

- 축산물 이물 발견보고 대상자를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정함

심사결과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이물 혼입 가능성이 높은 공정인 축산물 가공·포장·유통과 관련된 영업자를 이물 발견보고자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피규제자가 이미 관련법령에 따라 이물 혼입여부에 대해 관리 중인 점과 식품의 보고 영업자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3)

심사내용 재지정 제한 요건 **신설**

- 시험·검사기관의 숙련도평가 결과 '미흡' 또는 품질관리 기준 평가 결과 '부적합'한 경우 시험·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지정 제한요건 **신설**

심사결과 능력이 부족한 기관이 재지정 받는 것을 차단하여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재지정 제한요건 마련이 필요했으며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등 타법사례와 비교할 때 유사한 수준으로 형평성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시험·검사기관의 규제 준수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록정보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시험·검사기관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정보(시험·검사 실적, 문서, 의뢰자, 의뢰항목 등)의 종류를 정하고 시스템 장애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에 관한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심사결과 시험·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록 정보를 정하고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의약품검사법'의 위임에 따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시험·검사 정보 등록 및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정안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였으며 입법예고시 제출된 별도 의견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국가표준시험실의 지정 요건 **신설**

-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식품·의약품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시험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당연 지정 또는 공모 절차를 통해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 및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하는 국제품질관리기준으로서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분야, 품목, 항목, 시험법으로 시험실 상황 및 특성에 맞게 단위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심사결과 식약처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업계 불복 또는 언론·국회·국민의 불신 및 민간 시험·검사기관의 검사품질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검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표준시험실 구축을 위한 세부 지정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최소한의 조건만을 규정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경우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6) 의료기기 기준규격 (강화 1)

심사내용 여과성능 관련 품목 의료기기 기준규격 신설 (필터주사기 등) **강화**

- (여과성능) 초미세 시험용 먼지 또는 5 μ m 크기의 유리입자로 실험(5개 검체)하여 5개 각각의 여과율 모두 90% 이상
- (대상품목) 필터주사기, 일회용여과기부착침, 재사용가능여과기부착침

심사결과 인체에 유리파편 등 이물질 유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하고 유효성이 확보된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필터주사기 등 여과성능을 표방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이 정할 필요성이 있고, 주사제 유리 앰플 개봉 시 유리파편 등 이물질이 인체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여과성능에 대한 최소한의 시험규격만 추가 및 여과성능 관련 기준 및 시험방법 이외의 항목은 의료기기 개별 기준규격(주사기, 멸균주사침)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한 점,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하여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신설 3, 강화 3)

심사내용 의료기기 신고서 기재사항에 원재료 추가 **강화**

- 의료기기 신고서 기재사항에 원재료 추가(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기기 또는 질병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고 있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한함)

심사결과 의료기기 제조(수입)신고서에 원재료 항목을 기재토록 하여 유해 원재료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시 선제적인 대응 및 신속한 사후조치 등을 통해 국민보건 위해요소를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에 피규제자가 기존 가지고 있던 원재료 정보를 추가 기재토록 하는 것으로 전자민원창구에 원재료가 기재된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부담이 크지 않으며,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기기 또는 질병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고 있는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에 한하여 규제하여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기기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 절차 등 규정 **신설**

-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지실사 시작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현지실사 일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수입의료기기등에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소의 수입의료기기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 판매중지 명령, 검사명령, 원인분석 및 개선명령, 회수·폐기 등

심사결과 수입 의료기기 위해 방지와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해외 현지 제조소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며, 유럽 등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수입되는 의료기기의 외국 제조소에 대하여 불시 점검제도 시행 중에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약사법에 따라 식품 및 의약품 등 인체적용 유사 제품 분야에서는 외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및 실사거부 시 조치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분 기준 강화 **강화**

-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1

차 위반시 : 경고에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 업무정지 7일에서 3개월 등)

심사결과 의료기기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품질책임자 미지정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낮아 다수·반복 발생 등 처분 실효성 미흡한 실정으로 우수한 의료기기의 제조·유통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현행보다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약품 분야(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월, 2차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업허가 취소)보다는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아니며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기기 이물 보고 절차 및 방법 등 규정 **신설**

- 이물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이물보고서에 이물사진 및 제품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토록 함
- 이물 발견 사실 미보고 및 거짓 보고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근거 신설

심사결과 의료기기 이물혼입 보고를 위한 관리 및 절차 등을 명확화하여 이물 혼입으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요소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등의 이물발견 보고 및 조치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미국 등에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 관리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 점, 이물보고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동법 내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과 비교해서 볼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상시험 실시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 **신설**

-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가 실시상황 보고 시 ‘안전성 정보의 요약서’ 제출
-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장이 매년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

심사결과 의료기기 임상시험의 품질향상과 피험자의 안전·권리·복지 보장을 위하여 임상시험 실시현황에 대한 보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경우 매년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상시험 실시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동일하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연간 총 15.58백만원의 규제비용은 발생하나 피규제자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련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강화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련 행정처분 기준(위반행위) 강화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제출한 경우로 강화

심사결과 의료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부작용 발생 우려 제품에 대해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 누락 또는 거짓 보고 위반시 제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반행위가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않을 경우에서 작성·보존·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제출한 경우가 추가하였고 행정처분 기준은 기존과 동일(1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차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3차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4차 위반시 허가인증 취소 또는 업무정지 1년 등)하며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8)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강화

- 인체조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직은행의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 조직은행이 취급 조직의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이 필요하며, 同 시행규칙내 행정처분간 성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위반행위와 동일 정도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의약품' 및 '식품'분야와 비교해도 과도한 수준아 아니며, 이해관계인 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출국 제조원의 등록 절차 마련 신설

- 승인받은 조직을 수입하기 위하여 등록해야하는 사항, 등록시 인체조직 수출국 제조원 등록신청서 제출 의무, 수출국 제조원 등록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인체조직 수출국 제조원 변경등록신청서 제출 의무

심사결과 인체조직 특성상 증거자의 적합성이 이식받은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속한 추적관리를 통해 수입·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위해 제조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조식은행은 수입승인 신청시 이미 조직 채취기관 소재지 및 위해성 등 관련 서류를 제출(제16조제1항) 하고 있고, 미국은 인체조직을 취급하는 자국 및 외국 조식은행을 미국 FDA에 등록하도록 하여 인체조직 및 조식은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식품 등 분야에 해외 제조업소 등록절차를 규정하는 등 국내외 유사사례와 비교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9)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신설 4, 강화 2)

심사내용 의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한 자료제출 등 **신설**

- 의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한 자료 제출(요청하는 자료의범위, 자료요청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 및 절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위반행위 발견시 통보하는 방식)

심사결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부정불량 의약품도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이러한 불법판매자 등에 대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수집이 필수적이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련 정보제공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요소 차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방송법 시행령에서도 금지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사안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정성정보 신속보고 대상 등 확대 **강화**

-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고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명확화하고 판매중지나 회수에 준하는 제조·판매업체의 조치, 사망과 관련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업체의 조치를 신속보고 대상으로 추가

심사결과 의약품은 사용 목적 외에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어 시판후 국내의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의 빠른 수집·분석·평가를 통한 선제적 안전조치가 필수적으로 사망에 대한 외국정부 또는 제조판매업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건을 신속보고 대상으로 추가·확대하여 국내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 유통제품의 예방적 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본의 경우 사망 관련한 사항, 외국의 판매중지

조치 등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15일 이내에 보고를 의무화되어 있고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확보의 사회적 편익을 고려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외제조소 등록 등 **신설**

- 식약처의 수입허가 또는 신고한 의약품 원료의약품을 등록대상으로 해외제조소 정보, 제조품목명 등의 사항을 등록
- 허위등록·변경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해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 신설

심사결과 수입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및 부정·불량 의약품등의 국내 반입 사전 차단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입식품의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명칭·소재지 등의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해외 제조소를 규제당국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등 국내외 유사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부정·불량 수입의약품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사망·입원 감소 등 의료비 절감 및 국민보건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성도 또한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등 **신설**

-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자, 해외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와 현지실사 시작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그 결과를 수입자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심사결과 수입의약품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 절차를 마련이 필요함. 수입식품의 경우 해외 제조단계부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해외 제조원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고,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식약처)에 의해 해외제조소에 대해 매년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해외제조소 등록·인증을 통해 직접 관리하고 현지실사 하는 등 국내외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규제에 대해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의료비절감, 국민보건 향상의 편익이 크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신설**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 중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명확화(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 중 약국개설자 등이 아닌 자,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심사결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 제출 의무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고, 유사사례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를 위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상시험 실시기준 강화 **강화**

- 임상시험 보험 가입 의무 준수,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중복참여제한 기간 연장(3개월→ 6개월)

심사결과 시험대상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약사법 제34조의2에 규정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일 전 6개월 이내에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을 하위법령에 일치하게 반영하였고, 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임상시험 심사시 환자에 대한 보상관련 서류(보험가입 서류 포함)를 既 확인하고 있어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현장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임상시험대상자에게 보상에 대한 정보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사안으로 **규제**로 **원안의결**

(2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교육훈련기관 및 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신설**

-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일반기준으로 위반횟수 산정기준과 가중감경 사유 등을 정하고 개별기준으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구체적으로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 마련이 필요하고 일반기준의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가중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위임범위 및 법익 균형성 등을 고려할 때, 처분기준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보고대상 축산물 이물 규정 **신설**

-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기생충 및 그 알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또는 그 밖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물질의 경우 보고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보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이물 정의를 정하고 있으며 식품의 이물 보고 대상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식품의 경우에도 보고 대상 이물 범위를 정하고 있고 축산물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식품과 축산물 간의 형평성에도 부합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1) 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심사내용 의료기기정보등의 대상, 범위 **신설**

-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정보 대상·범위의 세부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의료기기의 전주기 안전관리를 위해 구축된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기 정보 등의 대상·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수 정보는 허가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입력되고(15개) 나머지 정보(10개)만 제조자가 단순정보만을 입력하는 수준,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항목·방법의 경우 미국이나 EU의 유사제도와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등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분쇄육·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 보존·유통 온도 기준 **강화**

- 분쇄육·분쇄가공육 제품의 냉장보존 및 유통온도를 -2~10℃에서 -2~5℃로 강화

심사결과 분쇄육의 경우 칼과 손으로 다져서 만들어져 오염에 취약하므로 냉장 보존·유통 시 온도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업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미국 FDA는 5℃ 이하에서 리스테리아 발병이 낮음을 이유로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를 5℃ 이하로 규정하였고 다른 선진국 냉장 보관온도 기준과 비교해도 개정안 기준이 적절한 수준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사용부위(열매) 삭제 **강화**

-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는 벨벳빈(열매)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여 사용을 금지

심사결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 목록에서 삭제하여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필요하고 근 3년간 품목제조보고 이력이 없는 등, 기존 생산·수입 관계자가 없으므로 업계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신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등 행정 처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심사결과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약사법, 화장품법 등에서도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를 거부, 방해, 기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4)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 종류에 추가 및 품목제조 보고 대상으로 지정 **강화**

-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자 준수사항, 교육이수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고 문신용 염료를 제조·가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의 종류에 지정하여 영업신고, 정기적 영업자교육 이수 및 품목제조보고 등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문신용 염료는 환경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하던 것을 본 법으로 이관하였고 법률 목적에 비해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해외사례, 사회적 편익 등을 감안시 적정성 또한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5) 의료기기 기준규격 (강화 1)

심사내용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강화 **강화**

- 1등급 의료기기 110종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 및 의료용 침대의 기준규격 개정

심사결과 잠재적 위험성이 가장 낮은 1등급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지속적 증가하여 의료기기로써 최소한의 품질관리 기준을 제시를 통해 국민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식약처 연구사업 등을 통한 1등급 의료기기(593개) 중 생산·수입이 많고 부작용 신고가 있는 110종 품목에 대해 기본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 시험 항목만 기준규격을 마련하였고 의료용 침대 기준규격은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사업’ 결과 및 유통되는 사이즈를 반영하여 의료용 침대 중 너비가 가장 작은 ‘850계열’만 삭제하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미국, 유럽 등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6)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모기,진드기 등의 기피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확대 **강화**

-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피제 심사시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 기존에 허가된 기피제의 효능·안전성이 완전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새로 허가받으려는 제품의 경우 기허가 제품과 제형, 농도 등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독성자료 및 기피력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전성 및 효력을 입증 필요하며, 신규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서 규제를 적용하고 ‘표준제조기준’ 방법이 아닌 다른 제형·배합 등으로 제품을 만들 경우에만 자료 제출, 기피제로 허가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독성시험 자료는 화장품법 시행규칙보다 완화된 수준, 해외사례와도 비교시

과도하지 않는 수준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7)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신설 6)

심사내용 천연화장품의 작업장 및 제조설비 **신설**

- 청소 및 세척 의무, 포름알데하이드 등으로 세척 금지

심사결과

천연화장품이 청결한 장소·시설에서 제조될 수 있도록 작업장 및 제조설비의 장소·세척에 관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세척제의 경우 COSMOS 인증기준과 유사하며 유기농화장품의 청소·세척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현재 사용 수준에서 시설기준을 정하여 규제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천연화장품의 원료조성 **신설**

-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 구성

심사결과

소비자는 천연화장품을 일반화장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로 구입하는 점을 감안하면 천연화장품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의 유통을 위해서 천연원료 함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천연화장품 완제품에서의 천연 원료 함량 기준(전체 제품에서 95%이상) 계산방식을 정한 것으로 COSMOS 인증기준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천연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신설**

- 천연원료 등 천연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종류,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된 원료는 제조할 수 없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외에 합성원료는 사용할 수 없음

심사결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천연화장품 품질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천연화장품 인증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며, 천연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현행 유기농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보다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COSMOS 기준을 준용한 점, 천연화장품으로 표시·광고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의 자율의사에 따라 준수 필요성이 결정되는 임의 기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천연화장품의 자료의 보존 **신설**

- 제조일(수입일 경우 통관일)로부터 3년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 중 긴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심사결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천연화장품의 허위·거짓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자료를 보관·보존할 필요성 있으며,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자료 보관기간을 설정하였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연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자료를 구비·보존할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한 점, 유럽, 미국 등에서도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은 일반적인 원칙이며, 실증을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구비·보존토록 하고 있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천연화장품의 제조공정 **신설**

- 냉동·진공 등 물리적 공정 또는 수소화·가수분해 등 화학적·생물학적 공정 허용
- 방사선 조사, 수산화물 처리 또는 유전자 변형 원료 배합 등 금지

심사결과 유기농화장품의 제조공정 기준과 동일하고, 同 개정안에 추가한 로스팅 공정과 탈색공정은 COSMOS 인증기준을 반영한 점, 이해관계인 이견 또한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천연화장품의 포장 **신설**

-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폼 사용 금지 등

심사결과 천연화장품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재질의 용기·포장에 담겨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천연화장품 용기·포장 재질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 함량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동일한 제품이므로 포장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현재 사용수준에서 용기·포장기준을 정함. 또한 화장품 제조업체가 기 제작한 용기·포장을 소진할 수 있도록 시행 후 최소 1년간은 기존 용기 및 포장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8)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유전자 계통 검사 결과자료 제출 의무화 **신설**

- 세포치료제 및 유전자치료제의 세포은행 구축·운영과정에서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계통 검사 분석 자료'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세포가 체내에 직접 투여되므로 세포은행 구축·운영과정에서 다른 세포의 혼입·오염여부 확인을 위해 품목허가·심사시 세포은행 유전자 계통분석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으로 의약품 안전관리가 필요하며, 제조(수입)업체는 자체시험 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위탁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검사비용(1회당 10만원)이 발생되나 초기 개발단계부터 최종 허가제품까지 일관성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사회적 편익이 크므로 목적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해외 유사 사례와 비교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9)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강화 1)

심사내용 화장품 색소에 대한 사용제한 **강화**

- 안점막 자극이 있는 색소 6종의 사용을 제한하고 영유아용 제품에 사용금지인 색소 2종을 어린이(만 13세이하) 대상까지 사용 제한함

심사결과 색소는 발암성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색소의 사용제한과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건강을 보호가 필요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한 안점막 자극시험 결과와 미국의 규제동향 등을 반영하여 위해한 색소 사용을 제한함. '등색 201호 등 6종'은 눈주위 사용에 금지되나 다른 부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사용이 가능하고, 종전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 유통, 판매가 가능,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에서도 일부 사용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지정 **강화**

- (마약) ‘파라플루오로부티릴펜타닐’ 등 4개
- (향정신성의약품) ‘25비-엔비에프’ 등 15개
- (원료물질) ‘에이피에이에이’ 등 3개

심사결과 의존성 등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로 지정하고, 마약류로 전환이 가능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함으로써 위해 물질의 오남용, 불법제조 등을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UN 통제물질로 지정되었거나 現 임시마약류 중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시험을 통해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지정하였고 해외에서 이미 해당 물질을 마약류 등으로 지정된 점, 이해관계인 이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3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분말제품 제조 시 쇳가루 제거 제조·가공기준 신설 **강화**

- 분말, 가루, 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경우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을 이용하여 금속성 이물(쇳가루)을 제거하고, 자석은 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 강화

심사결과 금속 재질의 분쇄기로 원료를 분쇄하는 분말·환제품의 경우 쇳가루가 제품에 혼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거 기준을 마련할 필요 분말, 가루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쇳가루를 자석을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준의 규제는 아니며 이미 모든 식품에 대해 금속성 이물(쇳가루)에 대한 규격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부적합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제거공정을 도입하는 것으로 준수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2)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의약외품 품목별 기재사항 추가 **강화**

- 의약외품 품목별로 용기나 포장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추가(생리대 착향제 중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및 생리대 착향제 중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 함유시 해당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심사결과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달리 누구나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사용하므로, 사용상의 주의가 필요한 경우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기존 표시자재 및 포장재는 개정고시안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고 '화장품'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해당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소 함유 치약제'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미 불소 함량을 표시하고 있고 '고카페인 함유 음료(캔커피 등)'는 식품으로 분류되어 카페인 표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등 국내외 유사사례와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33)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기능성 원료 5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및 기능성 내용 개정 **강화**

- 프락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 변경 및 기능성 원료 5종이 함유된 최종제품에 섭취 시 주의사항 규정

심사결과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섭취 시 주의사항을 알릴 필요가 있고 포장지 변경으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표시 내용 강화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기능식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례적 타당성이 충족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EPA 및 DHA 함유유지의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규격 신설 **강화**

- EPA 및 DHA 함유유지에 아니시딘가*와 총산화가** 규격 마련

* 아니시딘가 : 유지 산패 시 형성되는 2차 산화물을 측정하는 비색시험법

** 총산화가 : 종합 산화정도, (2 ×과산화물가) + 아니시딘가

심사결과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현행 규격으로는 정확한 산패 여부 판단이 어려우므로 아니시딘가 및 총산화가 기준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할 필요 본 개정안은 아니시딘가 및 총산화가 기준치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CODEX) 및 미국 약전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으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글루코사민의 총비소 규격 신설 **강화**

- 건강기능식품 원료인 글루코사민 중 총 비소는 4.0mg/kg 이하로 규격 마련

심사결과 중금속은 자연에서 비의도적으로 유래하는 물질로서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 외에는 유해 중금속의 혼입을 막을 방법이 없고 글루코사민 원료 및 제품 제조 시 납, 카드뮴, 총수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비소 규격을 추가하는 것으로 업체의 준수 부담도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신설**

- 출입, 검사, 수거, 압류, 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처분기준 신설

심사결과 출입·검사·수거 및 압류·폐기는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이 국민에게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며, 국민의 먹거리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 처분기준이 위반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보아도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5)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규정 **강화**

-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사형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내용과 같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심사결과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유권해석으로 금지한 사항을 고시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피규제자의 준수가능성도 높은 점, 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규제내용을 완화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6)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지정 **강화**

- 기허가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대상 의약품도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으로 확대하여 순차적으로 소급 적용([별표1] 상용의약품(21.12.31.), [별표2] 고가의약품

(‘22.12.31), [별표3]·[별표4] 기타 의약품동등성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및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23.6.30))

심사결과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을 확대하여 부정·불량원료 사용을 차단, 의약품 품질 확보 및 국민 보건 향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원료의약품 등록제도가 운영 중이며, 일괄 소급적용으로 시장혼란 방지 및 공급 불안정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중요도 순으로 단계적 소급 등록기간을 조정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모든 완제의약품에 사용되는 원료를 등록해야 하는 미국, 유럽 등의 제도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37) 의약품 범위 지정 (강화 1)

심사내용 의약품 범위 지정 **강화**

- 출산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을 의약품으로 지정(제4호 바목)

심사결과 산모패드(산모패드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어 출산 후 감염 등 위해 우려가 있으나 현재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사전 및 사후관리를 통한 안전한 제품 유통 환경 마련 필요. 同 고시에서 산모패드와 유사한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이 이미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병원판매용)에서도 산모 패드를 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어 해외사례와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업체 영세성, 품질기준 신규 설정 필요 등을 고려하여 고시일로부터 2년이후 시행(‘21.10.1)되어 업체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8)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의 조리카피 카페인 표시 의무 **신설**

- 카페인을 1ml당 0.15mg 이상 함유한 액체제품의 경우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주의 문구 표시하고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카페인 함량 ○○○밀리그램’을 표시

심사결과 커피전문점에서 제조하는 고카페인 음료(0.15mg/ml)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카페인 섭취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할 필요가 있고 고카페인

함유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표시방법·허용오차에 관한 사항은 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제조일자 허위표시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강화**

-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처분기준 규정

심사결과 제조일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신선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를 변조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이며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보호 필요성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9)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지정 **신설**

- 금지원료, 제한원료, 기능성 원료를 제외하면 모두 사용 가능

심사결과 맞춤형화장품은 판매장에서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이므로 국민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기준을 지정할 필요가 있고, 맞춤형화장품도 화장품의 일종이므로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적용하고 있는 원료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유사사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강화**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1,037종(천수국꽃추출물 또는 오일 추가)

심사결과 화장품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위해평가 결과 광독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성분을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며 천수국꽃추출물은 현재 화장품에 착향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해성 검토 결과 광독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럽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위해성 평가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을 규제하는 것은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최소한

사항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추가 및 기준 강화 **강화**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추가(4종), 보존제 사용기준 강화(5종), 염모제 성분 및 사용할 때 농도상한 추가 등(7종), 사용제한 강화(2종)

심사결과 국내·외 안전성 평가결과 및 규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추가 및 기준 강화 조치를 통하여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해평가 연구사업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와 기준을 정하였고, 유럽과 유사하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한도를 정한 점, 규제 강화에 따라 원재료 대체비용 및 기존업체 폐기비용에 비해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을 화장품 사용에 제한함으로써 위해 사전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0)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국가출하승인신청을 위한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 등 제출자료 **강화**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첨부용제의 품질관리 강화(첨부용제의 제조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기준규격 및 시험결과 정보 기재의무 추가)

심사결과 국가출하승인 대상인 생물학적제제는 특성상 품질관리 미흡에 따른 피해가 광범위할 수 있어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며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이미 첨부용제를 포함한 원부자재의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첨부용제 기준규격 및 결과는 현행 규정상 이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임. 국가출하승인 신청시 '제조 및 품질관리요약서'에 첨부용제에 대한 정보를 추가 기재하는 것은 업체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미국, 일본 등에서도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제조번호별 시험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인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지방식약청 검사결과 확인 전에 세관통관 절차를 진행하여 부적합 제품이 국내 반입된 경우 (1차위반)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 구매대행 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구매대행 영업자임과 영업등록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차위반)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심사결과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할 필요가 있고 처분기준 중 경미한 수준인 시정명령으로 규정하였고,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상습·지속적인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면 적정성도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 준수사항 강화 **강화**

-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관세법」에 따른 통관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구매대행 식품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구매대행 영업자임과 영업등록 번호를 표시토록 함

심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의 유통 및 소비를 막기 위해 수입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세관장 통관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구매대행 식품 등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므로 영업자 수검 부담도 과도하지 않으며 부적합 제품이 소비되지 않아 얻을 수 있는 국민 보건상 편익도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2) 화장품법 시행규칙 (신설 4, 강화 2)

심사내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부과 **신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관련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련 서류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 맞춤형화장품 판매자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의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의료기기 제조업과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변경) 요건 및 절차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별도의 이견이 없는 바, 규제의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 마련** **신설**

- 소재지별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고용
- 책임판매업자와의 계약사항 준수
- 판매내역 작성·보관
- 시설·기구의 정기적 점검 및 위생적 관리·유지
- 혼합·소분 시 안전관리기준 준수
- 회수대상 및 안전성 정보 인지 시 책임판매업자에게 보고
- 품질관리 여부 확인 및 품질성적서 구비
- 내용물·원료에 대한 소비자 설명

심사결과 맞춤형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품질 및 안전이 확보된 제품 공급을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에 위임에 따라 별도의 시설 및 기구의 관리기준을 부여하지 않고 혼합 장소 및 기구 등의 위생적 관리 등 최소한의 필수사항으로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유사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 시범사업 업체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해관계인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기준 강화** **강화**

- 변경 미신고나 준수사항 미이행 시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강화

심사결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상습·지속적인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변경등록, 준수사항 등의 미이행에 따른 처분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하여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 **신설**

- (지정대상)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등

- (보고의무) 시험 시행계획을 전년도 11.3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자격증 발급실적을 매년 1월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심사결과 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를 혼합 또는 소분하여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혼합 및 소분을 담당하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역할이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이에 대한 자격검증이 필요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시험 운영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의무 부여로 우수 인력 확보 및 공정한 시험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영양사 시험과 유사하게 규정하였고 이해관계인 이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책임판매업자의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입증자료 작성·보관 의무 **신설**

- (작성대상)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화장품에 어린이용 제품(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생산된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 (작성범위)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자료,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 (보관기간) 최종 제조·수입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는 경우 제조연월일로부터 3년간 보관)

심사결과 영유아와 어린이의 경우는 피부가 성인과 달리 민감하고 부작용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안전과 품질 확보가 중요. 영유아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 조치로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위임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으로 목적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고, 유럽 등 해외사례 비교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위해화장품의 위해등급 평가 및 회수 **강화**

- (위해성등급평가) 회수의무자*의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유통·판매한 화장품이 회수 대상화장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3등급 위해성 등급 평가 실시
- (회수기한) 1등급 위해성은 회수 시작한 날부터 15일이내, 2~3등급은 30일이내

심사결과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적절한 회수절차 등의 마련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 회수대상화장품의 위해성 등급에 따른 회수기간을 차등화 적용(15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하여 업체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운영. 미국에서도 리콜제품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를 기준으로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는 등 국내외 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이해관계인 이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강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은 것만 해당) 추가하고, 9개월마다 1회 이상 산기(유당·유처리식품), 세균수(밀봉제품,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함유제품은 제외), 총 아플라톡신(B1, B2, G1, G2의 합으로서, 땅콩 및 견과류를 함유한 식품), 황색포도상구균(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것) 항목을 검사

심사결과 크림이 도포되어 있는 과자는 우유, 유크림 등을 원재료로 하므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증식될 우려가 높아 자가품질검사 대상으로 규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3개월에 1회 이상 과자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빵류, 즉석섭취식품 등 다양한 식품을 자가검사하고 있어 준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취소 기준 추가 **강화**

- 인증취소 기준에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추가된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추가

심사결과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도입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할 필요가 있고 고의로 준수사항을 누락하거나 의무를 해태한 경우 인증취소하는 것으로 업체가 성실히 기준을 준수한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규제 부담은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4) 의료기기법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기재 및 광고의 금지등 **강화**

- 의료기기 광고에서 금지하는 거짓·과대광고 관련 내용에 원재료를 추가

심사결과 현행「의료기기법」에서 이미 제품의 명칭·제조방법·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의료기기 원재료 역시 제품 제조의 핵심 요소로써 인체 접촉 및 삽입되는 물질이므로 고가 구매 등에 따른 피해 방지 및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거짓·과대광고 금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며, 약사법의 경우 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지만, 원료의약품, 전문의약품 등은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 타법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인 이견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에 광고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의무 **신설**

- 자율심의기구는 심의한 의료기기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심사결과 민간 자율심의기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의료기기 광고 관리의 효율성을 보장을 위해 자체 심의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최소한의 의무로 의료법에서도 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과 결과 제출의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해관계인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의 신고요건 **신설**

- 「민법」제32조,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기 관련 협회 또는 단체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심사결과 민간자율심의기구는 의료기기 광고심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신고요건의 마련이 필요하며, 유사사례로「의료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광고와 식품등의 표시·광고의 자율심의를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요건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의료기기광고 심의 수수료(건당 0.11백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고려시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인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5)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강화 2)

심사내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강화**

- 공급이 필수로 요구되는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 시 180일 전까지 사유 보고 의무

심사결과

공급중단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여 희소·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공급중단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안정적 공급이 요구되는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정보 미리 파악이 필요하며, 의료기기 전체가 아닌 공급이 필수로 요구되는 의료기기에 한하여 적용하고 천재지변 혹은 갑작스런 원료수급 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중단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예외를 두었으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은 이미 공급중단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심사내용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행정처분 강화 **강화**

- 생산·수입·공급 중단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생산·수입·공급 중단사유를 중단일로부터 중단일의 90일 전 사이에 보고한 경우 등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강화

심사결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안전성 공급을 위하여 공급중단 보고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의약품 중단보고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고, 위반 횟수와 보고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상습·지속적인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46)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심사내용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강화 **신설**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일회용 면봉에 메탄올과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메탄올 20mg/L이하, 포름알데히드 20mg/L이하, 일회용 면봉 : 포름알데히드 16mg/L이하)
- 어린이용 기저귀·면봉의 분류기준을 36개월 미만에서 만13세 이하로 적용 확대

심사결과 위생용품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품으로 소비자의 위생관리와 보호를 위해 위해물질 규격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물휴지의 메탄올 및 포름알데히드 규격과 동일하게 설정하였고 '일회용 면봉'은 어린이용 기저귀 제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하여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인의 이견도 없는 바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7)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강화 1)

심사내용 등급 표시기준 강화 등 **강화**

- 쇠고기 등급표시부위 조정 및 1++ 등급 근내지방도 추가 표시

심사결과 근내지방도 기준 완화에 따라 기존 1++등급(근내지방도 8.9)과 새로운 1++등급(근내지방도 7)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내지방도 표시가 필수적이며, 이미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에 1++등급의 근내지방도를 표시하고 있어 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이를 확인 후 표시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규제 부담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 의결

(48)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강화 1)

심사내용 고카페인 함유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대상 제외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강화 **강화**

- 고카페인 함유식품 인증 제외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외 대상에 고카페인 함유식품 추가하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강화

심사결과 고카페인 함유제품은 섭취 시 신경과민, 불면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품질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제품 중 고카페인 함유제품은 없으며 「어린이식생활법」에서도 고카페인 식품에 대해 규제하고 있어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9)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강화 1)

심사내용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강화 **강화**

- 정상생균 중 항생제 내성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장구균을 사용하도록 별도 기준 마련 및 주의문구 추가
-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 관련 주의사항 추가
- 자일로메타졸린 함유 점비제의 소아 사용 연령 상향조정·주의사항 추가
- 에코나졸질산염 함유 의약품의 고령자 등 관련 주의사항 추가

심사결과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내·외 의약품 안전성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의약품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방법 등을 개선이 필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프로바이오틱스는 항생제 내성 및 독성 유전자가 없는 '엔테로코쿠스 속 균주(장구균)'를 이미 사용 제한하고 있고, '자일로메타졸린 함유 점비제'는 미국, 영국 등과 유사하게 사용연령과 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국내외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사안으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0)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지정 **강화**

- 아밀신남알 등 25개 성분(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함유하는 경우에 한함)

심사결과 다양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알레르기 부작용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충실히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화장품 구매전 해당 제품에 사용된 주의성분을 확인, 알레르기접촉피부염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착향제 구성 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 성분 공고」와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유럽에서도 25종의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해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 국내외 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므로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1)

심사내용 철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용기·포장 사용 **신설**

- 철의 1회 섭취량이 30mg이상인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철을 과다복용할 경우 위장관 출혈, 간 손상 등에 이를 수 있고, 어린이 중독사고도 보고되어 안전용기·포장 사용토록 할 필요 어린이 과다섭취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사항으로 미국도 철을 함유한 의약품과 식이보충제에 대해 특수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어린이 보호 조치를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규제 수준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강화 1)

심사내용 아산화질소 용기에 대한 제조기준 신설 **강화**

- 아산화질소는 내용량 2.5L이상의 고압금속제 용기에 충전하도록 함

심사결과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를 판매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개인판매금지, 유통이력시스템 도입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있어 **중요규제**로 분류하였으며, 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1년) 동안 관련업체(고압가스판매점, 커피전문점)에 혼동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고압용기의 원활한 공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 시범 적용 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불편함을 보완하는 등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을 **부대권고**

(5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화**

- 마약류 취급제한 규정, 처방전을 거짓 기재한 경우,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 등의

위반행위 시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여 행정처분 기준 강화

심사결과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의 불법 유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마약류의 불법적 사용 및 관리 미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여 규제의 실효성 담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의 강화하는 것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함으로써 상습·지속적인 위반을 막을 수 있는 점도 고려하면 적정성도 인정되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4)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강화 2)

심사내용 가축사육업 등 안전관리인증기준 평가체계 변경 및 평가기준 강화 **강화**

- 식품위생법령상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을 필수항목으로 규정, 위반 시 부적합 판정토록 하고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당해 연도 평가 시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점의 2배를 적용, 소규모 업소 인증평가 시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강화

심사결과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도입한 HACCP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부실한 인증 평가체계 정비할 필요하고 HACCP 인증업소 준수 부담 및 제도의 도입 취지 고려 시, 규제 수준의 적정성 또한 인정되며 행정예고 시 반대의견도 없었던 사안이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안전관리인증기준 실시상황평가표 강화 **강화**

-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의 잔류방지방안 확대(소·돼지 농장도 적용) 및 알 관리 방안 도입(닭·오리농장에 한함)

심사결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호하고 축산물 HACCP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축산물 HACCP 인증은 축산물 제조·가공 등 전 과정에서 항생제, 살충제, 농약 등 위해요소를 관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HACCP 평가표에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방지 방안 및 알 관리 방안을 도입하는 등 규제안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10절 통일·외교 및 국방 분야

1. 외교부



이채영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913, chaeche@pmo.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등 총 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건의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

외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4.0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	강화 2 (비중요 2)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여권법 시행규칙 (강화 1)

심사내용 여권 분실 신고서의 분실 경위 기재 구체화 강화

- 분실 장소, 최근 여권 분실 횟수 등 분실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상습분실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여권의 악용 소지를 없애고 대외 신뢰도 유지·향상에 필요하며 미국·영국 등 외국사례보다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2)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재외국민 등록의 대리신청 강화

- 재외국민등록 대리 범위를 세대 기준에서 가족관계 기준으로 개선

심사결과 재외국민등록 대리 범위를 '세대' 보다 명확한 '가족관계' 기준으로 개선하여 등록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대리 범위가 축소되더라도 우편,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 다른 방식으로 재외국민등록이 가능한 점, 해외에서도 공적 등록부 작성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록 대리는 가족관계(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좁게 인정하는 점에 비추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통일부



이미션 사무관
Tel. 044-200-2442, lms08811@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총 3개의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3건의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3건 중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통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19.03.0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3	신설 1, 강화 2 (비중요 3)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통일관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신설

- 지정기준 : 시설 공간 160㎡ 이상
- 지정신청 : 도면, 물품 목록, 운영계획서, 교육프로그램 등 작성 제출

심사결과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통일교육 등 통일관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한 지정기준·절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시설기준은 통일관운영규정(통일부 훈령)에 근거하여 현재 운영되는 통일관 모두가 충족하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이며, 제출서류는 신청자의 지속적인 통일관 운영 의지 및 일관성 확인 등에 적합하고,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박물관 및 진흥법 시행령 등 타 법률 등과 비교 시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북한이탈주민의 조사, 정착금 지급 **강화**

-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내용(탈북, 위장탈출, 범죄자 여부 등) 및 방법 등 구체화
- 보호신청자 신변확보를 위한 검색 장비를 사용한 보안 검색 등 강화
- 허위진술, 시설안전 및 질서 저해 등 정착금 감액 사유 구체화

심사결과 '19.1.1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함에 따라 위입사항 시행에 필요하며, 보호신청자 사실 조사를 탈북민과 업무관계자 등의 안전 및 보호결정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내용으로 한정하고, 보호신청자에 대한 검색장비를 이용한 보안검색 등을 기내·정부청사 보안 등과 유사한 검색 수준으로 규정하여 적정성 및 임시보호 시설 보호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적합성이 인정되며,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품이 올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의 감액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써, 난민법·출입국관리법 등과 비교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통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통일교육 전문강사 재교육 수료 의무화 **강화**

심사결과 재교육을 통한 역량향상 및 남북관계·통일정책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교육 의무 신설이 필요하며, 재교육 주기(2년)가 다른 분야의 유사한 전문강사 등의 보수교육(1~2년)과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교육 시기·비용(무료)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11절 일반행정·안전 분야

1. 국무조정실



조현선 사무관
Tel. 044-200-2424, jhsun213@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예비심사 (2019.11.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신설 1)

심사내용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설

-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위원회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공동수행자 포함)가 가습기 살균제 및 세월호 사건 업무와 관련하여 민감정보(건강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 신설

심사결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 및 피해자 정보 수집을 위해 위원회 등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필요성 인정되고, 유사입법례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에서 조사 및 관련 후속조치를 위하여 본 규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가 일부 있으나 피해자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난·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규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행정안전부



정승희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445, tmdgml1209@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총 13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0건의 규제를 심사, 20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본위원회 (2019.01.22)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0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4)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1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6)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2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20)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2)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0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23)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3)
(11)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0.07)	원안의결 4	강화 1, 신설 3 (비중요4)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4)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2)
(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8)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20	신설 12, 강화 8 (비중요 20)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주민등록법 시행령 (강화 1)

심사내용 재외국민 본인 주민등록 시 입국기록 확인 **강화**

- 재외국민이 입국하여 신고할 때, 본인의 입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재외국민 신고제도는 국외이주국민의 재입국시 국내 생활 불편 최소화 및 소속감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각 지자체에서 출입국 사실 확인 없이 거주 여권 사본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국적을 상시하여 재외국민이 아님에도 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신설 1)

심사내용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 **신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인정신청을 반려
-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단체는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인증업무처리규정을 갖추도록 규정

심사결과 인증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인증 신청을 반려하도록 하여 인증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인증업무처리 규정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기부자의 알권리 명시 및 성실응대 **신설**

- 기부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기부자가 모집자에게 기부금 사용내역 등을 요청할 경우 모집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심사결과 기부자의 알 권리 강화와 기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자의 모집자에 대한 기부금품 사용 내역 등 정보제공 요청권한을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내외 유사 입법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강화 1)

심사내용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강화**

- 승강기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유지관리업자에게 승강기 안전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의무사항 강화

심사결과 최근 5년간 승강기로 인한 119 출동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어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신속한 구출 방안 및 자체점검 강화 방안 마련 등이 시급한 실정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자, 유지관리업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간 직무범위 및 준수사항 등을 정한 포괄적 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이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 규정 (강화 1)

심사내용 승강기 기술자가 이수해야 하는 기술·직무교육 시간을 확대하고 직무교육기관은 차기년도의 연간 직무교육계획을 매년말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의무 부여 **강화**

심사결과 승강기 기술자 교육은 승강기 안전성 확보와 직결되므로 교육 시간·과목 등의 체계적 관리와 함께 교육 주기가 도래한 직무교육대상 기술자가 미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기관에서 연간 직무 교육계획을 사전에 공지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경미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강화 1)

심사내용 국제기준(EN 81-20)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 **강화**

심사결과 승강기 이중설계 등 수출업체의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한 인증기준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작업자 안전을 위한 기준 및 승강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항목이 강화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작업자 산재 및 승강기 이용자 간헐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강화 1)

심사내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관리 **강화**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규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현행 반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접속기록 관리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사고 등의 예방을 통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증진에 필요성이 인정되며, 영국, 호주 등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기준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도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확대 **강화**

- 광역 시·도로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할 수 있는 대상금액을 전문공사의 경우 기존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심사결과 지역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계약법령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역제한 입찰 여부는 임의규정으로 발주기관이 업종별·지역별 상황을 감안하여 재량적 판단 하에 제한입찰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뇌물제공 등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감경 배제 **신설**

-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한 뇌물 제공업자 또는 담합을 한 업자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의 감경을 배제

심사결과 뇌물 제공 또는 담합을 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감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유의 정당성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인 실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필요성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강화 1)

심사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단층 신고 **강화**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각종 조사·연구 및 사업을 시행하는 중 단층을 발견하는 경우 단층 위치, 사진 등을 행정안전부로 신고

심사결과 단층 신고를 통한 원활한 단층 조사 수행으로 지진 재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단층 발견 시 사진 촬영 후 인터넷을 통해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으로 규제에 따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타법사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신설 3)

심사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이 대규모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대응 및 복구과정 평가시 위기관리 매뉴얼 운용 실태도 평가대상으로 명시 **신설**

심사결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매뉴얼을 상황변화에 맞게 수시로 업데이트·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매뉴얼의 평가대상 반영은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로 재난발생시 효과적인 대처를 통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재난원인조사에 따른 개선권고 조치계획의 세분화 **신설**

- 재난 원인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조치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업무체계 개선, 안전문화 개선, 인프라 확충 계획 등 추가

심사결과 실행 가능성이 담보된 대책을 마련하여 재난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계획 작성 범위의 구체화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도 개선권고 시 업무체계,

안전문화 개선 등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을 포함하여 권고하고 있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동 권고에 따라 조치계획(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 타법 사례와 비교시에도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 확대 **신설**

-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15층 이하의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민간·공공 임대주택을 추가

심사결과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시 자기 손실 보상뿐 아니라 타 세대의 손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의 부담은 경미한 반면 보험가입을 통한 사회적 편익이 크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새마을금고법 (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총회소집통지서 발송 의무 명시 **신설**

- 새마을금고의 총회 소집시 회의 목적 등을 적은 총회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회원에게 총회를 알리는 방법으로 공고 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회원의 총회 불참 및 회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회원의 알권리 보장과 총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상법 등에서도 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소집통지서 발송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신설 **신설**

- 현행 규정은 상근 임원 중 이사에 한해 자격요건을 두고 있으나, 상근 이사장 및 상근 감사에게도 자격요건 신설

심사결과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금융회사 형태의 조직이나 금융전문성이 없는 상근 이사장과 상근 감사가 지역 금고를 총괄하면서 금융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의 방지를 위한 상근 이사장과 상근 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에서도 상임이사, 상임감사 등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임원의 결격사유 등 강화 **강화**

- 새마을금고 임원의 결격기간 강화 및 결격사유 추가

심사결과 임원은 조직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이므로 고도의 도덕성 및 윤리성이 요구되에도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괴롭힘 등으로 인한 형벌 관련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형벌 관련 결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규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동일 유형의 죄와 관련한 임원 결격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새마을금고의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 **신설**

- 업무담당자 교체,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충처리 기구 마련 등

심사결과 금융창고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대다수가 욕설이나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고 있어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신용협동조합법에서도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신설 2)

심사내용 재난원인조사 시행 세부사항 규정 **신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원인조사 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 완료 후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는 시의적절한 재난·안전 정책 수립·조정과 이에 따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행정안전부에 기한 내에 제출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세부사항 규정 **신설**

-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제출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 검사 자료의 발급한 날이 2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

심사결과 재난안전제품은 재난 및 사고의 예방·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인증심사의 신뢰도와 객관성 제고를 위해 유효기간(2년)내 시험성적서, 성능검사 자료만 인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타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1)

심사내용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방안 마련 **신설**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해당 공공기관에서 직접 보존·관리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기준표를 작성, 관리토록 하는 의무 신설

심사결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데이터 형태의 전자기록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중요 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소재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에 따라 경미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나 기존의 기록관 등에 이관시 발생한 비용과 상쇄되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3. 법무부



이체영 사무관
Tel. 044-200-2913, chaech@pmo.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전자증권법 시행령 등 총 5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5건의 규제를 심사, 심사대상 15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25)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19.04.29)	원안의결 8	신설 8 (비중요 8)
(3)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24)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30)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30)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계	-	원안의결 15	신설 14, 강화 1 (비중요 15)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설 3)

심사내용 관리인 선임 신고 신설

- 구분소유권의 수가 50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 관리인 선임 신고의무 부과

심사결과

투명한 관리비 운용 및 책임 있는 건물관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 수는 약 6,985개로 소규모 건물의 관리인(구분소유권 수 50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등 유사사례와 비교 시 규제수준이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반대의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관리인에 대한 의무 부과 **신설**

- 관리인에게 관리비 관련 장부 작성·보관의무를 신설하고, 회계감사를 의무화

심사결과

관리비의 투명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료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적 자치 침해를 최소화하고, 소유자·점유자의 자율적인 결의로 회계감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신설**

- 구분소유권 수 50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자료제출 및 보고의무 규정

심사결과

사적자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구분소유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감독권을 규정함에 있어 그 범위를 업무관련 사항으로 한정하여 개입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 점, 이해관계자 반대의견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설 8)

심사내용 전자등록업 허가 요건 **신설**

- 최저자기자본 금액, 사업계획 등 전자등록기관 허가요건 규정

심사결과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전자등록기관은 최소한의 재무요건 등을 갖출 필요가 있고 유사 입법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미 허가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등 규제수준이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자등록업 폐지 등의 승인 **신설**

- 전자등록업 폐지 등으로 인한 권리관계 혼란 및 증권거래 중단 등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인 심사기준 설정

심사결과

전자등록업 폐지로 인한 국가 경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은행업·금융투자업 폐지인가 심사기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이해관계자 별도 이견도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상근 임직원의 특별한 이해관계 금지 **신설**

- 전자등록기관 상근 임직원에게 금지되는 특별한 이해관계 범위 구체화

심사결과 전자등록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의 이해관계 상충 방지 규정 필요가 크고 전자등록기관이 될 한국예탁결제원에 기존에 적용되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유사 입법례와 동일한 규정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자등록 의무 주식등 **신설**

- 전자등록을 의무화할 주식을 규정

심사결과 조건부자본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금융회사를 통해 발행되며 주식·사채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증권으로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전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미 전량 예탁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증권들로 발행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신규 전자등록의 제한 **신설**

- 신규 전자등록 신청에 대한 전자등록기관의 거부사유 규정

심사결과 전자등록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에 대한 전자등록기관의 거부 사유를 정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권리자 보호 및 발행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현행 예탁제도에서도 대체가능성 및 양도가능성 없는 증권 등의 예탁을 제한하고 있어, 동일한 수준의 필요 최소한의 거부사유 규정으로 적정성이 인정되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초과분배에 대한 해소의무 및 권리행사의 제한 **신설**

- 전자등록된 수량·금액이 실제 발행분보다 많은 경우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해소의 무기관이 동 수량을 매입하여 소각하도록 함

심사결과 초과등록증권 발생은 전자증권 거래 안정성을 해치는 긴급 상태로서, 사전에 사건 발생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처리 계획을 만들어 둘 필요가 있으며 입법 당시 계좌관리기관의 입장을 고려하여 규제 방식을 선택한 점 및 다른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과 유사하게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제 수준이 적정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자등록 정보 등의 보존 **신설**

- 전자등록 정보 및 기록정보를 영구히 보존하고 허가 취소 또는 폐지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다른 전자등록기관에 이전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실물이 발행되지 않는 전자등록제도에서는 기존 예탁제도에서보다 등록된 정보의 보존 필요성이 높아지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위상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할 때 정보 보존의무 강화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계좌관리기관에 대해서는 현재와 규제가 동일한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점이 없어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심사내용 전자등록기관 허가취소 사유 **신설**

- 정관·전자등록업무규정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긴급사태 시 금융위원회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정도로 거래정보 누설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발생시 전자등록기관 허가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전자등록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전자등록기관 및 전자등록기관 임직원의 법 위반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며 동 규제는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를 규정하였으며, 다른 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해관계자 이점이 없어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3)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신설**

- 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업무범위, 수수료 징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심사결과 출입국민원의 대행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와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만을 지정취소 의무 사유로 규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법령위반의 정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수준이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이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에 원안의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설 1)

심사내용 범죄수사중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 연장 등 **신설**

- 범죄 수사중인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하고 유효한 여권 소지여부와 무관하게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의 자유가 있으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제한적인 경우 출국금지(정지)를 통해 국가 형벌권 및 조세권 확립이 필요하고 출국정지기간 상한이 연장되어도 수사가 종료되면 출국정지는 즉시 해제되므로 사익 침해가 크지 않으며,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로 원안의결

(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안내프로그램 면제대상의 축소 **강화**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 면제요건 강화

심사결과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속성결혼의 부작용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국제결혼가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을 통해 내국인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 출신국가의 제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결혼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 완화된 방식이라는 점과 교육 면제 축소 대상이 제한적이고, 교육 이수비용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전액 국가부담)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거부 대상 **신설**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초청인이 가정폭력 등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사증 발급을 거부 가능

심사결과 국제결혼가정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문제를 예방할 필요가 크고 대상 범죄가 가정폭력·성범죄 등 결혼생활과 관련한 범죄로 한정되어 있고, 자녀출생 등 사증발급제한 예외 사유를 두고 있으며,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외국인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며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선진국에도 범죄경력이 있는 자의 배우자·자녀 초청 제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인사혁신처



이정호 사무관
Tel. 044-200-2414, turtleb@korea.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개 법령에 대해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2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1)

심사내용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의무 위반에 대한 해임요구 근거 마련 **강화**

- 퇴직공직자가 취업승인 이후에 취업금지 업무를 취급하거나, 퇴직 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심사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외사례 등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며, 이해관계 대립이 없는 등 중요규제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원안의결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록

5. 경찰청



이미션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442, lms08811@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총 7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14건의 규제를 심사, 1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경찰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2)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3)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2.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2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5.1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8.30)	원안의결 8	강화 8 (비중요8)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15)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14	강화 14 (비중요 14)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일반도로에서의 기본 제한속도 강화 강화

- 주거 및 상가지역이 밀집하여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내 도로는 제한속도를 기본적으로 50km/h로 설정하고 이외 간선기능(소통)을 수행하거나, 보행자 안전 시설이 충분히 설치된 도로는 60km/h 이내로 설정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

심사결과 도심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내 기본 운행속도를 외국사례와 자체시험·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50km/h 이내로 규정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용(녹색 지역 제외)하였고, 기타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노면전차의 도로통행에 따른 교통안전규칙 준수 **강화**

- (시행령) 교통안전시설 과련 비용 부담의 사유(제4조),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제19조),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조작(제20조)
- (시행규칙)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제28조)

심사결과 노면전차의 도로통행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가 노면전차와 같은 도로를 통행하므로 도로에서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유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교통시스템에 의해 운행되는 교통수단(자동차 등)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일반운전학원 기능교육장 최소 면적 확대 **신설**

- 일반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 기준을 350m² ⇒ 2,300m² 확대

심사결과 '16. 12월, 운전면허시험 강화로 장내 기능시험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기능시험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장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며, 「운전학원 기능교육장 면적 개선에 관한 연구('17.10. ~ '18.2)」에서 도출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을 규정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 불이행 시 벌점 처분 **강화**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표시 및 하차확인 의무위반과 동일한 벌점 30점 부과

심사결과 '18.10.16. 도로교통법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작동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도 정착과 의무이행을 위해 행정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법 상 영유아 등의 하차 확인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벌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고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강화 **강화**

심사결과 '18.12.24. 도로교통법이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법정형 수준 등을 강화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처분기준 강화가 필요하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운행 위험성 실험결과를 반영하였고 해외 입법례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8)

심사내용 총포소지자 총기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강화**

-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총기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임의제거 또는 훼손금지

심사결과 총기의 범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총기에 부착하는 위치추적장치를 개발함에 따라 부착의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총기 입고·출고 시 경찰관이 장치를 탈·부착하고 소지자는 총기에 부착 상태로 사용하므로 총기소지자가 별도 비용부담이 없고 준수에 어려움이 없으며, '15년부터 위치추적을 위해 휴대폰 응용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유지할 준수의무가 있어 규제가 과하지 않고 타법사례와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고무줄·스프링 이용 발사장치 신고 **강화**

- 고무줄·스프링 등의 탄성을 이용한 발사장치 기준
- 수출 목적인 경우 제조 및 폐지 신고

심사결과 '18.9.18일 총포화약법이 고무줄·스프링 등을 이용한 발사장치를 모의총포로 규정, 제조·판매·소지를 금지(수출 목적 제조는 제외)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발사장치 기준 및 신고절차 등 세부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모의총포와 기준 및 신고서류가 동일한 수준이고, 해외사례와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며, 실효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등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폭발물분쇄충의 소지 제한 및 검사** **강화**

- 폭발물분쇄충 규정 (구경 12.5밀리미터 내지 40밀리미터의 것에 한함)
- 소지허가 범위를 대테러용으로 규정
- 제조 및 수입한 폭발물분쇄충 제품 안전성 검사 의무
- 법인의 소지 허가, 제조시 종합검사 및 제조품 안전검사 기준

심사결과 '18.9.18일 총포화약법이 폭발물분쇄충을 법인이 소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하여 정의, 소지허가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격이 현존하는 제품규격과 일치하고 대테러용으로 소지 범위를 한정하고, 기존의 여타 총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성 검사 및 소지허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행정처분 강화** **강화**

- 총포 등의 제조·판매·임대업자의 보고의무에 따른 위반 신설
- 총기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 제거 또는 훼손 신설
-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설치 또는 휴대전화 위성확인시스템(GPS) 및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 작동 미실시 신설

심사결과 '18.9.18일 총포화약법이 총포 제조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수출입 허가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관청에 보고하고 총포소지자는 보관해제 시 총포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여타 행정처분 기준에 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효력정지 기간 등을 규정하였고, 유사 타법사례와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수렵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육 **강화**

- 교육과목(관련법규, 총기실기) 및 교육시간(1시간) 규정

심사결과 '15.9.11일 총포화약법이 총포소지자가 수렵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교육과목 및 시간에 대한 상세규정이 없어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교육과목을 총포 소지 및 화약류 면허자의 교육과 동일하게 관련법규·총기실기 과목(1시간)으로 규정하였고, 타법사례와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며, 기존에 동영상 및 교안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안정도 시험 **강화**

- (대상) 안전기준(안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 가스발생기
- (시험항목) 원료화약, 용기파열, 용기구조, 점화 전류 시험

심사결과 '18.9.18일 총포화약법이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에 대해 안전기준에 해당할 경우 제조허가 이외 판매·소지 허가 등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국제통용 안전인증에 준하여 기준을 정하고 전문기관(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의뢰 시험토록 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외사례, 타법사례와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총포 도난·분실자의 총포 허가제한 및 보관 의무 **강화**

- 보관대상, 보관절차, 보관기간, 반환절차 규정

심사결과 '18.9.18일 총포화약법이 분실자의 다른 총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행을 위해 보관대상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보관에 따른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고, 준수에 어려움이 없으며, 국민의 안전보호 등 사회적 편익, 해외사례와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총포의 제조·판매·사용 등 보고 **강화**

- 제조, 판매, 사용현황 ⇒ 총포 구경, 제조번호, 양도(판매)일, 양수인 인적사항 등 추가

심사결과 '18.9.18일 총포화약법이 총기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총포를 제조·판매·임대 또는 수출입하였을 때 수량·종류·제조번호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7일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보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정상 유통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판단되며 '15년 10월부터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던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타법사례와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교통안전지대 확대(노상장애물 표시지대 진입금지) **강화**

- 노상장애물 표시와 안전지대 표시 통합(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노면표시 체계를 통행방향 기준으로 동일하게 표시하도록 개선

심사결과 노상장애물 표시지역은 침범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서 유사한 목적·형태의 안전지대와 통합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운전자는 구분이 어려웠던 안전지대 및 노상장애물 표시에 상관없이 진입이 금지됨을 인식하게 되어 법규 준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노상장애물 표시의 실효성이 제고되며, 해외사례와 비교시 적정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소방청



이서연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447, koko33@korea.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 규제 심사개요

- 2019년도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2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20건의 규제를 심사,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소방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1.0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19.03.15)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본위원회 (2019.03.25)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 1, 비중요 1)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0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개정안	예비심사 (2019.06.13)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19.07.19)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7)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8)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9)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19.09.06)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 1)
(10)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1.08)	원안의결 2	강화 1, 신설 1 (비중요 2)
(11) 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0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12)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비심사 (2019.12.06)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20	신설 7, 강화 13 (중요 1, 비중요 19)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장애인을 위한 피난안내영상물 상영기준 개선 **강화**

-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피난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광고 등의 내용 포함을 제한하고, 영화상영관의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하여 상영하도록 규정

심사결과 피난안내영상물의 홍보영상 제한 및 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를 제공하는 등의 상영기준 개선으로 정확한 피난정보를 제공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강화**

-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

심사결과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의 합리적 개선으로 신속한 시설보수 유도를 통한 안전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 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기준 상향 **강화**

-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제고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심사결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시설 점검역량 및 화재 시 초기대응 능력 등 안전관리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 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대상 확대 **강화**

- 소방시설 종합정밀 점검대상을 ‘일정 면적 이상의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

상물'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

심사결과 자동식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도 향상 및 체계적인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화재 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동 규제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방염대상물 및 방염성능기준 강화 **강화**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확대
 - 의원·공연장·종교집회장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및 중소형 병원 등의 의료시설에 방염 실내장식물 등 설치 의무화

심사결과 중소형 병원 및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방염성능 확보를 통한 화재 위험의 최소화 및 대형인명 피해 저감을 위해 규제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일본, 미국 등에서도 병원, 요양소 등에 방염성능을 가진 물품을 사용토록 규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중·소 병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강화 **강화**

-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방설비(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 의무화

심사결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18.1.26.) 시 인명피해(사망 55 , 부상 137명)가 커진 것은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인한 초기 화재진화 실패가 주 원인으로 분석되고, 최근 5년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스프링클러가 없는 병원의 경우 연평균 52명인 반면, 스프링클러 있는 병원은 5년간 부상 1명에 불과하므로, 화재안전 사각지대인 중소병원에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설치로 화재 시 초기 소화 기능을 제고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위원회 심의(중요 규제)**를 거쳐 **원안의결**

(4)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강화**

-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수동식 소화설비 설치가 가능한 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대상으로 규정

심사결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옥내 개방형 주차장은 거주자가 소방호스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옆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좁아 연소를 통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 상당하므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기간 내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5)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강화

- “옥내 개방형 주차장”을 수동식 소화설비(호스릴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설치 가능 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하여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대상으로 규정

심사결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옥내 개방형 주차장은 거주자가 소방호스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옆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좁아 연소를 통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므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 확대 강화

- 건축행위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신설·증설되는 소방시설공사도 착공신고 대상으로 규정

심사결과 건축행위 없이 소방설비를 신설·증설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도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절차를 통해 견실시공 등을 확인해야 하나, 현행 규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여 소방설비 설치단계부터 확보해야 할 화재안전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 강화

-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등 및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장소 추가

심사결과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비는 화재 발생 초기 연소의 소화·확산 방지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완공검사 시 현장확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범위의 확대 **강화**

-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소방시설공사에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의 신설 또는 개설 공사" 추가

심사결과 화재 발생 시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조명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재실자의 피난시간이 지체되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 포함하여 소방시설 성능검사 완료 후 완공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7)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

- 옥외소화전의 '압력손실' 시험 규정 추가

심사결과 옥외소화전은 주로 플랜트 또는 화학공장 등 대형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화재의 초·중기 진압 시 정상적인 소화용수 공급이 필요하므로 압력손실 시험은 필수 시험에 해당하나, 현행 법령에 정상적인 소화용수 공급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손실에 대한 시험 규정이 없어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8)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강화**

- 밸브, 안전장치, 손잡이 등 소화기 표준 규격 규정
- 호스 및 안전장치 시험기준 등 소화기 내구성 강화 시험기준 규정

심사결과 일반 공산품은 소비자가 사용 과정에서 성능 문제를 판단할 수 있으나, 소화기는 화재 시에만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므로, 필요 최소한의 표준 규격을 규정하여 소화기의 구조 안전성 및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할 필요성과 내구성 시험 강화로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화재 시 소화기의 성능을 확보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9)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신설**

- 소화용구 방사시험 기준 규정
- 유해 소화약제의 사용 금지 및 소화약제 중량 규정

심사결과 에어로졸식소화용구에 사용되는 소화약제 중 인체 유해성이 확인된 'HCFC-123, HCFC Blend B' 물질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고, '방사시간' 시험기준 및 '소화약제 중량' 규정은 당해 고시에 근거 규정이 없이 행정지침에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0)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제조소 등의 중지 신고 **신설**

- 제조소 등의 '용도중지(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중지)' 신고절차 신설
- 시·도지사의 '안전조치명령' 위반 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사용정지' 등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사용정지' 사유 신설

심사결과 고위험물 시설인 제조소등은 휴업 등으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시 중지할 경우 위험물 제거 및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데, 법 상 용도중지 절차가 미비하여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안전조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이며, 행정지침을 통해 '용도중지'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 상 위임근거 부재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어려워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어 '용도중지'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안전조치 미이행 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강화**

- 제조소 등의 소유자, 점유자 등 관계인은 제조소 등을 정기점검한 후 그 결과를 30일 이내 소방관서에 제출토록 규정

심사결과 제조소등은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고위험물 시설로서,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인의 운영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고,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정기점검 결과를 행정관서에 제출토록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에 따른 비용발생이 경미하고, 타법사례와 비교 시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1) 소방장비의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인증대상 소방장비, 견본품 제출, 현장심사기준 **신설**

- 인증대상 소방장비로 “소방펌프차, 소방사다리차, 방화복,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 지정
- 소방장비 인증 제품심사용 견본품 제출 기준 신설
- 소방장비 현장심사 기준 마련

심사결과 소방장비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소방장비관리법」이 제정·시행되어, 하위 법령에 위임된 ‘인증대상 소방장비 종류, 인증절차 등’ 세부 운영규정의 신설 필요성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인증기관의 시험설비 **신설**

- 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험설비 구비요건’ 신설

심사결과 인증은 인증기관이 절차에 따라 제품 등 평가대상이 표준화된 요건에 적합함을 서면으로 보장하는 행위이므로 인증기관마다 규격, 성능 등이 상이한 설비를 적용·심사할 경우 인증심사 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증기관들이 갖추어야 할 설비기준의 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12)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소방장비 관련학과 인정범위 **신설**

-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 중 ‘소방장비 관련 학과’를 “소방안전 관리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등”으로 규정

심사결과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소방장비 관련 학과’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 (검사설비) 출자(100m 이상), 추(총중량 300kg), 기압계(대기압측정 가능) 등 15개 검사설비의 규격 및 수량 기준 신설
- (교육설비) ‘옥외주행교육장, 교육시설, 소방차량’의 규격, 수량 기준 신설

심사결과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을 통해 소방장비정비센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 요건 중 ‘검사·교육’ 설비기준의 신설 필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예고 시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7. 국민권익위원회



정승희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445, tmdgml1209@opm.go.kr

가.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심사 개요

- 2019년도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2건의 규제를 심사, 2건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예비심사 (2019.11.25)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2	신설 2 (비중요 2)

나. 2019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신설 2)

심사내용 공공기관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채용 제한 **신설**

심사결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문제 해소를 통한 공공기관 채용업무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업무에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자 가족의 특별채용 등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내용이 타법사례, 해외입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심사내용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신설**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속 공직자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및 그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내용이 타법사례, 해외 입법사례와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중요 규제**로 원안의결

제12절

규제영향분석



이재영 사무관

집필자

Tel. 044-200-2913, chaeche@opm.go.kr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1. 제도 개요

가. 의의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이는 규제담당자들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탐색·설계 시 복수의 규제 대안 및 비규제 대안을 폭넓게 비교·검토하고, 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규제의 비용·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제시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모하고 규제의 질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나. 목표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품질제고, **민간의 혁신과 창의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의 사전예방**, 규제자의 민주적·합리적 역량 강화, 성공적 국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좋은 규제의 제시를 목표로 한다.

다.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법 제7조1항)하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규정(법 제7조2항)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과 관련된 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7조4항, 시행령 제6조4항)

2. 작성항목 및 요소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개요,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규제의 적정성, 규제의 실효성,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순으로 구성되며, 구성요소별 세부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에는 △문제 정의의 정확성 △정부개입의 정당성 △규제목표의 명확성 △규제대안의 다양성 △규제대안 분석의 타당성 △규제대안 선택의 적정성 △이해관계자와 협의의 △집행의 현실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요소	세부항목
◇ 규제개요	규제사무명, 규제조문, 위임법령, 입법예고,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의 필요성, 규제목표, 규제내용,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비용편익분석, 영향평가여부, 일몰설정여부 및 네거티브적용여부, 규제비용관리제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규제대안 검토 및 선택, 규제의 목표
II. 규제의 적정성	목적·수단간 비례적 타당성,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일몰 및 우선허용·사후규제,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비용·편익분석
III. 규제의 실효성	규제의 순응도, 규제집행가능성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추진 경과, 향후 평가계획, 종합결론

3. 작성대상 및 절차

가. 작성 대상 및 유형

모든 신설·강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대상이 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1항) 규제영향분석서는 규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쟁점사항 등에 따라 분석서 작성유형을 표준형과 간이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상위법 위임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의무제출 서류내용의 구체화 △수익적 행정처분의 절차관련 규제는 간이형으로 작성하고 그 이외는 표준형으로 작성

나. 작성 절차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석서는 e규제영향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은 규제 등록단위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2개 이상의 규제가 하나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연계 시행되는 경우 분석 내용을 통합하여 1개의 규제영향분석서로 작성이 가능하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2항). 다만,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 강화방안을 별도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수립·통보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조4항 및 5항)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법 제8조의 2), 이를 위해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매뉴얼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를 작성하여 차등화를 검토하여야 한다.

'19년 7월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정할 때에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법 제5조의2)

(2) 규제영향분석서 공개 및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법 제7조2항, 시행령 제6조3항)

아울러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하여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여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술규제에 대한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대한 국제기준 적합성 등 규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검토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경쟁영향평가(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영향평가(중소벤처기업부), 기술영향평가(산업통상자원부)

(3) 자체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7조3항)

* 규제조정실·규제연구센터 검토의견 및 기술·중기·경쟁 영향평가 결과, 이해관계자·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심의

(4) 예비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심사를 거쳐 보완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예비심사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법 제13조1항) 이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법 제13조2항)

(5)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중요규제 여부*를 결정하고,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등 8개 요건에 해당될 경우(령 제8조의2)

4.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가.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의 신설·강화규제 심사 건에 대해 경쟁영향, 중소기업영향, 기술영향 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작업단에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심사시 작업단의 의견을 검토·반영한다.

각 작업단은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평가의뢰(국무조정실→작업단), ②의견수렴 및 평가(작업단), ③검토의견 제출(작업단→국무조정실), ④규제심사(국무조정실)

분야별 규제영향평가는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2013.4.15.)

-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공정위) :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중기부) :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 기술규제개혁작업단(산업부) :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나. 경쟁영향평가

(1) 개념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나 여러 규제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규제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경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평가하며,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추진경과

OECD경쟁위원회는 규제당국이 규제를 신설·강화할 경우 스스로 경쟁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며 2007년 경쟁영향평가 Toolkit을 제작하여 각 국가에 배포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위가 담당토록 제도화하였고 2010년 10월 OECD 경쟁위원회(프랑스 파리)에서 우리나라의 경쟁영향평가 제도 및 실제 운용사례를 세계 최초로 발표하였다.

(3) 목적

제안된 규제가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규제안의 도입단계에서부터 경쟁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경쟁제한적인 규제의 신설·강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각 부처의 법령 제·개정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2019년도 경쟁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에 589개 법령, 1,171건의 신설·강화규제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총 10개 법령, 11건에 대해서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하였다. 작업단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한 11건 중 3건이 규제조정실의 규제심사 과정에서 반영되었고, 4건이 심사 진행중이다.

(6) 2019년도 경쟁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내용
1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	민간법인의 자본금 요건과 관련하여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은 외부감사 비대상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공급자 수를 감소시키고 경쟁을 감소시켜 중소형 해수욕장의 시설사업 수행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원의 등록	민간정원에 정원 전문관리인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을 완화(정원 전문관리인 교육 등)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분양대행자 자격 기준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양대행자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공인중개사로 한정하는 것은 분양대행 업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자격요건 부여를 차별하는 것으로 진입제한 등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질적인 배상능력 담보, 사후관리 방안 강화, 주택규모별 자격요건 차등화 등의 방법을 강구할 것을 권고

다.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1) 개념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평가하고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 신설·강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추진경과

2008년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6차 회의를 통해 8개부처 합동으로 보고한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8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중소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13년 6월에는 중기영향분석 시 중소기업의 규제영향평가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을 개정하였다.

특히, 2018년 4월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차등화를 검토하고 차등화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요청할 때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법 제8조의2. 2018.4.17개정 2018.10.17 시행)

(3) 목적

각 부처의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파급효과, 집행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대상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는 신설·강화되는 법령(고시 등 포함) 중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피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소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하며, 비영리 기업이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일부도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5) 2019년도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에 584개 법령, 1,161건의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였다. 작업단 검토결과, 34건의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21건이 반영(반영률 61.8%)되었다.

(6) 2019년도 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1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시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 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기업에서 동일 목적으로 중복승인 받는데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낭비 최소화를 위해 같은규정 마련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위해화장품에 대한 위해성 등급(123등급) 및 분류기준 정비, 등급 분류에 따른 회수종료일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 화장품 위해성 1등급 분류기준에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경우'가 포함 되는 경우는 타사업과 비교시 과도한 수준
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기준 내 약취방지사설 설치 의무 사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취를 절감할 수 있는 표준 기술 및 약취 측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후, 약취방지사설 설치 의무화를 도입할 필요
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출농도 저감이 현존기술로 불가능한 경우 등 기업의 노력으로 규제이행이 어려운 상황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나 입증절차 등이 부재하여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시설·설비의 설치·개선이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지침을 마련하여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
5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목재등급평가업자 등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형태를 법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목재등급평가업의 활성화라는 제도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한 타 자격사와 비교시에도 과도한 수준의 규제로 보임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재등급평가사의 등록부담 완화 및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 할 필요
6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정원의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정원에 전문관리인 1인 이상을 배치하는 것은 정원 관광 산업의 창업을 저해하는 진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차등화 필요 •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한해 전문 관리인을 두는 방안 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② 총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
7	국토교통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단열재 표면 정보 표시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열재에 성능 정보 표기를 위한 마킹기 설치 과정에서 피규제자에게 과도한 수준의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제시 요청
8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기록, 보관 항목에 등록제조업자 추가 및 유통현황 보고기한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방사선법」개정·시행(19.1.15)으로 생활 제품에 원료 물질 사용이 원천 차단됨에 따라, 유통현황 보고주기 단축의 필요성이 적고 행정부담을 야기 • 피규제자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유통현황 보고주기를 연 4회(분기별) → 연2회(반기별)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

라. 기술규제영향평가

(1) 개념

기술규제*영향평가는 정부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유사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등), 국제표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과도한 시험·검사·인증은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발생시키며, 유사한 시험검사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시험·검사 해야하는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작용하게 되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이나 적합성 평가(시험·검사·인증 등)

(2) 추진경과

'12.7월 국가기술표준원은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그 후속 조치로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술기준, 인증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시에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을 개정하고, 기술규제영향평가와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를 위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실 훈령 제696호)을 개정하여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에 신설하였다.('12.12월)

명확한 업무처리지침의 설정을 위해 '14.1월 '기술규제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정하였고, '15.8월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된 '신설인증 규제심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모든 신설·강화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기술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15년부터 기술규제 정책포럼을 운영하여 기술규제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16년에는 10개(총리주재 현장점검회의 보고), '17년 16개(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18년 20개(규제개혁위원회 보고), '19년 15개(규제개혁위원회 등 보고) 개선을 추진하여 기술규제 합리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18.12월에는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검토” 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국가표준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어 인증제도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등 기술규제 합리화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

(3) 대상

기술규제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제한·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시험·검사·인증 등을 대상으로 한다.

(4) 2019년도 기술규제영향평가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은 16개 부처(청)의 111개 법령(시행규칙, 고시포함), 287건*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요청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검토완료·회신하였고, 총 43건(15%)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 규제심사대상심의 과정에서 심사대상 규제 중 기술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건수임

(5) 2019년도 기술규제영향평가 주요 검토내용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조정 의견
1	산업통상 자원부	어린이제품 공동안전기준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 완구 기준은 “36개월 미만 대상의 입안에 넣거나 넣을 가능성이 있는 완구”에 대해서만 “니트로사민류 총합 0.01 mg/kg 이하,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총합 1.0 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풍선은 니트로사민류 총합 0.05 mg/kg, 니트로사민류 생성가능물질 총합 1.0 mg/kg 이하) • 따라서, 유럽 완구기준을 참고하여 연령별, 용도(또는 제품)별 규제치를 차등 적용하는 기준 값 제시가 필요함
2	산업통상 자원부	안전기준준수대 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준수대상생 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제정(합성수지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동 제정안의 서문에서 대상 제품의 적용범위를 ‘장시간 지속적으로 피부에 접촉하는 제품’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신발류는 ‘주 재질’이 아니라 ‘피부에 접촉하는 부분’이 합성수지로 구성되는 제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타 품목에 비해서 피부와의 직접 접촉 가능성이 적은 가방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3	식품의약품 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추가 및 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염모제 성분의 기준값이 EU와 동일하게 설정된 것과 달리, 5-아미노-6-클로로-α-크레솔은 EU 기준(1.0%)보다 높게 설정(0.5%)되어 있으니,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식품의약품 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능성 원료 5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및 기능성 내용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섭취시 주의사항 및 기능성 내용이 변경되면 제조자는 기존 제품의 포장을 교체해야하는데, 기존 포장재를 모두 소진하고 새로운 포장을 준비하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은 다소 촉박함. 이에 업계의 현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유예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5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 기준규격	1등급 의료기기 기준규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성귀내시경은 경성후두경과 작동원리가 동일하므로 전기적 시험이 필요함. 따라서, 경성귀내시경의 전원 입력, 보호접지저항, 누설전류, 전자파 장해(간섭) 시험 항목의 검토가 필요함
6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내외부 용기 포장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제정안 제4조제3항에서 ‘다수의 내부용기를 묶음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여러개의 내부용기를 외부 박스로 감싼 형태를 말한다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수의 내부용기를 묶음 포장하는 경우에는 각 내부용기의 유해화학물질은 상호간 화학적 반응성이 없는 물질이어야 한다’ 정도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7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개정안의 정밀진단기준(별표 13의3)과 싱가포르 노동부의 타워크레인 사용 가이드(타워크레인 시험·검사 체크리스트, Appendix 6) 및 크레인 검사 관련 국가표준(KS B ISO 9927-3, 크레인-검사 -제 3부: 타워크레인)의 비교·분석 결과, ① 검사 대상 부재에 케이블 등 전기장치, 제어부(control), 비상정지버튼 등 안전장치 관련 항목 신설하고 ② 유압장치 작동상태 검사내용에 누유 확인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연번	부처명	법률(고시)명	규제심사안	조정요건
8	문화체육 관광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신규 체육시설업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 스크린을 제외한 모든 벽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스크린은 결함이 없이 벽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한다. • (수정안)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모든 벽면, 천장,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스크린은 결함이 없이 편편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5.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도입

가. 도입배경

사회의 다양화·복잡화에 따라 규제로 인한 사회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부작용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규제영향분석은 피규제자 집단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그 밖의 영향집단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규제 집단에 대한 규제영향 이외에 집단간 영향이나 일반국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에 반영하였다.

나. 개념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란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피규제 집단(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은 물론 피규제자 이외 사회전체(피규제자 이외 집단 + 정부)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도적인 관점에서 피규제자 이외 사회전체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아래 표에서와 같이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과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에 나타나는 규제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비용·편익분석 작성 구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소상공인	직접	비용 관리제	
	간접	피규제자 비용·편익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사회적 비용편익)		
정 부	행정비용		
총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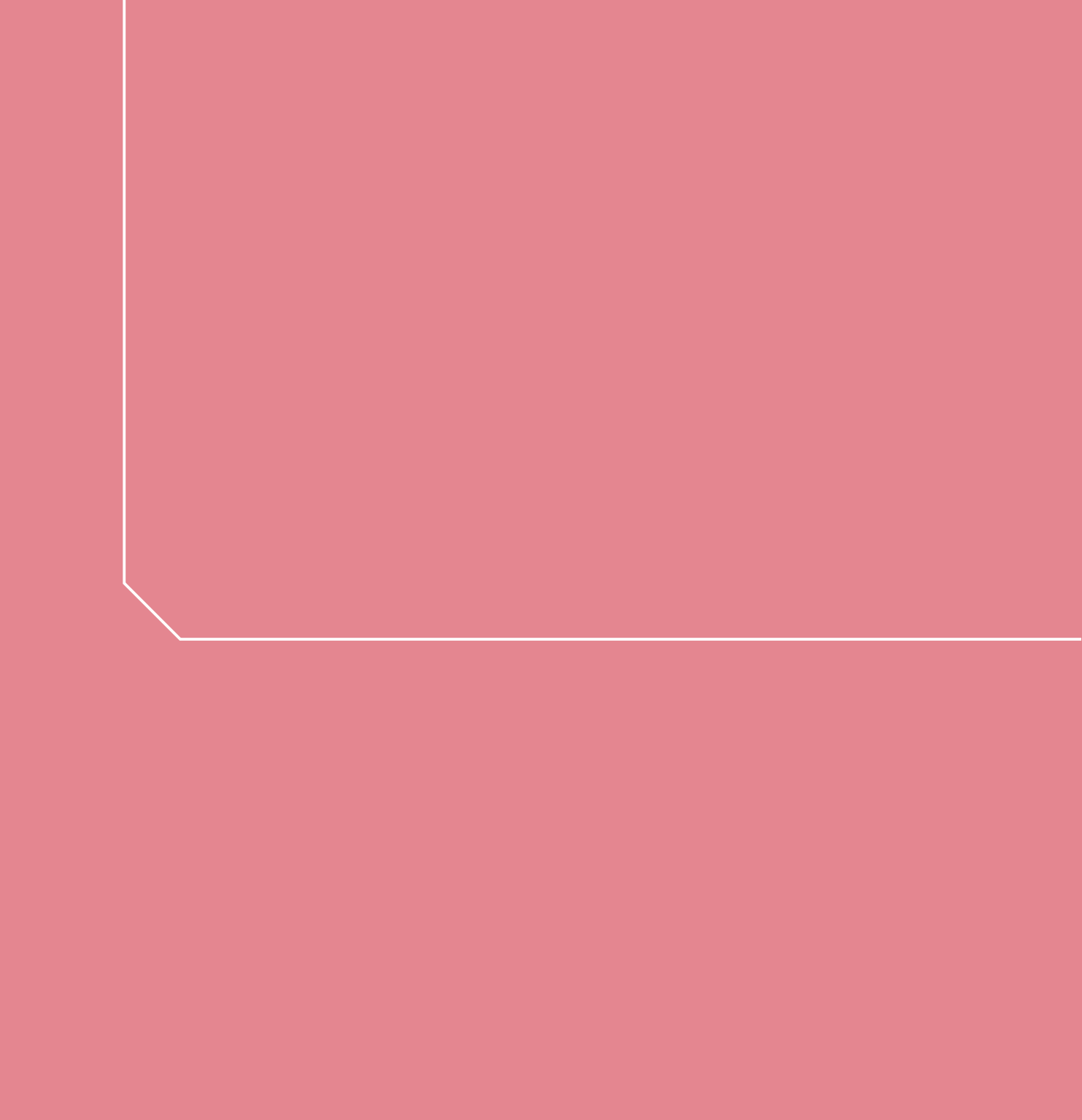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 (분석원칙) 피규제자 이외 기업·소상공인에게 나타나는 비용절감, 영업이익 등 2차적 영향에 대하여는 정량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전체·일반국민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해관계가 침해하게 대립되거나 생명·안전·환경 등에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영향에 대하여는 정량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정성분석을 실시한다.
- (분석방법) 분석하고자 하는 사회적 영향집단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규제의 분야별 또는 수단별 유형을 구분한 후 비용·편익에 대한 분야별·수단별 색인표*에 유사한 분석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 게시판에 등록된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사례'를 찾아 참고하여 작성한다.

*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국내외 사례를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규제분야와 진입, 가격, 품질, 거래 등 규제수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비용과 편익 항목별로 색인표를 구성(사례는 'e-규제영향분석시스템'분석서게시판) 사회적비용편익분석사례' 게시)

구 분		유형 및 항목내용
비용/편익	비용 (9)	행정부담, 노동, 교육훈련, 외부서비스, 설비, 원재료, 운영, 지연, 기타
	편익 (18)	시장안정성제고, 산업육성, 경쟁촉진, 공정거래, 비용절감, 매출증가, 환경오염예방, 자원재활용, 안전사고예방, 자연재해예방, 산업재해예방, 질병예방·건강증진, 사회적 약자보호, 일자리확대, 비용 절감, 소득(매출)증가
분야/부분	분야 (10)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노동, 교육, 금융, 농림·어업, 건설·에너지, 산업일반
	부분 (10)	자격, 입지, 가격, 생산관리, 경영관리, 교육훈련, 기업간 거래, 기업·소비자간 거래, 행정, 지배구조

- (심사검증) 각 부처는 규제심사관 사전 협의시 사회적 비용·편익(피규제자 이외 비용·편익) 분석의 필요성, 정량적 분석 가능성 등을 협의하여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에 반영하고 규제연구센터, 규제 심사관은 사회적 영향분석의 색인 사례를 활용하여 심사·검증시 확인하여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량 또는 정성분석이 가능한데도 누락된 경우, 분석을 보완하여 재심사·검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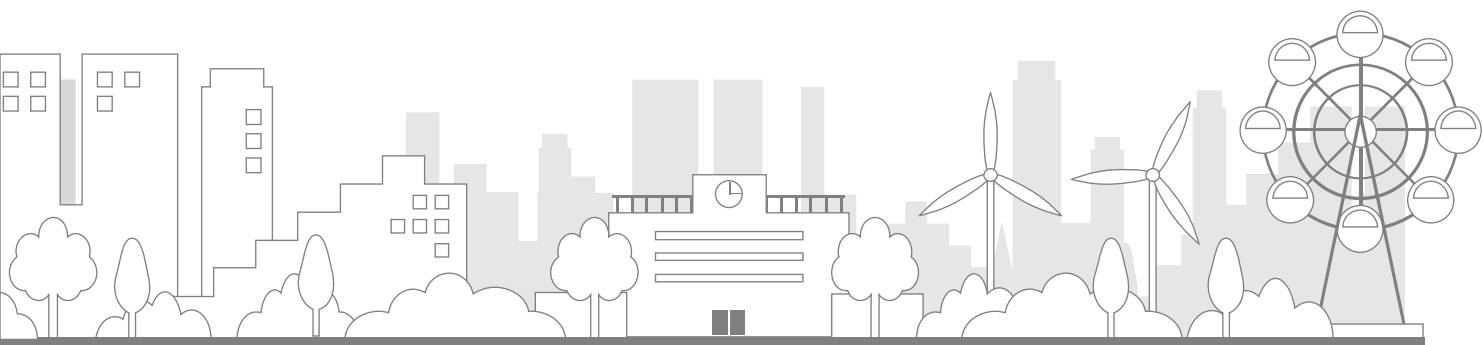


제5장

규제혁신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9년 규제혁신 평가

제2절 2020 규제혁신 추진방향



제5장

규제혁신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2019년 규제혁신 평가



집필자

권희근 사무관

Tel. 044-200-2452, beatitud0@korea.kr

1. 규제혁신 평가 개요

2019년 규제혁신 평가는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및 민생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규제혁신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규제혁신 핵심분야인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 등 주요과제를 평가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을 포함한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애로 개선과 규제개혁 만족도도 평가의 주요 항목에 포함되었다. 또한, 각 기관 및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노력도에 대한 가·감정 평가를 확대하였다.

규제혁신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별 규제정비 종합계획 상 정비과제가 2개 이하인 기관(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17개를 제외한 2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26개 기관을 장관급 기관(17개)과 차관급 기관(9개)로 구분하였으며,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과제 성격·부처 특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4개 분과(경제1·2, 사회1·2)로 나누어 1년간의 규제혁신 실적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항목은 크게 규제정비 60%, 규제심사 20%, 규제혁신 체감도 20%로 구성하였다. 규제정비 항목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실적, 규제 샌드박스 운영실적 등 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와 일자리 창출 분야 규제정비, 민생분야 규제정비 등 기존규제 정비 항목이 포함되었다. 규제심사 항목에는 절차 준수도 및 일몰규제 정비, 규제등록 실적이 포함되었고, 규제혁신 체감도 항목에는 규제개혁 만족도와 국민소통 실적이 포함되었다. 또한, 적극행정 노력도와 규제혁신 교육에 대한 가·감점을 부여하였다.

2008년부터 규제개혁 추진에 현장·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규제혁신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을 활용하고 있다.

2. 2019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2019년 규제혁신의 중점과제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을 통해 신기술·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주요 성과로는 신산업 분야의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입법방식 유연화(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를 추진하는 한편, 현장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여 제도를 통한 규제체계 혁신 및 소통을 통한 과제개선을 병행한 점을 들 수 있다.

1월 10일에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한 후 1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다. 또한, 민생불편 규제, 신산업 현장애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지우는 규제들을 테마별로 발굴하여 혁파하였다.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혁파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 ‘민관정책협의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규제개혁위원장(민간)·국무1차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주재로 각 지역별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총 11회 개최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신문고 및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발굴·혁파하여 규제개혁의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 이러한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으로서 규제혁신의 성과 창출,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개선 등을 통한 보다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005년 이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규제개혁의 현장 체감도를 파악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하는데 지표로 삼아왔다. 기관별로 정책수요자·전문가·내부고객(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는 올해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26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말부터 1달여 동안 진행되었다.

만족도 조사결과, 26개 기관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 기준 67.9점으로 산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2.1점 하락하였다. 기관별로 구분하여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78.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72.1점), 해양수산부(71.7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고용노동부(55.2점), 보건복지부(56.6점), 문화체육관광부(59.3점) 등의 순이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경찰청의 만족도가 8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특허청(78.4점), 농촌진흥청(7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문화재청(67.7점), 식품의약품안전처(68.1점) 등의 순이었다.

종합만족도는 2016년부터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가 2019년 다시 하락하였다. 특히 일반국민 만족도(65.2점)가 전문가(73.2점)와 내부고객(68.5점)의 만족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장관급 기관의 경우 2017년 반등하여 2018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에 다시 하락하였고, 차관급 기관은 2016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가 2019년 하락하였다.

3. 부처별 평가결과

2019년 부처별 평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공통과제를 준수하게 이행한 것은 물론이고 중점을 두고 추진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파 등을 열심히 추진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신산업 관련 기반 조성(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국민생활 밀접 규제혁파(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림축산식품부)를 추진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적극적 규제개선을 추진한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 수출통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한 기관(관세청), 산림이용 규제 완화로 국민 불편해소 및 기업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산림청)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상대적으로 부처 공통과제에 대한 이행도 등이 저조하고, 규제개혁 건의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기관이 미흡한 기관으로 평가되었다. 장관급 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흡을 받았고, 교육부의 경우 매우 미흡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차관급 기관으로는 경찰청과 농촌진흥청이 미흡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4. 분야별 평가 결과

가.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 신산업 분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존의 네거티브 개념(원칙허용·예외금지)을 확장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중심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환을 추진하여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 274건(자치법규 142건 포함)을 발표하였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VR, 5G 분야 등 총 195건 승인되었다. 또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여 10월에 발표하였고, 다른 핵심 신산업 분야(수소·전기차, AI, VR 등)까지 로드맵 확산을 추진 중이다.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14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였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혁신기업이 활발히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신산업 업계와의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수소차·전기차, 드론, IoT 등 핵심테마 중심으로 현장애로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해소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규제 샌드박스 고도화, 네거티브 규제혁파 가속화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나. 국민불편·민생부담 분야 규제혁신

국민 편의 증진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려고 노력하였다. 4월에는 지역단위 제한규제로 인한 행정서비스·영업·생활편의 등 국민불편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50건의 과제를 개선하였고, 10월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창업-영업-폐업) 불편·부담을 야기하는 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105건의 과제를 해소하였다.

한편, 규제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불만 사항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시접수하고 해결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역 현장간담회를 11회 개최하여 현장건의 과제를 해결하였고, 온라인으로는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을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169건 개선하였다.

나아가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 공무원이 왜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지를 입증토록 규제혁신의 추진방식을 전환하였다. 입증이 어려운 규제의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건의과제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는 훈령,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입증책임 전환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기존에 수용곤란·증장기검토 과제로 통보했던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을 재검토하여 2천여건의 규제를 폐지·개선하였다.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거·보육·생활SOC 등 주요 테마별로 반복되는 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등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 공직자의 적극행정 강화

진정한 규제혁신은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사전컨설팅제를 전 부처에 확대 도입하였다. 8월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법령 정비를 실시하였다. 또한, 적극행정 성과 공유대회 및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규제혁신 붐업을 추진하였다. 나아가 힘있는 규제기관에 대한 적극행정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조실 주관으로 부처별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위·공정위·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공직자의 적극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요구가 많은 분야에 대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석선영 사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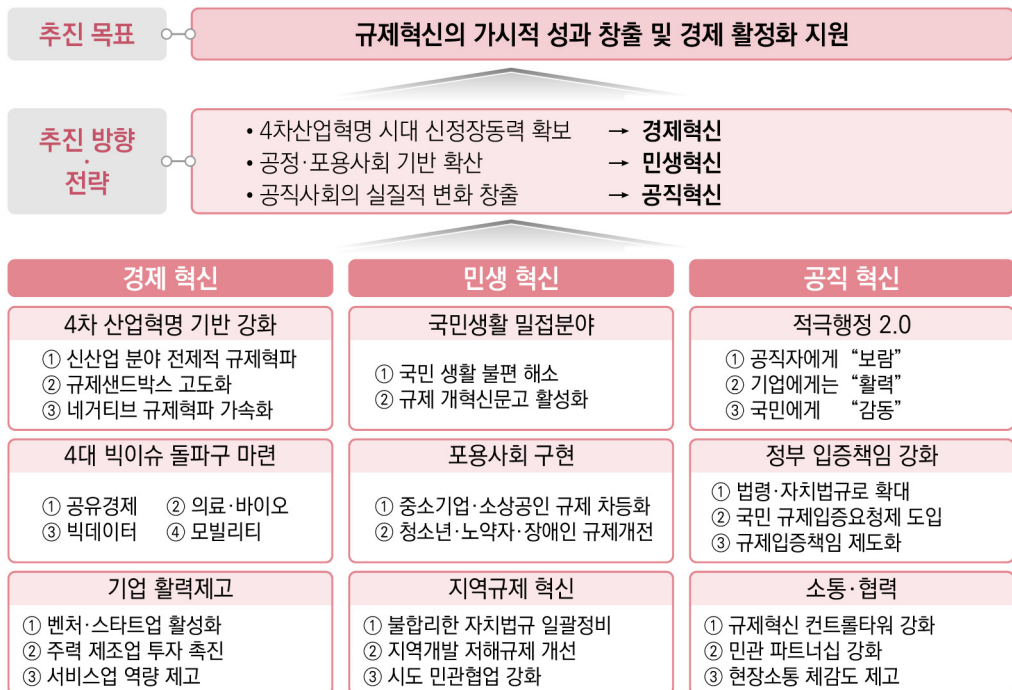
집필자

Tel. 044-200-2397, ssy1214@korea.kr

1. 개요

2020년은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3대 분야(경제, 민생, 공직) 혁신에 중점을 두고 과감한 규제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를 혁신하고, 공정·포용사회 기반을 확산시키기 위해 민생 분야를 혁신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직혁신을 함께 추진한다.

2. 세부 추진방향



가. 경제혁신

신산업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 규제 샌드박스 고도화(민간 접수기구 신설, 유망 신산업 분야 활용 확산, 신속한 법령정비 등 후속대책 강화 등), 네거티브 규제혁파 가속화(공공기관 규정까지 확산) 등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新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4대 빅이슈(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갈등 조정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해법을 마련한다. 규제 샌드박스 주관 부처에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갈등이슈의 협의·조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규제·제도혁신 헤커톤을 갈등 해결의 장으로 활용한다. 또한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입지/투자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한다.

나. 민생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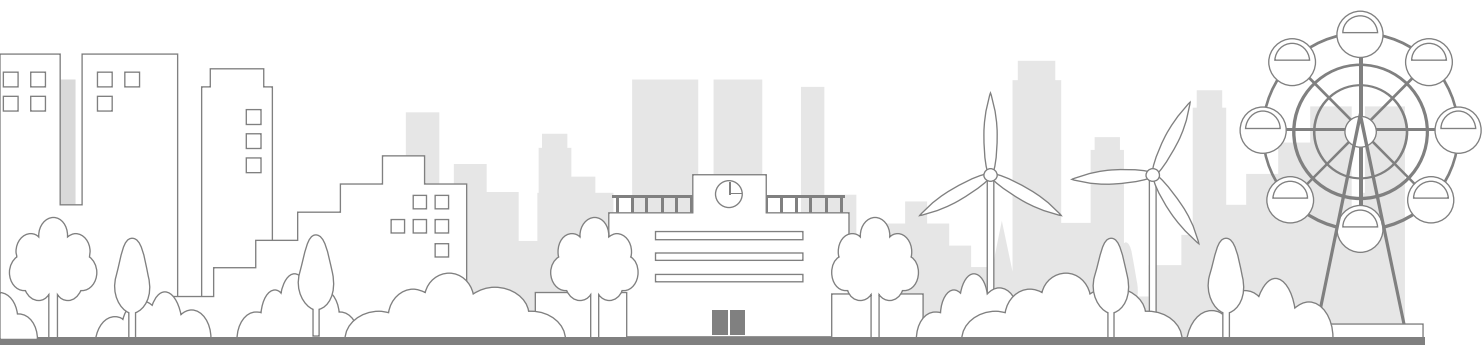
주거·보육·교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발굴하여 테마별 일괄정비(Top-down)를 추진한다. 국민·기업의 규제애로는 간편하게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Bottom-up). 공정·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혁신한다.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주민생활·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지역개발·특화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다. 공직혁신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고 규제혁신의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 2.0'을 추진한다. 공직자에게 보람을 주는 적극행정을 위해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사전컨설팅을 내실화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에게 활력이 되는 적극행정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 단계에 적극행정을 적용하고 경제단체와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적극행정을 위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추진하고 국민을 섬기는 친절한 행정을 실시한다. 정부 입증책임을 강화하여 법령·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추진하고 국민·기업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국무총리 중심의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소통과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부록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2. 규제개혁 관련 법령



부록

1.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가. 본 위원회 개최 일지



집필자

박유리 사무관
Tel. 044-200-2416, parkyuri@korea.kr
이정호 사무관
Tel. 044-200-2414, turtleb@korea.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26회 (*19.1.11)	국무조정실	2018년 규제혁신 평가결과	보고					
제427회 (*19.1.25)	국무조정실	2018년 하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보고					
	국무조정실	2019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안)	보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28회 (*19.2.8)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0	1
	원자력안전 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29회 (*19.2.2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의결	1	0	0	0	1
제430회 (*19.3.22)	국무조정실	2019년 재검토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계획	보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2018년 주요 활동실적	보고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0	0	0	1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전 구분	의결안건 심의결과				
				원안	부대	개선	철회	계
제431회 (19.4.26)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위원회 개편 및 전문분과위원회 신설 추진계획(안)	보고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 규제개선 추진계획	보고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32회 (19.5.10)	국무조정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보고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0	1
제433회 (19.5.24)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결	0	4	0	0	4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0	1	0	0	1
제434회 (19.7.12)	국무조정실	2019년 상반기 규제신문고 운영성과	보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0	0	1	0	1
제435회 (19.7.26)	국무조정실	2019년 상반기 규제비용관리제 운영결과	보고					
	국무조정실	2019년 재검토 일몰규제 상반기 정비결과	보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의결	1	2	0	0	3
제436회 (19.8.23)	국무조정실	2019년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활동실적	보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의결	0	1	0	0	1
제437회 (19.9.6)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38회 (19.9.2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보고	0	0	1	0	1
제439회 (19.10.11)	국무조정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	보고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0	0	0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1	0	0	0	1
제440회 (19.10.25)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과제발굴소위 발굴안건	보고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계속심사				
제441회 (19.11.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과제발굴소위 운영방안	보고					
	국무조정실	농림부 등 '19년 재검토 일몰규제 하반기 심사안	의결	0	0	1	0	1
제442회 (19.12.13)	국가기술표준원	2019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결과	의결	계속심사				
	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0	1	0	0	1
제443회 (19.12.27)	국가기술표준원	2019년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결과	의결	1	0	0	0	1
	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0	0	1	0	1
	국무조정실	2020년 기존규제 정비지침	의결	1	0	0	0	1
계	안건수 : 38 (의결안건 21건, 보고안건 17건)			10	10	4	0	24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나. 경제·행정사회분과위원회 개최 일지



집필자

이현정 사무관
Tel. 044-200-2398, hjlee2838@opm.go.kr
신용현 사무관
Tel. 044-200-2443, trustyonghyun@opm.go.kr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개선	철회
제523회 (19.2.22)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의결	계속심사		
제524회 (19.6.14)	국토교통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의결	1		
제525회 (19.6.28)	기획재정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공정거래위원회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금융위원회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관세청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산업통상자원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국토교통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중소벤처기업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해양수산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산림청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방송통신위원회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특허청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해양경찰청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농림축산식품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안건수 : 15				15	0	0

회차	소관부처	안건명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개선	철회
제554회 (19.6.28)	법무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보건복지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식품의약품안전처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행정안전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경찰청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여성가족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환경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국방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소방청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문화재청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고용노동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문화체육관광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원자력안전위원회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국가보훈처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1		
교육부	'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안	의결	본회의 재심사			
안건수 : 15				14	0	0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2. 규제개혁 관련 법령

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2. "법령등"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을 받는 고시(告示)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 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란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규제의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5조의2(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에 의하여 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 방식
2. 서비스와 제품의 인정 요건·개념 등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방식
3. 서비스와 제품에 관한 분류기준을 장래의 신기술 발전에 따른 서비스와 제품도 포섭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정하는 규정 방식
4. 그 밖에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하여 출시 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출시 후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방식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점검하여 해당 규제를

제1항에 따른 규정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등록·공표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7.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8.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9.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키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소상공인 등에 대한 규제 형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 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再審査)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규제에 관한 의견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또는

소관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정비 요청 및 제17조의2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삭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② 제1항의 심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기존규제에 대한 점검결과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의 적용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국민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육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1. 기존 규제를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맞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에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민의 안전·생명·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 및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여부
2.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3.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제19조의4(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위원회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정비에 관한 사항
3. 신산업 분야 규제의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4.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산업 분야의 규제정비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20조에 따른 규제정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수립·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정비를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그 기존규제의 정비 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끝낸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직 정비 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과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결 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의2(회의록의 작성·공개)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에는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전문위원과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규제 개선 점검·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 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규제개혁 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白書)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7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삭제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 ④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기존규제 정비의 요청 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의 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구술·전화·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주소·전화번호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이하 "기존규제 정비요청"이라 한다)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통보받은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 정비요청이 접수된 날(이하 "접수일"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답변한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3개월 내에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 정비요청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답변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기존규제를 존치하여야 한다고 재답변한 때에는 위원회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답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한 재답변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기존규제 정비요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기존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전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용역 등을 한 경우
 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제3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현지조사) ①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규제개선외 점검·평가 등) ①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다. 행정조사기본법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84호, 2016. 5. 29,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이란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나.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6.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및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제6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운영계획에는 조사의 종류·조사방법·공동조사 실시계획·중복조사 방지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보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조사대상의 선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조사대상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열람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내부고발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방법이나 그 밖에 행정조사 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조사방법

제9조(출석·진술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자의 출석·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출석요구의 취지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4. 제출자료
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조사대상자는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경우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출석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당해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요구와 자료제출의 요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일시와 장소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법령 및 조항 포함)
 5.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제출기간
2. 제출요청사유
3. 제출서류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6.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현장조사) ① 조사원이 가택·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등에서 현장조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 포함)
7. 그 밖에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사대상자(대리인 및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의 법령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시료채취) ① 조사원이 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시료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조사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등의 영치) ①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 자료·서류·물건 등(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을 영치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조사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사원은 자료등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료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조사원이 영치를 완료한 때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입회인과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중 1부를 입회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영치한 자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영치한 자료등을 검토한 결과 당해 행정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등에 대한 영치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신청인의 성명·조사일시·신청이유 등이 기재된 공동조사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의 장에게 공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공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조사실시

제16조(개별조사계획의 수립)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조사의 시급성으로 행정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조사계획에는 조사의 목적·종류·대상·방법 및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연기신청) ①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행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행정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기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기하고자 하는 기간과 사유가 포함된 연기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연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보충조사의 일시·장소 및 보충조사의 취지 등을 제3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하기 전에 그 사실을 원래의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를 사전에 통지하여서는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원래의 조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는

문서·전화·구두 등의 방법으로 당해 행정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거부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제출) ① 조사대상자는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원 교체신청) ① 조사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조사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체신청이 조사를 지연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 밖에 교체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하고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③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녹음·녹화의 범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④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결과의 통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제25조(자율신고제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자율관리체제의 구축)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이하 "자율관리체제"라 한다)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자가 법령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법령등의 준수를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7조(자율관리에 대한 혜택의 부여)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①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조사의 결과 및 공동조사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대상 행정기관과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①「행정조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행정조사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동조사를 하는 행정기관

②법 제6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의 목적
3. 조사대상자의 범위
4. 조사의 기간 및 시기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제4조(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①조사대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열람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열람신청서 처리대장에 그 신청 내용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인의 조사대상 선정기준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열람거부결정서에 그 이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으로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신청인의 임의대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수임인(受任人)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열람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출석요구 등)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조사대상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에게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석일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받은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결정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출석일시 변경신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발송확인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보상) ①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로 발생한 손실을 시료채취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할 때에 조사대상자에게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조사대상자는 손실의 원인이 된 시료채취가 있었던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손실액과 그 명세 및 산출방법
2.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 결정 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청구인은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액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영치조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치조서(領置調書)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공동조사 실시 분야) ①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건설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2. 유해·위험물질의 관리에 관한 분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3. 식품안전에 관한 분야로서 「식품위생법」 제17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8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76조 및 제102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4.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행정기관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분야

②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동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대상자, 조사원의 구성 및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④ 둘 이상의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동시에 조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간에 서로 협의하여 조사를 주관할 행정기관 또는 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조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주관한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조사 결과를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개별조사계획)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의 근거
2. 조사원의 구성
3.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
4. 조사거부 시 제재(制裁)의 내용 및 근거

제11조(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장부 및 관련 서류가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영치(領置)된 경우
3. 조사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연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연기신청 결과 통지서에 결정사항을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충조사를 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제삼자 보충조사 통지서를 조사 대상인 제삼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서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조사원의 교체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사원 교체신청 기각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사결과통지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3조(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①조사대상자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고 이를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2.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3.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14조(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행정조사의 확인·점검 대상 행정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②국무조정실장은 확인·점검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점검수행자로 하여금 대상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③국무조정실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확인·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확인·점검 실시계획 및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대상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

[시행 2016. 7. 19.] [국무총리훈령 제669호, 2016. 7. 19.,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에 의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비용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에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이하 "규제순비용"이라 한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규제(이하 "기존규제"라 한다)를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히 대처하기 위한 규제
 2.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협 방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5. 수수료, 행정질서벌 및 행정제재처분 등 규제비용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
 6. 1년 이하의 존속기간이 설정된 규제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순비용의 증가 및 감소 내역, 기존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규제비용 관리현황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의 우선 적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이하 "경제규제"라 한다)를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령등에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하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기존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단순한 조문형식의 변경이 아니라 국제기준 및 외국 입법사례를 참조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첨단기술·바이오헬스 등 신산업분야의 진입제한이나 경영활동에 관한 기존규제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으로 적극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 일몰제) 신설·강화되는 경제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그 기한 경과 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주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소상공인·소기업 규제 경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규제비용 관리의 대상이 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규제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규제 도입 시점부터 3년간 규제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비용관리 대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때에 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예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고시 등(이하 "고시 등"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제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고시 등이 상위 법령 또는 관계법령과 상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고시 등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한 사항인지 여부
 3. 고시 등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지 여부
 4. 고시 등에 규정된 사항이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고시 등에 위임이 불가피한지 여부
-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관 규제의 통합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정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와 의견을 제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7. 8. 23.] [국무조정실훈령 제111호, 2017. 8. 23.,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위원의 윤리 의무)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이 당해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금품·향응 등을 매개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은 안건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 또는 간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시행령 제20조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법 제26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 1 장

제 2 장

제 3 장

제 4 장

제 5 장

부 록

제8조(중요규제등의 결정) ① 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중요규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다만,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및 경제사회적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정한다.

1. 외국과의 협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입법절차를 마무리해야 할 경우
2. 기타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 안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2.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제10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
2. 당해 안건의 심의사항
3. 발언자 실명을 제외한 주요 발언내용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③ 회의록은 지체 없이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은 비밀을 요하거나 사생활 보호 등 특히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2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분과위원회
2. 행정사회분과위원회
3. 삭제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12조(소관) ① 경제분과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②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국가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등의 소관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5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이 수행한다.

제16조(규제조정실의 직무) 규제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인사·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5. 삭제

제17조(심의안건 설명) 규제조정실 실장과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발언할 수 있다.

제5장 자문기구·전문위원·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8조(자문기구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자문기구를 둔다.

1. 비용분석위원회
2.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3. 기술규제위원회

② 자문기구는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기구는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신산업 및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한다.

④ 자문기구는 논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문기구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전문위원·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20조(공정위에 조사·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21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적정성 검증
2. 비용편익분석기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제·개정 지원
4. 규제개혁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
5. 기타 위원회 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보 칙

제23조(위임) ①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규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기술규제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사.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 8. 16.] [국무총리훈령 제615호, 2013. 8. 16.,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의 발굴과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기업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 및 규제 관련 건의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 현장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 관련 국민 건의사항의 접수에 관한 사항
4. 발굴·접수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의 마련에 관한 사항

5.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실태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 개선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추진단에는 공동단장 3명과 부단장 1명을 둔다.

② 공동단장은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및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각각 겸임하고,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추진단의 단원은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④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추진단을 각자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규제개혁위원회에의 보고) 추진단은 규제 개선의 추진 현황 및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①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추진단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의 개최) 추진단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아.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2. 11.] [국무총리훈령 제643호, 2015. 2. 11., 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규제개선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규제개선건의”란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규제정보시스템(규제정보의 제공, 기존규제의 폐지·개선의 요청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접수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한다.

제3조(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 규제개선건의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규제개혁신문고를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한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규제개선건의의 처리) ① 규제개혁신문고에서는 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규제개선건의에 대한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을 정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건의 처리의 주관기관 및 협조기관으로 지정받은 행정기관은 답변 기한 내에 규제개선건의의 수용 여부를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재답변할 것을 내용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2항에 따른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에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제3항에 따른 소명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⑤ 규제개선건의에 대한 각 처리단계별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답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다만, 1회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소명: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3.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의 재답변: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

⑥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된 규제개선건의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 요청) 국무조정실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등의 개최)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 사항의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규제개혁위원회에의 보고)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선건의의 처리 실적, 규제개선 과제의 이행상황, 만족도 평가 및 현장점검 실시 결과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단의 운영)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개혁신문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자.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24.] [국무총리훈령 제730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규제개혁작업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제4조(업무수행방법) ① 각 작업단은 국무총리실에서 소관 분야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작업단은 국무총리실이 추진하는 일선 현장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개선방안 검토 및 현장 점검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각 작업단은 국무총리실에 반기별로 소관분야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협조 요청) 각 작업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작업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2019년도 규제개혁백서

발 행 일 : 2020. 4.

발 행 처 : 규제개혁위원회

편 집·인 쇄 :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